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025-10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6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목 차

요 약	19
제1장 서론	39
1. 발간목적 및 배경	39
2. 법적 근거	40
3. 자료수집 과정	41
4. 자료분석	41
5. 주요내용	41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47
1. 신고접수	47
1) 신고접수	47
2) 기관별 신고접수	50
3) 시군구별 신고접수	53
2. 신고자 유형	60
1) 신고자 유형	60
2) 시군구별 신고자 유형	68
3) 경찰통보건수	86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87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93
1. 현장조사	93
1) 현장조사 횟수	93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94
2. 사례판단	97
1) 사례판단 결과	97
2)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98
3) 피해아동 보호수	100
3. 피해아동 발견율	100
제4장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05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05
1) 피해아동	105
가. 피해아동 성별	105
나. 피해아동 연령	106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107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08
마. 피해아동 특성	109

2) 학대행위자	112
가. 학대행위자 성별	112
나. 학대행위자 연령	113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14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5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16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7
사. 학대행위자 특성	118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19
1) 아동학대 발생장소	119
2) 아동학대 발생빈도	120
3. 아동학대사례 유형	121
1) 아동학대사례 유형	121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121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122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23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3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4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25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7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28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129
1) 피해아동 조치결과	129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29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6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140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42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2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44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147
가.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147
나. 긴급임시조치 현황	149
다. 임시조치 현황	150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153
5. 서비스 제공 현황	157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157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157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59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0

목 차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160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1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2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162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3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67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167
1)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사례의 판단 결과	167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7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8
2)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0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0
3) 신고의무 유형에 따른 신고사례 발생현황	171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1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2
다.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74
라.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74
4)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175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75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76
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사례의 조치결과	177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77
나.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78
2. 재학대 사례	179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179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180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80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0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81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82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184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84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85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5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6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7
바.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88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9

5) 재학대 사례의 발생현황	190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190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91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2
라.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3
마.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5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196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196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197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198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198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99
8) 2015/2016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비교	200
가. 피해아동 조치결과 비교	200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201
다. 가족유형 비교	202
3. 사망아동 사례	202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202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203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03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04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5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207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07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08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08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09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210
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211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213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13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14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15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216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16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16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17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18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218

목 차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II(중복학대 미분류).....	219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219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19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25
1.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27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33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233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33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35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36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39
4.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피해아동 발견율	240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40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242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44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46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248
1)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248
2) 연도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49
3) 연도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50
4) 연도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51
5) 연도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52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253
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53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254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55
10.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256
1)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6
2)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8
11. 연도별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 실태 현황.....	259
1)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 실태	259
부록	263
부록 1. 용어집	263
[신고접수].....	263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264
[조치결과관리]	265
[서비스제공]	266
부록 2.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17년 8월 기준, 61개소)	268
부록 3. 전국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현황(2017년 8월 기준, 55개소)	272
부록 4. 2015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272

【 표 목차 】

<표 1-1> 보고서 내용구성	42
<표 2-1> 신고접수 건수	48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49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50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51
<표 2-5>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	53
<표 2-6> 신고자 유형	60
<표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	62
<표 2-8> 시군구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68
<표 2-9> 시군구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80
<표 2-10> 경찰통보건수	86
<표 2-11> 신고접수 경로 유형	87
<표 2-12>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88
<표 3-1> 현장조사 횟수	93
<표 3-2> 현장조사 동행 현황	94
<표 3-3>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94
<표 3-4> 사례판단 결과	97
<표 3-5>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98
<표 3-6> 피해아동 보호수	100
<표 3-7> 피해아동 발견율	101
<표 4-1> 피해아동 성별	105
<표 4-2> 피해아동 연령	106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08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09
<표 4-5> 피해아동 특성	110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112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113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14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6

목 차

<표 4-10>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16
<표 4-1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7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118
<표 4-13> 아동학대 발생장소	119
<표 4-14> 아동학대 발생빈도	120
<표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121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123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4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5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26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27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28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0
<표 4-23>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131
<표 4-24>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32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비교	133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3
<표 4-2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5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136
<표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8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9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140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140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140
<표 4-3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141
<표 4-3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2
<표 4-3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3
<표 4-37>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 건수	144
<표 4-38>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45
<표 4-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146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147
<표 4-4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148
<표 4-42> 긴급임시조치 현황	149
<표 4-43> 제14조 임의적 임시조치와 제15조 필요적 임시조치 실건수	151
<표 4-44>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 현황	151
<표 4-45>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 현황	151
<표 4-46> 임시조치 청구(요청) 현황	152
<표 4-47> 임시조치 결정 현황	153
<표 4-48>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결정 건수	153

<표 4-49>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154
<표 4-50>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155
<표 4-51>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157
<표 4-52>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158
<표 4-53>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59
<표 4-54>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160
<표 4-55>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1
<표 4-56>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162
<표 4-57>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163
<표 5-1>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 건수	167
<표 5-2>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8
<표 5-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9
<표 5-4>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0
<표 5-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1
<표 5-6>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2
<표 5-7>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74
<표 5-8>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75
<표 5-9>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75
<표 5-10>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76
<표 5-11>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77
<표 5-12>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78
<표 5-13>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179
<표 5-1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80
<표 5-1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0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81
<표 5-17>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83
<표 5-1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84
<표 5-1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85
<표 5-2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6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7
<표 5-2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7
<표 5-2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88
<표 5-2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89
<표 5-25>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190
<표 5-26>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91
<표 5-27>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3
<표 5-28>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3
<표 5-29>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5
<표 5-30>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196

목 차

<표 5-31> 재학대 사례 유형II(중복학대 미분류).....	197
<표 5-3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198
<표 5-3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99
<표 5-34> 2015/2016년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조치결과 비교.....	200
<표 5-35> 2015/2016년 재학대미발생/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201
<표 5-36> 2015/2016년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사례 가족유형 비교.....	202
<표 5-37>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03
<표 5-38>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03
<표 5-39>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04
<표 5-40>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6
<표 5-41>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07
<표 5-42>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08
<표 5-43>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09
<표 5-44>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표 5-45>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발생 건수.....	210
<표 5-46>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211
<표 5-4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13
<표 5-4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14
<표 5-4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15
<표 5-5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16
<표 5-5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16
<표 5-5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17
<표 5-53>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218
<표 5-54>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II(중복학대 미분류).....	219
<표 5-5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20
<표 5-5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표 6-1>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연구」 연구대상.....	226
<표 6-2>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업무량.....	228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34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35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237
<표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39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40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241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242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243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44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46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48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49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250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51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52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53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54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55
<표 7-19> 연도별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6
<표 7-20> 연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8
<표 7-21> 아동학대 범 죄 전 력 자 취 업 실 태	259

【 그림 목차 】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48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49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50
<그림 2-4> 신고자 유형	61
<그림 2-5> 신고접수 경로 유형	87
<그림 3-1> 사례판단 결과	97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105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107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08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09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111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	112
<그림 4-7> 학대행위자 연령	113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15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6
<그림 4-1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7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빈도	120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122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123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4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5
<그림 4-16>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0
<그림 4-17>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중 분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130
<그림 4-18>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32
<그림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5

목 차

<그림 4-20>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8
<그림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39
<그림 4-22>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141
<그림 4-2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142
<그림 4-24>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3
<그림 4-2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4
<그림 4-26>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148
<그림 4-27>	긴급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150
<그림 4-28>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153
<그림 4-29>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156
<그림 5-1>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68
<그림 5-2>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1
<그림 5-3>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74
<그림 5-4>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75
<그림 5-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76
<그림 5-6>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78
<그림 5-7>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79
<그림 5-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80
<그림 5-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1
<그림 5-1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82
<그림 5-1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84
<그림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84
<그림 5-1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85
<그림 5-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86
<그림 5-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87
<그림 5-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88
<그림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0
<그림 5-18>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191
<그림 5-19>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192
<그림 5-20>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3
<그림 5-21>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5
<그림 5-22>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196
<그림 5-23>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중복학대 별도 분류)	197
<그림 5-24>	재학대 사례 유형Ⅱ(중복학대 미분류)	197
<그림 5-2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198
<그림 5-2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99
<그림 5-27>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03
<그림 5-28>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04
<그림 5-29>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07

<그림 5-30>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08
<그림 5-31>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09
<그림 5-32>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그림 5-3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13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34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235
<그림 7-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36
<그림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39
<그림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40
<그림 7-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	241
<그림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242
<그림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243
<그림 7-9>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47
<그림 7-10>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48
<그림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49
<그림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250
<그림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51
<그림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52
<그림 7-15>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53
<그림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54
<그림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55
<그림 7-18>	연도별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7
<그림 7-19>	연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58

요약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요약

- 본 보고서는 전국 59개 아동보호전문기관(2016년 기준)에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조 의거).
- 본 보고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건을 사례 개입 절차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되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 분석된 2016년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추이를 토대로 아동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자 함.
 - ▶ 수집된 자료는 2016년의 신고접수,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사례 발생 및 유형,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및 서비스 제공,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재학대 사례, 사망아동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며, 더불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함.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

- 2016년, 전국 59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29,674건에 해당됨.
 - ▶ 아동학대 신고접수 29,674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25,878건(87.2%), 동일신고는 189건(0.6%), 일반상담은 3,604건(12.1%), 해외발생사례는 3건(0.0%)임.
 - ▶ 아동학대 신고접수 29,674건 중 재신고 사례는 3,095건(10.4%)이며, 2016년 신규신고는 26,579건(89.6%)임.
 - ▶ 2016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6월 2,891건(9.7%), 3월 2,849건(9.6%), 5월 2,816건(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는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1,011건,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952건,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901건,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885건 순으로 나타남.
-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 남동구 477건, 안산시 상록구 399건 순으로 나타남.

신고자 유형

-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32.0%(8,288건),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68.0%(17,590건)로 나타남.
 - ▶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은 초·중·고교 직원으로 15.4%임.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1%,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2.7%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9% 순으로 나타남.
 - ▶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부모가 17.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에 의한 신고율이 15.8%, 아동본인 9.0% 순으로 나타남.

신고접수 경로 유형

-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가 15,454건(52.1%)으로 가장 많았고, 112는 13,991건(47.1%), 1366 141건(0.5%), 129 51건(0.2%) 순으로 나타남.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됨.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현장조사

-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25,878건을 대상으로 총 53,401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됨.
- 아동학대의심사례 대비 현장조사 실시 횟수를 분석한 결과 1건 당 약 2.1회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현장조사 동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원 단독 현장조사 30,210건(56.6%), 상담원·경찰 14,594건(27.3%), 경찰 단독 5,720건(10.7%), 상담원·경찰·공무원 2,045건(3.8%) 순으로 나타남.
- 상담원이 단독 출동하는 사유는 사건 개입의 시급성이 비교적 낮거나 현재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가 보장되는 상황 일 때 발생할 확률이 높음.

사례판단

- 조기자원사례는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말하며 일반사례는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를 뜻함.
- 아동학대의심사례인 25,878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사례는 18,700건으로 72.3%를 차지하였고, 조기자원사례 2,222건(8.6%), 일반사례 4,898건(18.9%)임.
- 아동학대사례 25,878건 내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 되어 학대로 판단된 경우 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실제 보호된 아동 수는 14,296명으로 나타남.

피해아동 발견율

-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6년 「연령별(시도) 추계아동인구」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한 결과, 전국 피해아동 발견율은 2.15%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4.66%로 가장 높았고, 광주광역시가 1.1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는 -0.56로 유의미하게 도출됨. 다시 말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대비 추계아동인구를 살펴본 결과,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평균 147,372명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역시가 283,823명으로 가장 많은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울산광역시 215,287명, 경상남도 196,721명 순으로 나타남. 반면 담당 아동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였으며, 1개 기관 당 약 58,924명이었음.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아동학대로 판단된 18,700건을 대상으로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 9,380건(50.2%), 여아 9,320건(49.8%)으로 남아가 약 0.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0.6%,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의 아동이 19.2%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족 9,931건(53.1%), 친부모가족 외 형태 7,681건(41.1%), 대리양육형

태와 기타는 각각 334건(1.8%), 86건(0.5%)의 양상을 나타냄.

- ▶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이 각각 14.0%, 11.8%, 1.9%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 유형의 27.7%에 해당함.
- ▶ 한편 가족유형 중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가 각각 28건(0.1%), 79건(0.4%), 227건(1.2%)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 집계되었으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리양육형태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 3,367건(18.0%), 비수급권 대상 12,508건(66.9%), 그리고 파악안됨이 2,825건(15.1%)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특성을 신체·정신적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특성없음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적응·행동이 전체 32.5%인 11,334건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정신건강 9,814건(28.1%), 특성없음 7,732건(22.2%), 발달·신체건강 3,419건(9.8%), 기타 1,340건(3.8%), 장애 1,249건(3.6%) 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 10,327건(55.2%), 여성 8,347건(44.6%)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1.2배 많았으며, 파악안됨은 26건(0.1%)임.
- 학대행위자 중 40대가 8,228건(4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5,558건(29.7%)이었는데 피해아동 연령 중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볼 때,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인 것으로 유추 가능함.
- 학대행위자는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15,048건(8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의 경우 2,173건(11.6%)으로 나타남. 대리양육자 중에서 보육교직원은 587건(3.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253건(1.4%)이었음.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동거하는 사례는 14,701건으로 전체의 78.6%에 해당하였고, 비동거와 파악안됨은 각각 3,918건(21.0%), 81건(0.4%)임.
-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5,275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비스 및 판매직 2,853건(15.3%) 순으로 나타남. 반면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인 경우는 전체의 약 28.6% 정도를 차지함.
-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2,755건(15.0%)인 반면 비수급권 13,124건(70.0%)에 달하였으며, 파악안됨은 2,821건(15.0%)에 해당함.
- 학대행위자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전체의 35.6%에 해당하는 16,737건이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요인 8,372건(17.8%), 부부 및 가족 갈등 4,901건(10.4%) 순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2.2%에 해당하는 15,371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그 외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사례는 각각 601건(3.2%), 609건(3.3%), 247건(1.3%)으로 전체 사례 중 7.8%에 해당하고, 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287건(1.5%), 기타복지시설 24건(0.1%)로 1.7%에 해당함.
-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23.3%인 4,364건이었으며,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는 2,384건(12.7%), 일주일에 한 번 인 경우가 2,260건(12.1%)으로 나타남.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48.1%로 전체 사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

아동학대사례 유형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8,980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3,588건(19.2%), 방임 2,924건(15.6%), 신체학대 2,715건(14.5%), 성학대 493건(2.6%)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12,262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와 방임이 각각 10,875건(38.2%), 4,592건(16.1%), 성학대 753건(2.6%)으로 이 중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방임사례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고, 정서학대와 성학대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음. 특히 성학대 사례에서는 여아가 87.8%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음.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연령분포가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유사하게 도출되었으며, 만 13~15세와 만 10~12세 구간에 많은 피해아동이 집중됨. 방임의 경우 연령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방임을 제외한 모든 학대유형에서 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약물·흡연·음주, 가출 등과 같은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정신건강 특성, 특성 없음, 발달·신체건강 특성, 장애의 순으로 나타남. 방임의 경우 불안, 주의산만 등과 같은 정서·정신건강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성학대의 경우 38.8%로 나타남.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음. 그 다음으로,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및 가족갈등의 순서로 높은 비중이 나타남. 성학대의 경우 성문제가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다음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음.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14,563건(77.9%)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보호 4,095건(21.9%), 사망 42건(0.2%)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이 초기에 분리보호 조치된 경우 중 일시보호 2,325건(12.4%), 친족(친인척)보호 1,179건(6.3%), 장기보호 322건(1.7%), 연고자에 의한 보호 158건(0.8%), 병원입원 104건(0.6%), 가정위탁 7건(0.0%) 순으로 나타남.

▶ 초기 분리보호된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1,184건(28.9%)이었으며, 가정 복귀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초기 분리보호 이후 1개월 이내가 524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1~3개월 사이 272건(23.0%), 3~6개월 사이 185건(15.6%), 6개월~1년 사이 201건(17.0%)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초기 분리보호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30.3%로 가장 높았고, 대전광역시 28.1%, 대구광역시 26.3% 순으로 조사됨.

▶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학대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조치는 원가정보호로 약 75.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학대 사례의 경우, 62.0%의 아동이 원가정에 보호됨.

●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는 2016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8,700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2016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결과를 뜻함.

▶ 2016년 아동학대사례 18,700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3,041건으로 전체의 16.3%에 해당함.

▶ 진행 중 사례와 종결사례를 합한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13,573건(72.6%), 분리보호 3,730건(19.9%), 사망 50건(0.3%), 가정복귀 1,347건(7.2%)으로 나타났으며, 분리보호의 세부유형 중에서는 친족(친인척)보호 1,336건(7.1%), 일시보호 1,113건(6.0%), 장기보호 1,085건(5.8%), 연고자에 의한 보호 102건(0.5%), 병원입원 61건(0.3%), 가정위탁 33건(0.2%) 순으로 나타남.

▶ 2016년에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를 나누어 살펴보면 진행 중인 사례는 원가정보호가 11,599건(74.1%)이나 분리보호는 2,978건(19.0%)으로 파악되며, 종결된 사례의 경우 원가정보호 1,974건(64.9%), 분리보호 752건(24.7%)으로 파악됨.

▶ 2016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1,030명의 아동 중 2016년 이전에 입소하여 2016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은 175명(17.0%)이며, 2016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855명(83.0%)으로 나타남.

▶ 2016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1,030명 중 2016년에 퇴소한 아동은 75.9%인 782명, 2016년에도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248명(24.1%)임.

▶ 2016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은 2016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은 1개월 미만인 411명(52.6%),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인 160명(20.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90명(11.5%),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70명(9.0%), 1년 이상이 51명(6.5%)으로 나타남, 최장 거주 기간은 약 4년으로 나타남.

▶ 2016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퇴소한 아동의 거주지로 원가정 복귀 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고, 타 시설 입소 비율은 40.9%임.

●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속관찰이 11,733건(6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사건처리 6,018건(32.2%)이고, 아동과의 분리 560건(3.0%), 학대행위자 만나지 못함 389건(2.1%)임.

▶ 학대행위자에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성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에게 고소·고발 조

치한 경우가 80.2%로 가장 많은 반면 다른 사례 유형에서는 60%이상 지속관찰 조치함.

▶ 고소·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4,276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수사가 794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수사 1,356건(31.7%), 판결과 재판진행 중인 사례는 각각 1,535건(35.9%), 589건(13.8%)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고소·고발의 결과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총 2,029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 741건, 정서학대 591건, 방임 558건, 성학대 357건 순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처벌법(2014.9.29. 시행)으로 조치된 사례는 2016년도 아동학대사례 18,700건 중 10.2%에 해당하는 1,913건이며, 이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는 미반영함.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응급조치는 상담원 979건, 경찰 322건으로 총 1,301건이 이루어졌으며, 3호(피해아동을 보호시설 인도)가 1,172건(6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긴급임시조치가 경찰 직권으로 39건이 결정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7건을 경찰에 신청하여 2건이 결정되었음. 세부 내용은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45건(4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호(퇴거 등 격리)가 36건(32.4%),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30건(27.0%) 순으로 나타남.

▶ 임시조치가 청구신청(요청)되거나 청구(요청)되어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실건수는 제14조 임시조치 516건(29.1%), 제15조 임시조치 1,260건(70.9%)으로 총 1,776건임. 제15조 임시조치는 응급조치 후속절차로 필요적으로 진행되는 임시조치이며, 이는 응급조치 대비 96.8%가 진행됨.

▶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 직권으로 임시조치 청구신청한 사례는 총 462건이고, 이 중 350건(75.8%)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신청되었으며, 112건(24.2%)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신청되지 않았음.

▶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신청 한 경우 또는 검사 직권으로 청구한 경우를 모두 총합하면 359건이고, 이 중 325건(90.5%)은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었으며, 34건(9.5%)은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을 거부하였음.

▶ 임시조치가 결정된 사례는 970건(98.2%)이고, 검사가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례는 18건(1.8%)임.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766건(34.7%), 5호(상담 및 교육 위탁)가 583건(26.4%),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477건(21.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총 340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280건, 변호사가 54건, 아동본인이 1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5건을 청구함.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하여 결정된 건수는 총157건 중 127건, 변호사는 총 25건 중 21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2건을 청구하여 1건 모두 결정되었으며, 판사 직권으로 50건이 결정됨.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내용으로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가 총 184건(31.5%)으로 가장 높았고,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161건(27.6%), 3호(전기통신 접근제한) 132건(22.6%), 7호(친권 제한 또는 정지) 52건(8.9%) 순으로 나타남.

서비스 제공 현황

-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2016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028,942회임.
 - ▶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6년 이전과 2016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각각 142,391회(52.2%), 179,767회(48.9%)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일시보호서비스는 2016년 이전 사례 70,394회(25.8%), 2016년 사례 119,484회(32.5%)로 나타남.
 - ▶ 피해아동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가 각각 48.8%, 7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례진행 중 보다 사후관리 아동에게 상담서비스가 더 많은 비중으로 제공됨.
- 아동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2016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93,633회임.
 - ▶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6년 이전과 2016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보면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었는데, 2016년 이전 신고 사례 65,074회(83.0%), 2016년 신고 사례 89,963회(78.1%)의 서비스가 제공됨.
 - ▶ 학대행위자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볼 때,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78,291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5,342회 제공되었고, 상담서비스가 약 80%이상의 높은 비율로 제공됨.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빈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사례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6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94,931회임.
 - ▶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2016년 이전과 2016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두 상담서비스 위주로 실시됨. 2016년 이전 사례는 74,760회(90.4%), 2016년 신고사례는 100,941회(89.9%)인 것으로 파악됨.
 - ▶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사례 종결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진행 중 사례의 경우 158,980회(90.1%), 사후관리 사례는 16,721회(90.7%)에 해당함.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단 결과는 신고의무자 77.9%, 비신고의무자 69.6%로 신고의무자의 사례가 비신고의무자의 사례보다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율이 가장 높은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이 80.6%로 매우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높은 신고율을 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각각 84.3%, 68.6%로 나타남.
-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신고의무자

81.9%, 비신고의무자 79.7%로 신고의무자 비율이 더 높았고, 대리양육자의 경우 신고의무자 10.5%, 비신고의무자가 12.2%로 비신고의무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임.

-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분포를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는 아동 가정 내, 학교, 병원, 기타복지시설, 숙박업소의 장소에서 아동학대를 더 많이 발견하였고, 비신고의무자는 학대행위자 가정 내, 친인척의 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집 근처 또는 길가,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더 많이 발견함.

- 아동학대 발생빈도의 경우,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각각 1,683건(26.1%), 2,681건(21.9%)으로 가장 높았음.

- 신고의무 여부에 따라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를 분석한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 큰 차이가 없었음.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중 1년~3년 사이가 신고의무자 38.5%, 비신고의무자 3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아동학대 사례의 유형 중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신고의무자 여부와 신고의무자 직군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39.5%로 가장 높았고, 비신고의무자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4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 각 학대 유형별로 발견율이 높은 신고의무자 직군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신체학대 발견율은 학원강사 62.5%, 의료인 53.0%, 의료기사 50.0%이었음. 성학대 발견율은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44.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22.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11.1%이었으며, 방임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100.0%로 나타남

- 피해아동 조치결과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간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지속 관찰 비율이 높았는데,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67.2%,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60.4%로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더 높았음. 고소·고발·사건처리 비율은 신고의무자 27.1%, 비신고의무자 34.8%로 비신고의무자가 더 높게 나타남.

재학대 사례

- 2016년에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총 1,59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18,700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8.5%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임. 실제 재학대 아동수는 1,397명임.

-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아 813건(51.1%), 남아 778건(48.9%)로 나타남.

-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만 10~12세 377건(23.7%), 만 13~15세 369건(23.2%), 만 7~9세 348건(21.9%)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생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의 68.8%이상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677건(42.6%), 친부모가족 외 형태 881건(55.4%), 대리양육형태 13건(0.8%), 기타와 파악안됨은 각각 8건(0.5%), 12건(0.8%)임.

- 피해아동의 특성 중 적응·행동이 1,248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정신건강이 1,039건(30.0%)

로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분석됨.

-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 678건(42.6%), 남성 913건(57.4%)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음.
-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701건(44.1%)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30대 556건(34.9%), 50대 195건(12.3%), 20대 87건(5.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직업 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607건으로 전체 38.2%의 높은 분포를 차지함.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291건(18.3%), 서비스 및 판매직 255건(16.0%)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244건(15.3%),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42건(8.9%), 50만 원 미만이 183건(11.5%)으로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가 전체 재학대 사례의 35.7%로 높은 분포를 보임.
-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본 결과 수급권 대상자 482건(30.3%), 비수급권 대상자 966건(60.7%)이었고, 파악이 되지 않은 사례는 143건(9.0%)임.
-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에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874건(36.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974건(18.8%), 부부 및 가족갈등이 501건(9.7%), 알콜 및 약물·게임 등의 중독문제 452건(8.7%) 순임.
- 재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1,520건(95.5%)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과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각각 36건(2.3%), 27건(1.7%)로 나타남.
- 재학대 사례가 가정 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1,493건(93.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집근처 또는 길가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가 31건(1.9%)이었음.
- 재학대 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430건(27.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3일에 한 번 213건(13.4%), 일주일에 한 번 204건(12.8%) 순으로 나타남.
- 재학대 발생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후 1년~2년 사이가 391건(24.6%)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이 274건(17.2%), 2년~3년이 252건(15.8%), 3개월~6개월 사이가 243건(1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생시기별 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1개월 미만과 2년~3년 사이를 제외하고 모든 재학대 발생시기에서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살펴본 결과, 발생시기 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없었음.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모든 재학대 발생 시기에서 30%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두 번째로 높은 분포를 보임.
-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면 중복학대가 809건(50.8%), 정서학대 318건(20.0%), 방임 271건(17.0%), 신체학대 176건(11.1%), 성학대 17건(1.1%) 순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 973건(61.2%), 분리보호 617건(38.8%)으로 나타났고, 재학대 사례 중 사망한 아동은 1건(0.1%)으로 나타남. 최종조치결과는 원가정보호 834건(52.4%), 분리보호 565건(35.5%)이며, 초기개입 시 분리되었던 피해아동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191건

(12.0%)이었음.

-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909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사건처리 610건(38.3%),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37건(2.3%), 아동과의 분리 35건(2.2%) 순으로 나타남. 최종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853건(5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사건처리 676건(42.5%), 아동과의 분리 32건(2.0%),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 30건(1.9%) 순으로 나타남.
- 2015/2016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를 비교하여 아동학대 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초기 조치결과와 최종조치결과 모두에서 재학대 사례의 분리보호율이 재학대 미발생 사례의 분리보호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서는 재학대 미발생 사례보다 재학대 사례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더 높게 나타남.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재학대 미발생 사례보다 재학대 사례에서 한부모가정 등 친부모가족 외 형태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망아동 사례

- 2016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18,700건 중 사망아동 사례는 50건이며, 전체 사례의 0.3%를 차지함. 실제 사망아동 수는 36명임.
- 총 50건의 사망아동 사례 중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 23건(46.0%), 여아 27건(54.0%)으로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50건의 사례 중 남성과 여성이 각각 17건(34.0%), 33건(66.0%)으로 여성 학대행위자가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와 친모가 각각 11건과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모, 양부, 양모, 친인척, 기타 각각 2건으로 나타남.
 - ▶ 피해아동의 연령 중 만 1세미만이 14건, 만 1세가 2건, 만 2세가 7건으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23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46.0%를 차지하고 있음.
 - ▶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20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6건, 40대 14건이었음.
- 사망아동 사례는 68.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친척집 3건(6.0%), 어린이집 1건(2.0%), 병원은 1건(2.0%), 숙박업소(찜질방, 여관 등)에서 발생한 사례는 4건(8.0%)으로 나타났고, 기타 발생 사례(주유소)는 5건(10.0%)이었음.
-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일회성으로 발생한 학대가 23건으로 46.0%의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22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16건(32.0%), 방임 11건(22.0%), 정서학대 1건(2.0%) 순으로 나타남.
- 사망아동 사례에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고소·고발·사건처리가 34건(68.0%),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 16건(32.0%), 지속관찰 0건(0.0%)이었음.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 2016년 아동학대 사례 중 시설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1,686건으로 전체의 9.0%에 해당함. 종사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587건(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학대가 576건(34.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53건(15.0%) 순으로 나타남.
-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아동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남아 973건(57.7%), 여아 713건(42.3%)이었음.
-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피해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각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시설 종사자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특성없음이 1,146건(52.8%)으로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 중 여성 1,198건(71.1%), 남성 488건(28.9%)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 2.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종사자 학대행위자 연령은 30대가 484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61건(21.4%), 20대 343건(20.3%), 50대 267건(15.8%) 순으로 나타남.
- 시설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보육교직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496건(52.8%),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특성없음이 2건(100.0%)로 나타남.
- 다음은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임.
 - ▶ 먼저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중복 학대가 각각 234건(39.9%), 238건(41.3%), 127건(5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방임이 96건(40.0%)이었으며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체학대가 18건(64.3%)으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체학대, 중복학대가 각각 1건(50.0%)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음.
 - ▶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정서학대 1,091건(45.8%), 신체학대 937건(39.4%), 방임 253건(10.6%), 성학대 99건(4.2%) 순으로 나타남.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은 정서학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는 신체학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모든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 원가정보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에서 고소·고발·사건처리가 1,212건(71.9%), 지속관찰 354건(21.0%), 아동과의 분리 113건(6.7%) 순으로 나타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 2017년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분석 관련 심층연구^{*}를 통해 상담원의 업무량을 분석하였으며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 경우 2016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 연구보고서^{**}의 일부에 2016년 심리치료 관련 업무 수치를 적용하여 임상치료전문인력의 업무량을 분석함.
- 2016년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수행한 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 2,315,310.2시간(상담원 1인당 약 3,635시간), 1인당 업무손실(L)은 약 123시간(15.4일)으로 추정되었음. 또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들이 수행한 치료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 총 업무량(T)은 325,927시간(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약 5,173시간, 647일), 1인당 업무손실(L)은 약 148시간(18.5일)으로 추정되었음.
-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연간 업무처리 소요시간 및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현실 타당한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 인력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6년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원 적정인원은 1,181명^{***}으로 나타남.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 경우 2016년 기준 총 174.2명^{****}이 치료업무 수행에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현황(2001-2016년)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5년에는 전년 대비 8.0%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54.5%로 상승함.
-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살펴보면 2001년 0.5%에서 2013년까지 14.1%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2.4%, 10.4%로 전년대비 2% 가량씩 감소하는 비율을 보임.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686건에서 2016년 8,288건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약 12배 이상 증가함.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약 2.6% 상승함.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업무량 분석(20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결과를 일부 발췌함.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 연구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경찰대학교 정웅 연구관이 수행한 연구결과임.

*** 2016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상담원 수는 637명임.

**** 2016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 상근임상심리치료인력 수는 63명임.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신고접수의 80% 이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 되었으나 2016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된 비율이 50.3%로 전년 대비 5.4%가 감소함. 반면 112를 통한 신고접수 비율은 47.1%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함.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피해아동 발견율

- 2001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6년의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은 전년대비 59.6%가 증가함.
- 2016년 피해아동 발견율은 2.15%임.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방임과 중복지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6년에는 중복지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중복지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연도별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에 처음으로 80% 미만인 79.8%로 나타남. 그리고 다시 2016년 80.5%로 되돌아옴.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에 불과하였지만, 2016년에는 11.6%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친부모가족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5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친부모 가족 외 형태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 연도별 재학대 사례는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59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재학대 사례 비율은 2012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14.3%에 해당하였으나 2016년에는 8.5%로 다소 감소함.
- 연도별 재학대 사례 유형의 경우, 2012년에 정서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았으며 2013년에는 정서학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체학대와 방임이 각각 440건(29.2%)으로 높게 나타남.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성학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에 최초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신고접수 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서 2016년까지 1년에서 2년 사이의 재학대 발생 비율이 23%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매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 보호가 56.2%~72.6%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분리보호는 27.1%~43.8% 수준으로 나타남.
-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의 경우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고소·고발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2016년에는 전년 대비 고소·고발 비율이 약 6.8% 이상 높아짐.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집계됨.
- 최근 5년 동안의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1년과 2013년도에는 방임이 50% 이상의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2012년과 2014년에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2015년에는 신체학대가 52.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에는 중복학대가 4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해마다 지속관찰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고소·고발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6년에는 68.0%로 전년대비 0.4% 감소한 비율을 보임.

연도별 신고의무자교육 교육 결과

- 2016년의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된 신고의무자교육 의무기관은 전국에 총 41,767곳이며, 실제로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한 기관은 41,764곳으로 3곳을 제외하고 모두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함. 신고의무자교육 의무기관의 교육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3,093곳(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5,257곳(12.6%), 경남 3,437곳(8.2%), 인천 2,440곳(5.8%), 경북 2,351곳(5.6%) 순으로 나타남.
- 2016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신고의무자교육 의무기관은 총 20,680곳이며 실제로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20,680곳으로 총 기관수 대비 교육이수기관 이수 비율이 100%에 해당함.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한 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은 경기도가 4,602곳(2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2,217곳(10.7%), 경남 1,652곳(8.0%), 경북 1,642곳(7.9%) 순으로 나타남.

연도별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 실태

-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 및 확인한 결과 아동관련기관 총 310,831개 중 31개 기관의 34명이 취업제한으로 위반됨.

서론

- 발간목적 및 배경
- 법적근거
- 자료수집 과정
- 자료분석
- 주요내용

1



2016 전국이동학대현황보고서



제1장 서론

1. 발간목적 및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있어 국가 공적 개입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신고 청구 제도 마련, 신고의무자군 확대,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민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증대되었다. 2014년 2월 28일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국가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이 마련되었고, 별도로 운영되어온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범죄신고전화인 112로 통합하여 신고전화번호를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반드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개선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특히 2015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등 이전에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고, 국가가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 10년간 지방에 이양됐던 아동학대예방사업이 2015년 국가사무로 환수되어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가사무로 전환이 된 이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9개소 증설되고, 아동학대신고 건수가 급증하였다. 이는 아동

학대에 대한 인프라의 증가와 아동학대발견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2016년에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늘어나는 신고건수와 더불어 아동학대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신고자가 안심하고 아동학대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016년 초에는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및 탈출 사건을 시작으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잔혹한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연달아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더욱 철저한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2016년을 ‘아동학대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아동학대 신고의식 고무를 위하여 정책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보호 및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이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인 현재 아동보호의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뤘은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고 나서 2014년-2016년 동안 아동학대처벌법의 조치가 실시된 사례의 추이를 살펴보면 325건, 1,214건, 1,91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처럼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는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조치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 이후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률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강화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경찰의 동행출동이 법적으로 명시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2014년에는 상담원과 경찰의 동행출동 비율이 12.7%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6년에 27.3%로 약 14.6%포인트 증가하였다.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절차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법률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와 동시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고 있다.

2.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역할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되며, 2016년 12월 31일 기준, 1개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59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6조를 근거로 수행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살펴보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례슈퍼비전 및 모니터링,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아동학대에방사업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에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담원 직무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에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신고접수되는 아동학대 사례 및 교육·홍보활동 등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의거). 이러한 전국아동학대현황 분석은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정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본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아동학대사례로 신고접수 되어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는 2016년도의 아동학대 현황과 함께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현황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주요 특성,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자료수집 과정

본 자료는 전국 59개 아동보호전문기관(2016년 12월 말 기준 기관장 제의 654명 상당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가 신고접수된 이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National Child Abuse Database System, NCADS)에 입력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정보시스템 통계자료는 2017년 5월 23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 분석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 중 백분율의 경우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주요내용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신고접수에서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단계의 내용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기록하고 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통계 자료는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본 보고서에 제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보고서 내용구성

분류	내용	
신고접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 신고자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 사례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사회학적 요인 •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아동학대사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조치현황 • 서비스 제공 현황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 재학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아동 사례 •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연도별 신고 접수 경로 유형 •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 연도별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 연도별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 실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2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신고접수
- 신고자 유형
- 신고접수 경로 유형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1) 신고접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한 위기개입을 위하여 24시간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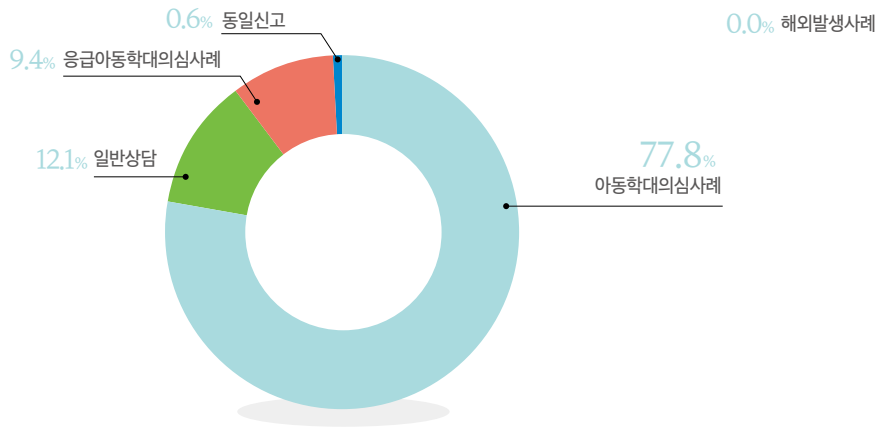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는 내용 및 심각성 등에 따라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사례로 분류된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 당시, 아동이 학대로 인해 매우 응급한 상태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다 긴급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말한다. 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접수 내용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다. 다음으로 동일신고는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 피해의심내용으로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이다. 일반상담이란 자녀양육 상담 문의, 시설보호 문의 등 아동학대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발생사례는 해외에서 발생한 국내 국적의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학대로 인해 해외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개입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접수된 사례이다.

2016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포함한 신고접수 건수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9,674건이며,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는 각각 2,796건, 23,082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87.2%를 차지하였다. 동일신고는 전체의 0.6%에 해당하는 189건이었으며, 일반상담은 3,604건으로 12.1%에 해당하였다.

<표 2-1>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2,796 (9.4)	23,082 (77.8)	25,878 (87.2)	189 (0.6)	3,604 (12.1)	3 (0.0)	29,674 (100.0)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또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는 이전 신고 여부에 따라 신규 및 재신고 사례^{*}로 구분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이며, 사례진행중 재신고는 사례 개입 중 추가적으로 신고접수되었거나 혹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판단 이전에 또 동일한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어 접수된 사례이며 일반상담 후 재신고는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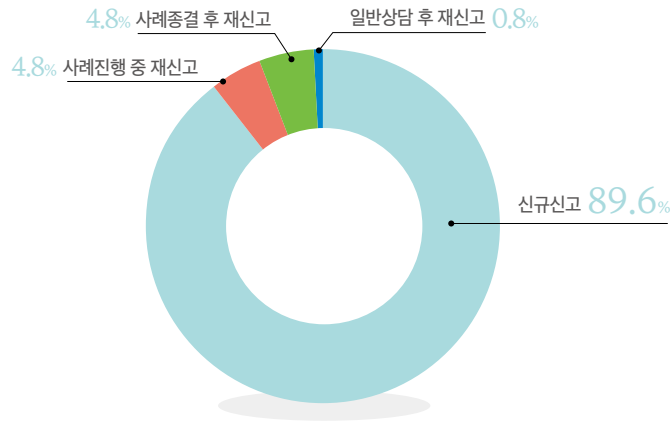
2016년에 신고접수된 29,674건 중 재신고 사례에 해당하는 건수는 3,095건(10.4%)이며, 이 외의 26,579건(89.6%)은 2016년에 최초로 신고접수된 사례이다. 재신고 사례 유형에 따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는 1,423건(4.8%)이었으며,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와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는 각각 1,436건(4.8%), 236건(0.8%)으로 집계되었다.

* 재신고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를 말하며, 재학대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재신고 사례				신규신고 사례	계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진행 중 재신고	일반상담 후 재신고	소계		
1,423 (4.8)	1,436 (4.8)	236 (0.8)	3,095 (10.4)	26,579 (89.6)	29,674 (100.0)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표 2-3>은 2016년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고접수된 사례 건수를 월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6월에 총 2,891건(9.7%), 3월에 총 2,849건(9.6%), 5월에 총 2,816건(9.5%) 순으로 월별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신고접수 되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12월에 신고 건수가 80.4%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큰 달이었으며 5월도 작년에 비해 신고건수가 78.3% 증가하였다.

이처럼 아동학대신고의 증가는 2015년 12월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탈출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 및 민감도의 증가와 정부 차원에서의 아동학대 합동 점검 진행으로 아동학대의 신고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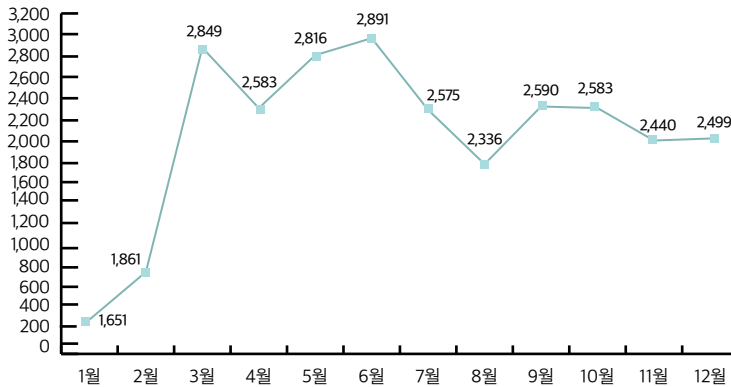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신고접수가 적게 들어온 시기는 1월, 2월이었으며 각각 1,651건(5.6%), 1,861건(6.3%) 순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1·2월은 추운 날씨에 옷차림이 두터워져서 외관상 학대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고, 방학 시기와 추운 날씨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외부인에게 학대피해 사실이 노출되는 일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651 (5.6)	1,861 (6.3)	2,849 (9.6)	2,583 (8.7)	2,816 (9.5)	2,891 (9.7)	2,575 (8.7)	2,336 (7.9)	2,590 (8.7)	2,583 (8.7)	2,440 (8.2)	2,499 (8.4)	29,674 (100.0)

(단위 : 건)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2) 기관별 신고접수

<표 2-4>와 같이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21건(3.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1,011건(3.4%),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952건(3.2%),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901건(3.0%),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885건(3.0%)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	동일신고	해외발생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중앙*		-	-	-	-	-	1 (100.0)	1 (100.0)
서울	서울특별시	8 (1.4)	555 (96.0)	563 (97.4)	15 (2.6)	0 (0.0)	0 (0.0)	578 (100.0)
	서울특별시동부	246 (24.3)	562 (55.6)	808 (79.9)	192 (19.0)	11 (1.1)	0 (0.0)	1,011 (100.0)
	서울강서	40 (10.0)	303 (75.6)	343 (85.5)	51 (12.7)	7 (1.7)	0 (0.0)	401 (100.0)
	서울은평	52 (8.6)	475 (78.9)	527 (87.5)	73 (12.1)	2 (0.3)	0 (0.0)	602 (100.0)
	서울영등포	29 (4.5)	511 (80.1)	540 (84.6)	94 (14.7)	4 (0.6)	0 (0.0)	638 (100.0)
	서울성북	56 (14.4)	273 (70.0)	329 (84.4)	51 (13.1)	10 (2.6)	0 (0.0)	390 (100.0)
	서울마포	23 (5.2)	307 (69.6)	330 (74.8)	111 (25.2)	0 (0.0)	0 (0.0)	441 (100.0)
	서울동남권**	-	-	-	-	-	-	-
소 계	454 (11.2)	2,986 (73.5)	3,440 (84.7)	587 (14.5)	34 (0.8)	0 (0.0)	4,061 (100.0)	
부산	부산광역시	12 (2.6)	395 (86.4)	407 (89.1)	45 (9.8)	5 (1.1)	0 (0.0)	457 (100.0)
	부산동부	18 (3.4)	468 (87.2)	486 (90.5)	50 (9.3)	1 (0.2)	0 (0.0)	537 (100.0)
	부산서부	44 (9.7)	385 (84.8)	429 (94.5)	23 (5.1)	2 (0.4)	0 (0.0)	454 (100.0)
	부산남부***	-	-	-	-	-	-	-
소 계	74 (5.1)	1,248 (86.2)	1,322 (91.3)	118 (8.1)	8 (0.6)	0 (0.0)	1,448 (100.0)	
대구	대구광역시	25 (6.7)	297 (79.2)	322 (85.9)	50 (13.3)	3 (0.8)	0 (0.0)	375 (100.0)
	대구남부	97 (23.8)	282 (69.3)	379 (93.1)	26 (6.4)	2 (0.5)	0 (0.0)	407 (100.0)
	대구북부	25 (7.9)	273 (85.8)	298 (93.7)	19 (6.0)	1 (0.3)	0 (0.0)	318 (100.0)
	소 계	147 (13.4)	852 (77.5)	999 (90.8)	95 (8.6)	6 (0.5)	0 (0.0)	1,100 (100.0)
인천	인천광역시	29 (3.2)	654 (72.6)	683 (75.8)	209 (23.2)	9 (1.0)	0 (0.0)	901 (100.0)
	인천북부	91 (13.5)	411 (61.0)	502 (74.5)	164 (24.3)	8 (1.2)	0 (0.0)	674 (100.0)
	인천남부	44 (5.7)	596 (76.9)	640 (82.6)	127 (16.4)	8 (1.0)	0 (0.0)	775 (100.0)
	소 계	164 (7.0)	1,661 (70.7)	1,825 (77.7)	500 (21.3)	25 (1.1)	0 (0.0)	2,350 (100.0)
광주	광주광역시	35 (6.4)	409 (75.3)	444 (81.8)	98 (18.0)	1 (0.2)	0 (0.0)	543 (100.0)
	빛고을	7 (15.9)	31 (70.5)	38 (86.4)	6 (13.6)	0 (0.0)	0 (0.0)	44 (100.0)
	소 계	42 (7.2)	440 (75.0)	482 (82.1)	104 (17.7)	1 (0.2)	0 (0.0)	587 (100.0)
대전	대전광역시	20 (2.3)	508 (57.4)	528 (59.7)	350 (39.5)	7 (0.8)	0 (0.0)	885 (100.0)
울산	울산광역시	91 (9.6)	733 (77.0)	824 (86.6)	113 (11.9)	15 (1.6)	0 (0.0)	952 (100.0)
경기	경기도	95 (13.2)	576 (80.1)	671 (93.3)	46 (6.4)	2 (0.3)	0 (0.0)	719 (100.0)
	경기북부	44 (6.3)	605 (86.4)	649 (92.7)	37 (5.3)	14 (2.0)	0 (0.0)	700 (100.0)
	경기성남	20 (2.7)	614 (83.3)	634 (86.0)	94 (12.8)	9 (1.2)	0 (0.0)	737 (100.0)
	경기고양	22 (4.5)	398 (81.2)	420 (85.7)	64 (13.1)	6 (1.2)	0 (0.0)	490 (100.0)
	경기부천	54 (11.2)	389 (80.4)	443 (91.5)	40 (8.3)	1 (0.2)	0 (0.0)	484 (100.0)
	경기화성	67 (12.1)	423 (76.1)	490 (88.1)	64 (11.5)	2 (0.4)	0 (0.0)	556 (100.0)
	경기남양주	72 (15.9)	349 (77.0)	421 (92.9)	32 (7.1)	0 (0.0)	0 (0.0)	453 (100.0)
	안산시	143 (14.0)	798 (78.2)	941 (92.2)	74 (7.2)	6 (0.6)	0 (0.0)	1,021 (100.0)
	경기용인	60 (9.0)	541 (81.5)	601 (90.5)	63 (9.5)	0 (0.0)	0 (0.0)	664 (100.0)
	경기시흥	114 (31.1)	199 (54.4)	313 (85.5)	50 (13.7)	3 (0.8)	0 (0.0)	366 (100.0)
	경기평택	45 (12.7)	301 (85.0)	346 (97.7)	7 (2.0)	1 (0.3)	0 (0.0)	354 (100.0)
수원	3 (14.3)	18 (85.7)	21 (100.0)	0 (0.0)	0 (0.0)	0 (0.0)	21 (100.0)	
소 계	739 (11.3)	5,211 (79.4)	5,950 (90.6)	571 (8.7)	44 (0.7)	0 (0.0)	6,565 (100.0)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	동일신고	해외발생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강원	강원도	16 (4.8)	294 (89.1)	310 (93.9)	19 (5.8)	1 (0.3)	0 (0.0)	330 (100.0)		
	강원동부	9 (3.4)	245 (91.4)	254 (94.8)	14 (5.2)	0 (0.0)	0 (0.0)	268 (100.0)		
	강원서부****	34 (10.2)	290 (87.1)	324 (97.3)	6 (1.8)	3 (0.9)	0 (0.0)	333 (100.0)		
	강원남부	66 (17.4)	301 (79.4)	367 (96.8)	9 (2.4)	3 (0.8)	0 (0.0)	379 (100.0)		
	소 계	125 (9.5)	1,130 (86.3)	1,255 (95.8)	48 (3.7)	7 (0.5)	0 (0.0)	1,310 (100.0)		
충북	충청북도	127 (16.7)	579 (76.2)	706 (92.9)	54 (7.1)	0 (0.0)	0 (0.0)	760 (100.0)		
	충북북부	26 (5.9)	373 (84.8)	399 (90.7)	36 (8.2)	5 (1.1)	0 (0.0)	440 (100.0)		
	충북남부	30 (16.0)	115 (61.2)	145 (77.1)	42 (22.3)	1 (0.5)	0 (0.0)	188 (100.0)		
	소 계	183 (13.2)	1,067 (76.9)	1,250 (90.1)	132 (9.5)	6 (0.4)	0 (0.0)	1,388 (100.0)		
충남	충청남도	50 (8.0)	449 (72.0)	499 (80.0)	125 (20.0)	0 (0.0)	0 (0.0)	624 (100.0)		
	충청남도남부	16 (4.3)	312 (83.4)	328 (87.7)	45 (12.0)	1 (0.3)	0 (0.0)	374 (100.0)		
	충청남도서부	33 (10.0)	272 (82.4)	305 (92.4)	25 (7.6)	0 (0.0)	0 (0.0)	330 (100.0)		
	소 계	99 (7.5)	1,033 (77.8)	1,132 (85.2)	195 (14.7)	1 (0.1)	0 (0.0)	1,328 (100.0)		
전북	전라북도	84 (9.8)	658 (77.0)	742 (86.8)	98 (11.5)	15 (1.8)	0 (0.0)	855 (100.0)		
	전라북도서부	59 (7.3)	654 (80.6)	713 (87.9)	96 (11.8)	2 (0.2)	0 (0.0)	811 (100.0)		
	전라북도동부	36 (10.6)	284 (83.5)	320 (94.1)	20 (5.9)	0 (0.0)	0 (0.0)	340 (100.0)		
	소 계	179 (8.9)	1,596 (79.6)	1,775 (88.5)	214 (10.7)	17 (0.8)	0 (0.0)	2,006 (100.0)		
전남	전라남도	20 (3.8)	465 (87.4)	485 (91.2)	47 (8.8)	0 (0.0)	0 (0.0)	532 (100.0)		
	전남서부권	35 (5.4)	570 (87.4)	605 (92.8)	46 (7.1)	1 (0.2)	0 (0.0)	652 (100.0)		
	전남중부권	71 (15.8)	358 (79.7)	429 (95.5)	18 (4.0)	2 (0.4)	0 (0.0)	449 (100.0)		
	소 계	126 (7.7)	1,393 (85.3)	1,519 (93.0)	111 (6.8)	3 (0.2)	0 (0.0)	1,633 (100.0)		
경북	경북남부	21 (5.3)	313 (78.3)	334 (83.5)	62 (15.5)	4 (1.0)	0 (0.0)	400 (100.0)		
	경북북부	48 (10.6)	348 (77.2)	396 (87.8)	55 (12.2)	0 (0.0)	0 (0.0)	451 (100.0)		
	경북동부	44 (7.4)	478 (80.7)	522 (88.2)	69 (11.7)	1 (0.2)	0 (0.0)	592 (100.0)		
	경북서부	47 (8.9)	378 (71.7)	425 (80.6)	98 (18.6)	4 (0.8)	0 (0.0)	527 (100.0)		
	소 계	160 (8.1)	1,517 (77.0)	1,677 (85.1)	284 (14.4)	9 (0.5)	0 (0.0)	1,970 (100.0)		
경남	경상남도	83 (10.8)	657 (85.3)	740 (96.1)	28 (3.6)	2 (0.3)	0 (0.0)	770 (100.0)		
	경남서부	22 (5.7)	359 (92.8)	381 (98.4)	6 (1.6)	0 (0.0)	0 (0.0)	387 (100.0)		
	김해시	43 (13.1)	271 (82.4)	314 (95.4)	12 (3.6)	1 (0.3)	2 (0.6)	329 (100.0)		
	소 계	148 (10.0)	1,287 (86.6)	1,435 (96.6)	46 (3.1)	3 (0.2)	2 (0.1)	1,486 (10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36 (9.0)	262 (65.7)	298 (74.7)	98 (24.6)	3 (0.8)	0 (0.0)	399 (100.0)		
	서귀포시	9 (4.4)	158 (77.1)	167 (81.5)	38 (18.5)	0 (0.0)	0 (0.0)	205 (100.0)		
	소 계	45 (7.5)	420 (69.5)	465 (77.0)	136 (22.5)	3 (0.5)	0 (0.0)	604 (100.0)		
계	2,796 (9.4)	23,082 (77.8)	25,878 (87.2)	3,604 (12.1)	189 (0.6)	3 (0.0)	29,674 (100.0)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례에 대해서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함.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0월 21일에 개소,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4월 4일에 개소,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0월 26일에 개소,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2월 5일에 개소됨.
 **** 2017년 1월 기준으로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3) 시군구별 신고접수

<표 2-5>와 같이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542건(2.1%), 인천 남동구 477건(1.8%), 안산시 상록구 399건(1.5%)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달리 인천 옹진군이 0건(0.0%)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경남 하동군이 각각 2건(0.0%)으로 나타났다.

<표 2-5>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서울	중구	11	(0.4)	45	(0.2)	56	(0.2)
	종로구	4	(0.1)	49	(0.2)	53	(0.2)
	서대문구	7	(0.3)	107	(0.5)	114	(0.4)
	마포구	14	(0.5)	118	(0.5)	132	(0.5)
	은평구	24	(0.9)	307	(1.3)	331	(1.3)
	동대문구	28	(1.0)	84	(0.4)	112	(0.4)
	중랑구	42	(1.5)	121	(0.5)	163	(0.6)
	도봉구	32	(1.1)	151	(0.7)	183	(0.7)
	성동구	25	(0.9)	63	(0.3)	88	(0.3)
	강동구	3	(0.1)	93	(0.4)	96	(0.4)
	강남구	3	(0.1)	122	(0.5)	125	(0.5)
	성북구	24	(0.9)	122	(0.5)	146	(0.6)
	서초구	0	(0.0)	42	(0.2)	42	(0.2)
	송파구	1	(0.0)	108	(0.5)	109	(0.4)
	노원구	83	(3.0)	123	(0.5)	206	(0.8)
	용산구	2	(0.1)	82	(0.4)	84	(0.3)
	강북구	24	(0.9)	119	(0.5)	143	(0.6)
	광진구	57	(2.0)	126	(0.5)	183	(0.7)
	영등포구	11	(0.4)	87	(0.4)	98	(0.4)
	관악구	0	(0.0)	155	(0.7)	155	(0.6)
	구로구	3	(0.1)	361	(1.6)	364	(1.4)
금천구	15	(0.5)	62	(0.3)	77	(0.3)	
동작구	1	(0.0)	35	(0.2)	36	(0.1)	
강서구	22	(0.8)	172	(0.7)	194	(0.7)	
양천구	18	(0.6)	131	(0.6)	149	(0.6)	
소 계	454	(16.2)	2,985	(12.9)	3,439	(13.3)	
부산	중구	1	(0.0)	13	(0.1)	14	(0.1)
	동구	0	(0.0)	24	(0.1)	24	(0.1)
	서구	1	(0.0)	34	(0.1)	35	(0.1)
	사하구	8	(0.3)	118	(0.5)	126	(0.5)
	영도구	1	(0.0)	53	(0.2)	54	(0.2)
	동래구	3	(0.1)	91	(0.4)	94	(0.4)
	남구	1	(0.0)	82	(0.4)	83	(0.3)
	금정구	3	(0.1)	73	(0.3)	76	(0.3)
	연제구	1	(0.0)	51	(0.2)	52	(0.2)
	해운대구	7	(0.3)	162	(0.7)	169	(0.7)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부산	수영구	0	(0.0)	58	(0.3)	58	(0.2)
	부산진구	13	(0.5)	158	(0.7)	171	(0.7)
	북구	12	(0.4)	82	(0.4)	94	(0.4)
	사상구	19	(0.7)	118	(0.5)	137	(0.5)
	강서구	0	(0.0)	34	(0.1)	34	(0.1)
	기장군	4	(0.1)	96	(0.4)	100	(0.4)
	소 계	74	(2.6)	1,247	(5.4)	1,321	(5.1)
대구	중구	3	(0.1)	36	(0.2)	39	(0.2)
	동구	13	(0.5)	125	(0.5)	138	(0.5)
	북구	10	(0.4)	117	(0.5)	127	(0.5)
	서구	9	(0.3)	104	(0.5)	113	(0.4)
	달서구	70	(2.5)	219	(0.9)	289	(1.1)
	남구	15	(0.5)	68	(0.3)	83	(0.3)
	수성구	9	(0.3)	132	(0.6)	141	(0.5)
	달성군	18	(0.6)	51	(0.2)	69	(0.3)
	소 계	147	(5.3)	852	(3.7)	999	(3.9)
인천	중구	6	(0.2)	39	(0.2)	45	(0.2)
	동구	1	(0.0)	24	(0.1)	25	(0.1)
	남구	16	(0.6)	245	(1.1)	261	(1.0)
	부평구	6	(0.2)	346	(1.5)	352	(1.4)
	서구	71	(2.5)	236	(1.0)	307	(1.2)
	남동구	41	(1.5)	436	(1.9)	477	(1.8)
	연수구	2	(0.1)	159	(0.7)	161	(0.6)
	계양구	19	(0.7)	154	(0.7)	173	(0.7)
	강화군	1	(0.0)	21	(0.1)	22	(0.1)
	옹진군	0	(0.0)	0	(0.0)	0	(0.0)
소 계	163	(5.8)	1,660	(7.2)	1,823	(7.0)	
광주	북구	15	(0.5)	141	(0.6)	156	(0.6)
	동구	2	(0.1)	30	(0.1)	32	(0.1)
	서구	12	(0.4)	91	(0.4)	103	(0.4)
	남구	5	(0.2)	68	(0.3)	73	(0.3)
	광산구	8	(0.3)	110	(0.5)	118	(0.5)
	소 계	42	(1.5)	440	(1.9)	482	(1.9)
대전	동구	10	(0.4)	74	(0.3)	84	(0.3)
	중구	0	(0.0)	102	(0.4)	102	(0.4)
	서구	2	(0.1)	160	(0.7)	162	(0.6)
	유성구	5	(0.2)	104	(0.5)	109	(0.4)
	대덕구	3	(0.1)	67	(0.3)	70	(0.3)
	소 계	20	(0.7)	507	(2.2)	527	(2.0)
울산	남구	28	(1.0)	180	(0.8)	208	(0.8)
	중구	16	(0.6)	166	(0.7)	182	(0.7)
	동구	13	(0.5)	124	(0.5)	137	(0.5)
	북구	13	(0.5)	107	(0.5)	120	(0.5)
	울주군	21	(0.8)	156	(0.7)	177	(0.7)
	소 계	91	(3.3)	733	(3.2)	824	(3.2)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	(0.1)	73	(0.3)	75	(0.3)
	고양시 일산서구	7	(0.3)	64	(0.3)	71	(0.3)
	고양시 덕양구	8	(0.3)	149	(0.6)	157	(0.6)
	파주시	5	(0.2)	112	(0.5)	117	(0.5)
	김포시	20	(0.7)	103	(0.4)	123	(0.5)
	부천시 원미구	18	(0.6)	108	(0.5)	126	(0.5)
	부천시 오정구	10	(0.4)	88	(0.4)	98	(0.4)
	부천시 소사구	6	(0.2)	91	(0.4)	97	(0.4)
	광명시	43	(1.5)	88	(0.4)	131	(0.5)
	안산시 단원구	74	(2.6)	468	(2.0)	542	(2.1)
	안산시 상록구	69	(2.5)	330	(1.4)	399	(1.5)
	과천시	1	(0.0)	25	(0.1)	26	(0.1)
	시흥시	72	(2.6)	111	(0.5)	183	(0.7)
	안양시 만안구	4	(0.1)	43	(0.2)	47	(0.2)
	안양시 동안구	4	(0.1)	56	(0.2)	60	(0.2)
	군포시	5	(0.2)	42	(0.2)	47	(0.2)
	의왕시	0	(0.0)	36	(0.2)	36	(0.1)
	수원시 장안구	23	(0.8)	107	(0.5)	130	(0.5)
	수원시 권선구	20	(0.7)	108	(0.5)	128	(0.5)
	수원시 팔달구	25	(0.9)	83	(0.4)	108	(0.4)
	수원시 영통구	16	(0.6)	94	(0.4)	110	(0.4)
	화성시	45	(1.6)	280	(1.2)	325	(1.3)
	용인시 기흥구	18	(0.6)	156	(0.7)	174	(0.7)
	오산시	22	(0.8)	143	(0.6)	165	(0.6)
	용인시 수지구	16	(0.6)	136	(0.6)	152	(0.6)
	용인시 처인구	15	(0.5)	80	(0.3)	95	(0.4)
	평택시	38	(1.4)	229	(1.0)	267	(1.0)
	안성시	7	(0.3)	73	(0.3)	80	(0.3)
	성남시 수정구	8	(0.3)	162	(0.7)	170	(0.7)
	성남시 중원구	4	(0.1)	140	(0.6)	144	(0.6)
	성남시 분당구	3	(0.1)	113	(0.5)	116	(0.4)
	광주시	2	(0.1)	134	(0.6)	136	(0.5)
	하남시	2	(0.1)	41	(0.2)	43	(0.2)
	이천시	8	(0.3)	88	(0.4)	96	(0.4)
	여주시	3	(0.1)	80	(0.3)	83	(0.3)
	구리시	27	(1.0)	68	(0.3)	95	(0.4)
	남양주시	38	(1.4)	249	(1.1)	287	(1.1)
	양평군	1	(0.0)	25	(0.1)	26	(0.1)
	가평군	7	(0.3)	32	(0.1)	39	(0.2)
	의정부시	19	(0.7)	294	(1.3)	313	(1.2)
양주시	6	(0.2)	110	(0.5)	116	(0.4)	
동두천시	5	(0.2)	48	(0.2)	53	(0.2)	
연천군	5	(0.2)	43	(0.2)	48	(0.2)	
포천시	9	(0.3)	110	(0.5)	119	(0.5)	
소 계	740	(26.5)	5,213	(22.6)	5,953	(23.0)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강원	춘천시	14	(0.5)	218	(0.9)	232	(0.9)
	화천군	0	(0.0)	32	(0.1)	32	(0.1)
	강릉시	6	(0.2)	154	(0.7)	160	(0.6)
	양양군	0	(0.0)	20	(0.1)	20	(0.1)
	속초시	0	(0.0)	55	(0.2)	55	(0.2)
	고성군	0	(0.0)	6	(0.0)	6	(0.0)
	원주시	24	(0.9)	248	(1.1)	272	(1.1)
	횡성군	3	(0.1)	21	(0.1)	24	(0.1)
	영월군	4	(0.1)	9	(0.0)	13	(0.1)
	평창군	3	(0.1)	12	(0.1)	15	(0.1)
	정선군	6	(0.2)	30	(0.1)	36	(0.1)
	태백시	8	(0.3)	63	(0.3)	71	(0.3)
	동해시	35	(1.3)	147	(0.6)	182	(0.7)
	삼척시	17	(0.6)	61	(0.3)	78	(0.3)
	홍천군	0	(0.0)	17	(0.1)	17	(0.1)
	인제군	3	(0.1)	10	(0.0)	13	(0.1)
	양구군	0	(0.0)	2	(0.0)	2	(0.0)
	철원군	2	(0.1)	25	(0.1)	27	(0.1)
소 계	125	(4.5)	1,130	(4.9)	1,255	(4.8)	
충북	청주시 상당구	18	(0.6)	82	(0.4)	100	(0.4)
	청주시 흥덕구	46	(1.6)	185	(0.8)	231	(0.9)
	청주시 서원구	9	(0.3)	62	(0.3)	71	(0.3)
	청주시 청원구	23	(0.8)	159	(0.7)	182	(0.7)
	진천군	13	(0.5)	29	(0.1)	42	(0.2)
	괴산군	2	(0.1)	12	(0.1)	14	(0.1)
	증평군	7	(0.3)	12	(0.1)	19	(0.1)
	음성군	9	(0.3)	38	(0.2)	47	(0.2)
	영동군	7	(0.3)	46	(0.2)	53	(0.2)
	옥천군	23	(0.8)	47	(0.2)	70	(0.3)
	보은군	0	(0.0)	22	(0.1)	22	(0.1)
	충주시	17	(0.6)	196	(0.8)	213	(0.8)
	제천시	5	(0.2)	165	(0.7)	170	(0.7)
	단양군	4	(0.1)	12	(0.1)	16	(0.1)
소 계	183	(6.5)	1,067	(4.6)	1,250	(4.8)	
충남	금산군	2	(0.1)	39	(0.2)	41	(0.2)
	공주시	2	(0.1)	54	(0.2)	56	(0.2)
	논산시	8	(0.3)	77	(0.3)	85	(0.3)
	계룡시	2	(0.1)	22	(0.1)	24	(0.1)
	부여군	1	(0.0)	98	(0.4)	99	(0.4)
	서천군	1	(0.0)	22	(0.1)	23	(0.1)
	천안시 동남구	4	(0.1)	72	(0.3)	76	(0.3)
	천안시 서북구	23	(0.8)	115	(0.5)	138	(0.5)
	아산시	15	(0.5)	138	(0.6)	153	(0.6)
	예산군	3	(0.1)	62	(0.3)	65	(0.3)
	당진시	2	(0.1)	48	(0.2)	50	(0.2)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충남	청양군	3	(0.1)	9	(0.0)	12	(0.0)
	홍성군	7	(0.3)	33	(0.1)	40	(0.2)
	보령시	2	(0.1)	82	(0.4)	84	(0.3)
	서산시	14	(0.5)	73	(0.3)	87	(0.3)
	태안군	4	(0.1)	13	(0.1)	17	(0.1)
	세종특별자치시	6	(0.2)	76	(0.3)	82	(0.3)
	소 계	99	(3.5)	1,033	(4.5)	1,132	(4.4)
전북	전주시 완산구	29	(1.0)	206	(0.9)	235	(0.9)
	전주시 덕진구	31	(1.1)	212	(0.9)	243	(0.9)
	완주군	12	(0.4)	94	(0.4)	106	(0.4)
	임실군	3	(0.1)	20	(0.1)	23	(0.1)
	진안군	3	(0.1)	9	(0.0)	12	(0.0)
	무주군	3	(0.1)	21	(0.1)	24	(0.1)
	익산시	15	(0.5)	301	(1.3)	316	(1.2)
	군산시	30	(1.1)	261	(1.1)	291	(1.1)
	김제시	8	(0.3)	60	(0.3)	68	(0.3)
	부안군	4	(0.1)	32	(0.1)	36	(0.1)
	정읍시	9	(0.3)	137	(0.6)	146	(0.6)
	고창군	2	(0.1)	0	(0.0)	2	(0.0)
	남원시	27	(1.0)	211	(0.9)	238	(0.9)
	순창군	3	(0.1)	9	(0.0)	12	(0.0)
	장수군	0	(0.0)	23	(0.1)	23	(0.1)
	소 계	179	(6.4)	1,596	(6.9)	1,775	(6.9)
	전남	영광군	7	(0.3)	38	(0.2)	45
장성군		5	(0.2)	13	(0.1)	18	(0.1)
곡성군		1	(0.0)	15	(0.1)	16	(0.1)
담양군		4	(0.1)	33	(0.1)	37	(0.1)
화순군		14	(0.5)	64	(0.3)	78	(0.3)
나주시		22	(0.8)	120	(0.5)	142	(0.5)
함평군		7	(0.3)	13	(0.1)	20	(0.1)
영암군		2	(0.1)	62	(0.3)	64	(0.2)
강진군		6	(0.2)	39	(0.2)	45	(0.2)
장흥군		6	(0.2)	38	(0.2)	44	(0.2)
목포시		22	(0.8)	328	(1.4)	350	(1.4)
무안군		3	(0.1)	59	(0.3)	62	(0.2)
신안군		3	(0.1)	29	(0.1)	32	(0.1)
해남군		0	(0.0)	56	(0.2)	56	(0.2)
완도군		1	(0.0)	20	(0.1)	21	(0.1)
진도군		4	(0.1)	16	(0.1)	20	(0.1)
순천시		6	(0.2)	154	(0.7)	160	(0.6)
구례군		2	(0.1)	16	(0.1)	18	(0.1)
광양시		5	(0.2)	89	(0.4)	94	(0.4)
보성군		0	(0.0)	34	(0.1)	34	(0.1)
고흥군	0	(0.0)	14	(0.1)	14	(0.1)	
여수시	6	(0.2)	143	(0.6)	149	(0.6)	
소 계	126	(4.5)	1,393	(6.0)	1,519	(5.9)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경북	경산시	7	(0.3)	119	(0.5)	126	(0.5)
	청도군	0	(0.0)	5	(0.0)	5	(0.0)
	군위군	2	(0.1)	6	(0.0)	8	(0.0)
	고령군	3	(0.1)	22	(0.1)	25	(0.1)
	칠곡군	12	(0.4)	68	(0.3)	80	(0.3)
	성주군	0	(0.0)	30	(0.1)	30	(0.1)
	구미시	29	(1.0)	183	(0.8)	212	(0.8)
	김천시	1	(0.0)	39	(0.2)	40	(0.2)
	상주시	2	(0.1)	36	(0.2)	38	(0.1)
	문경시	4	(0.1)	37	(0.2)	41	(0.2)
	영주시	10	(0.4)	81	(0.4)	91	(0.4)
	봉화군	2	(0.1)	6	(0.0)	8	(0.0)
	예천군	0	(0.0)	20	(0.1)	20	(0.1)
	안동시	32	(1.1)	201	(0.9)	233	(0.9)
	청송군	1	(0.0)	9	(0.0)	10	(0.0)
	영양군	0	(0.0)	3	(0.0)	3	(0.0)
	영덕군	1	(0.0)	17	(0.1)	18	(0.1)
	울진군	2	(0.1)	11	(0.0)	13	(0.1)
	의성군	0	(0.0)	14	(0.1)	14	(0.1)
	영천시	6	(0.2)	35	(0.2)	41	(0.2)
	경주시	6	(0.2)	134	(0.6)	140	(0.5)
	포항시 남구	25	(0.9)	240	(1.0)	265	(1.0)
	포항시 북구	15	(0.5)	201	(0.9)	216	(0.8)
소 계	160	(5.7)	1,517	(6.6)	1,677	(6.5)	

(계속)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경남	김해시	43	(1.5)	271	(1.2)	314	(1.2)
	양산시	20	(0.7)	86	(0.4)	106	(0.4)
	밀양시	2	(0.1)	31	(0.1)	33	(0.1)
	창원시 마산회원구	3	(0.1)	40	(0.2)	43	(0.2)
	창원시 마산합포구	4	(0.1)	40	(0.2)	44	(0.2)
	창녕군	6	(0.2)	32	(0.1)	38	(0.1)
	의령군	1	(0.0)	3	(0.0)	4	(0.0)
	함안군	0	(0.0)	9	(0.0)	9	(0.0)
	고성군	1	(0.0)	64	(0.3)	65	(0.3)
	창원시 의창구	2	(0.1)	64	(0.3)	66	(0.3)
	창원시 성산구	1	(0.0)	32	(0.1)	33	(0.1)
	창원시 진해구	15	(0.5)	67	(0.3)	82	(0.3)
	통영시	2	(0.1)	38	(0.2)	40	(0.2)
	거제시	26	(0.9)	138	(0.6)	164	(0.6)
	진주시	12	(0.4)	174	(0.8)	186	(0.7)
	사천시	6	(0.2)	82	(0.4)	88	(0.3)
	산청군	1	(0.0)	13	(0.1)	14	(0.1)
	하동군	0	(0.0)	2	(0.0)	2	(0.0)
	남해군	0	(0.0)	77	(0.3)	77	(0.3)
	거창군	2	(0.1)	9	(0.0)	11	(0.0)
	함양군	1	(0.0)	2	(0.0)	3	(0.0)
	합천군	0	(0.0)	13	(0.1)	13	(0.1)
	소 계	148	(5.3)	1,287	(5.6)	1,435	(5.5)
제주	제주시	38	(1.4)	264	(1.1)	302	(1.2)
	서귀포시	7	(0.3)	158	(0.7)	165	(0.6)
	소 계	45	(1.6)	422	(1.8)	467	(1.8)
총 계	2,796	(100.0)	23,082	(100.0)	25,878	(100.0)	

2. 신고자 유형

1)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기존의 신고의무자 22개 직군에서 아이돌보미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수행 인력이 추가되어 24개 직군으로 확대되었다.

2016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2016.9.23.시행)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서(2016.11.30.시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입양기관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추가되었다.

<표 2-6>는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288건(32.0%)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유형별 신고접수 건수 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중·고교 직원 3,978건(15.4%)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15건(3.1%),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695건(2.7%),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98건(1.9%) 순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율을 보였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17,590건(68.0%)으로 비신고의무자 중에서 부모가 4,619건(17.8%)으로 가장 높은 아동학대 신고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관련종사자 4,088건(15.8%), 아동본인 2,322건(9.0%) 순으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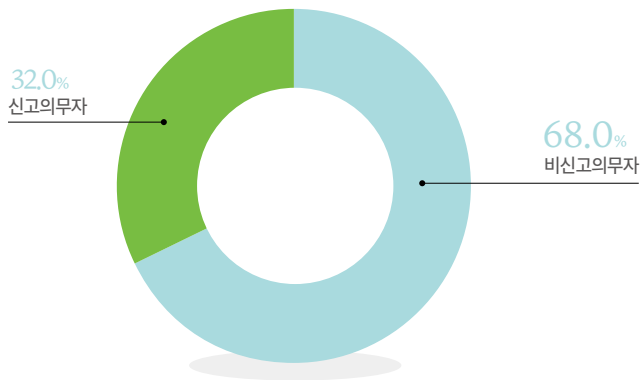
<표 2-6>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3,978	(15.4)	아동본인	2,322	(9.0)
의료인	216	(0.8)	부모	4,619	(17.8)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98	(1.9)	형제,자매	341	(1.3)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27	(0.1)	친인척	657	(2.5)
보육교직원	286	(1.1)	이웃,친구	1,858	(7.2)
유치원교직원,강사	114	(0.4)	경찰	1,426	(5.5)
학원강사	24	(0.1)	종교인	40	(0.2)
소방구급대원	39	(0.2)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4,088	(15.8)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2	(0.0)	낯선사람	649	(2.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11	(0.0)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619	(2.4)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301	(1.2)	익명	244	(0.9)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15	(3.1)	기타	727	(2.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312	(1.2)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2016년 9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11	(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98	(0.4)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695	(2.7)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44	(0.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35	(0.1)			
정신보건센터종사자**	51	(0.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122	(0.5)			
응급구조사	2	(0.0)			
의료기사	2	(0.0)			
청소년시설,단체종사자	223	(0.9)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75	(0.3)			
아이돌보미	1	(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296	(1.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0	(0.0)			
육아종합지원센터종사자***	0	(0.0)			
입양기관종사자***	0	(0.0)			
소 계	8,288	(32.0)	소 계	17,590	(68.0)
계			25,878(100.0)		



<그림 2-4> 신고자 유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2016년 9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2017년 5월 30일, 전부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됨.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종사자, 입양기관종사자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6.5.29.)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됨.

<표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지역 및 기관		신고의무자												
		초·중·고 교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서울	서울특별시	65	19	7	0	3	2	4	1	1	0	2	44	2
	서울특별시동부	134	1	3	0	3	1	4	1	0	0	2	18	11
	서울강서	65	6	9	0	5	0	2	0	1	0	1	24	4
	서울은평	67	6	8	0	7	1	0	0	0	0	0	9	21
	서울영등포	38	7	3	0	9	0	0	0	0	0	2	12	3
	서울성북	36	2	16	0	6	0	0	0	0	0	0	6	5
	서울마포	55	7	5	0	1	0	1	0	0	0	2	14	8
	서울동남권*	-	-	-	-	-	-	-	-	-	-	-	-	-
소 계	460	48	51	0	34	4	11	2	2	0	9	127	54	
부산	부산광역시	97	6	3	0	3	2	0	0	0	4	9	10	
	부산동부	83	3	16	0	0	1	0	1	2	0	15	10	
	부산서부	62	5	5	0	5	4	0	0	1	0	6	17	
	부산남부**	-	-	-	-	-	-	-	-	-	-	-	-	
소 계	242	14	24	0	8	7	0	1	3	0	12	41	45	
대구	대구광역시	70	5	4	0	1	2	2	0	0	3	1	10	4
	대구남부	89	0	3	0	7	1	0	0	1	0	15	6	
	대구북부	49	4	5	0	1	0	0	0	2	0	3	6	
소 계	208	9	12	0	9	3	2	0	2	4	4	31	13	
인천	인천광역시	100	5	2	0	10	2	0	2	0	0	3	19	4
	인천북부	100	3	5	0	9	1	1	0	0	0	2	10	6
	인천남부	69	4	8	0	4	1	0	2	0	0	3	14	16
소 계	269	12	15	0	23	4	1	4	0	0	8	43	26	
광주	광주광역시	90	4	13	0	3	6	0	1	1	0	1	22	3
	빛고을**	6	0	0	0	0	0	0	0	1	0	0	1	0
소 계	96	4	13	0	3	6	0	1	2	0	1	23	3	
대전	대전광역시	92	7	6	1	7	5	0	1	1	0	7	12	4
울산	울산광역시	123	14	14	4	6	4	0	1	0	0	3	4	6
경기	경기도	118	5	8	0	9	2	0	3	1	0	15	15	8
	경기북부	85	4	10	2	6	2	0	1	0	0	2	16	3
	경기성남	113	6	7	1	3	26	0	0	0	0	3	18	11
	경기도양	64	6	1	0	3	0	1	0	0	0	0	5	30
	경기부천	45	6	7	0	2	2	0	2	0	0	1	8	14
	경기화성	87	5	2	0	10	2	0	0	0	0	10	11	3
	경기남양주	46	6	12	0	4	2	0	0	0	0	3	16	3
	안산시	100	4	3	0	9	0	1	0	1	0	1	9	4
	경기용인	79	4	4	2	6	0	0	2	0	0	0	14	5
	경기시흥	45	2	14	1	6	2	0	0	0	0	3	17	10
	경기평택	60	5	6	0	10	0	0	2	0	0	1	5	0
수원**	3	2	1	0	0	0	0	0	0	0	2	0	0	
소 계	845	55	75	6	68	38	2	10	2	0	41	134	91	

(계속)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지역 및 기관		신고의무자												
		초·중·고 교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강원	강원도	57	2	7	0	3	2	1	0	0	0	10	22	6
	강원동부	39	0	9	4	5	1	0	0	0	0	1	5	3
	강원서부	48	3	14	1	5	1	0	0	0	0	1	8	2
	강원남부	55	2	3	0	3	3	0	2	0	0	0	11	3
	소 계	199	7	33	5	16	7	1	2	0	0	12	46	14
충북	충청북도	87	4	68	1	12	3	0	0	0	0	6	30	5
	충북북부	54	1	3	0	5	2	2	0	0	0	7	6	1
	충북남부	27	1	2	0	3	2	0	0	0	0	2	0	1
	소 계	168	6	73	1	20	7	2	0	0	0	15	36	7
충남	충청남도	103	5	16	0	7	7	0	2	0	0	28	30	1
	충청남도남부	59	1	7	2	8	7	0	0	0	2	3	11	0
	충청남도서부	50	1	3	0	7	0	1	0	0	0	8	15	12
	소 계	212	7	26	2	22	14	1	2	0	2	39	56	13
전북	전라북도	103	3	4	1	5	0	0	2	0	0	34	20	1
	전라북도서부	70	1	10	0	5	2	0	0	0	0	11	22	8
	전라북도동부	51	0	11	0	2	0	0	0	0	0	0	23	2
	소 계	224	4	25	1	12	2	0	2	0	0	45	65	11
전남	전라남도	62	3	4	4	5	1	0	0	0	0	5	22	6
	전남서부권	89	0	18	0	9	3	1	0	0	1	14	33	4
	전남중부권	84	0	12	0	1	0	0	0	0	1	7	20	1
	소 계	235	3	34	4	15	4	1	0	0	2	26	75	11
경북	경북남부	54	2	6	0	1	0	2	0	0	0	17	3	
	경북북부	46	0	8	0	8	1	0	0	0	0	6	39	0
	경북동부	65	3	19	2	6	1	0	8	0	0	1	3	0
	경북서부	92	3	5	0	1	1	0	1	0	3	1	5	3
	소 계	257	8	38	2	16	3	2	9	0	3	8	64	6
경남	경상남도	113	9	20	1	8	4	0	2	0	0	13	35	2
	경남서부	127	4	21	0	0	0	0	1	0	0	49	6	3
	김해시	35	2	11	0	10	0	1	0	0	0	0	9	2
	소 계	275	15	52	1	18	4	1	3	0	0	62	50	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33	2	3	0	1	1	0	0	0	0	6	5	1
	서귀포시	40	1	4	0	8	1	0	1	0	0	3	3	0
	소 계	73	3	7	0	9	2	0	1	0	0	9	8	1
계		3,978	216	498	27	286	114	24	39	12	11	301	815	312
		(15.4)	(0.8)	(1.9)	(0.1)	(1.1)	(0.4)	(0.1)	(0.2)	(0.0)	(0.0)	(1.2)	(3.1)	(1.2)

(계속)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신고자유형	신고의무자															소계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종사자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 원센터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 종사자
서울	서울특별시	0	20	1	0	1	0	1	0	2	1	0	1	0	0	0	0	177
	서울특별시동부	0	0	0	0	0	2	0	0	3	2	0	1	36	0	0	0	222
	서울강서	0	4	4	0	1	0	0	0	2	0	0	7	3	0	0	0	138
	서울은평	0	0	1	0	0	1	0	0	6	3	0	0	17	0	0	0	147
	서울영등포	0	0	0	0	0	0	0	0	2	0	0	0	4	0	0	0	80
	서울성북	0	0	1	0	0	0	0	0	0	1	0	0	2	0	0	0	75
	서울마포	0	0	0	0	1	0	0	0	4	2	0	1	5	0	0	0	106
	서울동남권*	-	-	-	-	-	-	-	-	-	-	-	-	-	-	-	-	-
	소 계	0	24	7	0	3	3	1	0	19	9	0	10	67	0	0	0	945
부산	부산광역시	2	2	0	0	0	3	0	0	9	12	0	6	9	0	0	0	177
	부산동부	3	9	3	0	2	2	0	0	4	8	0	3	2	0	0	0	169
	부산서부	0	0	0	1	0	3	0	0	12	8	0	1	10	0	0	0	165
	부산남부**	-	-	-	-	-	-	-	-	-	-	-	-	-	-	-	-	-
	소 계	5	11	3	1	2	8	0	0	25	28	0	10	21	0	0	0	511
대구	대구광역시	0	0	0	0	1	2	0	0	1	1	0	5	7	0	0	0	119
	대구남부	0	1	1	0	0	0	0	0	2	0	0	2	20	0	0	0	148
	대구북부**	0	2	0	0	1	2	0	0	1	0	0	4	8	0	0	0	91
	소 계	0	3	1	0	2	4	0	0	4	1	0	11	35	0	0	0	358
인천	인천광역시	0	1	2	0	0	2	0	0	4	1	0	6	33	0	0	0	196
	인천북부	0	0	7	0	0	0	0	0	2	1	0	0	4	0	0	0	151
	인천남부	0	1	0	3	3	0	0	0	5	0	0	0	6	0	0	0	139
	소 계	0	2	9	3	3	2	0	0	11	2	0	6	43	0	0	0	486
광주	광주광역시	1	4	0	1	10	25	0	0	0	1	0	0	7	0	0	0	193
	빛고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소 계	1	4	0	1	10	25	0	0	0	1	0	0	7	0	0	0	201
대전	대전광역시	0	1	1	0	1	1	0	0	5	2	0	6	3	0	0	0	163
울산	울산광역시	0	0	0	3	0	2	0	0	9	1	1	3	22	0	0	0	220
경기	경기도	0	2	1	1	0	0	0	0	3	1	0	7	10	0	0	0	209
	경기북부	0	1	3	0	0	0	0	0	4	2	0	8	17	0	0	0	166
	경기성남	0	6	2	0	0	1	0	0	9	2	0	3	20	0	0	0	231
	경기고양	0	1	0	0	5	0	0	0	0	0	0	8	1	0	0	0	125
	경기부천	0	0	0	2	0	2	0	0	4	0	0	0	15	0	0	0	110
	경기화성	0	2	0	2	0	2	0	0	0	0	0	14	9	0	0	0	159
	경기남양주	0	0	0	0	0	3	0	0	6	2	0	0	24	0	0	0	127
	안산시	0	0	1	0	2	5	0	0	6	3	0	12	30	0	0	0	191
	경기용인	0	1	0	0	4	1	0	0	5	0	0	5	3	0	0	0	135
	경기시흥	0	1	1	0	0	0	0	0	0	1	0	12	2	0	0	0	117
	경기평택	0	0	0	0	0	1	0	0	2	0	0	7	8	0	0	0	107
	수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소 계	0	14	8	5	11	15	0	0	39	11	0	76	139	0	0	0	1,685

(계속)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신고자유형	신고의무자																
		가정 위탁 지원 센터 종사자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 종사자	소계
강원	강원도	0	0	0	0	0	0	0	0	1	0	0	8	13	0	0	0	132
	강원동부	0	0	0	0	2	2	0	0	0	0	1	3	0	0	0	75	
	강원서부	0	0	0	1	1	2	0	1	3	0	2	18	0	0	0	111	
	강원남부	0	3	0	0	1	0	0	0	4	0	9	7	0	0	0	106	
	소 계	0	3	0	1	4	4	0	1	8	0	20	41	0	0	0	424	
충북	충청북도	0	3	2	1	3	1	0	0	5	3	0	1	0	0	0	235	
	충북북부	0	2	0	2	2	2	0	0	5	1	24	5	0	0	0	124	
	충북남부	0	3	0	2	0	5	0	0	0	0	7	9	0	0	0	64	
	소 계	0	8	2	5	5	8	0	0	10	4	31	15	0	0	0	423	
충남	충청남도	1	0	4	0	0	0	0	0	4	1	3	1	0	0	0	213	
	충청남도남부	1	4	0	0	0	0	1	0	4	0	2	18	0	0	0	130	
	충청남도서부	0	4	0	0	0	0	0	1	5	1	8	2	0	0	0	118	
	소 계	2	8	4	0	0	0	1	1	13	2	13	21	0	0	0	461	
전북	전라북도	1	3	0	1	3	0	0	0	2	1	10	60	0	0	0	254	
	전라북도서부	0	5	4	2	3	1	0	0	11	0	11	23	0	0	0	189	
	전라북도동부	0	0	0	4	1	0	0	0	0	2	15	30	0	0	0	141	
	소 계	1	8	4	7	7	1	0	0	13	3	36	113	0	0	0	584	
전남	전라남도	0	2	1	1	0	9	0	0	5	1	10	20	0	0	0	161	
	전남서부권	1	0	1	0	0	5	0	0	20	1	20	7	0	0	0	227	
	전남중부권	0	0	0	1	1	1	0	0	4	3	5	10	0	0	0	151	
	소 계	1	2	2	2	1	15	0	0	29	5	35	37	0	0	0	539	
경북	경북남부	0	1	0	1	0	2	0	0	5	0	4	10	0	0	0	108	
	경북북부	0	1	0	0	0	2	0	0	7	3	0	59	0	0	0	180	
	경북동부	0	1	3	1	0	21	0	0	3	0	27	21	0	0	0	185	
	경북서부	0	3	0	0	0	3	0	0	4	1	1	10	0	0	0	137	
	소 계	0	6	3	2	0	28	0	0	19	4	32	100	0	0	0	610	
경남	경상남도	0	2	0	0	0	0	0	0	6	0	4	20	0	0	0	239	
	경남서부	1	1	0	2	2	6	0	0	6	0	0	3	0	0	0	232	
	김해시	0	0	0	0	0	0	0	0	7	0	0	4	0	0	0	81	
	소 계	1	3	0	2	2	6	0	0	19	0	4	27	0	0	0	55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0	1	0	3	0	0	0	0	0	0	3	0	0	0	0	59	
	서귀포시	0	0	0	0	0	0	0	0	0	2	0	4	0	0	0	67	
	소 계	0	1	0	3	0	0	0	0	0	2	3	4	0	0	0	126	
계		11	98	44	35	51	122	2	2	223	75	1	296	695	0	0	8,288	
		(0.0)	(0.4)	(0.2)	(0.1)	(0.2)	(0.5)	(0.0)	(0.0)	(0.9)	(0.3)	(0.0)	(1.1)	(2.7)	(0.0)	(0.0)	(32.0)	

(계속)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신고자유형	비신고의무자												계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낮선 사람	익명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기타			소계
서울	서울특별시	61	101	8	35	105	25	0	7	5	26	0	13	386	563	(2.2)
	서울특별시동부	91	135	20	6	58	78	1	134	26	8	18	11	586	808	(3.1)
	서울강서	24	58	3	6	32	6	0	41	9	2	2	22	205	343	(1.3)
	서울은평	73	77	10	8	52	15	1	80	29	7	22	6	380	527	(2.0)
	서울영등포	28	284	6	13	28	9	0	55	12	0	9	16	460	540	(2.1)
	서울성북	40	50	3	7	32	13	0	85	5	6	1	12	254	329	(1.3)
	서울마포	29	80	7	10	24	19	0	36	4	2	2	11	224	330	(1.3)
	서울동남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소 계	346	785	57	85	331	165	2	438	90	51	54	91	2,495	3,440	(13.3)
부산	부산광역시	43	82	6	5	37	3	0	20	13	4	7	10	230	407	(1.6)
	부산동부	63	118	3	24	35	10	1	24	15	12	2	10	317	486	(1.9)
	부산서부	20	65	1	14	8	45	2	36	4	1	47	21	264	429	(1.7)
	부산남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소 계	126	265	10	43	80	58	3	80	32	17	56	41	811	1,322	(5.1)
대구	대구광역시	32	64	1	7	18	9	2	40	6	0	15	9	203	322	(1.2)
	대구남부	25	79	6	7	19	17	0	42	15	0	9	12	231	379	(1.5)
	대구북부	36	62	0	4	22	14	0	37	10	7	5	10	207	298	(1.2)
	소 계	93	205	7	18	59	40	2	119	31	7	29	31	641	999	(3.9)
인천	인천광역시	61	126	5	12	89	23	1	120	22	2	6	20	487	683	(2.6)
	인천북부	41	98	12	11	29	75	0	45	14	0	13	13	351	502	(1.9)
	인천남부	84	128	14	13	66	20	1	109	31	9	5	21	501	640	(2.5)
	소 계	186	352	31	36	184	118	2	274	67	11	24	54	1,339	1,825	(7.1)
광주	광주광역시	60	70	7	15	31	26	0	17	7	6	0	12	251	444	(1.7)
	빛고을**	3	12	1	2	2	2	0	1	1	0	5	1	30	38	(0.1)
	소 계	63	82	8	17	33	28	0	18	8	6	5	13	281	482	(1.9)
대전	대전광역시	91	131	12	14	46	8	0	20	14	13	4	12	365	528	(2.0)
울산	울산광역시	70	158	4	8	66	20	1	194	41	4	8	30	604	824	(3.2)
경기	경기도	109	138	15	19	62	58	2	22	19	2	5	11	462	671	(2.6)
	경기북부	46	105	13	28	32	46	2	125	13	7	37	29	483	649	(2.5)
	경기성남	75	96	6	19	60	20	0	68	14	8	22	15	403	634	(2.5)
	경기고양	44	101	3	23	32	13	2	57	8	3	1	8	295	420	(1.6)
	경기부천	34	81	3	14	33	12	0	102	25	3	14	12	333	443	(1.7)
	경기화성	71	99	12	13	30	15	0	58	13	3	2	15	331	490	(1.9)
	경기남양주	51	83	4	8	21	18	0	65	6	3	27	8	294	421	(1.6)
	안산시	111	184	15	17	112	41	1	184	23	12	17	33	750	941	(3.6)
	경기용인	96	121	16	10	38	102	0	49	3	7	9	15	466	601	(2.3)
	경기시흥	21	51	2	9	24	24	4	32	8	0	10	11	196	313	(1.2)
	경기평택	23	64	6	7	28	51	0	35	7	1	5	12	239	346	(1.3)
	수원	1	5	0	1	1	0	0	0	0	0	1	4	13	21	(0.1)
	소 계	682	1,128	95	168	473	400	11	797	139	49	150	173	4,265	5,950	(23.0)

(계속)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신고자유형	비신고의무자												계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 복지 관련 종사자	낮선 사람	익명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기타			소계
강원	강원도	24	35	4	10	20	2	1	29	2	6	5	40	178	310	(1.2)
	강원동부	6	36	2	0	12	2	0	62	2	0	48	9	179	254	(1.0)
	강원서부**	19	54	3	20	14	10	1	41	19	14	11	7	213	324	(1.3)
	강원남부	23	56	4	9	18	35	1	71	1	8	30	5	261	367	(1.4)
	소 계	72	181	13	39	64	49	3	203	24	28	94	61	831	1,255	(4.8)
충북	충청북도	44	90	5	18	38	33	3	198	12	4	9	17	471	706	(2.7)
	충북북부	22	53	4	12	33	43	0	83	2	9	4	10	275	399	(1.5)
	충북남부	7	7	2	0	7	4	0	37	1	1	14	1	81	145	(0.6)
	소 계	73	150	11	30	78	80	3	318	15	14	27	28	827	1,250	(4.8)
충남	충청남도	48	93	5	16	53	16	0	37	10	1	1	6	286	499	(1.9)
	충청남도남부	24	57	12	8	13	24	0	42	7	0	6	5	198	328	(1.3)
	충청남도서부	22	39	3	12	11	42	0	27	3	2	14	12	187	305	(1.2)
	소 계	94	189	20	36	77	82	0	106	20	3	21	23	671	1,132	(4.4)
전북	전라북도	18	111	5	31	45	44	0	162	36	3	23	10	488	742	(2.9)
	전라북도서부	31	97	9	8	44	112	0	182	14	0	13	14	524	713	(2.8)
	전라북도동부	10	25	2	7	14	5	5	89	5	2	13	2	179	320	(1.2)
	소 계	59	233	16	46	103	161	5	433	55	5	49	26	1,191	1,775	(6.9)
전남	전라남도	44	80	3	16	27	18	0	64	15	5	7	45	324	485	(1.9)
	전남서부권	33	92	13	14	44	22	2	123	6	6	10	13	378	605	(2.3)
	전남중부권	21	35	0	5	18	29	1	140	3	1	24	1	278	429	(1.7)
	소 계	98	207	16	35	89	69	3	327	24	12	41	59	980	1,519	(5.9)
경북	경북남부	26	62	5	7	24	22	0	65	6	3	0	6	226	334	(1.3)
	경북북부	22	55	3	8	10	3	0	69	27	2	10	7	216	396	(1.5)
	경북동부	62	61	5	5	35	28	2	97	6	1	22	13	337	522	(2.0)
	경북서부	21	76	11	10	29	24	0	93	9	7	3	5	288	425	(1.6)
	소 계	131	254	24	30	98	77	2	324	48	13	35	31	1,067	1,677	(6.5)
경남	경상남도	35	129	7	28	34	28	1	200	20	2	7	10	501	740	(2.9)
	경남서부	14	22	0	2	3	5	1	64	7	2	6	23	149	381	(1.5)
	김해시	11	47	2	7	13	15	1	123	5	1	5	3	233	314	(1.2)
	소 계	60	198	9	37	50	48	3	387	32	5	18	36	883	1,435	(5.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46	76	4	13	21	19	0	40	4	6	1	9	239	298	(1.2)
	서귀포시	32	25	4	2	6	4	0	10	5	0	3	9	100	167	(0.6)
	소 계	78	101	8	15	27	23	0	50	9	6	4	18	339	465	(1.8)
계	2,322 (9.0)	4,619 (17.8)	341 (1.3)	657 (2.5)	1,858 (7.2)	1,426 (5.5)	40 (0.2)	4,088 (15.8)	649 (2.5)	244 (0.9)	619 (2.4)	727 (2.8)	17,590 (68.0)	25,878	(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0월 21일에 개소,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4월 4일에 개소,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0월 26일에 개소,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2월 5일에 개소됨.

*** 2017년 1월 기준으로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2) 시군구별 신고자 유형

<표 2-8> 시군구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 교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서울	중구	5	0	0	0	0	0	4	0	0	0	0	1	0
	종로구	7	1	4	0	5	0	0	0	0	0	0	0	0
	서대문구	21	1	5	0	1	0	1	0	0	0	0	3	0
	마포구	23	1	0	0	0	0	0	0	0	0	1	8	0
	은평구	36	2	2	0	2	1	0	0	0	0	0	4	0
	동대문구	19	0	1	0	1	1	0	0	0	0	0	6	0
	중랑구	43	1	0	0	2	0	0	0	0	0	1	4	0
	도봉구	17	1	4	0	0	0	0	0	0	0	0	1	0
	성동구	19	0	1	0	0	0	0	0	0	0	0	0	0
	강동구	8	7	0	0	0	0	4	1	0	0	0	2	0
	강남구	14	2	3	0	0	2	0	0	0	0	0	27	0
	성북구	19	1	12	0	6	0	0	0	0	0	0	5	0
	서초구	7	0	1	0	0	0	0	0	0	0	0	1	0
	송파구	10	3	1	0	3	0	0	0	1	0	0	3	0
	노원구	29	0	1	0	0	0	0	1	0	0	1	6	0
	용산구	11	5	0	0	0	0	0	0	0	0	1	3	0
	강북구	24	3	2	0	0	0	0	0	0	0	0	5	0
	광진구	19	0	0	0	0	0	0	0	0	0	0	1	0
	영등포구	16	1	0	0	0	0	0	0	0	0	0	2	0
	관악구	20	3	2	0	0	0	0	0	0	0	2	7	0
	구로구	12	3	2	0	8	0	0	0	0	0	2	5	0
	금천구	10	3	1	0	1	0	0	0	0	0	0	5	0
	동작구	6	4	0	0	0	0	0	0	0	0	0	4	0
강서구	28	2	5	0	1	0	2	0	1	0	1	11	0	
양천구	37	4	4	0	4	0	0	0	0	0	0	13	0	
소 계		460	48	51	0	34	4	11	2	2	0	9	127	0
부산	중구	3	1	0	0	1	0	0	0	0	0	0	0	0
	동구	3	0	0	0	0	0	0	0	0	0	0	3	0
	서구	7	0	0	0	0	0	0	0	0	0	0	0	2
	사하구	41	2	1	0	0	0	0	0	0	0	2	0	0
	영도구	6	0	1	0	0	0	0	0	0	0	0	1	0
	동래구	18	1	5	0	0	0	0	0	0	0	0	0	0
	남구	20	2	0	0	2	2	0	0	0	0	0	2	0
	금정구	10	0	7	0	0	0	0	0	0	0	2	2	2
	연제구	9	1	0	0	0	1	0	0	0	0	0	3	0
	해운대구	34	1	2	0	0	0	0	1	0	0	0	8	0
	수영구	15	0	0	0	0	0	0	0	0	0	1	2	0
	부산진구	11	3	2	0	3	1	0	0	0	0	2	1	0
	북구	18	1	1	0	1	2	0	0	0	0	3	5	0
	사상구	28	2	1	0	1	0	0	0	1	0	2	7	0
	강서구	5	0	2	0	0	1	0	0	0	0	0	4	0
	기장군	13	0	2	0	0	0	0	0	2	0	0	3	1
소 계		241	14	24	0	8	7	0	1	3	0	12	41	5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소계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 재활센터 종사자	정신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센터	육아 종합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기관 종사자	
서울	중구	0	0	0	0	0	0	0	1	0	0	0	0	4	0	0	0	15
	종로구	0	0	0	2	0	0	0	1	0	0	0	0	2	0	0	0	22
	서대문구	0	0	0	5	0	0	0	2	2	0	0	0	3	0	0	0	44
	마포구	0	0	0	2	0	0	0	1	0	0	0	1	2	0	0	0	39
	은평구	0	1	0	16	0	0	0	0	1	0	0	0	14	0	0	0	79
	동대문구	0	0	0	1	1	0	0	0	0	0	0	0	7	0	0	0	37
	중랑구	0	0	0	7	1	0	0	1	0	0	0	0	6	0	0	0	66
	도봉구	0	0	0	3	0	0	0	0	1	0	0	0	1	0	0	0	28
	성동구	0	0	0	1	0	0	0	1	0	0	0	0	6	0	0	0	28
	강동구	0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24
	강남구	2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70
	성북구	0	1	0	2	0	0	0	0	0	0	0	0	1	0	0	0	47
	서초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송파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노원구	0	0	0	1	0	0	0	0	0	0	0	0	6	0	0	0	45
	용산구	0	0	0	1	0	0	0	1	0	1	0	0	0	0	0	0	23
	강북구	0	0	0	3	1	0	0	5	2	0	0	0	1	0	0	0	46
	광진구	0	0	0	1	0	0	0	0	2	0	0	1	7	0	0	0	31
	영등포구	0	0	0	2	0	0	0	1	0	0	0	0	0	0	0	0	22
	관악구	0	0	0	1	0	1	0	2	1	0	0	0	0	0	0	0	39
	구로구	0	0	0	1	0	0	0	0	0	0	0	0	2	0	0	0	35
	금천구	0	0	0	0	0	0	0	1	0	0	0	0	2	0	0	0	23
	동작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강서구	1	4	0	2	0	0	0	2	0	1	0	7	1	0	0	0	69
양천구	3	0	0	2	0	0	0	0	0	0	0	0	2	0	0	0	69	
소 계	24	7	0	54	3	1	0	19	9	3	0	10	67	0	0	0	945	
부산	중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동구	0	0	0	1	0	0	0	0	3	0	0	0	0	0	0	0	10
	서구	0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11
	사하구	0	0	0	2	3	0	0	4	2	0	0	1	0	0	0	0	58
	영도구	0	0	0	3	0	0	0	1	2	0	0	0	0	0	0	0	14
	동래구	3	0	0	1	0	0	0	1	2	0	0	1	0	0	0	0	32
	남구	1	0	0	3	0	0	0	3	3	0	0	1	1	0	0	0	40
	금정구	0	0	0	0	0	0	0	2	1	0	0	0	1	0	0	0	27
	연제구	0	0	0	1	0	0	0	0	0	2	0	0	0	0	0	0	17
	해운대구	6	1	0	3	2	0	0	0	4	0	0	1	0	0	0	0	63
	수영구	1	0	0	0	0	0	0	1	1	0	0	4	7	0	0	0	32
	부산진구	0	0	0	6	0	0	0	7	0	0	0	0	2	0	0	0	38
	북구	0	0	0	11	0	0	0	3	3	0	0	0	1	0	0	0	49
	사상구	0	0	1	7	1	0	0	2	5	0	0	1	6	0	0	0	65
	강서구	0	0	0	2	2	0	0	0	0	0	0	0	1	0	0	0	17
	기장군	0	2	0	5	0	0	0	1	1	0	0	1	1	0	0	0	32
소 계	11	3	1	45	8	0	0	25	28	2	0	10	21	0	0	0	510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 교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자원센터 종사자
대구	중구	13	0	0	0	0	1	0	0	0	0	0	0	0
	동구	23	3	2	0	0	0	0	0	0	1	1	4	0
	북구	24	2	2	0	0	0	0	0	1	0	2	5	0
	서구	22	0	1	0	2	0	0	0	1	0	1	0	0
	달서구	68	0	0	0	6	1	0	0	0	1	0	13	0
	남구	14	0	1	0	0	0	1	0	0	0	0	0	0
	수성구	29	4	4	0	0	1	1	0	0	2	0	7	0
	달성군	15	0	2	0	1	0	0	0	0	0	0	2	0
소 계	208	9	12	0	9	3	2	0	2	4	4	31	0	
인천	중구	11	0	0	0	3	0	0	0	0	0	0	3	0
	동구	1	0	0	0	0	0	0	0	0	0	0	0	0
	남구	27	1	2	0	5	0	0	2	0	0	3	5	0
	부평구	61	4	0	0	2	2	0	0	0	0	0	11	0
	서구	65	1	1	0	2	0	1	0	0	0	1	4	0
	남동구	58	3	8	0	4	0	0	1	0	0	3	10	0
	연수구	11	0	0	0	0	1	0	1	0	0	0	4	0
	강화군	6	0	0	0	0	0	0	0	0	0	0	0	0
계양군	29	2	4	0	7	1	0	0	0	0	1	6	0	
소 계	269	11	15	0	23	4	1	4	0	0	8	43	0	
광주	북구	29	2	6	0	3	3	0	0	1	0	1	13	0
	동구	9	0	0	0	0	0	0	1	0	0	0	1	1
	서구	15	1	6	0	0	0	0	0	0	0	0	1	0
	남구	19	0	0	0	0	0	0	0	0	0	0	2	0
	광산구	24	1	1	0	0	3	0	0	1	0	0	6	0
소 계	96	4	13	0	3	6	0	1	2	0	1	23	1	
대전	동구	16	0	0	0	1	1	0	0	0	0	1	0	0
	중구	24	0	1	0	2	1	0	0	1	0	0	1	0
	서구	25	2	1	0	1	1	0	0	0	0	2	4	0
	유성구	13	3	2	1	1	2	0	0	0	0	3	0	0
	대덕구	14	2	2	0	2	0	0	0	0	0	1	7	0
소 계	92	7	6	1	7	5	0	0	1	0	7	12	0	
울산	남구	52	5	3	1	4	0	0	1	0	0	1	0	0
	중구	16	2	2	0	0	1	0	0	0	0	1	3	0
	동구	17	4	1	3	2	0	0	0	0	0	1	0	0
	북구	18	1	2	0	0	0	0	0	0	0	0	0	0
	울주군	20	2	6	0	0	3	0	0	0	0	0	1	0
소 계	123	14	14	4	6	4	0	1	0	0	3	4	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3	3	0	0	1	0	0	0	0	0	0	0	0
	고양시 일산서구	9	0	0	0	0	0	1	0	0	0	0	1	0
	고양시 덕양구	25	2	0	0	2	0	0	0	0	0	0	4	0
	파주시	17	1	1	0	0	0	0	0	0	0	0	0	0
	김포시	12	3	0	0	1	2	0	0	0	0	1	3	0
	부천시 원미구	20	2	4	0	1	0	0	0	0	0	0	4	0
	부천시 오정구	7	1	1	0	0	0	0	0	0	0	0	0	0
	부천시 소사구	6	0	2	0	0	0	0	2	0	0	0	1	0
	광명시	12	1	11	1	1	0	0	0	0	0	0	5	0
	안산시 단원구	43	3	3	0	4	0	0	0	1	0	1	5	0
	안산시 상록구	57	1	0	0	5	0	1	0	0	0	0	4	0
	과천시	2	0	3	0	0	0	0	0	0	0	0	0	0
	시흥시	33	2	3	0	5	2	0	0	0	0	3	12	0
안양시 만안구	7	0	0	0	0	0	0	0	0	0	0	1	0	
안양시 동안구	20	1	1	0	0	0	0	0	0	0	3	0	0	

(계속)

(단위: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 종사자	소계
대구	중구	0	0	0	0	0	0	0	1	0	0	5	0	0	0	0	20	
	동구	2	0	0	4	1	0	0	0	0	0	3	3	0	0	0	47	
	북구	0	0	0	0	0	0	0	1	0	0	0	3	0	0	0	40	
	서구	0	0	0	2	1	0	0	1	0	1	0	1	2	0	0	35	
	달서구	0	0	0	6	0	0	0	2	0	0	2	20	0	0	0	119	
	남구	0	0	0	1	0	0	0	0	0	0	0	4	0	0	0	21	
	수성구	0	0	0	0	2	0	0	0	0	1	0	3	0	0	0	54	
	달성군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소 계	3	1	0	13	4	0	0	4	1	2	0	11	35	0	0	0	358	
인천	중구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8	
	동구	0	0	0	2	0	0	0	1	0	0	1	0	0	0	0	5	
	남구	1	2	0	0	1	0	0	2	0	0	0	20	0	0	0	71	
	부평구	0	0	0	2	1	0	0	1	1	0	5	12	0	0	0	102	
	서구	0	1	0	4	0	0	0	1	1	0	0	0	0	0	0	82	
	남동구	1	0	0	16	0	0	0	4	0	3	0	6	0	0	0	117	
	연수구	0	0	3	0	0	0	0	1	0	0	0	0	0	0	0	21	
	계양구	0	6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강화군	0	0	0	2	0	0	0	1	0	0	0	4	0	0	0	57		
소 계	2	9	3	26	2	0	0	11	2	3	0	6	43	0	0	0	485	
광주	북구	0	0	0	2	7	0	0	0	2	0	0	3	0	0	0	72	
	동구	0	0	0	1	5	0	0	0	4	0	0	0	0	0	0	22	
	서구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24	
	남구	4	0	0	0	4	0	0	0	1	0	0	2	0	0	0	32	
	광산구	0	0	1	0	9	0	0	0	1	3	0	0	1	0	0	51	
	소 계	4	0	1	3	25	0	0	0	1	10	0	7	0	0	0	201	
대전	동구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20	
	중구	0	1	0	0	0	0	0	1	1	0	0	0	0	0	0	33	
	서구	1	0	0	2	0	0	0	3	0	0	1	3	0	0	0	46	
	유성구	0	0	0	2	1	0	0	0	0	0	5	0	0	0	0	33	
	대덕구	0	0	0	0	0	0	0	1	0	1	0	0	0	0	0	30	
	소 계	1	1	0	4	1	0	0	5	2	1	0	6	3	0	0	162	
울산	남구	0	0	0	2	0	0	0	1	0	0	1	8	0	0	0	79	
	중구	0	0	0	0	0	0	0	2	0	0	1	5	0	0	0	33	
	동구	0	0	3	0	0	0	0	2	1	0	0	0	0	0	0	34	
	북구	0	0	0	2	0	0	0	3	0	0	0	3	0	0	0	29	
	울주군	0	0	0	2	2	0	0	1	0	0	0	2	6	0	0	45	
소 계	0	0	3	6	2	0	0	9	1	0	1	3	22	0	0	0	22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	22	
	고양시 일산서구	0	0	0	8	0	0	0	0	0	1	0	0	0	0	0	20	
	고양시 덕양구	1	0	0	7	0	0	0	0	0	4	0	6	0	0	0	51	
	파주시	0	0	0	10	0	0	0	0	0	0	2	1	0	0	0	32	
	김포시	0	0	0	2	0	0	0	0	0	0	0	4	0	0	0	28	
	부천시 원미구	0	0	2	3	0	0	0	1	0	0	0	2	0	0	0	39	
	부천시 오정구	0	0	0	5	0	0	0	1	0	0	0	1	0	0	0	16	
	부천시 소사구	0	0	0	4	2	0	0	2	0	0	0	8	0	0	0	27	
	광명시	0	1	0	7	0	0	0	0	0	0	0	0	0	0	0	39	
	안산시 단원구	0	1	0	1	2	0	0	1	2	2	0	4	25	0	0	0	98
	안산시 상록구	0	0	0	3	3	0	0	5	1	0	0	8	5	0	0	0	93
	과천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시흥시	1	0	0	3	0	0	0	0	1	0	0	12	2	0	0	0	79
	안양시 만안구	0	0	1	1	0	0	0	1	0	0	0	2	1	0	0	0	14
	안양시 동안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5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경기	군포시	8	0	1	0	0	0	0	0	0	0	2	2	0	
	의왕시	11	1	0	0	0	1	0	0	0	0	0	1	0	
	수원시 장안구	23	0	1	0	0	0	0	0	0	0	1	3	0	
	수원시 권선구	16	1	3	0	0	1	0	0	0	0	7	5	0	
	수원시 팔달구	18	3	0	0	3	0	0	0	1	0	3	2	0	
	수원시 영통구	16	1	0	0	6	0	0	3	0	0	1	1	0	
	화성시	59	2	1	0	6	0	0	0	0	0	5	9	0	
	용인시 기흥구	32	3	2	0	1	0	0	1	0	0	0	7	0	
	오산시	28	3	1	0	4	2	0	0	0	0	5	2	0	
	용인시 수지구	14	1	0	0	0	0	0	0	0	0	0	2	0	
	용인시 처인구	15	0	0	2	3	0	0	1	0	0	0	3	0	
	평택시	50	5	6	0	6	0	0	2	0	0	1	3	0	
	안성시	10	0	0	0	4	0	0	0	0	0	0	2	0	
	성남시 수정구	8	2	4	0	2	1	0	0	0	0	3	3	0	
	성남시 중원구	25	0	3	0	0	24	0	0	0	0	0	1	0	
	성남시 분당구	17	2	0	0	1	1	0	0	0	0	0	6	0	
	광주시	45	1	0	0	0	0	0	0	0	0	0	4	0	
	하남시	8	0	0	1	0	0	0	0	0	0	0	2	0	
	이천시	12	0	0	0	1	0	0	0	0	0	0	2	0	
	여주시	6	0	2	0	1	0	0	0	0	0	0	0	0	
	구리시	4	0	9	0	2	0	0	0	0	0	2	7	0	
	남양주시	41	5	3	0	2	2	0	0	0	0	1	8	0	
	양평군	10	1	0	0	0	0	0	0	0	0	0	2	0	
	가평군	1	1	0	0	0	0	0	0	0	0	0	1	0	
	의정부시	38	0	4	0	0	0	0	1	0	0	2	6	0	
	양주시	18	1	3	0	4	0	0	0	0	0	0	4	0	
	동두천시	9	1	1	0	2	1	0	0	0	0	0	0	0	
	연천군	3	0	1	0	0	1	0	0	0	0	0	3	0	
	포천시	17	2	1	2	0	0	0	0	0	0	0	3	0	
	소 계		845	56	75	6	68	38	2	10	2	0	41	134	0
강원	춘천시	48	0	7	0	3	1	1	0	0	0	5	20	0	
	화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릉시	19	0	4	2	2	1	0	0	0	0	1	2	0	
	양양군	7	0	3	0	0	0	0	0	0	0	0	0	0	
	속초시	6	0	2	2	3	0	0	0	0	0	0	3	0	
	고성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원주시	32	2	13	1	4	1	0	0	0	0	0	6	0	
	횡성군	4	0	1	0	1	0	0	0	0	0	0	1	0	0
	영월군	2	1	0	0	0	0	0	0	0	0	0	2	0	
	평창군	10	0	0	0	0	0	0	0	0	0	0	0	0	
	정선군	12	1	0	0	0	1	0	0	0	0	0	0	0	
	태백시	17	0	1	0	0	2	0	0	0	0	0	3	0	
	동해시	14	0	2	0	3	0	0	2	0	0	0	4	0	
	삼척시	12	1	0	0	0	0	0	0	0	0	0	4	0	
	홍천군	5	0	0	0	0	1	0	0	0	0	0	1	0	
	인제군	4	0	0	0	0	0	0	0	0	0	0	0	0	
	양구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철원군	4	2	0	0	0	0	0	0	0	0	5	1	0	
	소 계		199	7	33	5	16	7	1	2	0	0	12	46	0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소계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성폭력 통합 지원 센터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 종사자	
경기	군포시	0	1	0	0	0	0	0	1	0	0	0	5	1	0	0	0	21
	의왕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수원시 장안구	2	0	0	0	0	0	0	1	0	0	0	0	2	0	0	0	33
	수원시 권선구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35
	수원시 팔달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
	수원시 영통구	0	0	0	6	0	0	0	0	1	0	0	0	5	0	0	0	40
	화성시	0	0	2	2	2	0	0	0	0	0	0	4	8	0	0	0	100
	용인시 기흥구	0	0	0	3	0	0	0	0	0	1	0	0	0	0	0	0	50
	오산시	2	0	0	1	0	0	0	0	0	0	0	10	1	0	0	0	59
	용인시 수지구	0	0	0	2	1	0	0	1	0	0	0	0	0	0	0	0	21
	용인시 처인구	0	0	0	0	0	0	0	3	0	0	0	2	1	0	0	0	30
	평택시	0	0	0	0	1	0	0	1	0	0	0	4	1	0	0	0	80
	안성시	0	0	0	0	0	0	0	1	0	0	0	3	7	0	0	0	27
	성남시 수정구	0	2	0	4	0	0	0	1	1	0	0	3	5	0	0	0	39
	성남시 중원구	0	0	0	3	0	0	0	4	1	0	0	0	6	0	0	0	67
	성남시 분당구	2	0	0	2	0	0	0	2	0	0	0	0	4	0	0	0	37
	광주시	4	0	0	0	1	0	0	2	0	0	0	0	4	0	0	0	61
	하남시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13
	이천시	0	0	0	0	0	0	0	0	0	3	0	0	2	0	0	0	20
	여주시	1	0	0	0	0	0	0	1	0	0	0	3	0	0	0	0	14
	구리시	0	0	0	1	1	0	0	0	0	0	0	0	5	0	0	0	31
	남양주시	0	0	0	0	2	0	0	6	2	0	0	0	19	0	0	0	91
	양평군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4
	가평군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5
	의정부시	0	3	0	1	0	0	0	2	1	0	0	4	13	0	0	0	75
	양주시	0	0	0	0	0	0	0	0	1	0	0	2	3	0	0	0	36
	동두천시	0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16
	연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포천시	1	0	0	2	0	0	0	1	0	0	0	2	0	0	0	0	31	
소 계	14	8	5	91	15	0	0	39	11	11	0	76	139	0	0	0	1,686	
강원	춘천시	0	0	0	5	0	0	0	1	0	0	0	8	10	0	0	0	109
	화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릉시	0	0	0	3	2	0	0	0	0	2	0	1	1	0	0	0	40
	양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속초시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18
	고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원주시	0	0	0	2	0	0	0	3	0	0	0	1	17	0	0	0	82
	황성군	0	0	0	0	2	0	0	0	0	1	0	0	1	0	0	0	11
	영월군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7
	평창군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1
	정선군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5
	태백시	2	0	0	0	0	0	0	0	0	0	0	2	5	0	0	0	32
	동해시	1	0	0	1	0	0	0	4	0	1	0	1	1	0	0	0	34
	삼척시	0	0	0	1	0	0	0	0	0	0	0	6	1	0	0	0	25
	홍천군	0	0	0	1	0	0	0	0	0	0	0	0	3	0	0	0	11
	인제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양구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철원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소 계	3	0	1	14	4	0	1	8	0	4	0	20	41	0	0	0	424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9	1	35	0	0	0	0	0	0	0	1	1	0
	청주시 흥덕구	32	2	16	1	8	1	0	0	0	0	0	11	0
	청주시 서원구	12	0	9	0	1	0	0	0	0	0	3	3	0
	청주시 청원구	19	1	3	0	1	1	0	0	0	0	0	3	0
	진천군	5	0	0	0	0	1	0	0	0	0	2	2	0
	괴산군	3	0	0	0	0	0	0	0	0	0	0	1	0
	증평군	2	0	0	0	1	0	0	0	0	0	0	3	0
	음성군	5	0	5	0	1	0	0	0	0	0	0	6	0
	영동군	7	0	0	0	2	1	0	0	0	0	1	0	0
	옥천군	12	0	2	0	0	1	0	0	0	0	0	0	0
	보은군	8	1	0	0	1	0	0	0	0	0	1	0	0
	충주시	40	0	3	0	0	1	0	0	0	0	2	2	0
	제천시	12	1	0	0	5	1	2	0	0	0	5	4	0
	단양군	2	0	0	0	0	0	0	0	0	0	0	0	0
소 계	168	6	73	1	20	7	2	0	0	0	15	36	0	
충남	금산군	6	0	0	2	1	0	0	0	0	0	0	1	0
	공주시	16	0	0	0	2	1	0	0	0	0	0	2	0
	논산시	17	0	7	0	2	0	0	0	0	0	1	2	0
	계룡시	1	0	0	0	3	0	0	0	0	0	0	0	0
	부여군	15	1	0	0	0	6	0	0	0	0	0	4	0
	서천군	4	0	0	0	0	0	0	0	0	2	2	2	1
	천안시 동남구	16	1	6	0	0	1	0	0	0	0	7	2	1
	천안시 서북구	32	0	4	0	3	0	0	1	0	0	13	3	0
	아산시	19	3	4	0	1	5	0	0	0	0	5	11	0
	예산군	10	0	0	0	0	0	1	0	0	0	2	0	0
	당진시	14	0	1	0	1	0	0	0	0	0	1	3	0
	청양군	4	0	0	0	0	0	0	0	0	0	1	1	0
	홍성군	6	0	0	0	3	0	0	0	0	0	0	1	0
	보령시	15	0	0	0	3	0	0	0	0	0	2	3	0
	서산시	12	1	3	0	0	0	0	0	0	0	3	9	0
	태안군	3	0	0	0	1	0	0	0	0	0	0	1	0
	세종특별자치시	22	1	1	0	2	1	0	1	0	0	2	11	0
소 계	212	7	26	2	22	14	1	2	0	2	39	56	2	
전북	전주시 완산구	41	1	1	0	2	0	0	0	0	0	16	7	0
	전주시 덕진구	37	2	3	0	1	0	0	2	0	0	10	7	1
	완주군	16	0	0	0	2	0	0	0	0	0	5	2	0
	임실군	1	0	0	0	0	0	0	0	0	0	0	2	0
	진안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무주군	6	0	0	0	0	0	0	0	0	0	0	0	0
	익산시	17	0	6	0	2	2	0	0	0	0	3	9	0
	군산시	38	1	4	0	3	0	0	0	0	0	6	11	0
	김제시	12	0	0	0	0	0	0	0	0	0	2	2	0
	부안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정읍시	8	0	0	1	0	0	0	0	0	0	3	4	0
	고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남원시	36	0	9	0	2	0	0	0	0	0	0	19	0
	순창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장수군	5	0	2	0	0	0	0	0	0	0	0	2	0
소 계	224	4	25	1	12	2	0	2	0	0	45	65	1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 종사자	소계
충북	청주시 상당구	0	0	0	1	0	0	0	1	1	0	0	0	0	0	0	0	50
	청주시 흥덕구	1	2	1	0	0	0	0	2	0	3	0	0	0	0	0	0	80
	청주시 서원구	0	0	0	0	2	1	0	0	2	0	0	0	0	0	0	0	33
	청주시 청원구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30
	진천군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1
	괴산군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5
	증평군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음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8
	영동군	2	0	0	0	0	0	0	0	0	0	0	6	4	0	0	0	23
	옥천군	1	0	0	1	5	0	0	0	0	0	1	5	0	0	0	0	28
	보은군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충주시	0	0	2	0	1	0	0	1	0	2	0	12	1	0	0	0	67
	제천시	2	0	0	1	1	0	0	3	1	0	0	5	4	0	0	0	47
단양군	0	0	0	0	0	0	0	1	0	0	0	7	0	0	0	0	10	
소 계	8	2	5	7	8	0	0	10	4	5	0	31	15	0	0	0	423	
충남	금산군	4	0	0	0	0	0	0	1	0	0	0	1	0	0	0	16	
	공주시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23	
	논산시	0	0	0	0	0	1	0	2	0	0	1	5	0	0	0	38	
	계룡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부여군	0	0	0	0	0	0	0	1	0	0	0	11	0	0	0	38	
	서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천안시 동남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4	
	천안시 서북구	0	4	0	0	0	0	0	2	0	0	0	3	0	0	0	0	65
	아산시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50
	예산군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15
	당진시	0	0	0	0	0	0	0	2	0	0	0	1	0	0	0	0	23
	청양군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7
	홍성군	0	0	0	5	0	0	0	1	0	0	0	2	0	0	0	0	18
	보령시	2	0	0	4	0	0	0	1	0	0	0	4	2	0	0	0	36
	서산시	0	0	0	3	0	0	1	1	0	0	0	2	0	0	0	0	35
	태안군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세종특별자치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1
소 계	8	4	0	13	0	1	1	13	2	0	0	13	21	0	0	0	4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2	0	0	0	0	0	0	1	1	1	0	10	20	0	0	0	103
	전주시 덕진구	0	0	0	1	0	0	0	0	0	0	0	15	0	0	0	0	79
	완주군	1	0	0	0	0	0	0	1	0	0	0	8	0	0	0	0	35
	임실군	0	0	0	1	0	0	0	0	0	0	0	5	0	0	0	0	9
	진안군	0	0	1	0	0	0	0	0	0	0	0	3	0	0	0	0	5
	무주군	0	0	0	0	0	0	0	0	0	0	1	4	0	0	0	0	11
	익산시	1	0	2	0	1	0	0	4	0	2	0	6	8	0	0	0	63
	군산시	4	4	0	7	0	0	0	6	0	0	0	4	13	0	0	0	101
	김제시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7
	부안군	0	0	0	0	0	0	0	1	0	1	0	1	0	0	0	0	6
	정읍시	0	0	0	0	0	0	0	0	0	2	0	0	14	0	0	0	32
	고창군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2
	남원시	0	0	4	1	0	0	0	0	2	1	0	7	22	0	0	0	103
	순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장수군	0	0	0	0	0	0	0	0	0	0	0	2	4	0	0	0	15
	소 계	8	4	7	11	1	0	0	13	3	7	0	36	113	0	0	0	584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 교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전남	영광군	20	0	0	0	0	0	0	0	0	0	2	0	0
	장성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곡성군	4	0	0	0	0	0	0	0	0	0	0	1	0
	담양군	5	0	0	0	0	0	0	0	0	0	0	0	0
	화순군	9	0	1	0	0	0	0	0	0	1	0	9	0
	나주시	31	0	9	0	0	0	0	0	0	0	2	3	0
	함평군	3	0	0	0	0	0	0	0	0	0	0	2	0
	영암군	5	0	0	0	0	0	0	0	0	0	4	0	1
	강진군	5	0	2	0	0	0	0	0	0	0	0	4	0
	장흥군	8	0	0	0	0	1	0	0	0	0	3	2	0
	목포시	56	0	17	0	4	0	1	0	0	1	5	19	0
무안군	5	0	0	0	1	3	0	0	0	0	1	11	0	
전남	신안군	5	0	0	0	0	0	0	0	0	3	0	0	0
	해남군	6	0	1	0	4	0	0	0	0	1	1	0	0
	완도군	6	0	0	0	0	0	0	0	0	0	0	2	0
	진도군	6	0	0	0	0	0	0	0	0	0	0	0	0
	순천시	21	1	1	0	0	0	0	1	0	0	0	3	0
	구례군	4	0	0	0	0	0	0	0	0	0	2	1	0
	광양시	7	1	0	4	0	0	0	0	0	0	0	9	0
	보성군	5	0	2	0	0	0	0	0	0	0	0	1	0
	고흥군	1	0	0	0	0	0	0	0	0	0	1	0	0
	여수시	20	1	1	0	5	1	0	0	0	0	2	7	0
	소 계	235	3	34	4	15	4	1	1	0	2	26	75	1
경북	경산시	18	0	0	0	1	0	2	0	0	0	0	6	0
	청도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군위군	0	0	2	0	0	0	0	0	0	0	0	1	0
	고령군	11	0	0	0	0	0	0	0	0	0	0	0	0
	칠곡군	8	1	0	0	1	1	0	1	0	3	0	1	0
	성주군	3	0	0	0	0	0	0	0	0	0	0	1	0
	구미시	49	2	5	0	0	0	0	0	0	0	0	2	0
	김천시	12	0	0	0	0	0	0	0	0	0	0	1	0
	상주시	9	0	0	0	0	0	0	0	0	0	1	0	0
	문경시	2	0	6	0	0	0	0	0	0	0	0	0	0
	영주시	14	0	0	0	2	1	0	0	0	0	3	6	0
	봉화군	0	0	0	0	0	0	0	0	0	0	1	0	0
	예천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안동시	27	0	2	0	6	0	0	0	0	0	2	33	0
	청송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영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영덕군	6	0	0	0	0	0	0	0	0	0	0	0	0
	울진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의성군	3	0	3	0	0	0	0	0	0	0	0	0	0
	영천시	7	2	0	0	0	0	0	0	0	0	0	0	0
	경주시	26	0	1	0	0	0	0	0	0	0	0	10	0
포항시 남구	33	2	3	2	3	0	0	0	0	0	0	2	0	
포항시 북구	25	1	16	0	3	1	0	8	0	0	1	1	0	
소 계	257	8	38	2	16	3	2	9	0	3	8	64	0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소계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 종사자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입양 기관 종사자
전남	영광군	0	0	0	0	0	0	0	4	0	0	0	0	1	0	0	0	27
	장성군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5
	곡성군	0	0	0	1	4	0	0	4	0	0	0	1	0	0	0	0	15
	담양군	0	0	0	0	0	0	0	0	2	0	0	2	0	0	0	0	9
	화순군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나주시	0	0	0	0	0	0	0	0	1	0	0	2	2	0	0	0	50
	함평군	0	0	0	0	0	0	0	0	0	0	0	1	2	0	0	0	8
	영암군	0	0	0	0	2	0	0	1	0	0	0	0	0	0	0	0	13
	강진군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2
	장흥군	0	0	0	0	0	0	0	0	0	1	0	0	4	0	0	0	19
	목포시	0	1	0	0	1	0	0	18	0	0	0	8	3	0	0	0	134
	무안군	0	0	0	3	1	0	0	0	0	0	0	0	1	0	0	0	26
	신안군	0	0	0	1	0	0	0	0	0	0	0	1	0	0	0	0	10
	해남군	0	0	0	0	1	0	0	1	0	0	0	11	3	0	0	0	29
	완도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진도군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7
	순천시	0	1	0	0	0	0	0	0	0	0	0	0	9	0	0	0	37
	구례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0	0	0	11
	광양시	0	0	0	0	1	0	0	0	0	0	0	0	5	0	0	0	27
	보성군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10
고흥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여수시	2	0	0	5	4	0	0	0	1	0	0	9	2	0	0	0	60	
소 계	2	2	2	11	15	0	0	29	5	1	0	35	37	0	0	0	540	
경북	경산시	1	0	0	0	2	0	0	4	0	0	0	4	10	0	0	0	48
	청도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군위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고령군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2
	칠곡군	0	0	0	0	0	0	0	0	1	0	0	1	2	0	0	0	20
	성주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구미시	2	0	0	0	3	0	0	4	0	0	0	5	0	0	0	0	72
	김천시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15
	상주시	0	0	0	2	0	0	0	0	0	0	0	0	1	0	0	0	13
	문경시	0	0	0	0	0	0	0	0	0	0	0	0	4	0	0	0	12
	영주시	0	0	0	0	0	0	0	2	0	0	0	0	13	0	0	0	41
	봉화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예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5
	안동시	1	0	0	0	2	0	0	5	3	0	0	0	40	0	0	0	121
	청송군	0	0	0	0	0	0	0	0	0	0	0	6	0	0	0	0	7
	영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영덕군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8
	울진군	0	0	0	0	1	0	0	0	0	0	0	0	2	0	0	0	3
	의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영천시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12
	경주시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39
	포항시 남구	1	0	1	0	6	0	0	2	0	0	0	7	8	0	0	0	70
	포항시 북구	0	3	0	0	14	0	0	1	0	0	0	13	10	0	0	0	97
	소 계	6	3	2	6	28	0	0	19	4	0	0	32	100	0	0	0	610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초·중·고 교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경남	김해시	35	2	11	0	10	0	1	0	0	0	0	9	0
	양산시	18	7	7	0	0	0	0	0	0	0	0	3	0
	밀양시	3	0	1	0	2	0	0	0	0	0	0	1	0
	창원시 마산회원구	8	0	0	0	0	0	0	0	0	0	0	4	0
	창원시 마산합포구	3	0	0	0	0	0	0	0	0	0	1	0	0
	창녕군	5	0	4	0	1	0	0	0	0	0	3	0	0
	의령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함안군	2	1	0	0	0	0	0	0	0	0	0	0	0
	고성군	2	0	0	0	1	0	0	0	0	0	0	2	0
	창원시 의창구	16	0	3	0	2	1	0	0	0	0	0	3	0
	창원시 성산구	6	1	0	1	0	1	0	0	0	0	0	0	0
	창원시 진해구	14	0	0	0	0	1	0	0	0	0	0	9	0
	통영시	5	0	1	0	0	0	0	0	0	0	8	2	0
	거제시	31	0	4	0	2	1	0	2	0	0	1	9	0
	진주시	44	4	7	0	0	0	0	1	0	0	27	1	1
	사천시	10	0	14	0	0	0	0	0	0	0	14	2	0
	산청군	4	0	0	0	0	0	0	0	0	0	4	3	0
	하동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남해군	69	0	0	0	0	0	0	0	0	0	4	0	0
	거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함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천군	0	0	0	0	0	0	0	0	0	0	0	2	0	
소 계	275	15	52	1	18	4	1	3	0	0	62	50	1	
제주	제주시	34	2	3	0	1	1	0	0	0	0	6	5	0
	서귀포시	40	1	4	0	8	1	0	1	0	0	3	3	0
	소 계	74	3	7	0	9	2	0	1	0	0	9	8	0
총계	3,978	216	498	27	286	114	24	39	12	11	301	815	11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신고의무자															소계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청소년 재활 센터 종사자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인력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종사자	
경남	김해시	0	0	0	2	0	0	0	7	0	0	0	4	0	0	0	81
	양산시	0	0	0	0	0	0	0	1	0	0	0	2	0	0	0	38
	밀양시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9
	창원시 마산회원구	0	0	0	1	0	0	0	0	0	0	0	5	0	0	0	18
	창원시 마산합포구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5
	창녕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의령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함안군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4
	고성군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6
	창원시 의창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5
	창원시 성산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창원시 진해구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26
	통영시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거제시	1	0	0	0	0	0	0	2	0	0	3	11	0	0	0	67
	진주시	1	0	1	3	0	0	0	1	0	2	0	3	0	0	0	96
	사천시	0	0	1	0	0	0	0	5	0	0	0	0	0	0	0	46
	산청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하동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남해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3
	거창군	0	0	0	0	6	0	0	0	0	0	0	0	0	0	0	6
함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소 계	3	0	2	7	6	0	0	19	0	2	0	4	27	0	0	552	
제주	제주시	1	0	3	1	0	0	0	0	0	0	3	0	0	0	60	
	서귀포시	0	0	0	0	0	0	0	2	0	0	4	0	0	0	67	
	소 계	1	0	3	1	0	0	0	2	0	0	3	4	0	0	127	
총계	98	44	35	312	122	2	2	223	75	51	1	296	695	0	0	8,288	

<표 2-9> 시군구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계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낮선 사람	익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기타	
서울	중구	5	6	2	1	8	11	0	7	1	0	0	0	41
	종로구	3	6	0	0	8	1	0	8	0	0	3	2	31
	서대문구	11	27	2	6	6	5	0	8	1	0	0	4	70
	마포구	8	36	4	3	10	8	0	15	3	0	0	6	93
	은평구	60	52	10	3	31	10	0	41	24	3	14	4	252
	동대문구	3	18	1	3	5	10	0	24	4	2	3	2	75
	중랑구	11	19	3	1	17	6	0	32	5	0	3	0	97
	도봉구	25	31	3	2	23	12	0	46	3	2	1	7	155
	성동구	9	17	1	0	3	1	0	22	5	1	0	1	60
	강동구	13	19	2	6	9	2	0	2	0	12	0	7	72
	강남구	5	25	1	6	7	3	0	0	3	4	0	1	55
	성북구	15	19	0	5	9	1	0	39	2	4	0	5	99
	서초구	4	11	1	0	2	13	0	0	1	1	0	0	33
	송파구	8	16	0	2	51	3	0	3	0	2	0	3	88
	노원구	35	36	1	1	17	23	1	27	6	2	8	4	161
	용산구	10	17	1	1	8	6	0	13	0	2	2	1	61
	강북구	10	19	0	5	13	4	1	31	5	4	5	0	97
	광진구	28	39	12	0	8	27	0	22	5	3	4	4	152
	영등포구	6	27	1	6	10	2	0	18	1	0	1	4	76
	관악구	29	25	4	18	28	3	0	1	1	5	0	2	116
구로구	15	244	1	6	5	7	0	30	8	0	5	8	329	
금천구	7	12	4	1	13	0	0	7	3	0	3	4	54	
동작구	2	6	0	3	8	0	0	1	0	2	0	0	22	
강서구	12	38	1	3	19	4	0	23	6	2	1	16	125	
양천구	12	20	2	3	13	2	0	18	3	0	1	6	80	
소 계		346	785	57	85	331	164	2	438	90	51	54	91	2,494
부산	중구	0	5	0	0	2	1	0	0	0	1	0	0	9
	동구	4	5	0	0	2	0	0	2	1	0	0	0	14
	서구	3	11	1	0	1	0	0	4	3	1	0	0	24
	사하구	16	26	2	4	12	0	0	0	2	1	1	4	68
	영도구	7	11	0	0	7	2	0	8	3	0	1	1	40
	동래구	16	24	2	0	6	3	0	4	3	1	0	3	62
	남구	4	15	0	1	7	0	0	5	3	1	5	2	43
	금정구	7	20	0	7	4	0	1	5	2	2	0	1	49
	연제구	7	13	0	3	4	1	0	3	3	0	0	1	35
	해운대구	24	24	1	5	12	5	0	12	6	8	2	7	106
	수영구	6	9	3	1	6	0	0	0	0	0	0	1	26
	부산진구	10	20	0	13	4	45	1	11	2	0	14	13	133
	북구	6	18	1	1	2	0	1	10	0	0	1	5	45
	사상구	3	20	0	1	1	0	0	10	1	1	32	3	72
강서구	3	7	0	0	1	0	0	5	1	0	0	0	17	
기장군	10	37	0	7	9	1	0	1	2	1	0	0	68	
소 계		126	265	10	43	80	58	3	80	32	17	56	41	811
대구	중구	0	9	1	0	4	0	0	3	1	0	1	0	19
	동구	22	23	0	4	9	7	0	9	8	0	2	7	91
	북구	13	29	0	2	13	3	0	16	1	4	2	4	87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계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낮선 사람	익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기타	
대구	서구	9	23	0	0	3	7	2	26	3	3	1	1	78
	달서구	17	53	5	6	11	17	0	36	12	0	7	6	170
	남구	8	12	0	1	13	2	0	8	3	0	10	5	62
	수성구	18	33	0	4	2	4	0	17	3	0	4	2	87
	달성군	6	23	1	1	4	0	0	4	0	0	2	6	47
	소 계	93	205	7	18	59	40	2	119	31	7	29	31	641
인천	중구	4	12	0	0	3	1	0	4	2	0	1	0	27
	동구	1	5	0	0	2	2	0	8	2	0	0	0	20
	남구	23	52	2	8	31	5	0	49	11	1	0	8	190
	부평구	33	57	3	4	53	15	1	59	7	1	5	12	250
	서구	25	59	8	4	18	63	0	25	7	0	8	8	225
	남동구	55	99	13	7	48	13	1	81	17	7	4	15	360
	연수구	28	29	1	6	18	7	0	28	14	2	1	6	140
	계양구	16	37	4	7	11	12	0	13	6	0	5	5	116
	옹진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화군	0	2	0	0	0	0	0	7	1	0	0	0	10
	소 계	185	352	31	36	184	118	2	274	67	11	24	54	1,338
광주	북구	10	31	3	11	10	8	0	3	1	0	3	4	84
	동구	1	3	0	1	4	0	0	1	0	0	0	0	10
	서구	25	18	2	3	11	8	0	2	2	6	0	2	79
	남구	10	9	1	0	3	4	0	7	4	0	2	1	41
	광산구	17	21	2	2	5	8	0	5	1	0	0	6	67
	소 계	63	82	8	17	33	28	0	18	8	6	5	13	281
대전	동구	13	24	2	2	8	2	0	0	6	2	4	1	64
	중구	19	25	2	2	7	2	0	5	2	5	0	0	69
	서구	35	41	3	8	10	2	0	5	6	1	0	5	116
	유성구	20	28	3	0	12	2	0	3	0	4	0	4	76
	대덕구	4	13	2	2	9	0	0	7	0	1	0	2	40
	소 계	91	131	12	14	46	8	0	20	14	13	4	12	365
울산	남구	11	44	0	3	19	3	0	37	11	0	0	1	129
	중구	13	33	1	1	15	9	0	51	12	2	1	11	149
	동구	11	20	3	0	10	4	0	40	11	1	0	3	103
	북구	12	29	0	2	10	3	1	20	5	1	2	6	91
	울주군	23	32	0	2	12	1	0	46	2	0	5	9	132
	소 계	70	158	4	8	66	20	1	194	41	4	8	30	60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5	15	1	1	9	0	0	17	4	0	1	0	53
	고양시 일산서구	4	22	2	6	6	0	1	5	2	3	0	0	51
	고양시 덕양구	19	32	0	10	12	6	0	22	2	0	0	3	106
	파주시	16	32	0	6	5	7	1	13	0	0	0	5	85
	김포시	11	22	0	1	9	2	0	39	4	1	1	5	95
	부천시 원미구	6	25	3	4	8	3	0	20	9	0	7	2	87
	부천시 오정구	8	14	0	6	11	3	0	25	8	0	3	4	82
	부천시 소사구	9	20	0	3	5	5	0	18	4	2	3	1	70
	광명시	11	28	0	2	11	13	0	16	0	0	5	6	92
	안산시 단원구	68	111	9	7	58	25	0	108	15	9	14	20	444
안산시 상록구	43	73	6	10	54	16	1	76	8	3	3	13	306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계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낮선 사람	익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기타	
경기	과천시	10	7	0	0	2	2	0	0	0	0	0	0	21
	시흥시	10	23	2	7	13	11	4	16	8	0	5	5	104
	안양시 만안구	7	11	0	2	3	3	0	3	2	0	0	2	33
	안양시 동안구	5	18	2	0	3	3	0	0	3	1	0	0	35
	군포시	4	12	1	1	2	1	0	3	1	0	1	0	26
	의왕시	8	5	0	3	3	1	0	1	1	0	0	0	22
	수원시 장안구	22	31	6	3	15	13	1	2	1	0	1	2	97
	수원시 권선구	25	23	3	5	17	9	0	5	2	0	1	3	93
	수원시 팔달구	15	15	2	2	11	18	1	5	5	1	0	3	78
	수원시 영통구	14	21	1	4	7	8	0	3	4	0	3	5	70
	화성시	59	67	9	8	18	8	0	37	4	3	2	10	225
	용인시 기흥구	20	39	1	1	8	20	0	21	2	0	7	5	124
	오산시	12	32	3	5	12	7	0	21	9	0	0	5	106
	용인시 수지구	43	39	5	5	12	19	0	5	0	0	0	3	131
	용인시 처인구	6	20	0	1	7	13	0	14	1	0	1	2	65
	평택시	19	47	6	5	22	48	0	22	7	1	3	7	187
	안성시	4	18	0	2	6	3	0	13	0	0	2	5	53
	성남시 수정구	32	22	3	12	21	9	0	16	4	1	6	5	131
	성남시 중원구	8	20	0	3	10	6	0	21	2	1	4	2	77
	성남시 분당구	8	27	1	1	11	0	0	13	6	2	5	5	79
	광주시	10	18	2	3	11	3	0	14	1	4	7	2	75
	하남시	16	5	0	0	5	1	0	2	1	0	0	0	30
	이천시	19	20	5	2	6	8	0	7	0	3	1	5	76
	여주군	8	2	5	1	5	42	0	2	0	4	0	0	69
	구리시	17	13	0	1	4	2	0	16	1	2	8	0	64
	남양주시	32	69	4	5	16	10	0	30	5	1	18	6	196
	양평군	1	5	0	0	2	1	0	2	0	0	0	1	12
	가평군	2	1	0	2	1	6	0	19	0	0	1	2	34
	의정부시	27	42	8	13	19	20	1	73	9	4	6	16	238
	양주시	5	21	2	6	5	8	0	14	1	3	8	7	80
동두천시	2	13	0	5	0	6	1	6	3	0	0	1	37	
연천군	0	7	0	2	2	1	0	6	0	0	20	2	40	
포천시	12	22	3	2	6	11	0	26	0	0	3	3	88	
소 계	682	1,129	95	168	473	401	11	797	139	49	150	173	4,267	
강원	춘천시	22	18	4	10	18	2	1	27	1	5	4	11	123
	화천군	0	1	0	0	0	0	0	1	1	0	0	29	32
	강릉시	5	21	0	0	9	1	0	37	2	0	44	1	120
	양양군	0	4	0	0	0	0	0	4	0	0	1	1	10
	속초시	0	10	1	0	3	1	0	14	0	0	2	6	37
	고성군	1	1	1	0	0	0	0	0	0	0	0	0	3
	원주시	17	46	3	17	14	9	1	36	18	13	11	5	190
	횡성군	1	4	0	3	0	0	0	2	1	0	0	2	13
	영월군	1	3	0	0	0	1	0	0	0	1	0	0	6
	평창군	0	1	0	0	0	0	0	3	0	0	0	0	4
	정선군	3	3	0	5	0	5	0	2	0	2	0	1	21
	태백시	1	13	1	0	0	12	0	10	0	1	0	1	39
	동해시	13	25	2	2	8	7	1	57	0	1	30	2	148
	삼척시	6	15	1	2	10	11	0	2	1	4	0	1	53

(계속)

(단위: 건)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계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낮선 사람	익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기타	
강원	홍천군	0	3	0	0	2	0	0	0	0	1	0	0	6
	인제군	0	0	0	0	0	0	0	7	0	0	1	1	9
	양구군	2	0	0	0	0	0	0	0	0	0	0	0	2
	철원군	0	13	0	0	0	0	0	1	0	0	1	0	15
	소 계	72	181	13	39	64	49	3	203	24	28	94	61	831
충북	청주시 상당구	8	15	1	4	2	5	1	8	2	0	0	4	50
	청주시 흥덕구	12	30	2	6	10	13	0	66	6	1	0	5	151
	청주시 서원구	5	8	1	1	5	3	0	12	0	0	0	3	38
	청주시 청원구	4	19	1	3	6	9	1	102	1	3	2	1	152
	진천군	5	9	0	2	1	0	0	5	1	0	7	1	31
	괴산군	3	1	0	0	1	1	0	2	1	0	0	0	9
	증평군	2	1	0	0	6	0	0	2	0	0	0	0	11
	음성군	5	7	0	2	7	2	1	1	1	0	0	3	29
	영동군	3	1	2	0	3	2	0	6	0	1	11	1	30
	옥천군	2	6	0	0	2	2	0	29	1	0	0	0	42
	보은군	2	0	0	0	2	0	0	2	0	0	3	0	9
	충주시	13	20	1	1	14	35	0	44	1	4	4	9	146
	제천시	8	30	3	11	19	8	0	37	1	5	0	1	123
	단양군	1	3	0	0	0	0	0	2	0	0	0	0	6
소 계	73	150	11	30	78	80	3	318	15	14	27	28	827	
충남	금산군	4	6	3	1	2	1	0	3	1	0	4	0	25
	공주시	4	10	0	3	1	1	0	12	1	0	1	0	33
	논산시	8	9	6	1	4	6	0	6	2	0	1	4	47
	계룡시	1	6	0	1	3	5	0	2	2	0	0	0	20
	부여군	6	19	3	2	3	11	0	16	1	0	0	0	61
	서천군	1	7	0	0	0	0	0	3	0	0	0	1	12
	천안시 동남구	10	19	1	3	5	1	0	1	0	0	0	2	42
	천안시 서북구	3	25	1	6	16	7	0	7	6	0	0	2	73
	아산시	18	24	0	4	28	3	0	20	4	1	1	0	103
	예산군	4	14	0	1	2	23	0	3	0	0	2	1	50
	당진시	8	13	0	2	0	0	0	3	0	0	0	1	27
	청양군	2	0	0	2	0	0	0	0	0	0	0	1	5
	홍성군	1	6	0	1	3	3	0	1	2	1	0	4	22
	보령시	8	7	0	3	1	10	0	11	0	1	3	4	48
	서산시	6	11	3	5	3	5	0	12	0	0	7	0	52
	태안군	1	1	0	0	2	1	0	0	1	0	2	2	10
	세종특별 자치시	9	12	3	1	4	5	0	6	0	0	0	1	41
소 계	94	189	20	36	77	82	0	106	20	3	21	23	671	
전북	전주시 완산구	4	36	1	12	13	9	0	41	9	0	4	3	132
	전주시 덕진구	8	42	2	4	19	18	0	54	5	3	5	4	164
	완주군	1	15	0	0	10	6	0	26	2	0	11	0	71
	임실군	0	1	1	4	1	0	0	5	0	0	2	0	14
	진안군	0	2	0	1	0	2	0	2	0	0	0	0	7
	무주군	3	0	0	0	0	0	0	5	0	0	5	0	13
	익산시	17	41	5	4	16	74	0	80	7	0	4	5	253
	군산시	5	37	0	3	21	20	0	85	5	0	6	8	190
김제시	5	17	2	0	5	11	0	6	1	0	3	1	51	

(계속)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계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낮선 사람	익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기타	
전북	부안군	4	2	2	1	2	7	0	11	1	0	0	0	30
	정읍시	5	16	2	14	3	9	0	39	20	0	3	3	114
	고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남원시	7	21	1	3	11	5	5	68	4	2	6	2	135
	순창군	0	3	0	0	0	0	0	6	0	0	0	0	9
	장수군	0	0	0	0	2	0	0	5	1	0	0	0	8
	소 계	59	233	16	46	103	161	5	433	55	5	49	26	1,191
전남	영광군	0	5	0	0	0	5	0	8	0	0	0	0	18
	장성군	1	3	0	0	6	0	0	3	0	0	0	0	13
	곡성군	0	0	0	0	0	0	0	1	0	0	0	0	1
	담양군	4	3	0	0	5	0	0	13	1	0	2	0	28
	화순군	6	3	0	1	4	11	1	27	0	0	4	0	57
	나주시	3	17	0	2	1	5	0	50	2	0	11	1	92
	함평군	1	0	0	1	0	4	0	5	0	1	0	0	12
	영암군	1	16	1	0	4	1	1	26	0	0	0	1	51
	강진군	2	1	0	0	0	2	0	21	0	0	7	0	33
	장흥군	4	3	0	1	2	2	0	13	0	0	0	0	25
	목포시	23	52	8	8	20	14	1	67	5	6	2	10	216
	무안군	3	10	2	4	1	1	0	14	0	0	0	1	36
	신안군	0	3	0	0	13	3	0	0	0	0	3	0	22
	해남군	3	6	1	2	0	1	0	8	1	0	4	1	27
	완도군	2	0	0	0	6	0	0	4	0	0	1	0	13
	진도군	1	5	1	0	0	2	0	4	0	0	0	0	13
	순천시	20	30	0	4	8	3	0	13	5	3	5	32	123
	구례군	0	2	0	0	0	4	0	1	0	0	0	0	7
	광양시	9	18	0	4	13	5	0	10	3	2	0	3	67
	보성군	1	1	0	5	0	2	0	12	3	0	0	0	24
고흥군	1	6	0	1	1	0	0	1	0	0	2	0	12	
여수시	13	22	3	2	5	4	0	26	4	0	0	10	89	
소 계	98	206	16	35	89	69	3	327	24	12	41	59	979	
경북	경산시	14	19	2	2	3	3	0	32	0	2	0	1	78
	청도군	0	4	0	0	0	1	0	0	0	0	0	0	5
	군위군	2	3	0	0	0	0	0	0	0	0	0	0	5
	고령군	2	4	2	0	0	0	0	4	0	0	1	0	13
	칠곡군	8	13	2	3	6	5	0	20	3	0	0	0	60
	성주군	2	1	2	1	0	3	0	16	0	0	0	0	25
	구미시	4	43	5	5	18	15	0	40	4	1	1	4	140
	김천시	3	8	0	1	3	1	0	6	1	0	1	1	25
	상주시	2	7	0	0	2	0	0	7	1	6	0	0	25
	문경시	7	7	2	0	1	0	0	8	2	0	1	1	29
	영주시	0	14	0	2	1	2	0	15	9	0	4	3	50
	봉화군	0	5	0	0	0	1	0	1	0	0	0	0	7
	예천군	5	5	1	2	1	0	0	1	0	0	0	0	15
	안동시	10	23	0	4	7	0	0	44	16	0	5	3	112
	청송군	2	0	0	0	1	0	0	0	0	0	0	0	3
	영양군	0	1	0	0	0	0	0	0	0	2	0	0	3
	영덕군	1	3	0	0	0	1	0	4	0	0	0	1	10
	울진군	0	2	0	0	0	4	0	4	0	0	0	0	10

(계속)

(단위: 건)

시도	시군구	비신고의무자												계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낮선 사람	익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기타	
경북	의성군	1	1	1	0	1	0	0	1	0	0	0	3	8
	영천시	5	15	2	1	0	0	0	0	3	1	0	2	29
	경주시	4	20	0	4	20	18	0	32	3	0	0	0	101
	포항시 남구	39	37	4	2	25	11	2	44	4	1	17	9	195
	포항시 북구	20	19	1	3	9	12	0	45	2	0	5	3	119
	소 계	131	254	24	30	98	77	2	324	48	13	35	31	1,067
경남	김해시	11	47	2	7	13	15	1	123	5	1	5	3	233
	양산시	11	21	2	4	10	4	0	12	1	1	0	2	68
	밀양시	1	10	0	1	2	0	0	7	0	0	3	0	24
	창원시 마산회원구	1	4	1	6	3	1	0	5	3	0	0	1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2	7	1	0	2	4	0	19	2	0	0	2	39
	창녕군	0	4	0	0	2	0	0	19	0	0	0	0	25
	의령군	0	1	0	0	1	2	0	0	0	0	0	0	4
	합안군	0	1	0	2	0	1	0	0	0	0	0	1	5
	고성군	1	5	0	0	0	3	0	50	0	0	0	0	59
	창원시 의창구	9	13	0	4	6	1	0	3	2	0	2	1	41
	창원시 성산구	1	8	2	2	1	2	0	5	2	0	0	1	24
	창원시 진해구	4	23	0	5	3	2	0	19	0	0	0	0	56
	통영시	1	7	0	0	1	5	0	3	5	0	1	0	23
	거제시	4	25	1	4	3	3	1	48	4	1	1	2	97
	진주시	5	13	0	0	3	2	0	48	1	0	0	18	90
	사천시	7	4	0	2	0	1	0	12	5	1	6	4	42
	산청군	1	2	0	0	0	0	0	0	0	0	0	0	3
	하동군	0	0	0	0	0	0	1	0	0	1	0	0	2
	남해군	0	3	0	0	0	0	0	0	1	0	0	0	4
	거창군	1	0	0	0	0	2	0	2	0	0	0	0	5
함양군	0	0	0	0	0	0	0	2	0	0	0	1	3	
합천군	0	0	0	0	0	0	0	10	1	0	0	0	11	
소 계	60	198	9	37	50	48	3	387	32	5	18	36	883	
제주	제주시	47	76	4	13	21	19	0	40	4	6	1	11	242
	서귀포시	32	25	4	2	6	4	0	10	5	0	3	7	98
	소 계	79	101	8	15	27	23	0	50	9	6	4	18	340
총 계		2,322	4,619	341	657	1,858	1,426	40	4,088	649	244	619	727	17,590

3) 경찰통보건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이후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와 통합되면서 112상황실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신고내용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접수 당시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의심되는 응급아동학대 신고인 경우 동행 출동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2016년에 경찰이 112 상황실에서 신고접수를 받거나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관할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전체 14,809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경찰 통보 건수 중 신고자가 112 또는 경찰서 내방 등의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한 경우가 13,991건(94.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경찰이 수사과정 등에서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한 경우는 771건(5.2%)으로 나타났다.

<표 2-10> 경찰통보건수

(단위 : 건, %)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714 (4.8)	18 (0.1)	39 (0.3)	771 (5.2)	13,991 (94.5)	34 (0.2)	4 (0.0)	9 (0.1)	14,809 (100.0)

*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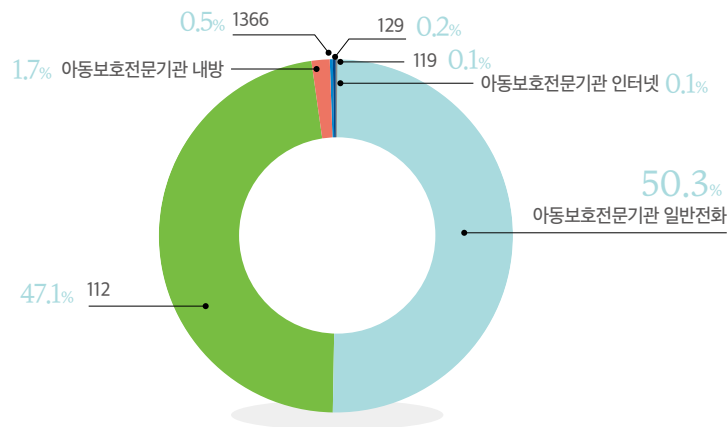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의 주요 경로는 전화라 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신고는 범죄신고전화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그리고 119 안전신고센터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이 되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1577-1391은 폐지되었다.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고접수 된 비율은 전체 신고의 52.1%으로 총 15,45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로 신고접수 된 건수는 14,919건(50.3%),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39건(0.1%),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내방하여 신고한 건수는 496건(1.7%)이었다. 그리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번호가 통합이 되면서 112를 통한 신고는 총 13,991건으로 전체의 47.1%에 해당하였다. 112를 통한 신고건수가 작년에 비해 6.6%포인트가 상승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건수와 불과 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을 통한 신고는 141건(0.5%),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운영하는 129를 통한 신고는 51건(0.2%), 119를 통한 신고는 37건(0.1%)순으로 나타났다.

<표 2-11> 신고접수 경로 유형

(단위 : 건, %)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14,919 (50.3)	39 (0.1)	496 (1.7)	15,454 (52.1)	13,991 (47.1)	37 (0.1)	51 (0.2)	141 (0.5)	29,674 (100.0)



<그림 2-5> 신고접수 경로 유형

<표 2-12>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신고 경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중 앙*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서울	서울특별시	95	(16.4)	4	(0.7)	31	(5.4)	130	(22.5)	447	(77.3)	0	(0.0)	0	(0.0)	1	(0.2)	578	(100.0)
	서울특별시동부	407	(40.3)	6	(0.6)	3	(0.3)	416	(41.1)	592	(58.6)	1	(0.1)	1	(0.1)	1	(0.1)	1,011	(100.0)
	서울강서	231	(57.6)	1	(0.2)	8	(2.0)	240	(59.9)	158	(39.4)	1	(0.2)	0	(0.0)	2	(0.5)	401	(100.0)
	서울은평	234	(38.9)	1	(0.2)	25	(4.2)	260	(43.2)	340	(56.5)	0	(0.0)	2	(0.3)	0	(0.0)	602	(100.0)
	서울영등포	245	(38.4)	0	(0.0)	5	(0.8)	250	(39.2)	388	(60.8)	0	(0.0)	0	(0.0)	0	(0.0)	638	(100.0)
	서울성북	185	(47.4)	0	(0.0)	6	(1.5)	191	(49.0)	199	(51.0)	0	(0.0)	0	(0.0)	0	(0.0)	390	(100.0)
	서울마포	190	(43.1)	0	(0.0)	3	(0.7)	193	(43.8)	245	(55.6)	1	(0.2)	1	(0.2)	1	(0.2)	441	(100.0)
	서울동남권**	-		-		-		-		-		-		-		-		-	
소 계	1,587	(39.1)	12	(0.3)	81	(2.0)	1,680	(41.4)	2,369	(58.3)	3	(0.1)	4	(0.1)	5	(0.1)	4,061	(100.0)	
부산	부산광역시	188	(41.1)	0	(0.0)	8	(1.8)	196	(42.9)	258	(56.5)	0	(0.0)	0	(0.0)	3	(0.7)	457	(100.0)
	부산동부	208	(38.7)	1	(0.2)	21	(3.9)	230	(42.8)	303	(56.4)	2	(0.4)	1	(0.2)	1	(0.2)	537	(100.0)
	부산서부	278	(61.2)	1	(0.2)	9	(2.0)	288	(63.4)	164	(36.1)	0	(0.0)	1	(0.2)	1	(0.2)	454	(100.0)
	부산남부***	-		-		-		-		-		-		-		-		-	
소 계	674	(46.5)	2	(0.1)	38	(2.6)	714	(49.3)	725	(50.1)	2	(0.1)	2	(0.1)	5	(0.3)	1,448	(100.0)	
대구	대구광역시	198	(52.8)	1	(0.3)	4	(1.1)	203	(54.1)	169	(45.1)	0	(0.0)	2	(0.5)	1	(0.3)	375	(100.0)
	대구남부	238	(58.5)	2	(0.5)	7	(1.7)	247	(60.7)	160	(39.3)	0	(0.0)	0	(0.0)	0	(0.0)	407	(100.0)
	대구북부***	152	(47.8)	0	(0.0)	5	(1.6)	157	(49.4)	154	(48.4)	0	(0.0)	3	(0.9)	4	(1.3)	318	(100.0)
	소 계	588	(53.5)	3	(0.3)	16	(1.5)	607	(55.2)	483	(43.9)	0	(0.0)	5	(0.5)	5	(0.5)	1,100	(100.0)
인천	인천광역시	386	(42.8)	1	(0.1)	3	(0.3)	390	(43.3)	504	(55.9)	3	(0.3)	1	(0.1)	3	(0.3)	901	(100.0)
	인천북부	245	(36.4)	0	(0.0)	4	(0.6)	249	(36.9)	421	(62.5)	1	(0.1)	3	(0.4)	0	(0.0)	674	(100.0)
	인천남부	357	(46.1)	0	(0.0)	4	(0.5)	361	(46.6)	412	(53.2)	1	(0.1)	0	(0.0)	1	(0.1)	775	(100.0)
	소 계	988	(42.0)	1	(0.0)	11	(0.5)	1,000	(42.6)	1,337	(56.9)	5	(0.2)	4	(0.2)	4	(0.2)	2,350	(100.0)
광주	광주광역시	181	(33.3)	0	(0.0)	10	(1.8)	191	(35.2)	351	(64.6)	0	(0.0)	1	(0.2)	0	(0.0)	543	(100.0)
	빛고을***	21	(47.7)	0	(0.0)	1	(2.3)	22	(50.0)	22	(50.0)	0	(0.0)	0	(0.0)	0	(0.0)	44	(100.0)
	소 계	202	(34.4)	0	(0.0)	11	(1.9)	213	(36.3)	373	(63.5)	0	(0.0)	1	(0.2)	0	(0.0)	587	(100.0)
대전	대전광역시	147	(16.6)	1	(0.1)	4	(0.5)	152	(17.2)	719	(81.2)	2	(0.2)	4	(0.5)	8	(0.9)	885	(100.0)
울산	울산광역시	396	(41.6)	0	(0.0)	10	(1.1)	406	(42.6)	545	(57.2)	1	(0.1)	0	(0.0)	0	(0.0)	952	(100.0)
경기	경기도	251	(34.9)	0	(0.0)	3	(0.4)	254	(35.3)	463	(64.4)	1	(0.1)	0	(0.0)	1	(0.1)	719	(100.0)
	경기북부	417	(59.6)	0	(0.0)	15	(2.1)	432	(61.7)	263	(37.6)	1	(0.1)	0	(0.0)	4	(0.6)	700	(100.0)
	경기성남	336	(45.6)	0	(0.0)	1	(0.1)	337	(45.7)	395	(53.6)	0	(0.0)	1	(0.1)	4	(0.5)	737	(100.0)
	경기고양	264	(53.9)	1	(0.2)	5	(1.0)	270	(55.1)	214	(43.7)	1	(0.2)	3	(0.6)	2	(0.4)	490	(100.0)
	경기부천	252	(52.1)	0	(0.0)	7	(1.4)	259	(53.5)	217	(44.8)	0	(0.0)	8	(1.7)	0	(0.0)	484	(100.0)
	경기화성	270	(48.6)	3	(0.5)	5	(0.9)	278	(50.0)	274	(49.3)	0	(0.0)	2	(0.4)	2	(0.4)	556	(100.0)
	경기남양주	248	(54.7)	1	(0.2)	6	(1.3)	255	(56.3)	197	(43.5)	0	(0.0)	0	(0.0)	1	(0.2)	453	(100.0)
	안산시	468	(45.8)	0	(0.0)	2	(0.2)	470	(46.0)	547	(53.6)	2	(0.2)	1	(0.1)	1	(0.1)	1,021	(100.0)
	경기용인	219	(33.0)	1	(0.2)	3	(0.5)	223	(33.6)	425	(64.0)	2	(0.3)	3	(0.5)	11	(1.7)	664	(100.0)
	경기시흥	189	(51.6)	2	(0.5)	1	(0.3)	192	(52.5)	173	(47.3)	0	(0.0)	0	(0.0)	1	(0.3)	366	(100.0)
	경기평택	159	(44.9)	0	(0.0)	1	(0.3)	160	(45.2)	190	(53.7)	0	(0.0)	1	(0.3)	3	(0.8)	354	(100.0)
수원***	10	(47.6)	0	(0.0)	1	(4.8)	11	(52.4)	10	(47.6)	0	(0.0)	0	(0.0)	0	(0.0)	21	(100.0)	
소 계	3,083	(47.0)	8	(0.1)	50	(0.8)	3,141	(47.8)	3,368	(51.3)	7	(0.1)	19	(0.3)	30	(0.5)	6,565	(100.0)	
강원	강원도	199	(60.3)	0	(0.0)	6	(1.8)	205	(62.1)	123	(37.3)	0	(0.0)	0	(0.0)	2	(0.6)	330	(100.0)
	강원동부	209	(78.0)	0	(0.0)	6	(2.2)	215	(80.2)	49	(18.3)	1	(0.4)	0	(0.0)	3	(1.1)	268	(100.0)
	강원서부****	178	(53.5)	1	(0.3)	2	(0.6)	181	(54.4)	148	(44.4)	0	(0.0)	2	(0.6)	2	(0.6)	333	(100.0)
	강원남부	193	(50.9)	0	(0.0)	29	(7.7)	222	(58.6)	155	(40.9)	2	(0.5)	0	(0.0)	0	(0.0)	379	(100.0)
소 계	779	(59.5)	1	(0.1)	43	(3.3)	823	(62.8)	475	(36.3)	3	(0.2)	2	(0.2)	7	(0.5)	1,310	(100.0)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신고 경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계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충북	충청북도	444 (58.4)	0 (0.0)	9 (1.2)	453 (59.6)	306 (40.3)	0 (0.0)	1 (0.1)	0 (0.0)	760 (100.0)
	충북북부	247 (56.1)	4 (0.9)	13 (3.0)	264 (60.0)	174 (39.5)	1 (0.2)	1 (0.2)	0 (0.0)	440 (100.0)
	충북남부	164 (87.2)	0 (0.0)	2 (1.1)	166 (88.3)	21 (11.2)	0 (0.0)	0 (0.0)	1 (0.5)	188 (100.0)
	소 계	855 (61.6)	4 (0.3)	24 (1.7)	883 (63.6)	501 (36.1)	1 (0.1)	2 (0.1)	1 (0.1)	1,388 (100.0)
충남	충청남도	288 (46.2)	0 (0.0)	17 (2.7)	305 (48.9)	298 (47.8)	2 (0.3)	0 (0.0)	19 (3.0)	624 (100.0)
	충청남도남부	188 (50.3)	0 (0.0)	8 (2.1)	196 (52.4)	174 (46.5)	0 (0.0)	2 (0.5)	2 (0.5)	374 (100.0)
	충청남도서부	212 (64.2)	0 (0.0)	0 (0.0)	212 (64.2)	110 (33.3)	3 (0.9)	0 (0.0)	5 (1.5)	330 (100.0)
	소 계	688 (51.8)	0 (0.0)	25 (1.9)	713 (53.7)	582 (43.8)	5 (0.4)	2 (0.2)	26 (2.0)	1,328 (100.0)
전북	전라북도	567 (66.3)	0 (0.0)	61 (7.1)	628 (73.5)	222 (26.0)	0 (0.0)	0 (0.0)	5 (0.6)	855 (100.0)
	전라북도서부	599 (73.9)	1 (0.1)	5 (0.6)	605 (74.6)	204 (25.2)	0 (0.0)	0 (0.0)	2 (0.2)	811 (100.0)
	전라북도동부	282 (82.9)	0 (0.0)	17 (5.0)	299 (87.9)	41 (12.1)	0 (0.0)	0 (0.0)	0 (0.0)	340 (100.0)
	소 계	1,448 (72.2)	1 (0.0)	83 (4.1)	1,532 (76.4)	467 (23.3)	0 (0.0)	0 (0.0)	7 (0.3)	2,006 (100.0)
전남	전라남도	283 (53.2)	0 (0.0)	6 (1.1)	289 (54.3)	243 (45.7)	0 (0.0)	0 (0.0)	0 (0.0)	532 (100.0)
	전남서부권	430 (66.0)	0 (0.0)	5 (0.8)	435 (66.7)	214 (32.8)	0 (0.0)	0 (0.0)	3 (0.5)	652 (100.0)
	전남중부권	324 (72.2)	0 (0.0)	15 (3.3)	339 (75.5)	107 (23.8)	0 (0.0)	0 (0.0)	3 (0.7)	449 (100.0)
	소 계	1,037 (63.5)	0 (0.0)	26 (1.6)	1,063 (65.1)	564 (34.5)	0 (0.0)	0 (0.0)	6 (0.4)	1,633 (100.0)
경북	경북남부	240 (60.0)	1 (0.3)	4 (1.0)	245 (61.3)	153 (38.3)	0 (0.0)	0 (0.0)	2 (0.5)	400 (100.0)
	경북북부	336 (74.5)	0 (0.0)	10 (2.2)	346 (76.7)	100 (22.2)	0 (0.0)	3 (0.7)	2 (0.4)	451 (100.0)
	경북동부	402 (67.9)	1 (0.2)	8 (1.4)	411 (69.4)	174 (29.4)	3 (0.5)	0 (0.0)	4 (0.7)	592 (100.0)
	경북서부	318 (60.3)	1 (0.2)	12 (2.3)	331 (62.8)	181 (34.3)	1 (0.2)	0 (0.0)	14 (2.7)	527 (100.0)
	소 계	1,296 (65.8)	3 (0.2)	34 (1.7)	1,333 (67.7)	608 (30.9)	4 (0.2)	3 (0.2)	22 (1.1)	1,970 (100.0)
경남	경상남도	476 (61.8)	3 (0.4)	8 (1.0)	487 (63.2)	279 (36.2)	3 (0.4)	1 (0.1)	0 (0.0)	770 (100.0)
	경남서부	254 (65.6)	0 (0.0)	7 (1.8)	261 (67.4)	124 (32.0)	1 (0.3)	0 (0.0)	1 (0.3)	387 (100.0)
	김해시	202 (61.4)	0 (0.0)	20 (6.1)	222 (67.5)	105 (31.9)	0 (0.0)	1 (0.3)	1 (0.3)	329 (100.0)
	소 계	932 (62.7)	3 (0.2)	35 (2.4)	970 (65.3)	508 (34.2)	4 (0.3)	2 (0.1)	2 (0.1)	1,486 (10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40 (35.1)	0 (0.0)	1 (0.3)	141 (35.3)	250 (62.7)	0 (0.0)	1 (0.3)	7 (1.8)	399 (100.0)
	서귀포시	78 (38.0)	0 (0.0)	4 (2.0)	82 (40.0)	117 (57.1)	0 (0.0)	0 (0.0)	6 (2.9)	205 (100.0)
	소 계	218 (36.1)	0 (0.0)	5 (0.8)	223 (36.9)	367 (60.8)	0 (0.0)	1 (0.2)	13 (2.2)	604 (100.0)
계		14,919 (50.3)	39 (0.1)	496 (1.7)	15,454 (52.1)	13,991 (47.1)	37 (0.1)	51 (0.2)	141 (0.5)	29,674 (100.0)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례에 대해서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함.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0월 21일에 개소,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4월 4일에 개소,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0월 26일에 개소,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2월 5일에 개소됨.

**** 2017년 1월 기준으로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현장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 발견율

3.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1. 현장조사

1) 현장조사 횟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의심 사례의 학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 등을 수집하며 추가적인 학대발생 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피해아동에게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을만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회 이상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

2016년의 경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에 해당하는 25,878건을 대상으로 총 53,401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심사례 1건 당 약 2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산출되었다(〈표 3-1〉 참조).

〈표 3-1〉 현장조사 횟수

(단위: 건, 회)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 당 현장조사 실시
25,878	53,401	2.1

2016년 현장조사 동행 현황을 〈표 3-2〉와 같이 살펴보면,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30,210건으로 전체 56.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 출동한 사례가 14,594건(27.3%), 경찰이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5,720건(10.7%)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경찰 단독의 아동학대의심사례 1차 현장조사 및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 상호동행 건수는 2014년과 대비하여 각각 475.5%, 273.8% 증가하였다.

이처럼 경찰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또한 경찰은 학대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대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시설(보육·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개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은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시 동행하여 협조하고 있다. 상담원과 공무원이 동행한 사례는 718건(1.3%), 경찰과 공무원이 동행한 사례는 114건(0.2%), 상담원·경찰·공무원이 모두 함께 동행한 사례는 2,045건(3.8%)으로 집계되었다.

<표 3-2> 현장조사 동행 현황

(단위 : 건, %)

상담원	경찰	상담원·경찰	상담원·공무원	경찰·공무원	상담원·경찰·공무원	계
30,210 (56.6)	5,720 (10.7)	14,594 (27.3)	718 (1.3)	114 (0.2)	2,045 (3.8)	53,401 (100.0)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표 3-3>은 2016년의 기관별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3.3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3.2회,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2.7회,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각각 2.5회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평균적으로 2.1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단위 : 건, 회)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서울	서울특별시	563	1,036	1.8
	서울특별시동부	808	1,993	2.5
	서울강서	343	769	2.2
	서울은평	527	1,248	2.4
	서울영등포	540	1,771	3.3
	서울성북	329	727	2.2
	서울마포	330	671	2.0
	서울동남권*	0	0	0.0
	소 계	3,440	8,215	2.4

(단위 : 건, 회)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부 산	부산광역시	407	712	1.7
	부산동부	486	981	2.0
	부산서부	429	833	1.9
	부산남부**	0	0	0.0
	소 계	1,322	2,526	1.9
대 구	대구광역시	322	671	2.1
	대구남부	379	965	2.5
	대구북부**	298	553	1.9
	소 계	999	2,189	2.2
인 천	인천광역시	683	1,101	1.6
	인천북부	502	996	2.0
	인천남부	640	1,445	2.3
	소 계	1,825	3,542	1.9
광 주	광주광역시	444	678	1.5
	빛고을**	38	71	1.9
	소 계	482	749	1.6
대 전	대전광역시	528	1,039	2.0
울 산	울산광역시	824	1,492	1.8
경 기	경기도	671	1,244	1.9
	경기북부	649	1,518	2.3
	경기성남	634	2,029	3.2
	경기고양	420	1,007	2.4
	경기부천	443	821	1.9
	경기화성	490	965	2.0
	경기남양주	421	1,135	2.7
	안산시	941	1,948	2.1
	경기용인	601	1,234	2.1
	경기시흥	313	610	1.9
	경기평택	346	661	1.9
	수원**	21	44	2.1
	소 계	5,950	13,216	2.2
강 원	강원도	310	545	1.8
	강원동부	254	559	2.2
	강원서부***	324	644	2.0
	강원남부	367	640	1.7
	소 계	1,255	2,388	1.9
충 북	충청북도	706	1,094	1.5
	충북북부	399	958	2.4
	충북남부	145	292	2.0
	소 계	1,250	2,344	1.9
충 남	충청남도	499	995	2.0
	충청남도남부	328	591	1.8
	충청남도서부	305	552	1.8
	소 계	1,132	2,138	1.9

(단위 : 건, 회)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전 북	전라북도	742	1,592	2.1
	전라북도서부	713	1,171	1.6
	전라북도동부	320	552	1.7
	소 계	1,775	3,315	1.9
전 남	전라남도	485	760	1.6
	전남서부권	605	1,009	1.7
	전남중부권	429	870	2.0
	소 계	1,519	2,639	1.7
경 북	경북남부	334	652	2.0
	경북북부	396	895	2.3
	경북동부	522	985	1.9
	경북서부	425	905	2.1
	소 계	1,677	3,437	2.0
경 남	경상남도	740	1,885	2.5
	경남서부	381	865	2.3
	김해시	314	714	2.3
	소 계	1,435	3,464	2.4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298	423	1.4
	서귀포시	167	285	1.7
	소 계	465	708	1.5
계		25,878	53,401	2.1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0월 26일 개소,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4월 4일 개소,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0월 26일 개소,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2월 5일 개소됨.

*** 2017년 1월 기준으로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2. 사례판단

1) 사례판단 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사례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과 척도 등을 토대로 현장 판단의 과정을 거치고 기관 내 자체사례회의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사례, 조기자원사례 및 일반사례로 판단한다.

아동학대사례의 세부적인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및 방임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본 보고서 제 4장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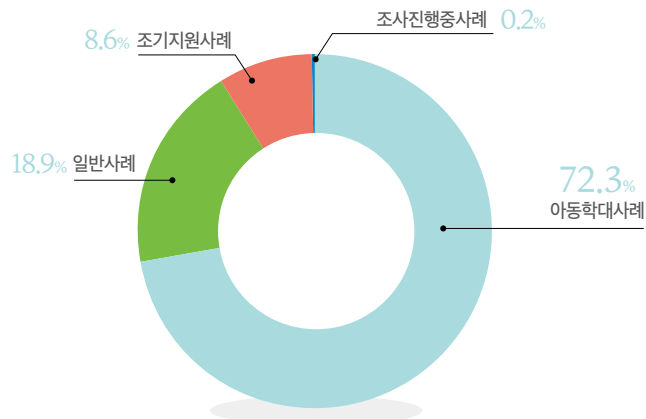
조기자원사례는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조기자원사례를 관리할 때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사례는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를 뜻하며, 조사진행중사례는 2016년에 신고접수 되었으나 아동학대조사가 지연되어 미판단된 사례 건수를 말한다.

<표 3-4>와 같이 2016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판단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의심사례인 25,878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 사례는 총 18,700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의심사례의 72.3%를 차지하였고, 조기자원사례와 일반사례는 각각 2,222건(8.6%), 4,898건(18.9%)으로 나타났다.

<표 3-4>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조기자원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	계
18,700 (72.3)	2,222 (8.6)	4,898 (18.9)	58 (0.2)	25,878 (100.0)



<그림 3-1> 사례판단 결과

* '아동학대사례'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의미하므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더불어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발생률'이라는 용어는 역학조사 및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발생률'과는 다른 의미임.

** 조사진행중사례란 2016년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내용의 학대여부 판단에 필요한 근거 및 증거확보를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를 뜻함(2017년 5월 23일 기준).

2)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를 <표 3-5>와 같이 살펴보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 판단 비율이 35.5%에서 90.6%로 기관별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관별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에 있어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사례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	서울특별시	200	(35.5)	45	(8.0)	318	(56.5)	0	(0.0)	563	(100.0)
	서울특별시동부	518	(64.1)	34	(4.2)	256	(31.7)	0	(0.0)	808	(100.0)
	서울강서	230	(67.1)	50	(14.6)	63	(18.4)	0	(0.0)	343	(100.0)
	서울은평	438	(83.1)	8	(1.5)	81	(15.4)	0	(0.0)	527	(100.0)
	서울영등포	377	(69.8)	14	(2.6)	149	(27.6)	0	(0.0)	540	(100.0)
	서울성북	267	(81.2)	23	(7.0)	37	(11.2)	2	(0.6)	329	(100.0)
	서울마포	238	(72.1)	38	(11.5)	54	(16.4)	0	(0.0)	330	(100.0)
	서울동남권*	-		-		-		-		-	
소 계	2,268	(65.9)	212	(6.2)	958	(27.8)	2	(0.1)	3,440	(100.0)	
부산	부산광역시	276	(67.8)	62	(15.2)	67	(16.5)	2	(0.5)	407	(100.0)
	부산동부	305	(62.8)	97	(20.0)	71	(14.6)	13	(2.7)	486	(100.0)
	부산서부	299	(69.7)	100	(23.3)	29	(6.8)	1	(0.2)	429	(100.0)
	부산남부**	-		-		-		-		-	
소 계	880	(66.6)	259	(19.6)	167	(12.6)	16	(1.2)	1,322	(100.0)	
대구	대구광역시	236	(73.3)	27	(8.4)	59	(18.3)	0	(0.0)	322	(100.0)
	대구남부	296	(78.1)	27	(7.1)	56	(14.8)	0	(0.0)	379	(100.0)
	대구북부**	204	(68.5)	24	(8.1)	70	(23.5)	0	(0.0)	298	(100.0)
소 계	736	(73.7)	78	(7.8)	185	(18.5)	0	(0.0)	999	(100.0)	
인천	인천광역시	457	(66.9)	52	(7.6)	174	(25.5)	0	(0.0)	683	(100.0)
	인천북부	323	(64.3)	36	(7.2)	143	(28.5)	0	(0.0)	502	(100.0)
	인천남부	410	(64.1)	31	(4.8)	197	(30.8)	2	(0.3)	640	(100.0)
소 계	1,190	(65.2)	119	(6.5)	514	(28.2)	2	(0.1)	1,825	(100.0)	
광주	광주광역시	317	(71.4)	30	(6.8)	97	(21.8)	0	(0.0)	444	(100.0)
	빛고을**	29	(76.3)	4	(10.5)	5	(13.2)	0	(0.0)	38	(100.0)
소 계	346	(71.8)	34	(7.1)	102	(21.2)	0	(0.0)	482	(100.0)	
대전	대전광역시	359	(68.0)	60	(11.4)	109	(20.6)	0	(0.0)	528	(100.0)
울산	울산광역시	685	(83.1)	82	(10.0)	57	(6.9)	0	(0.0)	824	(100.0)
경기	경기도	464	(69.2)	61	(9.1)	146	(21.8)	0	(0.0)	671	(100.0)
	경기북부	495	(76.3)	12	(1.8)	140	(21.6)	2	(0.3)	649	(100.0)
	경기성남	456	(71.9)	39	(6.2)	139	(21.9)	0	(0.0)	634	(100.0)
	경기고양	277	(66.0)	47	(11.2)	96	(22.9)	0	(0.0)	420	(100.0)
	경기부천	394	(88.9)	14	(3.2)	35	(7.9)	0	(0.0)	443	(100.0)
	경기화성	362	(73.9)	72	(14.7)	56	(11.4)	0	(0.0)	490	(100.0)
경기남양주	304	(72.2)	54	(12.8)	63	(15.0)	0	(0.0)	421	(100.0)	

경 기	안산시	713	(75.8)	121	(12.9)	107	(11.4)	0	(0.0)	941	(100.0)
	경기용인	413	(68.7)	83	(13.8)	104	(17.3)	1	(0.2)	601	(100.0)
	경기시흥	243	(77.6)	10	(3.2)	57	(18.2)	3	(1.0)	313	(100.0)
	경기평택	221	(63.9)	57	(16.5)	64	(18.5)	4	(1.2)	346	(100.0)
	수원**	11	(52.4)	0	(0.0)	10	(47.6)	0	(0.0)	21	(100.0)
	소 계	4,353	(73.2)	570	(9.6)	1,017	(17.1)	10	(0.2)	5,950	(100.0)
강 원	강원도	236	(76.1)	9	(2.9)	65	(21.0)	0	(0.0)	310	(100.0)
	강원동부	208	(81.9)	13	(5.1)	33	(13.0)	0	(0.0)	254	(100.0)
	강원서부***	232	(71.6)	35	(10.8)	56	(17.3)	1	(0.3)	324	(100.0)
	강원남부	305	(83.1)	17	(4.6)	45	(12.3)	0	(0.0)	367	(100.0)
	소 계	981	(78.2)	74	(5.9)	199	(15.9)	1	(0.1)	1,255	(100.0)
충 북	충청북도	554	(78.5)	28	(4.0)	124	(17.6)	0	(0.0)	706	(100.0)
	충북북부	275	(68.9)	71	(17.8)	53	(13.3)	0	(0.0)	399	(100.0)
	충북남부	119	(82.1)	15	(10.3)	11	(7.6)	0	(0.0)	145	(100.0)
	소 계	948	(75.8)	114	(9.1)	188	(15.0)	0	(0.0)	1,250	(100.0)
충 남	충청남도	337	(67.5)	28	(5.6)	132	(26.5)	2	(0.4)	499	(100.0)
	충청남도남부	250	(76.2)	3	(0.9)	74	(22.6)	1	(0.3)	328	(100.0)
	충청남도서부	237	(77.7)	25	(8.2)	30	(9.8)	13	(4.3)	305	(100.0)
	소 계	824	(72.8)	56	(4.9)	236	(20.8)	16	(1.4)	1,132	(100.0)
전 북	전라북도	618	(83.3)	85	(11.5)	38	(5.1)	1	(0.1)	742	(100.0)
	전라북도서부	567	(79.5)	100	(14.0)	45	(6.3)	1	(0.1)	713	(100.0)
	전라북도동부	261	(81.6)	45	(14.1)	14	(4.4)	0	(0.0)	320	(100.0)
	소 계	1,446	(81.5)	230	(13.0)	97	(5.5)	2	(0.1)	1,775	(100.0)
전 남	전라남도	342	(70.5)	26	(5.4)	117	(24.1)	0	(0.0)	485	(100.0)
	전남서부권	533	(88.1)	6	(1.0)	66	(10.9)	0	(0.0)	605	(100.0)
	전남중부권	354	(82.5)	45	(10.5)	30	(7.0)	0	(0.0)	429	(100.0)
	소 계	1,229	(80.9)	77	(5.1)	213	(14.0)	0	(0.0)	1,519	(100.0)
경 북	경북남부	148	(44.3)	96	(28.7)	90	(26.9)	0	(0.0)	334	(100.0)
	경북북부	294	(74.2)	24	(6.1)	78	(19.7)	0	(0.0)	396	(100.0)
	경북동부	409	(78.4)	30	(5.7)	81	(15.5)	2	(0.4)	522	(100.0)
	경북서부	189	(44.5)	71	(16.7)	160	(37.6)	5	(1.2)	425	(100.0)
	소 계	1,040	(62.0)	221	(13.2)	409	(24.4)	7	(0.4)	1,677	(100.0)
경 남	경상남도	564	(76.2)	8	(1.1)	168	(22.7)	0	(0.0)	740	(100.0)
	경남서부	345	(90.6)	9	(2.4)	27	(7.1)	0	(0.0)	381	(100.0)
	김해시	230	(73.2)	0	(0.0)	82	(26.1)	2	(0.6)	314	(100.0)
	소 계	1,139	(79.4)	17	(1.2)	277	(19.3)	2	(0.1)	1,435	(100.0)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191	(64.1)	6	(2.0)	101	(33.9)	0	(0.0)	298	(100.0)
	서귀포시	85	(50.9)	13	(7.8)	69	(41.3)	0	(0.0)	167	(100.0)
	소 계	276	(59.4)	19	(4.1)	170	(36.6)	0	(0.0)	465	(100.0)
계	18,700	(72.3)	2,222	(8.6)	4,898	(18.9)	58	(0.2)	25,878	(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0월 21일에 개소,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4월 4일에 개소,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0월 26일에 개소,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2월 5일에 개소됨.

*** 2017년 1월 기준으로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3) 피해아동 보호수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18,700건이었으나 실제 피해아동 수는 14,296명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사례 18,700건에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이거나 혹은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6> 피해아동 보호수

(단위 : 건, 명)

	피해아동보호 건수	피해아동보호 명수
총합	18,700	14,296

3. 피해아동 발견율

<표 3-7>에 피해아동 발견율을 제시하였다.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며, 2016년 통계청에서 집계한 「연령별(시도) 추계아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였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피해아동 발견율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단된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실제 발생률과는 다소 상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 발견율의 개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2.15%로 나타났으며, 작년의 1.32%에 대비하여 약 0.83%포인트 가량 상승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4.66%, 전라남도 4.23%, 강원도 4.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광역시 1.17%, 대전광역시 1.2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외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9.2%, 호주가 8.5%로 우리나라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각 지역별 아동 인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 수, 피해아동 보호 간의 관계 양상 및 정도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이란 변인 간의 밀접한 정도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이나 1에 가까울수록 변수 간 상관 정도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1에 가까울수록 한 변인이 증가할 때 다른 변인의 값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한 변인이 증가할 때 다른 변인의 값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7). Child Maltreatment 2015.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7).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15-16.

본 장에서 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0.56로 도출되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각 지역의 아동 인구에 대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충분히 설치될 경우, 피해아동 및 관련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아동에 대한 발견 및 보호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아동인구와 관할면적, 사례 당 평균 이동소요시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7>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명, 개소, 명, 건, %)

지역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수	기관당아동수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서울특별시	1,467,622	8	183,453	2,268	1.55
부산광역시	500,213	4	125,053	880	1.76
대구광역시	414,695	3	138,232	736	1.77
인천광역시	512,829	3	170,943	1,190	2.32
광주광역시	295,555	2	147,778	346	1.17
대전광역시	283,823	1	283,823	359	1.26
울산광역시	215,287	1	215,287	685	3.18
경기도	2,349,095	12	195,758	4,353	1.85
강원도	244,801	4	61,200	981	4.01
충청북도	270,895	3	90,298	948	3.50
충청남도	417,139	3	139,046	824	1.98
전라북도	310,488	3	103,496	1,446	4.66
전라남도	290,340	3	96,780	1,229	4.23
경상북도	414,161	4	103,540	1,040	2.51
경상남도	590,162	3	196,721	1,139	1.93
제주특별자치도	117,848	2	58,924	276	2.34
계	8,694,953	59	147,372	18,700	2.15

* 통계청(www.kosis.kr), 2016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4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인구사회학적 요인
-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 아동학대사례 유형
-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 서비스 제공 현황



제4장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 피해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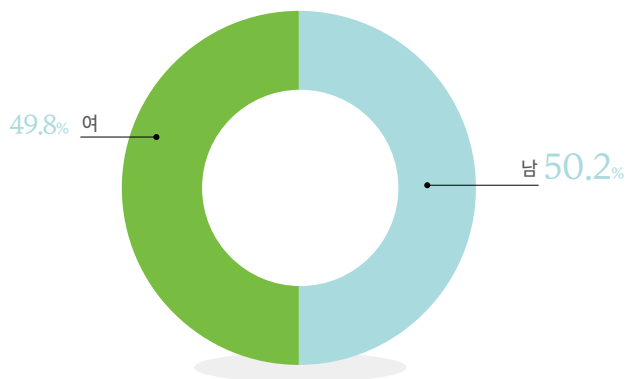
가. 피해아동 성별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18,700건을 대상으로 <표 4-1>과 같이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았다. 남아가 9,380건(50.2%), 여아가 9,320건(49.8%)으로 남아가 약 0.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남아		여아		계	
9,380	(50.2)	9,320	(49.8)	18,700	(100.0)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나. 피해아동 연령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표 4-2>와 같이 살펴보면,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0.6%,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가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학령기에 해당하며, 전체 피해아동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 및 학원 등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노출되어 학대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청소년기(만 12세~만 15세) 아동 학대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전기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아동학대의 발생을 내부적 요인에서 살펴보면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행동이 아동의 발달단계 상 다양한 신체적·행동적인 변화들로 인해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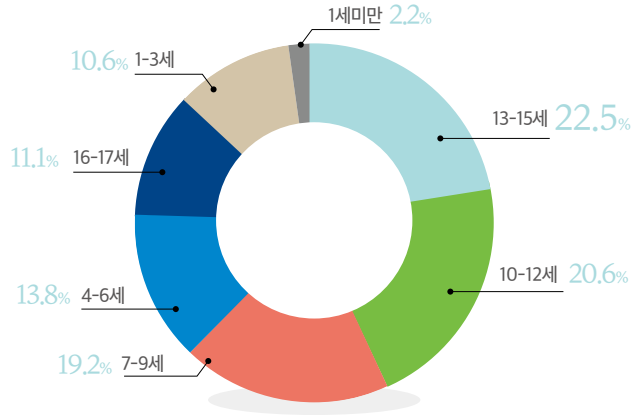
그리고 아동 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학대사례 전체 건수 중 21.5%를 차지했다. 영유아기에는 부모와 주요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불안정 애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아동은 부모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향후 경험하는 대인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건강검진, 출생신고 등 미 실시 영유아 가정에 대한 상시적 양육환경 점검을 통해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양육방법,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의 제공 필요성이 높았다.

<표 4-2>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총합	
1세 미만	416	(2.2)
1세	493	(2.6)
2세	694	(3.7)
3세	792	(4.2)
소 계	1,979	(10.6)
4세	780	(4.2)
5세	841	(4.5)
6세	962	(5.1)
소 계	2,583	(13.8)
7세	1,088	(5.8)
8세	1,344	(7.2)
9세	1,163	(6.2)
소 계	3,595	(19.2)
10세	1,202	(6.4)
11세	1,303	(7.0)
12세	1,349	(7.2)
소 계	3,854	(20.6)
13세	1,370	(7.3)
14세	1,469	(7.9)
15세	1,367	(7.3)
소 계	4,206	(22.5)
16세	1,157	(6.2)
17세	910	(4.9)
소 계	2,067	(11.1)
계	18,700	(100.0)

* 배화옥·강지영. (2016). 아동발달단계별 아동학대 특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표 4-3>과 같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가족이 9,931건으로 전체의 53.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7,681건으로 41.1%였으며, 대리양육 형태와 기타는 각각 334건(1.8%), 86건(0.5%)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 한부모가족 형태에 해당하는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그리고 미혼부·모가정을 합하면 총 5,173건으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의 27.7%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월 189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 가구소득 389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 미취학 자녀의 12%, 초등생 자녀의 54.4%가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부모의 역할을 홀로 감당하고 있고 양육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일 수 있기에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의 활성화와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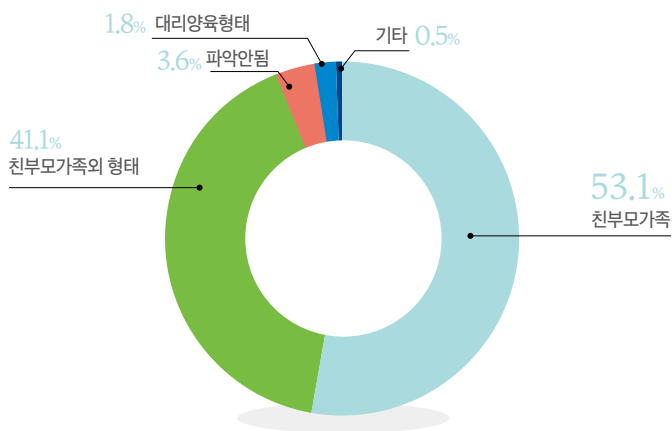
대리양육형태의 경우, 시설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227건(1.2%)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입양가정 79건(0.4%), 가정위탁 28건(0.1%) 순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여성가족부 (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 안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녀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9,931 (53.1)	2,623 (14.0)	2,203 (11.8)	347 (1.9)	1,366 (7.3)	444 (2.4)	688 (3.7)	10 (0.1)	7,681 (41.1)	28 (0.1)	79 (0.4)	227 (1.2)	334 (1.8)	86 (0.5)	668 (3.6)	18,700 (100.0)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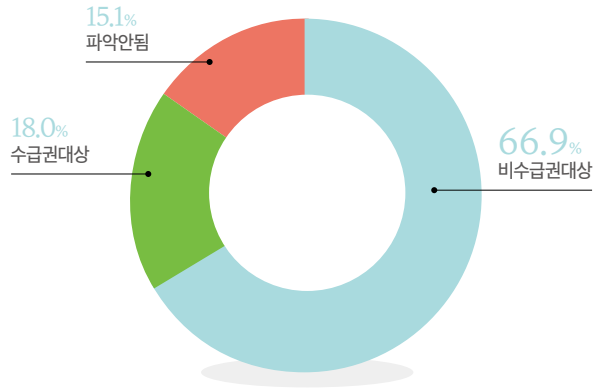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표 4-4>와 같이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 아동이 전체의 18.0%에 해당하는 3,367건이다. 비수급권 대상 아동은 12,508건(66.9%)이고, 수급권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2,825건(15.1%)으로 나타났다.

* 아동매대로 구성된 가정, 지인에 의한 일시적보호, 성인이 된 형제에 의한 보호 등이 포함.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여부	건수	(비율)
수급권 대상	3,367	(18.0)
비수급권 대상	12,508	(66.9)
파악안됨	2,825	(15.1)
계	18,700	(100.0)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마. 피해아동 특성

피해아동의 특성을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특성없음 및 기타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되는 경우에 중복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4-5>에 나타난 피해아동의 특성의 대부분이 아동학대의 행동적 징후에 속하고 있는 만큼 아동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주의 깊게 살필 필요성이 있다.

피해아동의 주된 특성은 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적응·행동으로 전체의 32.5%에 해당하는 11,334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정서·정신건강이 9,814건(28.1%), 특성없음이 7,732건(22.2%), 발달·신체건강이 3,419건(9.8%), 장애가 1,249건(3.6%), 기타가 1,340건(3.8%)이었다. 여기서 피해아동에게 뚜렷한 특성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22.2%를 차지하는데, 이는 아동의 특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학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응·행동 중에서는 반항·충동·공격성이 1,814건(5.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거짓말 1,320건(3.8%), 약물·흡연·음주가 1,138건(3.3%), 학교부적응이 1,077건(3.1%)으로 나타났다. 정서·정신건강 중에서는 불안이 2,593건(7.4%)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

의산만이 1,550건(4.4%), 우울이 1,084건(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달·신체건강 중에서는 위생문제가 1,050건(3.0%)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학대행위자가 행한 방임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장애의 경우, 15가지의 장애 유형을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나누었으며 그 외에 공식적인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아동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또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정신적 장애가 534건(1.5%)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가 510건(1.5%), 신체적 장애가 205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아동의 특성을 학대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학대로 인한 후유증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피해아동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적 지원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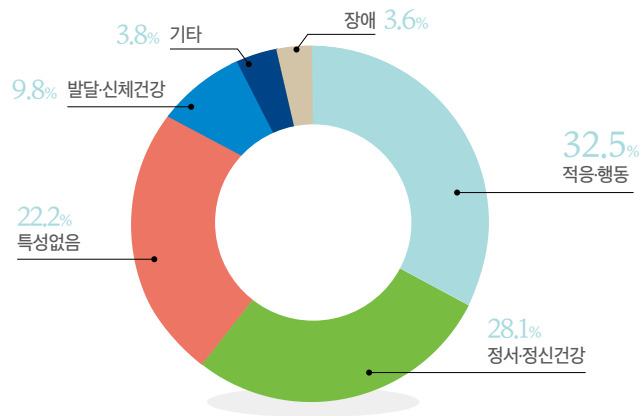
<표 4-5>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특성		건수	(비율)	
장애	신체적 장애	205	(0.6)	
	정신적 장애	534	(1.5)	
	장애의심	510	(1.5)	
	소 계	1,249	(3.6)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	1,550	(4.4)	
	과잉행동	792	(2.3)	
	인터넷(게임)중독	469	(1.3)	
	불안	2,593	(7.4)	
	애착문제	777	(2.2)	
	무력감	685	(2.0)	
	우울	1,084	(3.1)	
	낮은 자아존중감	813	(2.3)	
	성격 및 기질 문제	797	(2.3)	
	탐식 및 결식	254	(0.7)	
	소 계	9,814	(28.1)	
	적응·행동	반항·충동·공격성	1,814	(5.2)
		거짓말	1,320	(3.8)
		도벽	862	(2.5)
가출		852	(2.4)	
약물·흡연·음주		1,138	(3.3)	
성문제		313	(0.9)	
학교 부적응		1,077	(3.1)	
잘은 결석, 무단결과		733	(2.1)	
늦은 귀가		849	(2.4)	
학습문제		863	(2.5)	
폭력행동		567	(1.6)	
비행집단활동		297	(0.9)	
불건전한 또래 관계		399	(1.1)	
대인관계 기피		250	(0.7)	
소 계		11,334	(32.5)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315	(0.9)
	언어문제	974	(2.8)
	영양결핍	145	(0.4)
	대소변문제	191	(0.5)
	위생문제	1,050	(3.0)
	틱(음성·신체·뚜렛)	105	(0.3)
	잡은 병치레, 허약	185	(0.5)
	주요병력	454	(1.3)
	소 계	3,419	(9.8)
특성없음		7,732	(22.2)
기타*		1,340	(3.8)
계		34,888	(100.0)

※중복포함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 부모의 지인,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등이 포함.

2)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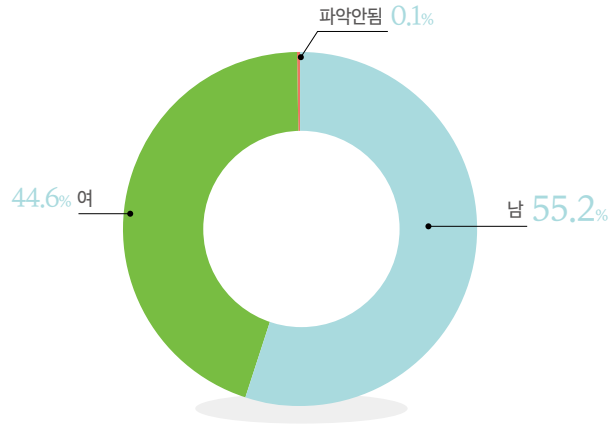
가. 학대행위자 성별

2016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8,700건을 대상으로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표 4-6>과 같이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전체의 55.2%에 해당하는 10,327건이었으며, 여성은 8,347건(44.6%),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26건(0.1%)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과 비슷한 양상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남성		여성		파악 안 됨		계	
10,327	(55.2)	8,347	(44.6)	26	(0.1)	18,700	(100.0)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

나.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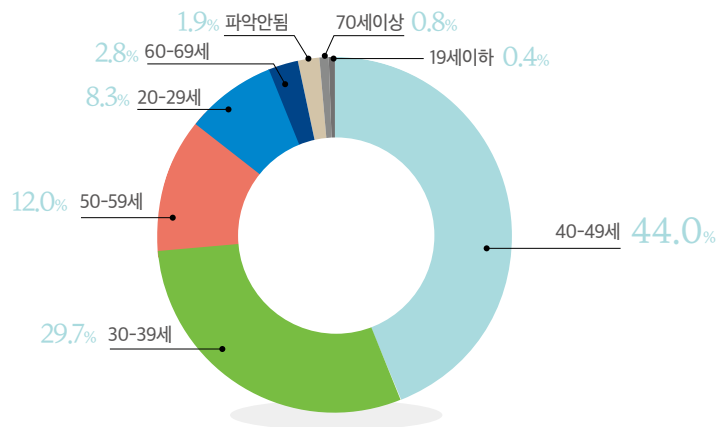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를 <표 4-7>과 같이 살펴보면 40대가 8,228건(4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5,558건(29.7%)이었다. 앞서 피해아동 연령 중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볼 때,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족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족 스트레스원 및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만 19세 이하의 학대행위자는 83건으로 0.4%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한 학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9세 이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자는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임신과 출산을 자립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위치에 놓여있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소년 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으로 생기는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와 학업 중단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인 학대행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모교육 및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건수(비율)	
19세 이하	83	(0.4)
20~29세	1,559	(8.3)
30~39세	5,558	(29.7)
40~49세	8,228	(44.0)
50~59세	2,245	(12.0)
60~69세	525	(2.8)
70세 이상	143	(0.8)
파악안됨	359	(1.9)
계	18,700	(100.0)



<그림 4-7> 학대행위자 연령

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4-8>과 같이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및 파악 안됨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16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8,700건을 대상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80.5%에 해당하는 15,048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약 8건 정도가 부모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8,295건(44.4%), 친모는 5,923건(31.7%), 계부와 계모는 각각 394건(2.1%), 362건(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양육자의 경우 2,173건으로 11.6%에 해당하였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도 보육교직원은 587건(3.1%), 초·중·고교 직원은 576건(3.1%)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과 같은 돌봄시설은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등 아동을 보호·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더불어 정기적인 종사자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과 인식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복지적 차원의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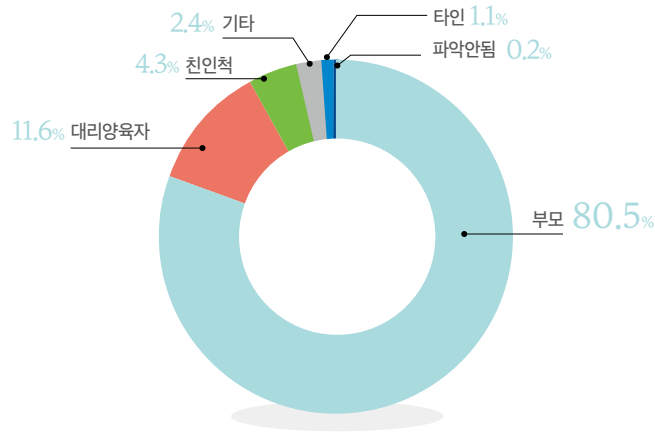
이외에 친인척은 795건(4.3%), 타인은 201건(1.1%), 기타 454건(2.4%), 파악안됨 29건(0.2%)으로 나타났다.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건수(비율)	
부모	친부	8,295	(44.4)
	친모	5,923	(31.7)
	계부	394	(2.1)
	계모	362	(1.9)
	양부	37	(0.2)
	양모	37	(0.2)
	소 계	15,048	(80.5)
친인척	친조부	111	(0.6)
	친조모	177	(0.9)
	외조부	39	(0.2)
	외조모	95	(0.5)
	친인척	266	(1.4)
	형제, 자매	107	(0.6)
	소 계	795	(4.3)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311	(1.7)
	유치원교직원	240	(1.3)
	초·중·고교 직원	576	(3.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67	(0.9)
	보육 교직원	587	(3.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53	(1.4)
	기타시설 종사자	28	(0.1)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2	(0.0)
	위탁부	0	(0.0)
위탁모	5	(0.0)	

관계		건수(비율)	
대리양육자*	베이비시터	4	(0.0)
	소 계	2,173	(11.6)
타인	이웃	91	(0.5)
	낯선 사람	110	(0.6)
	소 계	201	(1.1)
기타**		454	(2.4)
파악안됨		29	(0.2)
계		18,700	(100.0)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를 <표 4-9>와 같이 살펴본 결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경우는 14,701건(78.6%)이었으며,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3,918건(21.0%),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81건(0.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학대행위자 중 80.5%가 부모라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표 4-8> 참조).

아동이 학대행위자와 함께 동거할 경우,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학대를 발견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 및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 내 아동학대 발견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양육환경 점검, 신고의무자의 활용 및 가정 내 위기요인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아동권리교육의 활성화,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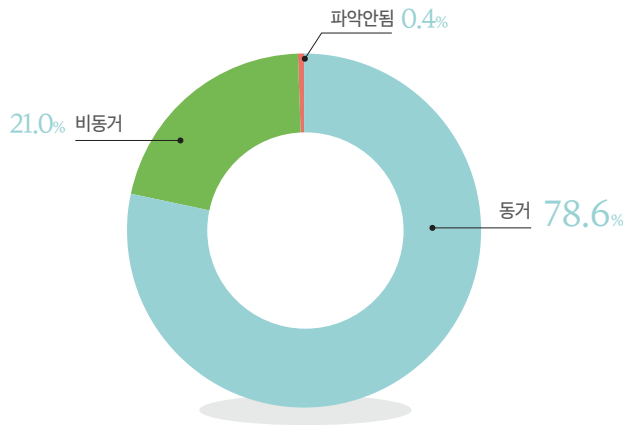
* '대리양육자'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으로, 이진화·안선희·한유미·강희경(1999)의 연구에서 차용하였음. 이진화·안선희·한유미·강희경 (1999). 부모-대리양육자 관계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381-404.

** 부모의 지인,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등이 포함.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단위 : 건, %)

동거		비동거		파악안됨		계	
14,701	(78.6)	3,918	(21.0)	81	(0.4)	18,700	(100.0)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을 <표 4-10>과 같이 살펴본 결과, 무직인 학대행위자가 5,275건(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비스 및 판매직이 2,853건(15.3%)이었다. 위와 같은 직업유형의 경우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상태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의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전체의 약 28.6%를 차지하였다.

<표 4-10>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 건, %)

직업유형	건수(비율)	
관리직	750	(4.0)
전문직	2,501	(13.4)
기술공 및 준전문직	1,364	(7.3)
사무직	729	(3.9)
서비스 및 판매직	2,853	(15.3)

직업유형	건수(비율)	
농·어·축산업	391	(2.1)
기능직	271	(1.4)
기계장치조작원	532	(2.8)
단순노무직	2,654	(14.2)
군인	69	(0.4)
무직	5,275	(28.2)
파악안됨	1,311	(7.0)
계	18,7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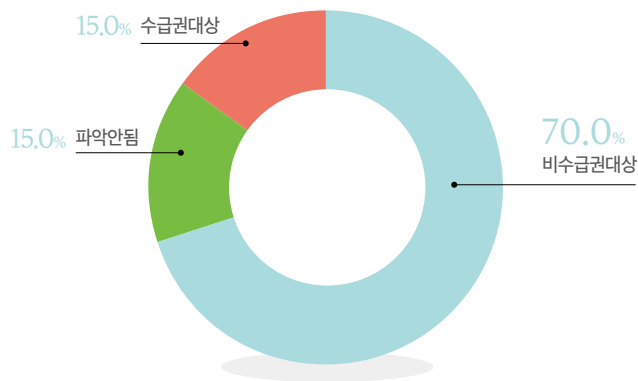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를 <표 4-11>과 같이 살펴본 결과, 학대행위자가 비수급권 대상인 경우가 전체의 70.0%로 13,12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수급권 대상은 15.0%로 2,755건에 해당하였다.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2,821건(15.0%)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여부	건수 (비율)	
수급권 대상	2,755	(15.0)
비수급권 대상	13,124	(70.0)
파악 안 됨	2,821	(15.0)
계	18,700	(100.0)



<그림 4-1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사.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행위자 특성은 <표 4-12>와 같이 신체·정신적 장애, 장애의심,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중독 및 질환문제 등 총 20개 유형의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되는 경우에 중복적으로 응답하였다.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16,737건(35.6%)을 차지하였다. 올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18,700건임을 감안했을 때 아동학대사례의 약 90%의 학대행위자들이 양육태도 및 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의 긍정적 변화와 더불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 범사회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특성 다음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고립을 경험한 학대행위자는 8,372건(17.8%),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가지는 경우는 4,901건(10.4%)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 성격 및 기질 문제를 가지는 경우는 2,873건(6.1%), 중독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2,747건(5.8%)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되듯이 학대행위자의 성격 및 기질,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특성은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특성의 파악과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치료 및 상담 등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는 어느 한 가지 특정한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다양한 개인과 사회적 환경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성	건수(비율)	
신체적 장애	353	(0.8)
정신적 장애	256	(0.5)
장애의심	501	(1.1)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6,737	(35.6)
중독문제	2,747	(5.8)
질환문제	726	(1.5)
성격 및 기질문제	2,873	(6.1)
위생문제	617	(1.3)
나태 및 무기력	540	(1.1)
난독해, 난작문	28	(0.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8,372	(17.8)
어릴 적 학대경험	695	(1.5)
폭력성	2,242	(4.8)
전과력	249	(0.5)
성문제	418	(0.9)
원치 않는 아동	264	(0.6)
부부 및 가족 갈등	4,901	(10.4)
종교문제	130	(0.3)
특성없음	3,726	(7.9)
파악안됨	585	(1.2)
계	46,960	(100.0)

※중복포함

* 노총래 (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3, 123-154.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표 4-13>과 같이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2.2%인 총 15,37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15,032건(80.4%)으로 10명 중 8명이 아동의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과 같은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각각 601건(3.2%), 609건(3.3%), 247건(1.3%)으로 나타나, 전체 사례 중 7.8%에 해당하여 작년과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287건(1.5%), 기타복지시설이 24건(0.1%)으로 전체 사례 중 1.7%에 해당한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어난 학대는 2%에 못 미치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은 건강한 양육 환경이 아닌 돌봄의 부재에 노출된 아동들이 대리 양육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게 가해진 학대는 보다 더 심각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보호실태 등을 점검하는 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 4-13>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15,032	(80.4)
	학대행위자 가정 내	339	(1.8)
소계		15,371	(82.2)
집근처 또는 길가		353	(1.9)
친척집		150	(0.8)
이웃집		20	(0.1)
어린이집		601	(3.2)
유치원		247	(1.3)
학교		609	(3.3)
학원		159	(0.9)
병원		68	(0.4)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287	(1.5)
	기타복지시설	24	(0.1)
소계		311	(1.7)
숙박업소		90	(0.5)
종교시설		61	(0.3)
기타**		644	(3.4)
파악 안 됨		16	(0.1)
계		18,700	(100.0)

* 장희선·김기현·장화정·김경희 (2016).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피해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4, 3-141.

** 상점 내, 전철역, 차 안 등이 포함.

2) 아동학대 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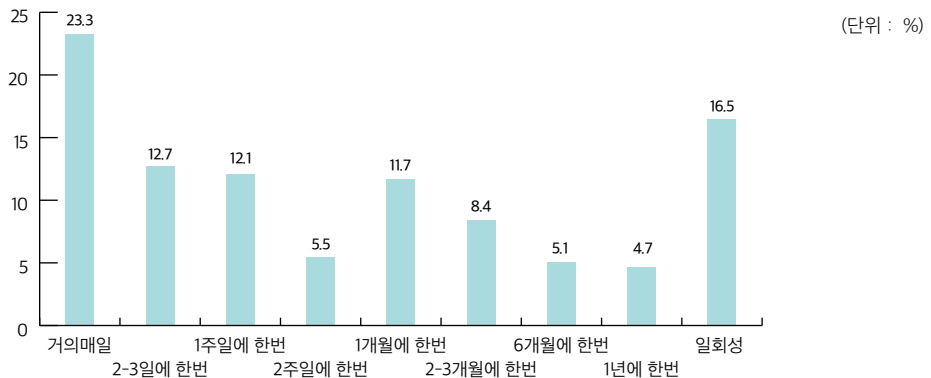
아동학대 발생빈도의 경우,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4,364건(23.3%), 2~3일에 한 번인 경우가 2,384건(12.7%), 일주일에 한 번인 경우가 2,260건(12.1%) 이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48.1%로 전체 사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발생은 일회성에서 만성적인 학대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가 장기화 될 경우 일회성의 학대보다 아동의 생애 전반에 심각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학대의 빈도가 더 잦고, 지속적으로 경험했을 경우에 공격성 표출, 우울 성향, 자아존중감의 손상 등의 부분에서 학대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아동은 학대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고 성인이 된 후에도 학대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어 이를 후대에 전승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아동의 학대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례개입종결 이후에도 재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의 안전 및 가정의 학대 재발 위험도를 점검하고 지역 사회 내 아동보호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표 4-14>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수(비율)	
거의 매일	4,364	(23.3)
2~3일에 한 번	2,384	(12.7)
일주일에 한 번	2,260	(12.1)
2주일에 한 번	1,027	(5.5)
1개월에 한 번	2,180	(11.7)
2~3개월에 한 번	1,564	(8.4)
6개월에 한 번	956	(5.1)
1년에 한 번	880	(4.7)
일회성	3,085	(16.5)
계	18,700	(100.0)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빈도

* 안동현·장화정·이영애·홍강의·이재연·이양희·조흥식·곽영숙(2013).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 강은영·김희균 (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아동학대사례 유형

본 절에서는 아동학대 사례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교차로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구분하였다. 학대는 단일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를 사정하여 아동학대 유형을 판단할 시 4가지 유형의 학대를 중복하여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도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경우와 미분류한 경우로 나누어 통계 결과를 집계하였다.

신체학대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 신체 가해 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을 말한다. 성학대는 아동 대상의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뜻하며, 방임은 세부적으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그리고 유기로 분류할 수 있다.

1)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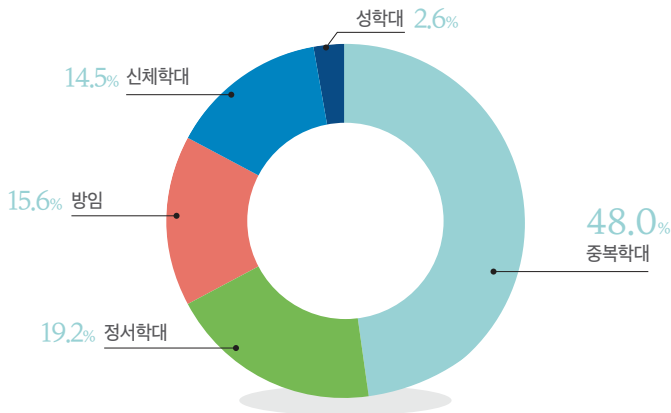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을 <표 4-15>와 같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8,980건(48.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정서학대 3,588건(19.2%), 방임 2,924건(15.6%), 신체학대 2,715건(14.5%), 성학대 493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한 가지 학대유형보다는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정서학대가 7,085(37.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서학대·방임이 711건(3.8%),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이 656건(3.5%)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모든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20건(0.1%)이었다. 중복학대의 경우 더 심각한 학대 후유증 및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및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2,715	(14.5)
정서학대	3,588	(19.2)
성학대	493	(2.6)
방임	2,924	(15.6)

유형		건수(비율)	
중복학대	신체학대 · 정서학대	7,085	(37.9)
	신체학대 · 성학대	30	(0.2)
	신체학대 · 방임	268	(1.4)
	정서학대 · 성학대	97	(0.5)
	정서학대 · 방임	711	(3.8)
	성학대 · 방임	7	(0.0)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100	(0.5)
	신체학대 · 정서학대 · 방임	656	(3.5)
	신체학대 · 성학대 · 방임	1	(0.0)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5	(0.0)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20	(0.1)
	소 계	8,980	(48.0)
계	18,700	(100.0)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II(중복학대 미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아동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본 결과, 총 빈도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인 18,700건을 초과한 28,482건이다. 아동학대 사례유형 중 정서학대가 전체 43.1%에 해당하는 12,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10,875건(38.2%), 방임이 4,592건(16.1%)이었다. 또한 성학대는 753건(2.6%)으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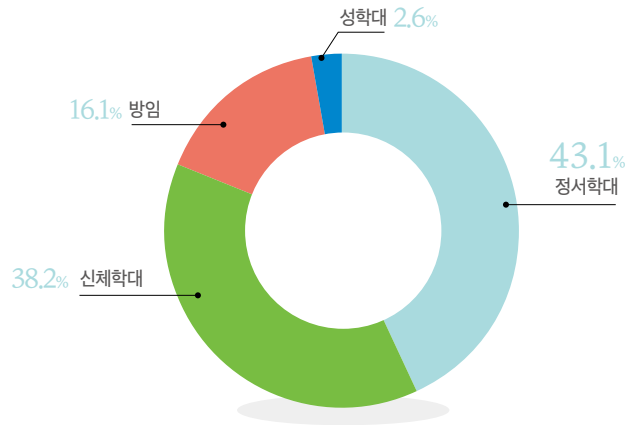
<표 4-15>를 토대로 살펴볼 때,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였을 때의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5%, 19.2%로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2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II(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건, %)

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10,875	(38.2)
정서학대	12,262	(43.1)
성학대	753	(2.6)
방임	4,592	(16.1)
계	28,482	(100.0)

※중복포함



※중복포함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 유형II(중복학대 미분류)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아동학대사례 유형II(중복학대 미분류)에 따른 피해아동 성별, 연령, 특성을 살펴보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아동학대 유형별로 피해아동 성별을 <표 4-17>와 같이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방임 사례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약 5.2%포인트 높았다. 반면, 정서학대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약 1.4%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여아가 87.8%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남아에 비해 약 7.2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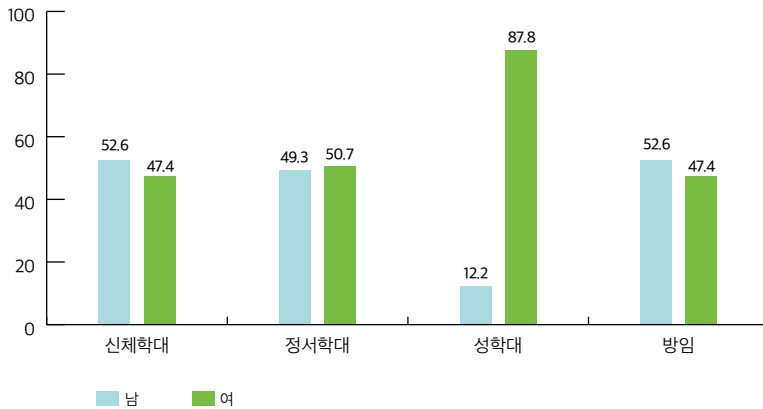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별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성학대	방임	방임	계	계		
남	5,718	(52.6)	6,048	(49.3)	92	(12.2)	2,416	(52.6)	14,274	(50.1)		
여	5,157	(47.4)	6,214	(50.7)	661	(87.8)	2,176	(47.4)	14,208	(49.9)		
계	10,875	(100.0)	12,262	(100.0)	753	(100.0)	4,592	(100.0)	28,482	(100.0)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각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피해아동의 연령 현황을 <표 4-18>과 같이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피해아동의 연령 현황과 다소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학령기인 만 13~15세, 만 10세~12세와 만 7세~9세 구간에 피해아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만 16세~17세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피해아동의 발견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세 미만의 아동과 같은 경우는 총 518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방임 사례가 256건으로 약 49.4%로 거의 과반수에 해당이 된다.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방임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흔은 없으나 낮은 연령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학대 고위험 가정을 사전에 발굴하여 위기 가정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가정에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양육상담의 활성화를 통해서 양육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유아 건강검진·타 진료기록·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영유아 또는 양육수당·보육료 등을 신청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상시적 양육환경 점검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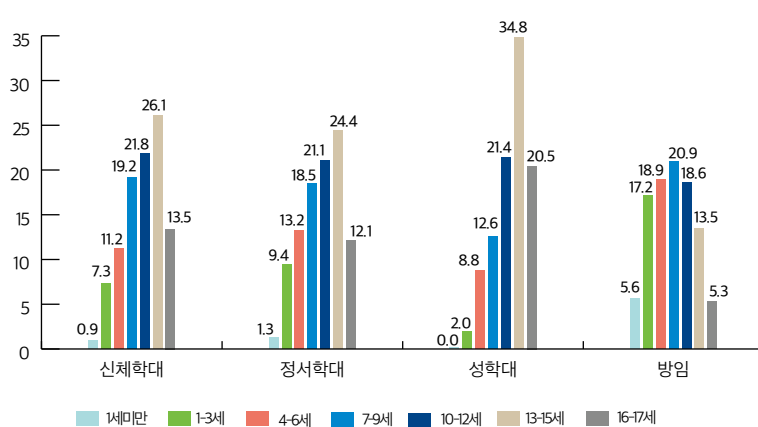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영아방임에 관한 연구.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학대유형 연령(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1세 미만	101	(0.9)	161	(1.3)	0	(0.0)	256	(5.6)	518	(1.8)
1~3세	796	(7.3)	1,153	(9.4)	15	(2.0)	789	(17.2)	2,753	(9.7)
4~6세	1,219	(11.2)	1,617	(13.2)	66	(8.8)	868	(18.9)	3,770	(13.2)
7~9세	2,093	(19.2)	2,273	(18.5)	95	(12.6)	961	(20.9)	5,422	(19.0)
10~12세	2,369	(21.8)	2,587	(21.1)	161	(21.4)	852	(18.6)	5,969	(21.0)
13~15세	2,834	(26.1)	2,991	(24.4)	262	(34.8)	622	(13.5)	6,709	(23.6)
16~17세	1,463	(13.5)	1,480	(12.1)	154	(20.5)	244	(5.3)	3,341	(11.7)
계	10,875	(100.0)	12,262	(100.0)	753	(100.0)	4,592	(100.0)	28,482	(100.0)

※중복포함



※중복포함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각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피해아동의 특성을 <표 4-19>와 같이 분석한 결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의 경우 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약물·흡연·음주, 가출 등과 같은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정신건강 특성, 특성없음, 발달·신체건강 특성, 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임의 경우 불안, 주의산만 등과 같은 정서·정신건강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발달·신체건강 특성, 적응·행동 특성, 특성없음,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피해아동 특성을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학대에서 장애 특성이 5.8%로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학대의 위험요인 중 하나가 아동의 장애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와도 같은 결과이다*. 또한 정서·정신건강 특성의 경우 정서학대에서 30.6%로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불안이 9.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을 발생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일치 하며** 아동의 인지적 손상, 학업성취, 타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응·행동 특성의 경우 신체학대가 39.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적응·행동의 상세 항목을 살펴보면 반항·충동·공격성(6.4%)과 거짓말(5.0%)이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성학대에서는 성문제(6.6%)와 약물·흡연·음주(4.6%)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발달·신체건강 특성의 경우 방임에서 23.0%의 높은 분포가 나타났고 특히 위생이 10.5%로 가장 높았다.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특성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장애	신체적 장애	115	(0.5)	110	(0.5)	7	(0.5)	67	(0.8)	299	(0.5)
	정신적 장애	275	(1.2)	240	(1.0)	36	(2.6)	183	(2.2)	734	(1.3)
	장애 의심	270	(1.2)	247	(1.1)	38	(2.7)	191	(2.3)	746	(1.4)
	소 계	660	(3.0)	597	(2.6)	81	(5.8)	441	(5.3)	1,779	(3.2)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	994	(4.5)	980	(4.3)	35	(2.5)	404	(4.8)	2,413	(4.4)
	과잉행동	560	(2.5)	499	(2.2)	21	(1.5)	155	(1.9)	1,235	(2.2)
	인터넷(게임) 중독	351	(1.6)	307	(1.3)	16	(1.2)	96	(1.2)	770	(1.4)
	불안	1,606	(7.2)	2,079	(9.0)	129	(9.3)	437	(5.2)	4,251	(7.7)
	애착문제	478	(2.2)	555	(2.4)	31	(2.2)	194	(2.3)	1,258	(2.3)
	무력감	429	(1.9)	478	(2.1)	22	(1.6)	170	(2.0)	1,099	(2.0)
	우울	700	(3.2)	850	(3.7)	55	(4.0)	159	(1.9)	1,764	(3.2)
	낮은 자아존중감	591	(2.7)	624	(2.7)	42	(3.0)	139	(1.7)	1,396	(2.5)
	성격 및 기질문제	568	(2.6)	549	(2.4)	22	(1.6)	132	(1.6)	1,271	(2.3)
	탐식 및 결식	113	(0.5)	121	(0.5)	4	(0.3)	166	(2.0)	404	(0.7)
	소 계	6,390	(28.8)	7,042	(30.6)	377	(27.2)	2,052	(24.6)	15,861	(28.9)
	적응·행동	반항·충동·공격성	1,424	(6.4)	1,296	(5.6)	45	(3.2)	241	(2.9)	3,006
거짓말		1,104	(5.0)	936	(4.1)	40	(2.9)	135	(1.6)	2,215	(4.0)
도벽		722	(3.3)	577	(2.5)	8	(0.6)	149	(1.8)	1,456	(2.6)
가출		710	(3.2)	637	(2.8)	45	(3.2)	90	(1.1)	1,482	(2.7)
약물·흡연·음주		941	(4.2)	846	(3.7)	64	(4.6)	98	(1.2)	1,949	(3.5)
성문제		198	(0.9)	173	(0.8)	91	(6.6)	34	(0.4)	496	(0.9)
학교 부적응		765	(3.4)	713	(3.1)	50	(3.6)	215	(2.6)	1,743	(3.2)
찾은 결석, 무단결과		490	(2.2)	458	(2.0)	26	(1.9)	210	(2.5)	1,184	(2.2)
늦은 귀가		689	(3.1)	614	(2.7)	25	(1.8)	105	(1.3)	1,433	(2.6)
학습문제		539	(2.4)	504	(2.2)	25	(1.8)	312	(3.7)	1,380	(2.5)
폭력행동	459	(2.1)	405	(1.8)	12	(0.9)	77	(0.9)	953	(1.7)	

* Brown, J., Cohen, P., Johnson, J. G., & Salzinger, S. (1998). A longitudinal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 Findings of a 17 year prospective study of officially recorded and self-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2(11), 1065-1078.

** 장화정 (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권리연구, 8(4), 777-792.

김수정·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1-28.

특성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적응·행동	비행집단활동	251	(1.1)	215	(0.9)	8	(0.6)	28	(0.3)	502	(0.9)
	불건전한 또래관계	332	(1.5)	272	(1.2)	19	(1.4)	33	(0.4)	656	(1.2)
	대인관계기피	144	(0.6)	153	(0.7)	18	(1.3)	72	(0.9)	387	(0.7)
	소 계	8,768	(39.5)	7,799	(33.8)	476	(34.4)	1,799	(21.6)	18,842	(34.3)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129	(0.6)	156	(0.7)	7	(0.5)	191	(2.3)	483	(0.9)
	언어문제	463	(2.1)	507	(2.2)	28	(2.0)	416	(5.0)	1,414	(2.6)
	영양결핍	43	(0.2)	48	(0.2)	1	(0.1)	123	(1.5)	215	(0.4)
	대소변문제	96	(0.4)	84	(0.4)	5	(0.4)	101	(1.2)	286	(0.5)
	위생문제	294	(1.3)	319	(1.4)	23	(1.7)	872	(10.5)	1,508	(2.7)
	틱(음성, 신체, 뚜렛)	75	(0.3)	77	(0.3)	1	(0.1)	19	(0.2)	172	(0.3)
	잦은 병치레, 허약	95	(0.4)	114	(0.5)	5	(0.4)	83	(1.0)	297	(0.5)
	주요병력	300	(1.4)	272	(1.2)	8	(0.6)	113	(1.4)	693	(1.3)
	소 계	1,495	(6.7)	1,577	(6.8)	78	(5.6)	1,918	(23.0)	5,068	(9.2)
특성없음	4,100	(18.5)	5,065	(22.0)	310	(22.4)	1,840	(22.1)	11,315	(20.6)	
기타*	775	(3.5)	964	(4.2)	63	(4.5)	290	(3.5)	2,092	(3.8)	
계	22,188	(100.0)	23,044	(100.0)	1,385	(100.0)	8,340	(100.0)	54,957	(100.0)	

※중복포함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4-20>과 같이 분석한 결과,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는 80%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관계별 비율 분포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방임 사례의 경우는 부모에게서 발생하는 비율이 86.4%로 압도적인 수치이다. 성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38.8%이며, 대리양육자(19.9%), 타인(19.4%), 기타(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부모		8,875	(81.6)	10,117	(82.5)	292	(38.8)	3,969	(86.4)	23,253	(81.6)
친인척		502	(4.6)	488	(4.0)	74	(9.8)	151	(3.3)	1,215	(4.3)
대리양육자		1,265	(11.6)	1,429	(11.7)	150	(19.9)	297	(6.5)	3,141	(11.0)
타인		44	(0.4)	46	(0.4)	146	(19.4)	4	(0.1)	240	(0.8)
기타**		182	(1.7)	174	(1.4)	82	(10.9)	160	(3.5)	598	(2.1)
파악안됨		7	(0.1)	8	(0.1)	9	(1.2)	11	(0.2)	35	(0.1)
계		10,875	(100.0)	12,262	(100.0)	753	(100.0)	4,592	(100.0)	28,482	(100.0)

※중복포함

* 자살시도, 존속학대, 스마트폰중독 등이 포함.

** 부모의 지인,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등이 포함.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표 4-21>과 같이 분석하였다. 모든 학대유형에서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는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와 양육기술의 부족이 아동학대의 발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여, 올바른 양육태도와 양육기술 습득을 위한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부모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유형에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및 가족갈등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성학대에서는 성문제가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다음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성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신체적 장애		179	(0.7)	223	(0.7)	8	(0.6)	124	(1.0)	534	(0.7)
정신적 장애		103	(0.4)	130	(0.4)	17	(1.2)	137	(1.1)	387	(0.5)
장애의심		194	(0.7)	292	(0.9)	24	(1.7)	253	(2.0)	763	(1.0)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10,645	(39.4)	11,713	(35.2)	377	(26.0)	4,285	(34.2)	27,020	(36.4)
중독문제		1,541	(5.7)	2,352	(7.1)	80	(5.5)	584	(4.7)	4,557	(6.1)
질환문제		384	(1.4)	518	(1.6)	26	(1.8)	207	(1.7)	1,135	(1.5)
성격 및 기질문제		1,852	(6.9)	2,381	(7.1)	69	(4.8)	515	(4.1)	4,817	(6.5)
위생문제		111	(0.4)	168	(0.5)	8	(0.6)	589	(4.7)	876	(1.2)
나태 및 무기력		169	(0.6)	274	(0.8)	3	(0.2)	370	(3.0)	816	(1.1)
난독해, 난작문		12	(0.0)	16	(0.0)	1	(0.1)	13	(0.1)	42	(0.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636	(17.2)	5,724	(17.2)	98	(6.8)	2,695	(21.5)	13,153	(17.7)
어릴 적 학대경험		479	(1.8)	553	(1.7)	9	(0.6)	120	(1.0)	1,161	(1.6)
폭력성		1,235	(4.6)	2,034	(6.1)	52	(3.6)	308	(2.5)	3,629	(4.9)
전과력		121	(0.4)	178	(0.5)	33	(2.3)	62	(0.5)	394	(0.5)
성문제		111	(0.4)	175	(0.5)	288	(19.9)	70	(0.6)	644	(0.9)
원치 않는 아동		128	(0.5)	178	(0.5)	4	(0.3)	101	(0.8)	411	(0.6)
부부 및 가족 갈등		2,565	(9.5)	3,999	(12.0)	77	(5.3)	1,051	(8.4)	7,692	(10.4)
종교문제		49	(0.2)	75	(0.2)	5	(0.3)	67	(0.5)	196	(0.3)
특성없음		2,169	(8.0)	2,026	(6.1)	162	(11.2)	890	(7.1)	5,247	(7.1)
파악 안 됨		315	(1.2)	294	(0.9)	109	(7.5)	100	(0.8)	818	(1.1)
계		26,998	(100.0)	33,303	(100.0)	1,450	(100.0)	12,541	(100.0)	74,292	(100.0)

※중복포함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보를 파악하여 사례를 판단하며, 피해아동의 보호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16년 아동학대로 접수된 18,700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초기 및 최종조치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한 최종조치 결과,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결과를 살펴보았다.

1) 피해아동 조치결과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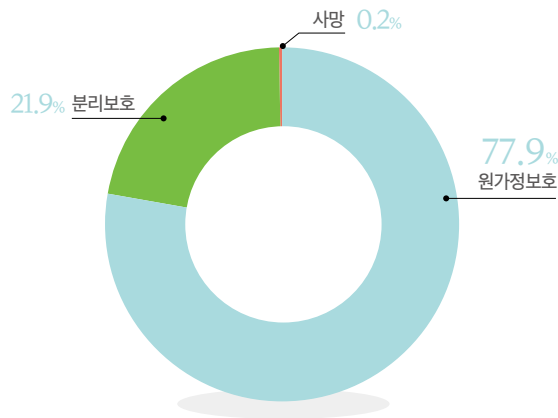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체의 77.9%인 14,5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족 보존의 가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비록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보호자의 의지가 있어 학대재발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를 최소화시켜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다음으로 분리보호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재학대 발생위험이 있거나, 재학대 위험이 높은 학대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취해지고 있다. 피해아동이 분리보호된 경우는 전체의 21.9%인 4,095건이며, 이 중 일시보호 2,325건(12.4%), 친족(친인척)보호 1,179건(6.3%), 장기보호 322건(1.7%), 연고자에 의한 보호 158건(0.8%), 병원입원 104건(0.6%), 가정위탁 7건(0.0%)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조치에서 분리보호된 아동 중에는 친족(친인척)에 의해 보호된 경우가 1,179건(6.3%)이고, 위탁가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경우는 7건(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위탁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최소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1:1 또는 소규모 양육이 가능한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개별 피해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료·보호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정위탁부모의 양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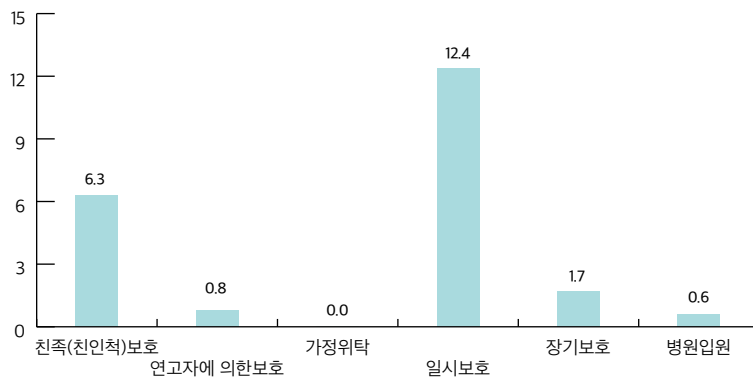
(단위 : 건, %)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친족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14,563 (77.9)	1,179 (6.3)	158 (0.8)	7 (0.0)	2,325 (12.4)	322 (1.7)	104 (0.6)	4,095 (21.9)	42 (0.2)	18,700 (100.0)



<그림 4-16>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



<그림 4-17>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중 분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초기에 조치된 결과가 분리보호인 4,095건의 사례 중 초기 분리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1,184건으로 전체 분리보호 사례수에 약 28.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분리보호된 아동 10명 중 거의 3명은 원가정에 복귀된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는 학대재발의 가능성이 적어야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의 활용 및 지원이 가능할 때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분리보호 후에 분리보호가 지속되거나 가정복귀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이며 5건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학대로 초기 분리보호되었다가 가정에 다시 복귀하는 아동의 수가 분리보호를 지속하는 수에 비해 적은 이유는 초기 조치 이후에도 가정 내에 학대유발요인 및 재학대 위험성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학대유발요인 및 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조건부기소유예,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은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 및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보다 더 효율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구속이나 수사 대상이 아닌 경미한 학대의 경우에도 학대행위자와 비가해보호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분리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된 아동의 경우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고 안정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결망이 구축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표 4-23>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단위 : 건, %)

초기 분리보호 전체건수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건수		초기 분리보호가 지속된 건수	
4,095	(100.0)	1,184	(28.9)	2,906	(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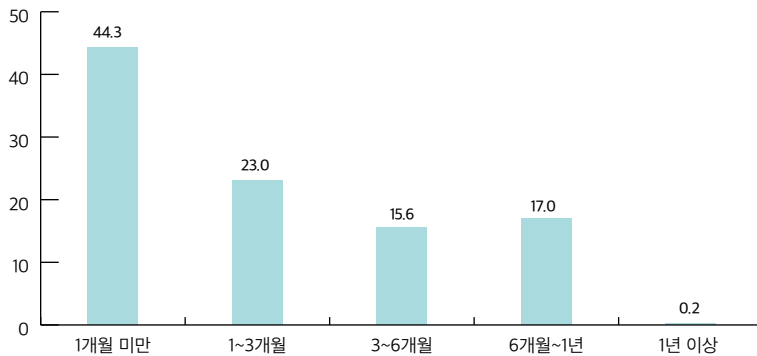
2016년 아동학대 사례 중 초기에 분리보호된 4,095건 가운데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으로 복귀된 1,184건을 바탕으로 복귀시기를 <표 4-24>와 같이 살펴보면, 1개월 이내에 가정복귀한 사례가 524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1개월~3개월 사이는 272건(23.0%), 6개월~1년 사이는 201건(17.0%), 3개월~6개월 사이는 185건(15.6%)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 분리보호 후 1년 이후에 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2건으로 0.2%를 차지했다. 올해에 6개월 이상 분리보호된 건수는 203건(17.2%)이다.

<표 4-24>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단위 : 건, %)

복귀시기	건수(비율)	
초기 분리보호 후 1개월 미만	524	(44.3)
초기 분리보호 후 1개월~3개월	272	(23.0)
초기 분리보호 후 3개월~6개월	185	(15.6)
초기 분리보호 후 6개월~1년	201	(17.0)
초기 분리보호 후 1년 이상	2	(0.2)
계	1,184	(100.0)

(단위 : %)



<그림 4-18>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다음으로 <표 4-25>는 각 지역의 피해아동 발견율에 대비하여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지역별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30.3%, 대전광역시 28.1%, 대구광역시 2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초기 분리보호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북도로 17.5%였으며 경상북도 19.5%, 울산광역시 19.6%로 낮게 나타났다.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해아동 발견율이 4.66%로 가장 높은 지역인 전라북도의 초기 분리보호율은 24.3%로 전국 평균보다 약 2.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피해아동 발견율이 1.17%로 가장 낮은 반면, 초기 분리보호율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비교

(단위 : %, %)

지역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당)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서울특별시	1.55	21.2
부산광역시	1.76	22.7
대구광역시	1.77	26.3
인천광역시	2.32	22.1
광주광역시	1.17	30.3
대전광역시	1.26	28.1
울산광역시	3.18	19.6
경기도	1.85	21.2
강원도	4.01	20.2
충청북도	3.50	17.5
충청남도	1.98	22.6
전라북도	4.66	24.3
전라남도	4.23	22.4
경상북도	2.51	19.5
경상남도	1.93	22.6
제주특별자치도	2.34	21.0
전국평균	2.15	21.9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 망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서울	서울특별시	129	(64.5)	71	(35.5)	0	(0.0)	200	(100.0)
	서울특별시동부	391	(75.5)	127	(24.5)	0	(0.0)	518	(100.0)
	서울강서	165	(71.7)	65	(28.3)	0	(0.0)	230	(100.0)
	서울은평	370	(84.5)	67	(15.3)	1	(0.2)	438	(100.0)
	서울영등포	336	(89.1)	41	(10.9)	0	(0.0)	377	(100.0)
	서울성북	223	(83.5)	44	(16.5)	0	(0.0)	267	(100.0)
	서울마포	173	(72.7)	65	(27.3)	0	(0.0)	238	(100.0)
	서울동남권*	-	-	-	-	-	-	-	-
소 계	1,787	(78.8)	480	(21.2)	1	(0.0)	2,268	(100.0)	
부산	부산광역시	208	(75.4)	67	(24.3)	1	(0.4)	276	(100.0)
	부산동부	230	(75.4)	75	(24.6)	0	(0.0)	305	(100.0)
	부산서부	240	(80.3)	58	(19.4)	1	(0.3)	299	(100.0)
	부산남부**	-	-	-	-	-	-	-	-
소 계	678	(77.0)	200	(22.7)	2	(0.2)	880	(100.0)	
대구	대구광역시	176	(74.6)	59	(25.0)	1	(0.4)	236	(100.0)
	대구남부	227	(76.7)	69	(23.3)	0	(0.0)	296	(100.0)
	대구북부**	134	(65.7)	69	(33.8)	1	(0.5)	204	(100.0)
	소 계	537	(73.0)	197	(26.8)	2	(0.3)	736	(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0월 21일에 개소,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4월 4일에 개소,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0월 26일에 개소,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2월 5일에 개소됨.

*** 2017년 1월 기준으로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단위 : %)

지역 및 기관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 망		계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 망	계	계	계			
인 천	인천광역시	375	(82.1)	77	(16.8)	5	(1.1)	457	(100.0)		
	인천북부	251	(77.7)	72	(22.3)	0	(0.0)	323	(100.0)		
	인천남부	296	(72.2)	114	(27.8)	0	(0.0)	410	(100.0)		
	소 계	922	(77.5)	263	(22.1)	5	(0.4)	1,190	(100.0)		
광 주	광주광역시	214	(67.5)	103	(32.5)	0	(0.0)	317	(100.0)		
	빛고을**	27	(93.1)	2	(6.9)	0	(0.0)	29	(100.0)		
	소 계	241	(69.7)	105	(30.3)	0	(0.0)	346	(100.0)		
대 전	대전광역시	258	(71.9)	101	(28.1)	0	(0.0)	359	(100.0)		
울 산	울산광역시	551	(80.4)	134	(19.6)	0	(0.0)	685	(100.0)		
경 기	경기도	342	(73.7)	122	(26.3)	0	(0.0)	464	(100.0)		
	경기북부	374	(75.6)	119	(24.0)	2	(0.4)	495	(100.0)		
	경기성남	414	(90.8)	41	(9.0)	1	(0.2)	456	(100.0)		
	경기고양	227	(81.9)	50	(18.1)	0	(0.0)	277	(100.0)		
	경기부천	294	(74.6)	93	(23.6)	7	(1.8)	394	(100.0)		
	경기화성	298	(82.3)	64	(17.7)	0	(0.0)	362	(100.0)		
	경기남양주	239	(78.6)	65	(21.4)	0	(0.0)	304	(100.0)		
	안산시	549	(77.0)	164	(23.0)	0	(0.0)	713	(100.0)		
	경기용인	345	(83.5)	67	(16.2)	1	(0.2)	413	(100.0)		
	경기시흥	173	(71.2)	70	(28.8)	0	(0.0)	243	(100.0)		
	경기평택	156	(70.6)	63	(28.5)	2	(0.9)	221	(100.0)		
	수원**	8	(72.7)	3	(27.3)	0	(0.0)	11	(100.0)		
	소 계	3,419	(78.5)	921	(21.2)	13	(0.3)	4,353	(100.0)		
	강 원	강원도	178	(75.4)	56	(23.7)	2	(0.8)	236	(100.0)	
강원동부		178	(85.6)	30	(14.4)	0	(0.0)	208	(100.0)		
강원서부***		168	(72.4)	64	(27.6)	0	(0.0)	232	(100.0)		
강원남부		257	(84.3)	48	(15.7)	0	(0.0)	305	(100.0)		
소 계		781	(79.6)	198	(20.2)	2	(0.2)	981	(100.0)		
충 북	충청북도	443	(80.0)	103	(18.6)	8	(1.4)	554	(100.0)		
	충북북부	245	(89.1)	29	(10.5)	1	(0.4)	275	(100.0)		
	충북남부	85	(71.4)	34	(28.6)	0	(0.0)	119	(100.0)		
	소 계	773	(81.5)	166	(17.5)	9	(0.9)	948	(100.0)		
충 남	충청남도	260	(77.2)	77	(22.8)	0	(0.0)	337	(100.0)		
	충청남도남부	183	(73.2)	67	(26.8)	0	(0.0)	250	(100.0)		
	충청남도서부	192	(81.0)	42	(17.7)	3	(1.3)	237	(100.0)		
	소 계	635	(77.1)	186	(22.6)	3	(0.4)	824	(100.0)		
전 북	전라북도	442	(71.5)	176	(28.5)	0	(0.0)	618	(100.0)		
	전라북도서부	442	(78.0)	124	(21.9)	1	(0.2)	567	(100.0)		
	전라북도동부	210	(80.5)	51	(19.5)	0	(0.0)	261	(100.0)		
	소 계	1,094	(75.7)	351	(24.3)	1	(0.1)	1,446	(100.0)		
전 남	전라남도	284	(83.0)	58	(17.0)	0	(0.0)	342	(100.0)		
	전남서부권	378	(70.9)	155	(29.1)	0	(0.0)	533	(100.0)		
	전남중부권	291	(82.2)	62	(17.5)	1	(0.3)	354	(100.0)		
	소 계	953	(77.5)	275	(22.4)	1	(0.1)	1,229	(100.0)		
경 북	경북남부	121	(81.8)	27	(18.2)	0	(0.0)	148	(100.0)		
	경북북부	268	(91.2)	26	(8.8)	0	(0.0)	294	(100.0)		
	경북동부	308	(75.3)	101	(24.7)	0	(0.0)	409	(100.0)		
	경북서부	140	(74.1)	49	(25.9)	0	(0.0)	189	(100.0)		
	소 계	837	(80.5)	203	(19.5)	0	(0.0)	1,040	(100.0)		
경 남	경상남도	440	(78.0)	121	(21.5)	3	(0.5)	564	(100.0)		
	경남서부	272	(78.8)	73	(21.2)	0	(0.0)	345	(100.0)		
	김해시	167	(72.6)	63	(27.4)	0	(0.0)	230	(100.0)		
	소 계	879	(77.2)	257	(22.6)	3	(0.3)	1,139	(100.0)		

지역 및 기관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 망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150	(78.5)	41	(21.5)	0	(0.0)	191	(100.0)
	서귀포시		68	(80.0)	17	(20.0)	0	(0.0)	85	(100.0)
	소 계		218	(79.0)	58	(21.0)	0	(0.0)	276	(100.0)
계			14,563	(77.9)	4,095	(21.9)	42	(0.2)	18,7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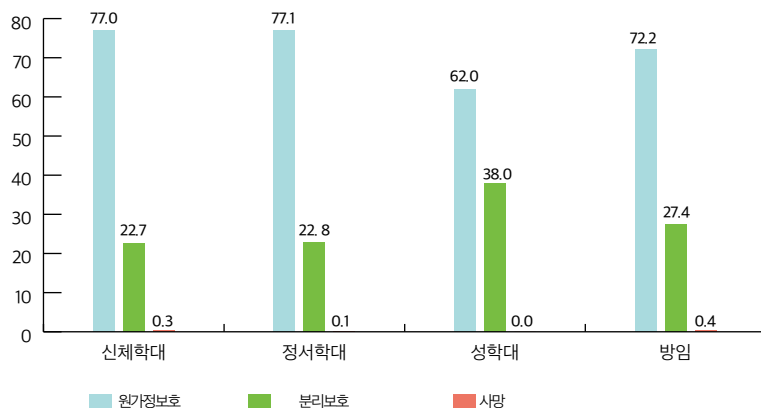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표 4-27>과 같이 살펴보았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초기 조치는 원가정 보호로 각각 77.0%, 77.1%, 72.2%의 높은 수치를 보였고, 성학대 사례의 경우 62.0%의 아동이 원가정에 보호되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최종목표인 가족 보존의 원칙에 따라 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아동이 가정에서 주양육자에 의해 보호되는 원가정보호조치가 바람직할 수 있다. 원가정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사례일 경우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력,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2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초기조치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원가정보호		8,377	(77.0)	9,456	(77.1)	467	(62.0)	3,315	(72.2)	21,615	(75.9)
분리 보호	친족보호	768	(7.1)	896	(7.3)	51	(6.8)	238	(5.2)	1,953	(6.9)
	연고자에 의한 보호	116	(1.1)	112	(0.9)	11	(1.5)	33	(0.7)	272	(1.0)
	가정위탁	4	(0.0)	3	(0.0)	0	(0.0)	2	(0.0)	9	(0.0)
	일시보호	1,385	(12.7)	1,553	(12.7)	194	(25.8)	780	(17.0)	3,912	(13.7)
	장기보호	147	(1.4)	195	(1.6)	23	(3.1)	145	(3.2)	510	(1.8)
	병원입원	45	(0.4)	35	(0.3)	7	(0.9)	59	(1.3)	146	(0.5)
	소 계	2,465	(22.7)	2,794	(22.8)	286	(38.0)	1,257	(27.4)	6,802	(23.9)
사 망		33	(0.3)	12	(0.1)	0	(0.0)	20	(0.4)	65	(0.2)
계		10,875	(100.0)	12,262	(100.0)	753	(100.0)	4,592	(100.0)	28,482	(100.0)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본 절에서는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2016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2016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결과를 뜻한다.

<표 4-28>을 통해 2016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종결 여부를 각 기관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사례 종결 여부를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례 종결 비중은 0%~46.3%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진행 중인 사례의 경우 53.7%~100.0%의 분포를 보였다. 2016년 아동학대사례 18,700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3,041건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하였으며, 계속해서 서비스 지원 등의 개입을 진행하는 사례는 15,659건(83.7%)이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는 사례 10건 중 8건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않고 장기적인 사례관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종결여부	사례종결		진행 중		계	
		건수	(%)	건수	(%)	건수	(%)
서울	서울특별시	8	(4.0)	192	(96.0)	200	(100.0)
	서울특별시동부	47	(9.1)	471	(90.9)	518	(100.0)
	서울강서	20	(8.7)	210	(91.3)	230	(100.0)
	서울은평	29	(6.6)	409	(93.4)	438	(100.0)
	서울영등포	37	(9.8)	340	(90.2)	377	(100.0)
	서울성북	25	(9.4)	242	(90.6)	267	(100.0)
	서울마포	82	(34.5)	156	(65.5)	238	(100.0)
	서울동남권*	-		-		-	
소 계	248	(10.9)	2,020	(89.1)	2,268	(100.0)	
부산	부산광역시	16	(5.8)	260	(94.2)	276	(100.0)
	부산동부	12	(3.9)	293	(96.1)	305	(100.0)
	부산서부	13	(4.3)	286	(95.7)	299	(100.0)
	부산남부**	-		-		-	
소 계	41	(4.7)	839	(95.3)	880	(100.0)	
대구	대구광역시	47	(19.9)	189	(80.1)	236	(100.0)
	대구남부	77	(26.0)	219	(74.0)	296	(100.0)
	대구북부**	27	(13.2)	177	(86.8)	204	(100.0)
	소 계	151	(20.5)	585	(79.5)	736	(100.0)
인천	인천광역시	199	(43.5)	258	(56.5)	457	(100.0)
	인천북부	49	(15.2)	274	(84.8)	323	(100.0)
	인천남부	46	(11.2)	364	(88.8)	410	(100.0)
	소 계	294	(24.7)	896	(75.3)	1,190	(100.0)
광주	광주광역시	89	(28.1)	228	(71.9)	317	(100.0)
	빛고을**	0	(0.0)	29	(100.0)	29	(100.0)
	소 계	89	(25.7)	257	(74.3)	346	(100.0)
대전	대전광역시	14	(3.9)	345	(96.1)	359	(100.0)
울산	울산광역시	210	(30.7)	475	(69.3)	685	(100.0)
경기	경기도	145	(31.3)	319	(68.8)	464	(100.0)
	경기북부	32	(6.5)	463	(93.5)	495	(100.0)
	경기성남	22	(4.8)	434	(95.2)	456	(100.0)
	경기고양	99	(35.7)	178	(64.3)	277	(100.0)
	경기부천	34	(8.6)	360	(91.4)	394	(100.0)

지역 및 기관	종결여부	사례종결		진행 중		계	
		수	(%)	수	(%)	수	(%)
경기	경기화성	60	(16.6)	302	(83.4)	362	(100.0)
	경기남양주	13	(4.3)	291	(95.7)	304	(100.0)
	안산시	72	(10.1)	641	(89.9)	713	(100.0)
	경기용인	39	(9.4)	374	(90.6)	413	(100.0)
	경기시흥	61	(25.1)	182	(74.9)	243	(100.0)
	경기평택	19	(8.6)	202	(91.4)	221	(100.0)
	수원**	0	(0.0)	11	(100.0)	11	(100.0)
	소 계	596	(13.7)	3,757	(86.3)	4,353	(100.0)
강원	강원도	42	(17.8)	194	(82.2)	236	(100.0)
	강원동부	24	(11.5)	184	(88.5)	208	(100.0)
	강원서부***	14	(6.0)	218	(94.0)	232	(100.0)
	강원남부	6	(2.0)	299	(98.0)	305	(100.0)
	소 계	86	(8.8)	895	(91.2)	981	(100.0)
충북	충청북도	179	(32.3)	375	(67.7)	554	(100.0)
	충북북부	72	(26.2)	203	(73.8)	275	(100.0)
	충북남부	6	(5.0)	113	(95.0)	119	(100.0)
	소 계	257	(27.1)	691	(72.9)	948	(100.0)
충남	충청남도	45	(13.4)	292	(86.6)	337	(100.0)
	충청남도남부	48	(19.2)	202	(80.8)	250	(100.0)
	충청남도서부	24	(10.1)	213	(89.9)	237	(100.0)
	소 계	117	(14.2)	707	(85.8)	824	(100.0)
전북	전라북도	72	(11.7)	546	(88.3)	618	(100.0)
	전라북도서부	92	(16.2)	475	(83.8)	567	(100.0)
	전라북도동부	25	(9.6)	236	(90.4)	261	(100.0)
	소 계	189	(13.1)	1,257	(86.9)	1,446	(100.0)
전남	전라남도	75	(21.9)	267	(78.1)	342	(100.0)
	전남서부권	80	(15.0)	453	(85.0)	533	(100.0)
	전남중부권	83	(23.4)	271	(76.6)	354	(100.0)
	소 계	238	(19.4)	991	(80.6)	1,229	(100.0)
경북	경북남부	58	(39.2)	90	(60.8)	148	(100.0)
	경북북부	136	(46.3)	158	(53.7)	294	(100.0)
	경북동부	74	(18.1)	335	(81.9)	409	(100.0)
	경북서부	32	(16.9)	157	(83.1)	189	(100.0)
	소 계	300	(28.8)	740	(71.2)	1,040	(100.0)
경남	경상남도	62	(11.0)	502	(89.0)	564	(100.0)
	경남서부	9	(2.6)	336	(97.4)	345	(100.0)
	김해시	51	(22.2)	179	(77.8)	230	(100.0)
	소 계	122	(10.7)	1,017	(89.3)	1,139	(10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81	(42.4)	110	(57.6)	191	(100.0)
	서귀포시	8	(9.4)	77	(90.6)	85	(100.0)
	소 계	89	(32.2)	187	(67.8)	276	(100.0)
계	3,041	(16.3)	15,659	(83.7)	18,700	(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0월 21일에 개소,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4월 4일에 개소,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0월 26일에 개소,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12월 5일에 개소됨.

*** 2017년 1월 기준으로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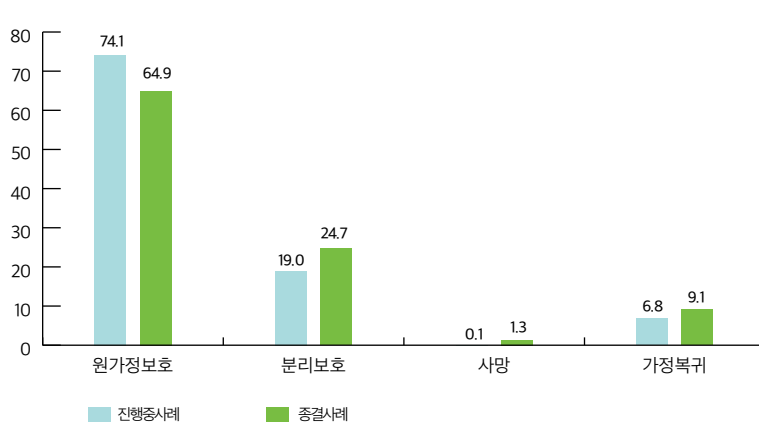
2016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18,700건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았다. 원가정에 보호되는 사례는 13,573건(72.6%)을 기록하였는데, 초기 조치 시 원가정에 보호된 아동이 77.9%인 것을 감안 할 때 다소 낮아진 수치다. 다음으로는 분리보호된 사례가 3,730건(19.9%)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유형으로 살펴보면 친족(친인척) 보호 1,336건(7.1%), 일시보호 1,113건(6.0%), 장기보호 1,085건(5.8%), 연고자에 의한 보호 102건(0.5%), 병원입원 61건(0.3%), 가정위탁 3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에 분리 보호된 이후, 학대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피해아동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데 이는 1,347건(7.2%)에 해당하며, 사망한 경우는 50건(0.3%)이었다.

다음으로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를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로 나누어 보면, 진행 중인 사례 중 원가정에 보호된 사례는 74.1%였고, 종결 사례에서는 다소 감소된 64.9%의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례 중 분리보호된 사례는 19.0%에 해당하고, 반면 종결된 사례에서 분리보호된 사례는 진행 중인 사례보다 약 5.7%포인트가 상승한 24.7%로 나타났다. 분리보호 조치 중에서 진행 중 사례와 종결사례의 가장 큰 비율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장기보호였으며 종결사례가 약 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 사례가 상대적으로 장기보호 비율이 높은 것은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장기적으로 분리한 이후 위험요인이 감소하여 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례를 종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종결여부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사망	가정 복귀	계
		친족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소계			
진행 중 사례	11,599 (74.1)	1,072 (6.8)	82 (0.5)	29 (0.2)	959 (6.1)	781 (5.0)	55 (0.4)	2,978 (19.0)	11 (0.1)	1,071 (6.8)	15,659 (100.0)
종결사례	1,974 (64.9)	264 (8.7)	20 (0.7)	4 (0.1)	154 (5.1)	304 (10.0)	6 (0.2)	752 (24.7)	39 (1.3)	276 (9.1)	3,041 (100.0)
계	13,573 (72.6)	1,336 (7.1)	102 (0.5)	33 (0.2)	1,113 (6.0)	1,085 (5.8)	61 (0.3)	3,730 (19.9)	50 (0.3)	1,347 (7.2)	18,700 (100.0)



(단위 : %)

<그림 4-20>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는 <표 4-30>과 같이 모든 사례유형에서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하는 조치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사례유형 특성상 성학대 사례는 분리보호율이 34.8%로 가장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일시보호조치가 12.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방임 사례에서는 분리보호 유형 중 다른 유형보다 장기보호가 가장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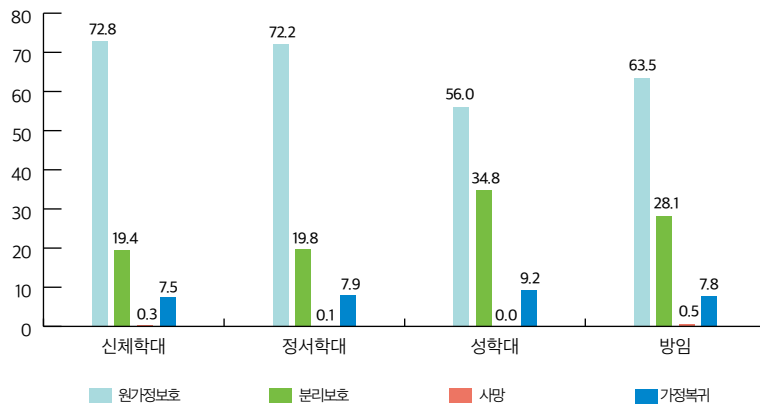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최종조치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원가정보호		7,921	(72.8)	8,849	(72.2)	422	(56.0)	2,918	(63.5)	20,110	(70.6)
분리 보호	친족보호	867	(8.0)	997	(8.1)	73	(9.7)	285	(6.2)	2,222	(7.8)
	연고자에 의한 보호	70	(0.6)	67	(0.5)	12	(1.6)	20	(0.4)	169	(0.6)
	가정위탁	17	(0.2)	18	(0.1)	2	(0.3)	13	(0.3)	50	(0.2)
	일시보호	609	(5.6)	712	(5.8)	92	(12.2)	394	(8.6)	1,807	(6.3)
	장기보호	510	(4.7)	604	(4.9)	76	(10.1)	555	(12.1)	1,745	(6.1)
	병원입원	32	(0.3)	30	(0.2)	7	(0.9)	25	(0.5)	94	(0.3)
	소 계	2,105	(19.4)	2,428	(19.8)	262	(34.8)	1,292	(28.1)	6,087	(21.4)
사망		37	(0.3)	14	(0.1)	0	(0.0)	23	(0.5)	74	(0.3)
가정복귀		812	(7.5)	971	(7.9)	69	(9.2)	359	(7.8)	2,211	(7.8)
계		10,875	(100.0)	12,262	(100.0)	753	(100.0)	4,592	(100.0)	28,482	(100.0)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아동에게 숙식 뿐 만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① 2016년도 피해아동 입·퇴소 현황

<표 4-31>과 같이 2016년에는 전국에 총 53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총 1,030명의 아동을 보호하였다. 이 중 2016년 이전에 입소하여 2016년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의 수는 전체의 17.0%인 175명이었고, 2016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855명(83.0%)이었다.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단위 : 명, %)

	2016년 이전 입소아동	2016년 입소아동	총 보호아동
아동 수	175(17.0)	855(83.0)	1,030(100.0)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을 <표 4-32>와 같이 살펴보면 2016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1,030명 중 퇴소한 아동은 75.9%인 782명이었고,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248명(24.1%)이었다. 작년과 비교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통해 보호를 받은 아동 수가 약 24.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단위 : 명, %)

	퇴소아동	재원 아동	총 보호아동
아동 수	782(75.9)	248(24.1)	1,03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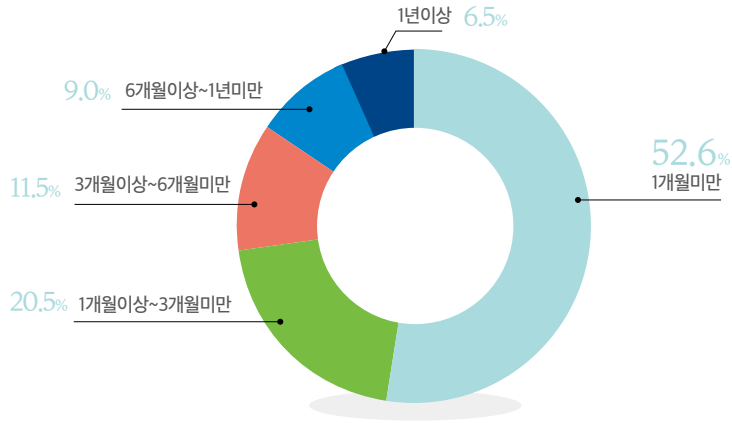
② 2016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2016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총 782명을 대상으로 퇴소 아동들의 거주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의 학대 피해상황과 특성에 따라 거주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1개월 미만으로 거주한 아동은 전체의 52.6%에 해당하는 411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0명(20.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90명(11.5%), 6개월 이상~1년 미만 70명(9.0%), 1년 이상 51명(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단위 : 명, %)

거주기간	명수(비율)	
1개월 미만	411	(52.6)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60	(20.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90	(11.5)
6개월 이상 ~ 1년 미만	70	(9.0)
1년 이상	51	(6.5)
계	782	(100.0)



<그림 4-22>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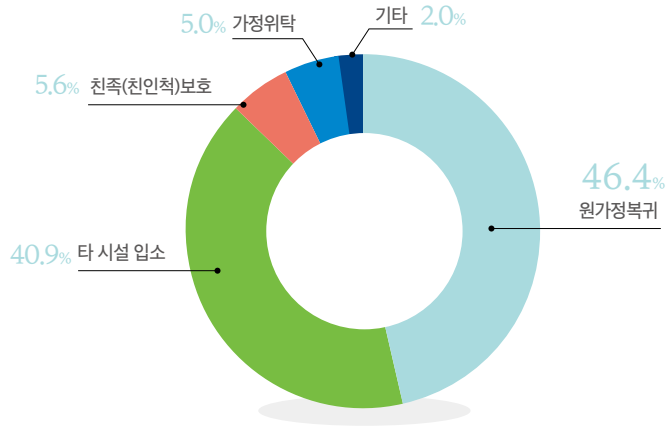
③ 2016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지

2016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전체 782명을 대상으로 <표 4-34>와 같이 살펴본 결과 원가정 복귀 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원가정 복귀는 아동의 학대 위험 상황의 제거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타 시설 입소는 320명(40.9%)으로 나타났는데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나 장애, 영유아 등의 특성이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타 시설로 입소가 되고 있다. 학대행위자가 부모일 때 다른 부모에 의한 보호를 포함한 친족(친인척)보호는 44명(5.6%)이며, 가정위탁은 39명(5.0%)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조부모), 친인척, 일반 가정위탁이 이루어졌다. 기타는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6명(2.0%)이 병원, 연고자보호, 자립, 가출 등의 사유로 퇴소함을 의미한다.

<표 4-3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단위 : 명, %)

퇴소 후 거주지	명수(비율)	
원가정 복귀	363	(46.4)
친족(친인척)보호	44	(5.6)
가정위탁	39	(5.0)
타 시설 입소	320	(40.9)
기타	16	(2.0)
계	782	(100.0)



<그림 4-23> 학대피해아동심터 퇴소 아동 거주지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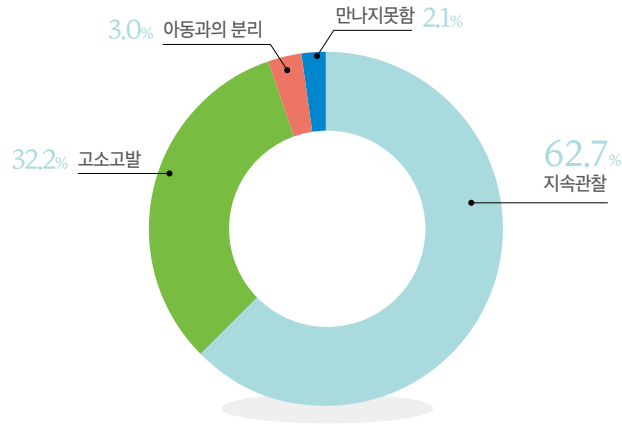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표 4-35>와 같이 살펴보았다. 최종조치결과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와 마찬가지로 2016년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 중 당해 연도 가장 마지막 차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속관찰로 총 11,733건(62.7%)이었다. 지속관찰은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연계기관과 협조적 관계에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고소·고발·사건처리는 고소 및 고발과 수사의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로 6,018건(32.2%)이었다. 고소·고발·사건처리에서 고소·고발 조치된 경우는 4,276건이었으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1,742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학대행위자가 아동과 분리된 사례는 560건(3.0%)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389건(2.1%)으로 행방불명, 수감, 개입거부, 사망 등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표 4-3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11,733 (62.7)	560 (3.0)	6,018 (32.2)	389 (2.1)	18,700 (100.0)



<그림 4-24>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표 4-36>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이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 사례에 대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로 지속관찰이 60% 이상인 반면, 성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로 고소·고발·사건처리가 80.2%로 가장 높았다. 또한 고소·고발·사건처리는 신체학대에서 34.7%, 정서학대에서 30.6%, 방임에서 30.7%였으며 2014년에 순서대로 949건(16.7%), 866건(14.0%), 311건(9.9%)에 불과하던 비율이 약 두 배 이상씩 상승하였다. 특히 2014년과 비교했을 때 학대유형 중 고소·고발·사건처리 비율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방임이었다. 이는 신체적 가해에 집중되어 있던 학대의 의미에서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학대에 속한다는 인식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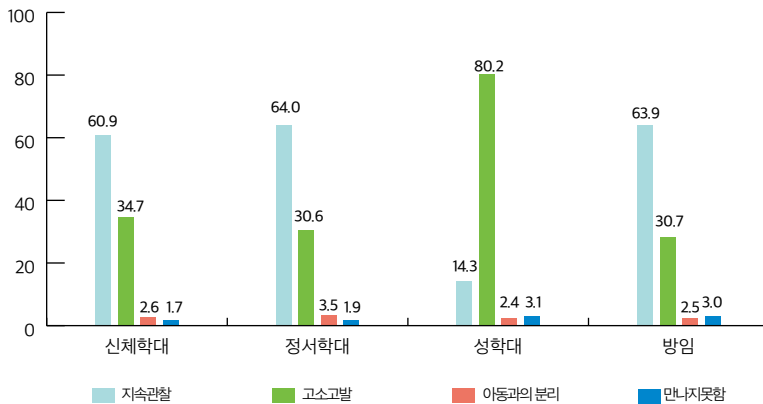
<표 4-3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조치결과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지속관찰	6,626	(60.9)	7,848	(64.0)	108	(14.3)	2,934	(63.9)	17,516	(61.5)
고소·고발·사건처리	3,777	(34.7)	3,754	(30.6)	604	(80.2)	1,409	(30.7)	9,544	(33.5)
아동과의 분리	288	(2.6)	433	(3.5)	18	(2.4)	113	(2.5)	852	(3.0)
만나지 못함	184	(1.7)	227	(1.9)	23	(3.1)	136	(3.0)	570	(2.0)
계	10,875	(100.0)	12,262	(100.0)	753	(100.0)	4,592	(100.0)	28,482	(100.0)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4-2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표 4-37>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 건수

(단위 : 건)

고소·고발 조치 건수	사건처리 조치 건수
4,276	1,742

2016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18,700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은 6,018건으로 전체의 32.2%에 해당하였다.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 중 고소·고발 조치의 경우는 4,276건이었으며, 수사의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1,742건이었다. 해당 분석은 학대행위자의 고소·고발 조치에 대한 분석으로 전체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의 6,018건 중 사건처리 조치 1,742건을 제외한 4,276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소·고발된 사례에 대하여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진행중 및 판결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자료에서 경찰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수사와 법원으로 송치된 사례는 경찰수사의 고소·고발 통계 자료에서 집계하지 않았으며, 검찰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기소된 사례는 검찰수사 통계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대행위자를 고소·고발한 4,276건 중 경찰수사만 이루어진 사례는 794건(18.6%)으로 파악되었다.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523건(12.2%), 내사종결된 사례는 271건(6.3%)이었다.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사례 중 수사 진행 중인 사례는 352건(8.2%), 불기소된 사례는 593건(13.9%), 아동보호송치사건은 296건(6.9%), 형사기소는 61건(1.4%), 가정보호송치사건은 54건(1.3%)으로 집계되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 589건 중 1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484건(11.3%),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78건(1.8%), 상고심(최종)이 진행 중인 사례는 27건(0.6%)이었다. 이처럼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지금까지 경찰 및 검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례가 2,739건으로 전체 고소·고발 사례

의 64.1%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고, 고소·고발되어 1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사례에서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의 인지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1,535건으로 전체의 35.9%에 해당한다. 이중 보안처분 사례는 799건(18.7%), 형사처분 사례가 376건(8.8%),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집행된 사례가 157건(3.7%), 불처분 등의 기타 판결은 203건(4.7%)으로 집계되었다. 보안처분 중에서 상담위탁이 331건(7.7%)으로 가장 많았고, 수감명령 164건(3.8%), 보호관찰 131건(3.1%) 순으로 높았다. 형사처분 중에서는 벌금형이 180건(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징역형이 97건(2.3%), 집행유예가 52건(1.2%)이었다.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집행된 사례 중에서는 집행유예과 사회봉사가 함께 집행된 사례가 46건(1.1%)으로 가장 많았다.

<표 4-38>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단위 : 건, %)

구분		건수		
경찰수사	수사중	523	(12.2)	
	내사종결	271	(6.3)	
	소 계	794	(18.6)	
검찰수사	수사중	352	(8.2)	
	불기소	593	(13.9)	
	아동보호송치사건	296	(6.9)	
	가정보호송치사건	54	(1.3)	
	형사기소	61	(1.4)	
	소 계	1,356	(31.7)	
재판진행중	1심 진행	484	(11.3)	
	항소심 진행	78	(1.8)	
	상고심 진행	27	(0.6)	
	소 계	589	(13.8)	
판결	보안처분	접근행위제한	49	(1.1)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4	(0.1)
		사회봉사	98	(2.3)
		수감명령	164	(3.8)
		보호관찰	131	(3.1)
		치료위탁	9	(0.2)
		상담위탁	331	(7.7)
		친권행사제한	2	(0.0)
		파악안됨	1	(0.0)
	기타	10	(0.2)	
		소 계	799	(18.7)
	형사처벌	무죄	33	(0.8)
		금고	2	(0.0)
		징역	97	(2.3)
		벌금	180	(4.2)
집행유예		52	(1.2)	
선고유예		11	(0.3)	
파악안됨		1	(0.0)	
	소 계	376	(8.8)	

		구 분	건 수		
판결	형사처벌+보안처분	징역+사회봉사	5	(0.1)	
		징역+수감명령	28	(0.7)	
		징역+상담위탁	2	(0.0)	
		징역+기타	19	(0.4)	
		징역+보호관찰	0	(0.0)	
		벌금+수감명령	3	(0.1)	
		벌금+상담위탁	2	(0.0)	
		벌금+기타	2	(0.0)	
		집행유예+사회봉사	46	(1.1)	
		집행유예+수감명령	28	(0.7)	
		집행유예+보호관찰	14	(0.3)	
		집행유예+상담위탁	5	(0.1)	
		집행유예+기타	2	(0.0)	
		몰수+기타	0	(0.0)	
		파약안됨+보호관찰	1	(0.0)	
		소 계		157	(3.7)
		기타		203	(4.7)
소 계		1,535	(35.9)		
파약안됨		2	(0.0)		
계		4,276	(100.0)		

고소·고발된 아동학대사례를 학대 유형별로 <표 4-39>와 같이 분석한 결과, 고소·고발 조치가 가장 많이 취해진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로 총 2,029건(47.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 741건(17.3%), 정서학대 591건(13.8%), 방임 558건(13.0%), 성학대 357건(8.4%)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1,665건(38.9%)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107건(2.5%)이었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의 경우 보안처분이 18.9%로 다른 판결 결과보다 높았고, 정서학대도 보안처분이 18.6%로 다른 판결 결과보다 높았다. 그러나 성학대의 경우는 형사처벌과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각각 12.3%, 10.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방임의 경우도 형사처벌이 26.9%로 다른 판결 결과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중복학대의 경우는 보안처분이 20.3%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결과

(단위 : 건, %)

고소·고발 결과 유형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 진행중	판결						파약안됨	계
				보안처분	형사처벌	보안처분+ 형사처벌	무죄	기타	소 계		
신체학대	152 (20.5)	258 (34.8)	82 (11.1)	140 (18.9)	32 (4.3)	17 (2.3)	1 (0.1)	58 (7.8)	248 (33.5)	1 (0.1)	741 (100.0)
정서학대	126 (21.3)	204 (34.5)	86 (14.6)	110 (18.6)	28 (4.7)	14 (2.4)	4 (0.7)	19 (3.2)	175 (29.6)	0 (0.0)	591 (100.0)
성학대	94 (26.3)	101 (28.3)	64 (17.9)	7 (2.0)	44 (12.3)	39 (10.9)	2 (0.6)	5 (1.4)	97 (27.2)	1 (0.3)	357 (100.0)
방 임	67 (12.0)	115 (20.6)	59 (10.6)	131 (23.5)	150 (26.9)	5 (0.9)	19 (3.4)	12 (2.2)	317 (56.8)	0 (0.0)	558 (100.0)

유형	고소·고발 결과	경찰수사	재판 진행중	판결						파악안됨	계	
				보안처분	형사처벌	보안처분+ 형사처벌	무죄	기타	소 계			
중 복 학 대	신체·정서	299 (18.0)	562 (33.8)	212 (12.7)	360 (21.6)	67 (4.0)	66 (4.0)	6 (0.4)	93 (5.6)	592 (35.6)	0 (0.0)	1,665 (100.0)
	신체·성	1 (6.7)	4 (26.7)	4 (26.7)	1 (6.7)	1 (6.7)	3 (20.0)	0 (0.0)	1 (6.7)	6 (40.0)	0 (0.0)	15 (100.0)
	신체·방임	10 (21.7)	10 (21.7)	7 (15.2)	10 (21.7)	7 (15.2)	1 (2.2)	1 (2.2)	0 (0.0)	19 (41.3)	0 (0.0)	46 (100.0)
	정서·성	10 (18.2)	31 (56.4)	6 (10.9)	4 (7.3)	3 (5.5)	0 (0.0)	0 (0.0)	1 (1.8)	8 (14.5)	0 (0.0)	55 (100.0)
	정서·방임	14 (14.9)	25 (26.6)	34 (36.2)	11 (11.7)	1 (1.1)	1 (1.1)	0 (0.0)	8 (8.5)	21 (22.3)	0 (0.0)	94 (100.0)
	성·방임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신체·정서·성	8 (20.5)	12 (30.8)	7 (17.9)	4 (10.3)	4 (10.3)	4 (10.3)	0 (0.0)	0 (0.0)	12 (30.8)	0 (0.0)	39 (100.0)
	신체·정서·방임	11 (10.3)	31 (29.0)	26 (24.3)	21 (19.6)	6 (5.6)	6 (5.6)	0 (0.0)	6 (5.6)	39 (36.4)	0 (0.0)	107 (100.0)
	정서·성·방임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신체·정서·성·방임	2 (33.3)	2 (33.3)	1 (16.7)	0 (0.0)	0 (0.0)	1 (16.7)	0 (0.0)	0 (0.0)	1 (16.7)	0 (0.0)	6 (100.0)
	소계	355 (17.5)	678 (33.4)	298 (14.7)	411 (20.3)	89 (4.4)	82 (4.0)	7 (0.3)	109 (5.4)	698 (34.4)	0 (0.0)	2,029 (100.0)
	계	794 (18.6)	1,356 (31.7)	589 (13.8)	799 (18.7)	343 (8.0)	157 (3.7)	33 (0.8)	203 (4.7)	1,535 (35.9)	2 (0.0)	4,276 (100.0)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본 절에서는 2016년 아동학대사례 중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조치 현황을 집계하였다. 2016년도 아동학대사례는 18,700건이며, 이 중 1,913건(10.2%)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되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례에 한정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추후 조치의 적정 비율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논의가 필요하다.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18,700	1,913	10.2

가.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이다. 응급조치 1호는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 대해 아동학대행위를 가하고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이고, 2호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대행위자를 최장 72시간 동안 피해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

* 2016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는 미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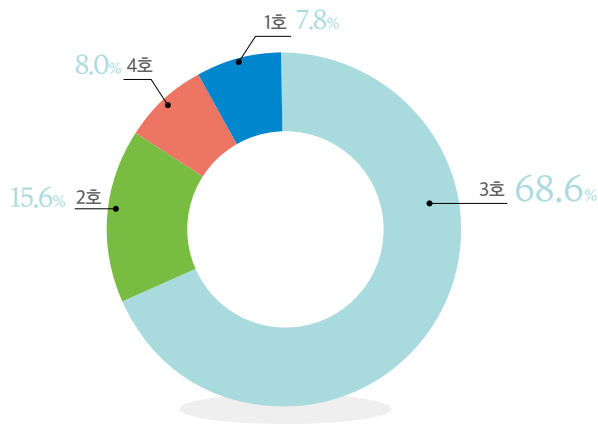
이다. 3호는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이고, 마지막 4호는 긴급 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이다. 응급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2016.5.29.)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필요시에 피해아동에 대한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강화하였다.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을 <표 4-41>과 같이 살펴보면, 상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979건(75.2%),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322건(24.8%)으로 실건수가 총 1,301건이었다. 응급조치 내용 중 상담원이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가 902건(77.6%)이었고, 다음으로 2호(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 115건(9.9%), 4호(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99건(8.5%), 1호(학대행위 제지) 47건(4.0%)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가 71.5%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이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상담원과 마찬가지로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270건(49.5%)이었다. 다음으로 2호(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는 152건(27.8%)으로 상담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호(학대행위 제지) 87건(15.9%), 4호(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37건(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단위 : 건, %)

분류	실건수		조치 내용									
			1호		2호		3호		4호		총계 (중복집계)	
상담원	979	(75.2)	47	(4.0)	115	(9.9)	902	(77.6)	99	(8.5)	1,163	(100.0)
경찰	322	(24.8)	87	(15.9)	152	(27.8)	270	(49.5)	37	(6.8)	546	(100.0)
총계	1,301	(100.0)	134	(7.8)	267	(15.6)	1,172	(68.6)	136	(8.0)	1,709	(100.0)

-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3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그림 4-26>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나. 긴급임시조치 현황

긴급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는 응급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본인·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자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긴급하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의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임시조치 1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하는 조치이고,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로 접근금지 장소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3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이다.

<표 4-42>를 살펴보면, 긴급임시조치 총 실건수는 총 51건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의 직권으로 41건이 청구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7건을 경찰에 신청하여 2건이 결정되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3건을 경찰에 신청하여 2건이 결정되었다. 가장 많은 조치가 결정된 조치는 2호(100m 이내 접근금지)로 45건(40.5%)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1호(퇴거 등 격리)가 36건(32.4%), 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가 30건(27.0%) 순으로 나타났다.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조치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 외 기타 장소로 중복 집계 가능하여 해당 조치를 따로 살펴보면, 주거가 38건(34.2%)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이 각각 36건(32.4%), 17건(15.3%), 병원과 기타장소는 각각 10건(9.0%)으로 집계되었다. 긴급임시조치의 결정 실건수는 51건이지만, 총 중복집계 건수는 111건으로 2~3개의 조치를 동시에 신청하고 또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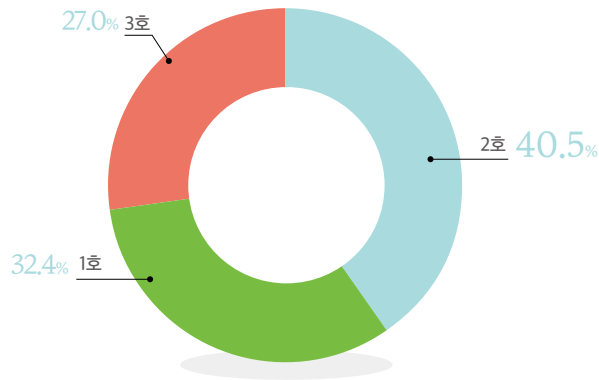
<표4-42> 긴급임시조치 현황

(단위: 건, %)

신청자	신청 실건수	결정 건수	취소 건수	총 실건수	1호	2호*							3호	총계 (중복 집계)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포함)	소계 (중복제외)		
경찰 직권	-	39	2	41	32 (33.0)	36 (35.6)	32 (31.7)	15 (14.9)	10 (9.9)	8 (7.9)	101 (100.0)	39 (40.2)	26 (26.8)	97 (100.0)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7	2	5	7	2 (25.0)	2 (28.6)	3 (42.9)	1 (14.3)	0 (0.0)	1 (14.3)	7 (100.0)	4 (50.0)	2 (25.0)	8 (100.0)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3	2	1	3	2 (33.3)	0 (0.0)	1 (33.3)	1 (33.3)	0 (0.0)	1 (3.3)	3 (100.0)	2 (33.3)	2 (33.3)	6 (100.0)
총계	10	43	8	51	36 (32.4)	38 (34.2)	36 (32.4)	17 (15.3)	10 (9.0)	10 (9.0)	111 (100.0)	45 (40.5)	30 (27.0)	111 (100.0)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학교 및 학원·보호시설·병원·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그림 4-27> 긴급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다. 임시조치 현황

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이다. 임시조치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하고, 검사의 직권 또는 청구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과 검사에게 각각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과 임시조치 청구요청을 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상세 내용으로 1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이고, 3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이다. 4호는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6호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마지막 7호는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이다.

먼저 임시조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와 무관하게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청구신청에 의해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이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필요적으로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한 경우이다. 제14조 임시조치 시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검사에게 청구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조치가 청구신청(요청)되거나 청구요청 또는 청구되어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실건수는 총 1,776건이다. 이 중 제15조 임시조치로 진행된 사례는 전체 70.9%에 해당하는 1,260건이었고, 제14조 임시조치가 진행된 것은 516건(29.1%)으로 제15조 임시조치가 2.4배가량 높게 진행되고 있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제14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516건으로 81.7%증가하였고, 제15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약 49.1%증가하였다.

<표 4-43> 제14조 임의적 임시조치와 제15조 필요적 임시조치 실건수

(단위 : 건, %)

	제14조 임의적 임시조치	제15조 필요적 임시조치	실건수 총계
실건수	516(29.1)	1,260(70.9)	1,776(100.0)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에 의한 임시조치 청구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조치가 취해진 1,301건 중에서 임시조치 청구신청이 진행된 사례는 1,260건이고, 임시조치 청구신청이 진행되지 않은 사례는 41건으로 응급조치 후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율은 96.8%로 나타났다.

<표 4-44>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 현황

(단위 : 건, %)

응급조치건수	제15조 임시조치 청구 미신청 건수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 건수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율
1,301	41	1,260	96.8

2016년 신고접수된 사례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검색일자 기준(2017년 5월 23일)에 해당하는 단계(청구신청·청구·결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①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 현황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직권으로 임시조치 청구신청한 사례는 총 462건이고, 350건(75.8%)은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 되었으며, 112건(24.2%)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청구신청 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청구신청(요청)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309건(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호(상담 및 교육 위탁)가 242건(27.2%),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 205건(2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5>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 현황

(단위 : 건, %)

절차 분류	거부 실건수	결정 실건수	총 실건수	세부 내용													결정 총계 (중복집계)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1호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집계)	소계 (중복집계)								
청구신청 (요청)	112 (24.2)	350 (75.8)	462 (100.0)	85 (9.6)	174 (29.3)	195 (32.9)	194 (32.7)	16 (2.7)	14 (2.4)	593 (100.0)	309 (34.8)	205 (23.1)	31 (3.5)	242 (27.2)	16 (1.8)	1 (0.1)	889 (100.0)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임시조치 청구(요청) 현황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신청 한 경우 또는 검사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를 모두 총합하면 359건이고, 이 중 325건(90.5%)은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었으며, 34건(9.5%)은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 요청 및 청구신청을 거부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요청)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262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호(상담 및 교육 위탁) 196건(26.3%),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 167건(22.4%) 순으로 나타났다. 7호(유치장 또는 구치소외의 유치)의 경우 단 한건도 없었다.

<표 4-46> 임시조치 청구(요청) 현황

(단위 : 건, %)

절차 분류	거부 실건수	청구 실건수	총 실건수	세부 내용													결정 총계 (중복집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집계)	소계 (중복제외)							
청구 (요청)	34 (9.5)	325 (90.5)	359 (100.0)	72 (9.7)	151 (30.5)	165 (33.3)	161 (32.5)	9 (1.8)	9 (1.8)	495 (100.0)	262 (35.2)	167 (22.4)	31 (4.2)	196 (26.3)	17 (2.3)	0 (0.0)	745 (100.0)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외의 유치

③ 임시조치 결정 현황

판사 직권 또는 법원으로 임시조치가 청구되어 결정된 사례는 총 970건으로 98.2%에 해당하고, 검사가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례는 18건(1.8%)이었다. 먼저 임시조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가 766건(3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조치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 외 기타 장소로 중복 집계 가능하다. 이 중 보호시설로의 접근금지가 526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거로의 접근금지가 453건(30.2%), 학교 및 학원으로의 접근금지가 451건(30.1%)으로 높은 분포들을 보였다. 2호를 제외하고 5호(상담 및 교육 위탁)가 583건(26.4%), 3호(전기통신 접근금지)가 477건(21.6%)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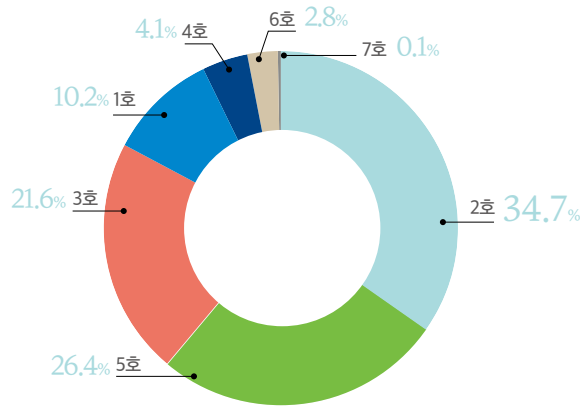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45조에 따라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결정에 앞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임시조치 항고 결정된 사례는 없으며 기각된 사례는 3건으로 100.0% 기각되었다.

<표 4-47> 임시조치 결정 현황

(단위 : 건, %)

절차 분류	거부 실건수	결정 실건수	총 실건수	세부 내용													결정 총계 (중복집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병원	기타	소계 (중복집계)	소계 (중복제외)						
법원결정	18 (1.8)	970 (98.2)	988 (100.0)	226 (10.2)	453 (30.2)	451 (30.1)	526 (35.1)	34 (2.3)	34 (2.3)	1,498 (100.0)	766 (34.7)	477 (21.6)	90 (4.1)	583 (26.4)	61 (2.8)	2 (0.1)	2,205 (100.0)
항고결정	3 (100.0)	0 (0.0)	3 (100.0)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2 (100.0)	2 (22.2)	2 (22.2)	2 (33.3)	3 (33.3)	0 (0.0)	0 (0.0)	9 (100.0)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그림 4-28>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표 4-48>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결정 건수

(단위 : 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건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건수
368	237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학교 및 학원·보호시설·병원·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은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호~9호까지의 조치가 있는데, 1~3호까지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1호는 피해아동 주거지 또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이다. 4호~6호까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 4호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호는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호는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하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7~9호는 학대행위자가 아동에 대해 갖는 권한에 대한 조치로 7호는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호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호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조치이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판사가 인정하는 때에 임시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1~9호 중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에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될 때까지이고,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아동의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여 청구한 건수는 총 368건 중 340건으로 무려 92.4%에 해당하였고, 임시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건수는 28건(7.6%)이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가 총 288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호(보호위탁) 279건(27.8%), 3호(전기통신 접근 제한) 248건(2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변호사는 주로 2호, 3호, 4호, 7호 조치를 주로 청구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세부내용에 따른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2호, 3호 조치 청구비율이 높았으나 1호, 4호, 5호, 8호, 9호 조치는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표 4-49>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단위 : 건, %)

청구인	임시보호 필요	임시보호 불필요	청구 실건수	세부 내용										총계 (중복집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280	26	306	12 (1.4)	237 (28.6)	205 (24.8)	236 (28.5)	4 (0.5)	29 (3.5)	81 (9.8)	9 (1.1)	15 (1.8)	828 (100.0)	
변호사	54	1	55	5 (3.2)	44 (27.8)	36 (22.8)	43 (27.2)	2 (1.3)	8 (5.1)	18 (11.4)	0 (0.0)	2 (1.3)	158 (100.0)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5	0	5	0 (0.0)	5 (35.7)	5 (35.7)	0 (0.0)	0 (0.0)	2 (14.3)	2 (14.3)	0 (0.0)	0 (0.0)	14 (100.0)	
아동본인	1	1	2	0 (0.0)	2 (50.0)	2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00.0)	
총계	340	28	368	17 (1.7)	288 (28.7)	248 (24.7)	279 (27.8)	6 (0.6)	39 (3.9)	101 (10.1)	9 (0.9)	17 (1.7)	1,004 (100.0)	

-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②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임시보호명령 청구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건수는 203건으로 나타났고, 임시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한 건수는 22건이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신청 건수인 368건에 비해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건수는 237건으로 64.4%에 해당하였다. 결정 현황에 속하지 않은 건수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하여 결정된 건수는 총 157건 중 기각된 30건을 제외하고 127건(80.9%)이었다. 변호사는 25건을 청구하여 21건(84.0%)이 결정되었다. 판사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된 건수는 50건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2건을 청구하여 1건은 기각되고 1건은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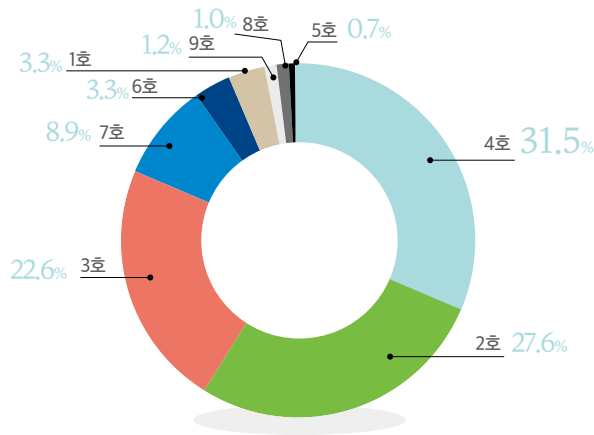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4호(피해아동 보호위탁)가 총 184건(3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호(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161건(27.6%), 3호(전기통신 접근제한) 132건(22.6%), 7호(친권 제한 또는 정지) 52건(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0>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단위 : 건, %)

청구인	결정 실건수	기각 실건수	총 실건수	임시 보호 결정	임시 보호 기각	결정 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총계 (중복집계)
판사 직권	50	3	53	43	5	8 (6.0)	37 (27.8)	23 (17.3)	46 (34.6)	2 (1.5)	3 (2.3)	12 (9.0)	1 (0.8)	1 (0.8)	133 (100.0)
아동보호전문 기관장	127	30	157	139	10	8 (2.0)	109 (27.3)	96 (24.0)	122 (30.5)	2 (0.5)	13 (3.3)	39 (9.8)	5 (1.3)	6 (1.5)	400 (100.0)
변호사	21	4	25	17	7	3 (6.4)	13 (27.7)	11 (23.4)	16 (34.0)	0 (0.0)	3 (6.4)	1 (2.1)	0 (0.0)	0 (0.0)	47 (100.0)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1	1	2	4	0	0 (0.0)	2 (50.0)	2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00.0)
총계	199	38	237	203	22	19 (3.3)	161 (27.6)	132 (22.6)	184 (31.5)	4 (0.7)	19 (3.3)	52 (8.9)	6 (1.0)	7 (1.2)	584 (100.0)

-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그림 4-29>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5. 서비스 제공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는 개별상담·집단상담·기관상담을 포함하는 상담서비스, 검진 및 검사, 입원치료·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미술치료·놀이치료 등을 포함하는 심리치료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공적지원 연결을 포함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일시보호서비스,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또한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 유예,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그리고 차량이동서비스, 관련 서류 발급 지원 등을 포함하는 기타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당해 연도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 뿐만 아니라 2016년도 이전 신고사례 중 장기개입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도 연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접수 시점에 따라 2016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6년 신고사례, 그리고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후관리는 아동복지법 제28조에 의거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족의 안정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표 4-51>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 회)

구분	2016년 전체 서비스
피해아동	640,378
학대행위자	193,633
부모 또는 가족	194,931
계	1,028,942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2016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총 640,378회이다. <표 4-52>에서 2016년 이전 신고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272,746회이며, 2016년 신고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367,632회로 집계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16년 이전과 당해 연도 사례에서 상담서비스가 각각 142,391회(52.2%), 179,767회(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유형 중에서 상담서비스 중 개별상담과 기관상담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6년 이전 신고사례는 개별상담 52,812회(19.4%), 기관상담 84,223회(30.9%)가 제공되었으며, 2016년 신고사례의 경우 개별상담 57,059회(15.5%), 기관상담

119,151회(32.4%)가 피해아동들에게 제공되었다. 개별상담과 기관상담의 경우 2016년 신고사례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보호서비스는 2016년 이전 신고사례, 2016년 신고사례에 대해 각각 70,394회(25.8%), 119,484회(32.5%)로 상담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치료서비스는 각각 29,600회(10.9%), 27,052회(7.4%)로 나타났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각각 8,467회(3.1%), 9,226회(2.5%)로 다른 서비스 제공 유형과 비교했을 때 신고 시점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큰 차이가 없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은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표4-52>는 피해아동에게 실시한 서비스 제공 건수를 반영하였다. 2016년 이전 신고사례의 경우 12건, 2016년 신고사례의 경우 44건이 진행되었으며 피해아동에게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상담 등이 제공되었다.

<표 4-52>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단위 : 회, %)

서비스	신고시점	2016년 이전 신고사례		2016년 신고사례	
		회	(%)	회	(%)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52,812	(19.4)	57,059	(15.5)
	집단상담	1,612	(0.6)	1,159	(0.3)
	기관상담	84,223	(30.9)	119,151	(32.4)
	주변인상담	3,744	(1.4)	2,398	(0.7)
	소 계	142,391	(52.2)	179,767	(48.9)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293	(0.1)	809	(0.2)
	입원치료	5,041	(1.8)	2,680	(0.7)
	통원치료	569	(0.2)	665	(0.2)
	소 계	5,903	(2.2)	4,154	(1.1)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1,206	(0.4)	2,932	(0.8)
	심리치료	28,394	(10.4)	24,120	(6.6)
	소 계	29,600	(10.9)	27,052	(7.4)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7,638	(2.8)	8,020	(2.2)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524	(0.2)	825	(0.2)
	공적지원연결	305	(0.1)	381	(0.1)
	소 계	8,467	(3.1)	9,226	(2.5)
일시보호서비스		70,394	(25.8)	119,484	(32.5)
사건처리지원서비스		6,837	(2.5)	17,058	(4.6)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0	(0.0)	18	(0.0)
	조건부기소유예	0	(0.0)	0	(0.0)
	보호처분	12	(0.0)	26	(0.0)
	소 계	12	(0.0)	44	(0.0)
기타		9,142	(3.4)	10,847	(3.0)
계		272,746	(100.0)	367,632	(100.0)
총계		640,378			

※중복포함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피해아동에게 지원된 서비스는 총 640,378회로 2016년 기준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되어 사후관리 중인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진행 중인 사례는 596,010회, 사후관리 중인 사례는 44,368회로 사례 진행 중인 사례를 대상으로 지원된 서비스가 약 13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53>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가 각각 48.8%, 7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례진행 중 보다 사후관리 아동에게 상담서비스가 더 많은 비중으로 제공되었다. 상담서비스 중에서도 기관상담, 개별상담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시보호서비스는 진행 중 사례에서는 189,878회(31.9%)로 높은 수치이나 사후관리 사례에서는 0건(0.0%)이었다. 이는 일시보호서비스가 종료되어야 사례가 종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리치료서비스는 진행 중 사례에서 8.4%에 해당하지만 사후관리 사례에서는 약 1.8배 높은 14.5%로 나타났다.

<표 4-53>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98,223	(16.5)	11,648	(26.3)
	집단상담	2,598	(0.4)	173	(0.4)
	기관상담	184,481	(31.0)	18,893	(42.6)
	주변인상담	5,746	(1.0)	396	(0.9)
	소 계	291,048	(48.8)	31,110	(70.1)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1,073	(0.2)	29	(0.1)
	입원치료	6,637	(1.1)	1,084	(2.4)
	통원치료	1,154	(0.2)	80	(0.2)
	소 계	8,864	(1.5)	1,193	(2.7)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3,868	(0.6)	270	(0.6)
	심리치료	46,346	(7.8)	6,168	(13.9)
	소 계	50,214	(8.4)	6,438	(14.5)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14,639	(2.5)	1,019	(2.3)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248	(0.2)	101	(0.2)
	공적지원연결	526	(0.1)	160	(0.4)
	소 계	16,413	(2.8)	1,280	(2.9)
일시보호서비스		189,878	(31.9)	0	(0.0)
사건처리지원서비스		22,529	(3.8)	1,366	(3.1)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18	(0.0)	0	(0.0)
	조건부기소유예	0	(0.0)	0	(0.0)
	보호처분	32	(0.0)	6	(0.0)
	소 계	50	(0.0)	6	(0.0)
기타		17,014	(2.9)	2,975	(6.7)
계		596,010	(100.0)	44,368	(100.0)
총계		640,378			

※중복포함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2016년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193,633회로 집계되었다. 2016년 이전에 신고된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는 78,427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2016년 신고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는 115,206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2016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6년 신고사례를 서비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차지하는 비율의 분포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서비스 항목 중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상담서비스이며, 2016년 이전 신고사례, 2016년 신고사례의 상담서비스가 각각 65,074회(83.0%), 89,963회(78.1%)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집계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는 각각 5,295회(6.8%), 9,646회(8.4%)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심리치료서비스가 각각 4,967회(6.3%), 7,826회(6.8%) 제공되었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2016년 이전 신고사례가 1,277회(1.6%), 2016년 신고사례는 1,633회(1.4%)이며 의료서비스는 2016년 이전 신고사례가 807회(1.0%)로 2016년 신고사례의 3,815회(3.3%)보다 약 2.3%포인트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54>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단위 : 회, %)

서비스	신고시점	2016년 이전 신고사례		2016년 신고사례	
		회	(%)	회	(%)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56,650	(72.2)	75,525	(65.6)
	집단상담	524	(0.7)	678	(0.6)
	기관상담	7,636	(9.7)	13,493	(11.7)
	주변인상담	264	(0.3)	267	(0.2)
	소 계	65,074	(83.0)	89,963	(78.1)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59	(0.1)	89	(0.1)
	입원치료	609	(0.8)	3,476	(3.0)
	통원치료	139	(0.2)	250	(0.2)
	소 계	807	(1.0)	3,815	(3.3)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312	(0.4)	1,065	(0.9)
	심리치료	4,655	(5.9)	6,761	(5.9)
	소 계	4,967	(6.3)	7,826	(6.8)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1,155	(1.5)	1,430	(1.2)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08	(0.1)	187	(0.2)
	공적지원연결	14	(0.0)	16	(0.0)
	소 계	1,277	(1.6)	1,633	(1.4)
사건처리지원서비스		43	(0.1)	605	(0.5)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570	(0.7)	5,199	(4.5)
	조건부기소유예	193	(0.2)	496	(0.4)
	보호처분	4,532	(5.8)	3,951	(3.4)
	소 계	5,295	(6.8)	9,646	(8.4)
기타	964	(1.2)	1,718	(1.5)	
계	78,427	(100.0)	115,206	(100.0)	
총계		193,633			

※중복포함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표 4-55>와 같이 사례종결 여부에 따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78,291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5,342회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사례에 사후관리 사례보다 약 11.6배 많은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서비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142,187회(79.7%), 심리치료서비스 11,993회(6.7%), 행위자수탁프로그램 13,875회(7.8%), 의료서비스 4,511회(2.5%), 가족기능강화서비스 2,664회(1.5%), 기타서비스 2,414회(1.4%), 사건처리지원서비스 647회(0.4%)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빈도가 작년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의 하위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 모두 보호처분에 따른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후관리 하고 있는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상담서비스가 12,850회(83.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행위자수탁프로그램 1,066회(6.9%), 심리치료서비스 800회(5.2%), 기타서비스 268회(1.7%), 가족기능강화서비스 246회(1.6%), 의료서비스 111회(0.7%), 사건처리지원서비스 1회(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5>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121,032	(67.9)	11,143	(72.6)
	집단상담	1,121	(0.6)	81	(0.5)
	기관상담	19,536	(11.0)	1,593	(10.4)
	주변인상담	498	(0.3)	33	(0.2)
	소계	142,187	(79.7)	12,850	(83.8)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147	(0.1)	1	(0.0)
	입원치료	3,977	(2.2)	108	(0.7)
	통원치료	387	(0.2)	2	(0.0)
	소계	4,511	(2.5)	111	(0.7)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1,318	(0.7)	59	(0.4)
	심리치료	10,675	(6.0)	741	(4.8)
	소계	11,993	(6.7)	800	(5.2)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2,365	(1.3)	220	(1.4)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270	(0.2)	25	(0.2)
	공적지원연결	29	(0.0)	1	(0.0)
	소계	2,664	(1.5)	246	(1.6)
사건처리지원서비스		647	(0.4)	1	(0.0)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5,688	(3.2)	81	(0.5)
	조건부기소유예	646	(0.4)	43	(0.3)
	보호처분	7,541	(4.2)	942	(6.1)
	소계	13,875	(7.8)	1,066	(6.9)
기타		2,414	(1.4)	268	(1.7)
계		178,291	(100.0)	15,342	(100.0)
총계		193,633			

※중복포함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에서는 피해아동의 비가해부모 및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제공한 서비스만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학대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과 동일하게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피해아동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심리적 고통과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비가해부모들도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및 무력감, 비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 학대발생 위험 요소를 낮추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비가해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회복 및 후유증 감소를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6년에 제공한 서비스는 총 194,931회였으며, 여러 서비스 유형 중 상담서비스가 약 90%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표 4-56>와 같이 신고접수 시점에 따라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6년 이전 신고접수 사례는 총 82,703회를 제공하였고, 2016년 신고된 사례는 총 112,228회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서비스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2016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6년 신고사례 각각 74,760회(90.4%), 100,941회(89.9%)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심리치료서비스는 각각 4,005회(4.8%), 5,101회(4.5%)로 그 뒤를 이었고, 가족기능강화서비스와 의료서비스, 행위자수탁프로그램*, 기타서비스는 3%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56>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6년 이전/2016년)

(단위 : 회, %)

서비스	신고시점	2016년 이전 신고사례		2016년 신고사례	
		회	(%)	회	(%)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66,460	(80.4)	86,102	(76.7)
	집단상담	696	(0.8)	609	(0.5)
	기관상담	7,326	(8.9)	13,830	(12.3)
	주변인상담	278	(0.3)	400	(0.4)
	소 계	74,760	(90.4)	100,941	(89.9)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133	(0.2)	143	(0.1)
	입원치료	537	(0.6)	399	(0.4)
	통원치료	73	(0.1)	113	(0.1)
	소 계	743	(0.9)	655	(0.6)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226	(0.3)	797	(0.7)
	심리치료	3,779	(4.6)	4,304	(3.8)
	소 계	4,005	(4.8)	5,101	(4.5)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1,532	(1.9)	2,526	(2.3)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24	(0.1)	148	(0.1)
	공적지원연결	31	(0.0)	42	(0.0)
	소 계	1,687	(2.0)	2,716	(2.4)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은 부모 또는 가족에게 실시한 서비스 제공 실적을 반영함. 부모 또는 가족에게 개인 및 가족상담 등이 제공되었음.

서비스	신고시점	2016년 이전 신고사례		2016년 신고사례	
		회	(%)	회	(%)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10	(0.0)	194	(0.2)
	조건부기소유예	5	(0.0)	3	(0.0)
	보호처분	383	(0.5)	198	(0.2)
	소 계	398	(0.5)	395	(0.4)
기타		1,110	(1.3)	2,420	(2.2)
계		82,703	(100.0)	112,228	(100.0)
총계		194,931			

※중복포함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표 4-57>과 같이 사례종결 여부에 따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76,496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18,435회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사례가 사후관리 사례보다 약 10배 많은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서비스 항목별로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158,980회로 90.1%를 차지하였고, 심리치료서비스가 8,411회(4.8%),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3,932회(2.2%), 기타서비스 3,344회(1.9%), 의료서비스 1,111회(0.6%), 행위자수탁프로그램 718건(0.4%)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사례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16,721회(90.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심리치료서비스가 695회(3.8%),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471회(2.6%), 의료서비스 287회(1.6%), 기타 186건(1.0%), 행위자수탁프로그램 75건(0.4%)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4-57>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진행중/사후관리사례)

(단위 : 회, %)

서비스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회	(%)	회	(%)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137,544	(77.9)	15,018	(81.5)
	집단상담	1,206	(0.7)	99	(0.5)
	기관상담	19,598	(11.1)	1,558	(8.5)
	주변인상담	632	(0.4)	46	(0.2)
	소계	158,980	(90.1)	16,721	(90.7)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270	(0.2)	6	(0.0)
	입원치료	660	(0.4)	276	(1.5)
	통원치료	181	(0.1)	5	(0.0)
	소계	1,111	(0.6)	287	(1.6)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974	(0.6)	49	(0.3)
	심리치료	7,437	(4.2)	646	(3.5)
	소계	8,411	(4.8)	695	(3.8)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3,631	(2.1)	427	(2.3)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238	(0.1)	34	(0.2)
	공적지원연결	63	(0.0)	10	(0.1)
	소계	3,932	(2.2)	471	(2.6)
행위자수탁프로그램	임시조치	198	(0.1)	6	(0.0)
	조건부기소유예	6	(0.0)	2	(0.0)
	보호처분	514	(0.3)	67	(0.4)
	소계	718	(0.4)	75	(0.4)
기타		3,344	(1.9)	186	(1.0)
계		176,496	(100.0)	18,435	(100.0)
총계		194,931			

※중복포함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5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 재학대 사례
- 사망아동 사례
-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의해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으로 신고의무자가 기존의 신고의무자 22개 직군에서 아이돌보미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수행인력이 추가되어 24개 직군으로 확대되었다. 2016년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2016.5.29.)으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증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증사자, 입양기관증사자가 추가되었다.

신고의무자 직군 중 아동학대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교직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전체 신고의무자 중 신고비율이 과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48.0%로 나타났다.

1)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사례의 판단 결과

<표 5-1>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 건수

(단위 : 건, %)

전체신고 건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	
25,878	(100.0)	8,288	(32.0)	17,590	(68.0)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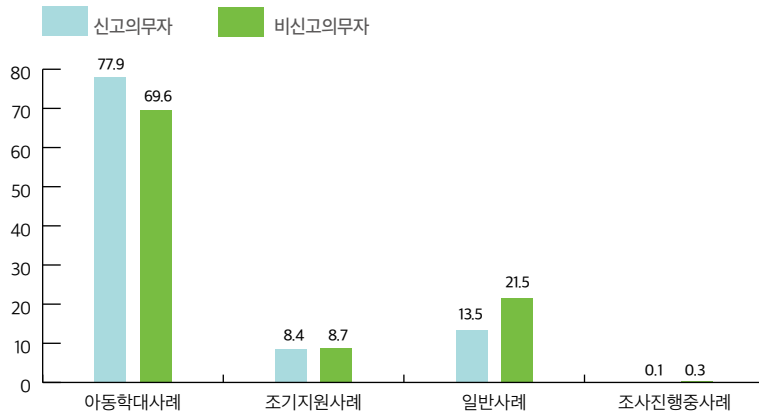
2016년에 신고접수된 25,878건 중 조사진행중인 58건을 제외한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사례판단 결과는 <표5-2>과 같다. 신고의무자는 신고사례 중 아동학대사례 판단률이 77.9%로 비신고의무자의 69.6%와 비교하여 약 8.3%포인트가 더 높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특성상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대의 징후 및 의심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쉽기 때문에 아동학대사례 판단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2>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구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중 사례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신고의무자		6,460	(77.9)	697	(8.4)	1,122	(13.5)	9	(0.1)	8,288	(100.0)
비신고의무자		12,240	(69.6)	1,525	(8.7)	3,776	(21.5)	49	(0.3)	17,590	(100.0)
계		18,700	(72.3)	2,222	(8.6)	4,898	(18.9)	58	(0.2)	25,878	(100.0)

(단위 : %)



<그림 5-1>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는 <표 5-3>와 같다. 신고의무자로서 가장 많이 아동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한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이 80.6%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고 접수 건수가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각각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이 84.3%, 68.6%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건수가 가장 적었던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이 100%로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고건수가 적었던 응급구조사와 의료기사의 경우는 각각 0.0%, 50.0%로 나타났다.

<표 5-3>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구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미판단사례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초·중·고교 직원		3,207	(80.6)	322	(8.1)	446	(11.2)	3	(0.1)	3,978	(100.0)
의료인		130	(60.2)	28	(13.0)	57	(26.4)	1	(0.5)	216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92	(78.7)	34	(6.8)	70	(14.1)	2	(0.4)	498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8	(66.7)	3	(11.1)	6	(22.2)	0	(0.0)	27	(100.0)
보육교직원		189	(66.1)	25	(8.7)	72	(25.2)	0	(0.0)	286	(100.0)
유치원교직원·강사		90	(78.9)	7	(6.1)	17	(14.9)	0	(0.0)	114	(100.0)
학원강사		17	(70.8)	0	(0.0)	7	(29.2)	0	(0.0)	24	(100.0)
소방구급대원		29	(74.4)	0	(0.0)	9	(23.1)	1	(2.6)	39	(100.0)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7	(58.3)	4	(33.3)	1	(8.3)	0	(0.0)	12	(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8	(72.7)	0	(0.0)	3	(27.3)	0	(0.0)	11	(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50	(83.1)	26	(8.6)	25	(8.3)	0	(0.0)	301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59	(68.6)	94	(11.5)	162	(19.9)	0	(0.0)	815	(1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50	(80.1)	22	(7.1)	39	(12.5)	1	(0.3)	312	(100.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8	(72.7)	2	(18.2)	1	(9.1)	0	(0.0)	11	(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8	(49.0)	13	(13.3)	37	(37.8)	0	(0.0)	98	(100.0)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586	(84.3)	48	(6.9)	60	(8.6)	1	(0.1)	695	(100.0)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27	(61.4)	6	(13.6)	11	(25.0)	0	(0.0)	44	(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23	(65.7)	4	(11.4)	8	(22.9)	0	(0.0)	35	(100.0)
정신보건센터종사자**		39	(76.5)	6	(11.8)	6	(11.8)	0	(0.0)	51	(1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101	(82.8)	4	(3.3)	17	(13.9)	0	(0.0)	122	(100.0)
응급구조사		0	(0.0)	0	(0.0)	2	(100.0)	0	(0.0)	2	(100.0)
의료기사		1	(50.0)	1	(50.0)	0	(0.0)	0	(0.0)	2	(100.0)
청소년시설,단체종사자		176	(78.9)	19	(8.5)	28	(12.6)	0	(0.0)	223	(100.0)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63	(84.0)	4	(5.3)	8	(10.7)	0	(0.0)	75	(100.0)
아이돌보미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241	(81.4)	25	(8.4)	30	(10.1)	0	(0.0)	296	(100.0)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0	(0.0)
육아종합지원센터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0	(0.0)
입양기관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6,460	(77.9)	697	(8.4)	1,122	(13.5)	9	(0.1)	8,288	(100.0)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2016년 9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2017년 5월 30일, 전부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됨.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종사자, 입양기관종사자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6.5.29.)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됨.

2)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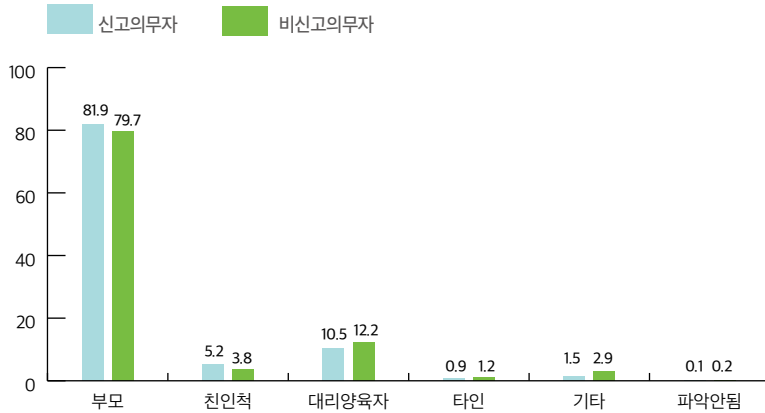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5-4>과 같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파악안됨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신고의무자가 81.9%, 비신고의무자가 79.7%로 신고의무자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 친인척인 경우는 신고의무자가 5.2%, 비신고의무자가 3.8%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학대행위자가 대리양육자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10.5%, 비신고의무자가 12.2%로 비신고의무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타인의 경우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각각 0.9%, 1.2%로 나타났다. 한편, 학대행위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약 80%가 아동학대를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4>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신고자유형	건수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부모	친부	2,871	(44.4)	5,424	(44.3)
	친모	2,105	(32.6)	3,818	(31.2)
	계부	149	(2.3)	245	(2.0)
	계모	145	(2.2)	217	(1.8)
	양부	9	(0.1)	28	(0.2)
	양모	10	(0.2)	27	(0.2)
	소계	5,289	(81.9)	9,759	(79.7)
친인척	친조부	46	(0.7)	65	(0.5)
	친조모	66	(1.0)	111	(0.9)
	외조부	20	(0.3)	19	(0.2)
	외조모	28	(0.4)	67	(0.5)
	친인척	113	(1.7)	153	(1.3)
	형제, 자매	60	(0.9)	47	(0.4)
	소계	333	(5.2)	462	(3.8)
대리양육자	부, 모의 동거인	108	(1.7)	203	(1.7)
	유치원교직원	32	(0.5)	208	(1.7)
	초·중·고교 직원	332	(5.1)	244	(2.0)
	학원강사	20	(0.3)	147	(1.2)
	보육교직원	86	(1.3)	501	(4.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81	(1.3)	172	(1.4)
	기타시설 종사자	12	(0.2)	16	(0.1)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0	(0.0)	2	(0.0)
	베이비시터	0	(0.0)	4	(0.0)
	위탁부	0	(0.0)	0	(0.0)
	위탁모	5	(0.1)	0	(0.0)
	소계	676	(10.5)	1,497	(12.2)
	타인	이웃	36	(0.6)	55
낯선 사람		23	(0.4)	87	(0.7)
소계		59	(0.9)	142	(1.2)
기타		99	(1.5)	355	(2.9)
파악안됨		4	(0.1)	25	(0.2)
계		6,460	(100.0)	12,240	(100.0)

(단위 : %)



<그림 5-2>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신고의무 유형에 따른 신고사례 발생현황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표 5-5>와 같이 살펴본 결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는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비신고의무자보다 더 많이 발견하였다. 그러나 신고의무 여부를 떠나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 발견 비율이 약 80% 정도로 나타나 다른 장소에 비해 더 민감하게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 가정 내, 학교, 병원, 기타복지시설, 숙박업소의 장소에서는 신고의무자가 비신고의무자보다 학대 발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는 학대행위자 가정 내, 친인척의 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종교시설 등에서 학대 발견 비율이 높았다.

<표 5-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발생장소																계
	아동 가정내	학대 행위자 가정내	친인척의 집	이웃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아동 복지 시설	기타 복지 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숙박 업소	종교 시설	파악 안됨	기타	
신고의무자	5,431	107	42	4	92	38	341	19	28	86	17	53	38	16	8	140	6,460
	(84.1)	(1.7)	(0.7)	(0.1)	(1.4)	(0.6)	(5.3)	(0.3)	(0.4)	(1.3)	(0.3)	(0.8)	(0.6)	(0.2)	(0.1)	(2.2)	(100.0)
비신고의무자	9,601	232	108	16	509	209	268	140	40	201	7	300	52	45	8	504	12,240
	(78.4)	(1.9)	(0.9)	(0.1)	(4.2)	(1.7)	(2.2)	(1.1)	(0.3)	(1.6)	(0.1)	(2.5)	(0.4)	(0.4)	(0.1)	(4.1)	(100.0)
계	15,032	339	150	20	601	247	609	159	68	287	24	353	90	61	16	644	18,700
	(80.4)	(1.8)	(0.8)	(0.1)	(3.2)	(1.3)	(3.3)	(0.9)	(0.4)	(1.5)	(0.1)	(1.9)	(0.5)	(0.3)	(0.1)	(3.4)	(100.0)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표 5-6>와 같이 살펴보면, 모든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아동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사례를 가장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사례에서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199건,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사례에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50건, 유치원직원에 의한 신고 중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례는 28건, 의료인에 의한 신고 사례 중 병원에서 발생한 사례는 14건으로 동일한 직군의 종사자가 동일 직업장에서 발생한 학대를 신고한 건수가 다른 직군이 신고한 건수에 비해 높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이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되면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소고를 이유로 행하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보호조치 조항이 신설되어 신고자가 소고를 이유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 시 본인 또는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고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신변보호 강화가 일반인들이 아동학대신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아동학대신고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표 5-6>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유형	발생장소	아동 가정내	학대 행위자 가정내	친척집	이웃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아동 복지 시설	기타 복지 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숙박 업소	종교 시설	파악 안됨	기타	계
초·중·고교 직원		2,778	46	27	2	0	3	199	12	1	17	0	17	11	10	5	79	3,207
		(86.6)	(1.4)	(0.8)	(0.1)	(0.0)	(0.1)	(6.2)	(0.4)	(0.0)	(0.5)	(0.0)	(0.5)	(0.3)	(0.3)	(0.2)	(2.5)	(100.0)
의료인		103	1	3	0	0	0	2	0	14	0	0	2	0	0	1	4	130
		(79.2)	(0.8)	(2.3)	(0.0)	(0.0)	(0.0)	(1.5)	(0.0)	(10.8)	(0.0)	(0.0)	(1.5)	(0.0)	(0.0)	(0.8)	(3.1)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91	8	1	0	3	0	42	4	2	19	0	1	6	2	1	12	392
		(74.2)	(2.0)	(0.3)	(0.0)	(0.8)	(0.0)	(10.7)	(1.0)	(0.5)	(4.8)	(0.0)	(0.3)	(1.5)	(0.5)	(0.3)	(3.1)	(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0	2	0	0	0	0	2	0	0	0	3	1	0	0	0	0	18
		(55.6)	(11.1)	(0.0)	(0.0)	(0.0)	(0.0)	(11.1)	(0.0)	(0.0)	(0.0)	(16.7)	(5.6)	(0.0)	(0.0)	(0.0)	(0.0)	(100.0)
보육교직원		127	5	1	0	50	0	0	0	0	0	0	4	1	0	0	1	189
		(67.2)	(2.6)	(0.5)	(0.0)	(26.5)	(0.0)	(0.0)	(0.0)	(0.0)	(0.0)	(0.0)	(2.1)	(0.5)	(0.0)	(0.0)	(0.5)	(100.0)
유치원직원,강사		54	0	0	0	4	28	0	0	1	0	0	1	0	0	0	2	90
		(60.0)	(0.0)	(0.0)	(0.0)	(4.4)	(31.1)	(0.0)	(0.0)	(1.1)	(0.0)	(0.0)	(1.1)	(0.0)	(0.0)	(0.0)	(2.2)	(100.0)
학원강사		9	1	0	0	0	0	1	0	0	4	0	1	0	0	0	1	17
		(52.9)	(5.9)	(0.0)	(0.0)	(0.0)	(0.0)	(5.9)	(0.0)	(0.0)	(23.5)	(0.0)	(5.9)	(0.0)	(0.0)	(0.0)	(5.9)	(100.0)
소방구급대원		25	0	0	0	0	0	0	0	0	0	0	2	0	0	0	2	29
		(86.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9)	(0.0)	(0.0)	(0.0)	(6.9)	(100.0)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 종사자		4	1	0	0	1	0	0	0	0	0	0	0	0	0	0	1	7
		(57.1)	(14.3)	(0.0)	(0.0)	(14.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3)	(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5	0	0	0	0	0	0	0	2	1	0	0	0	0	0	0	8
		(62.5)	(0.0)	(0.0)	(0.0)	(0.0)	(0.0)	(0.0)	(0.0)	(25.0)	(12.5)	(0.0)	(0.0)	(0.0)	(0.0)	(0.0)	(0.0)	(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23	7	0	1	0	0	0	0	0	0	5	6	1	0	0	7	250
		(89.2)	(2.8)	(0.0)	(0.4)	(0.0)	(0.0)	(0.0)	(0.0)	(0.0)	(0.0)	(2.0)	(2.4)	(0.4)	(0.0)	(0.0)	(2.8)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76	5	6	0	14	0	25	0	3	9	2	3	8	3	0	5	559
		(85.2)	(0.9)	(1.1)	(0.0)	(2.5)	(0.0)	(4.5)	(0.0)	(0.5)	(1.6)	(0.4)	(0.5)	(1.4)	(0.5)	(0.0)	(0.9)	(100.0)

발생장소 신고의무자 유형	아동 가정내	학대 행위자 가정내	친척집	이웃집	어린 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아동 복지 시설	기타 복지 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숙박 업소	종교 시설	파악 안됨	기타	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03 (81.2)	8 (3.2)	0 (0.0)	0 (0.0)	2 (0.8)	0 (0.0)	10 (4.0)	0 (0.0)	1 (0.4)	12 (4.8)	2 (0.8)	4 (1.6)	3 (1.2)	0 (0.0)	0 (0.0)	5 (2.0)	250 (100.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7 (87.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2.5)	0 (0.0)	0 (0.0)	0 (0.0)	0 (0.0)	8 (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1 (85.4)	1 (2.1)	0 (0.0)	1 (2.1)	5 (10.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8 (100.0)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62 (78.8)	4 (0.7)	2 (0.3)	0 (0.0)	13 (2.2)	7 (1.2)	60 (10.2)	2 (0.3)	1 (0.2)	22 (3.8)	2 (0.3)	0 (0.0)	2 (0.3)	0 (0.0)	1 (0.2)	8 (1.4)	586 (100.0)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24 (88.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7.4)	0 (0.0)	0 (0.0)	0 (0.0)	0 (0.0)	1 (3.7)	27 (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20 (87.0)	1 (4.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4.3)	0 (0.0)	0 (0.0)	0 (0.0)	1 (4.3)	23 (100.0)
정신보건센터종사자**	37 (94.9)	1 (2.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9 (1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82 (81.2)	7 (6.9)	1 (1.0)	0 (0.0)	0 (0.0)	0 (0.0)	0 (0.0)	1 (1.0)	1 (1.0)	0 (0.0)	1 (1.0)	1 (1.0)	5 (5.0)	0 (0.0)	0 (0.0)	2 (2.0)	101 (100.0)
응급구조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의료기사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청소년시설,단체종사자	168 (95.5)	2 (1.1)	0 (0.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1)	1 (0.6)	0 (0.0)	0 (0.0)	2 (1.1)	176 (100.0)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52 (82.5)	4 (6.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4.8)	0 (0.0)	0 (0.0)	0 (0.0)	4 (6.3)	63 (100.0)
아이돌보미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228 (94.6)	3 (1.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2 (0.8)	0 (0.0)	3 (1.2)	0 (0.0)	1 (0.4)	0 (0.0)	3 (1.2)	241 (100.0)
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입양기관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5,431 (84.1)	107 (1.7)	42 (0.7)	4 (0.1)	92 (1.4)	38 (0.6)	341 (5.3)	19 (0.3)	28 (0.4)	86 (1.3)	17 (0.3)	53 (0.8)	38 (0.6)	16 (0.2)	8 (0.1)	140 (2.2)	6,460 (100.0)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2016년 9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2017년 5월 30일, 전부개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됨.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종사자, 입양기관종사자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6.5.29.)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됨.

다.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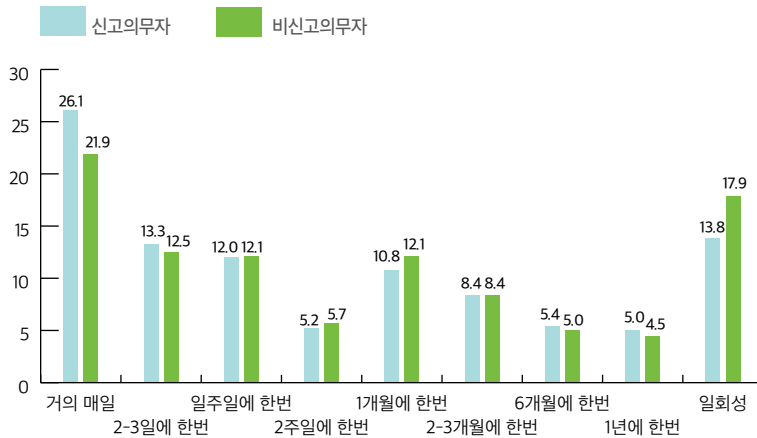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아동학대 발생빈도를 <표 5-7>과 같이 살펴보았다.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가 거의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한 비율은 26.1%로 비신고의무자가 거의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한 비율인 21.9%에 비해 약 4%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회성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한 비율은 비신고의무자가 17.9%로 신고의무자 13.8%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7>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발생빈도									
	거의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1개월에 한번	2~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일회성	계
신고의무자	1,683	860	775	334	700	540	350	326	892	6,460
	(26.1)	(13.3)	(12.0)	(5.2)	(10.8)	(8.4)	(5.4)	(5.0)	(13.8)	(100.0)
비신고의무자	2,681	1,524	1,485	693	1,480	1,024	606	554	2,193	12,240
	(21.9)	(12.5)	(12.1)	(5.7)	(12.1)	(8.4)	(5.0)	(4.5)	(17.9)	(100.0)
계	4,364	2,384	2,260	1,027	2,180	1,564	956	880	3,085	18,700
	(23.3)	(12.7)	(12.1)	(5.5)	(11.7)	(8.4)	(5.1)	(4.7)	(16.5)	(100.0)

(단위 : %)



<그림 5-3>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라.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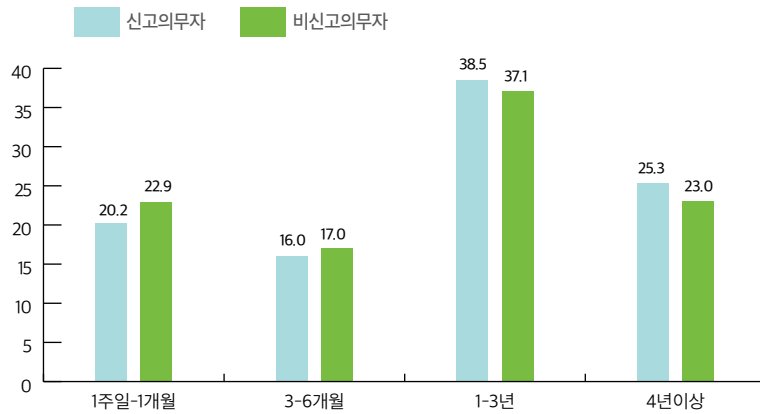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 시 최초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기를 <표 5-8>과 같이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가 1년~3년 사이가 신고의무자 38.5%, 비신고의무자 3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4년 이상이 신고의무자 25.3%, 비신고의무자 23.0%로 그 다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2016.5.29.)으로 신고의무자 직군에 속한 자는 아동학대 및 의심 상황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신고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보다 빠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8>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단위 : 건, %)

신고자 유형	시기		1주일~1개월		3~6개월		1~3년		4년 이상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신고의무자	1,308	(20.2)	1,033	(16.0)	2,485	(38.5)	1,634	(25.3)	6,460	(100.0)		
비신고의무자	2,808	(22.9)	2,077	(17.0)	4,537	(37.1)	2,818	(23.0)	12,240	(100.0)		
계	4,116	(22.0)	3,110	(16.6)	7,022	(37.6)	4,452	(23.8)	18,700	(100.0)		

(단위 : %)



<그림 5-4>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4)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에서 중복학대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각 아동학대 사례 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5-9>과 같다.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각각 39.5%, 44.9%로 가장 높은 발견율을 보였다. 정서학대 다음으로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모두 신체학대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를 제외한 신체학대와 성학대, 방임의 경우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높은 발견율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비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 유형에서 신고의무자 보다 약 5.4%포인트 더 높은 발견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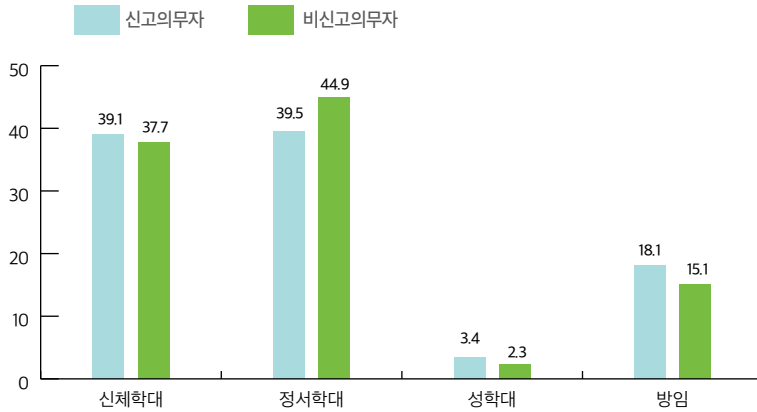
<표 5-9>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신고자 유형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신고의무자		3,837	(39.1)	3,879	(39.5)	332	(3.4)	1,773	(18.1)	9,821	(100.0)
비신고의무자		7,038	(37.7)	8,383	(44.9)	421	(2.3)	2,819	(15.1)	18,661	(100.0)
계		10,875	(38.2)	12,262	(43.1)	753	(2.6)	4,592	(16.1)	28,482	(100.0)

※중복포함

(단위 : %)



<그림 5-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라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포함하여 <표 5-10>와 같이 살펴보면, 각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높은 직군이 다르게 나타났다.

신체학대사례건수는 초·중·고교 직원이 2,255건,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321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99건 순으로 나타났고, 정서학대사례건수는 초·중·고교 직원이 2,005건,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403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65건 순이었다. 성학대사례건수에 있어서는 초·중·고교 직원 182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31건,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2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임사례건수의 경우 초·중·고교 직원이 624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419건,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이 153건으로 나타났다.

<표 5-10>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초·중·고교 직원		2,255	(44.5)	2,005	(39.6)	182	(3.6)	624	(12.3)	5,066	(100.0)
의료인		98	(53.0)	57	(30.8)	6	(3.2)	24	(13.0)	185	(10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99	(33.5)	265	(44.6)	23	(3.9)	107	(18.0)	594	(100.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10	(45.5)	5	(22.7)	1	(4.5)	6	(27.3)	22	(100.0)
보육교직원		115	(43.6)	87	(33.0)	1	(0.4)	61	(23.1)	264	(100.0)
유치원직원,강사		48	(40.0)	48	(40.0)	2	(1.7)	22	(18.3)	120	(100.0)
학원강사		15	(62.5)	8	(33.3)	1	(4.2)	0	(0.0)	24	(100.0)
소방구급대원		8	(23.5)	9	(26.5)	0	(0.0)	17	(50.0)	34	(100.0)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3	(33.3)	2	(22.2)	4	(44.4)	0	(0.0)	9	(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4	(26.7)	6	(40.0)	0	(0.0)	5	(33.3)	15	(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160	(38.2)	217	(51.8)	13	(3.1)	29	(6.9)	419	(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34	(18.2)	176	(23.9)	8	(1.1)	419	(56.9)	737	(100.0)

신고자유형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37	(36.3)	160	(42.4)	11	(2.9)	69	(18.3)	377	(100.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4	(44.4)	3	(33.3)	1	(11.1)	1	(11.1)	9	(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6	(21.6)	28	(37.8)	3	(4.1)	27	(36.5)	74	(100.0)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312	(36.6)	403	(47.2)	24	(2.8)	114	(13.4)	853	(100.0)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11	(28.2)	15	(38.5)	0	(0.0)	13	(33.3)	39	(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10	(31.3)	18	(56.3)	2	(6.3)	2	(6.3)	32	(100.0)
정신보건센터종사자		15	(25.4)	29	(49.2)	0	(0.0)	15	(25.4)	59	(1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38	(27.0)	57	(40.4)	31	(22.0)	15	(10.6)	141	(100.0)
응급구조사		0	(0.0)	0	(0.0)	0	(0.0)	0	(0.0)	0	(0.0)
의료기사		1	(50.0)	1	(50.0)	0	(0.0)	0	(0.0)	2	(100.0)
청소년시설,단체종사자		118	(41.5)	119	(41.9)	9	(3.2)	38	(13.4)	284	(100.0)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48	(45.7)	41	(39.0)	5	(4.8)	11	(10.5)	105	(100.0)
아이돌보미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78	(21.9)	120	(33.7)	5	(1.4)	153	(43.0)	356	(100.0)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0	(0.0)
육아종합지원센터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0	(0.0)
입양기관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3,837	(39.1)	3,879	(39.5)	332	(3.4)	1,773	(18.1)	9,821	(100.0)

5)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신고사례의 조치결과

가.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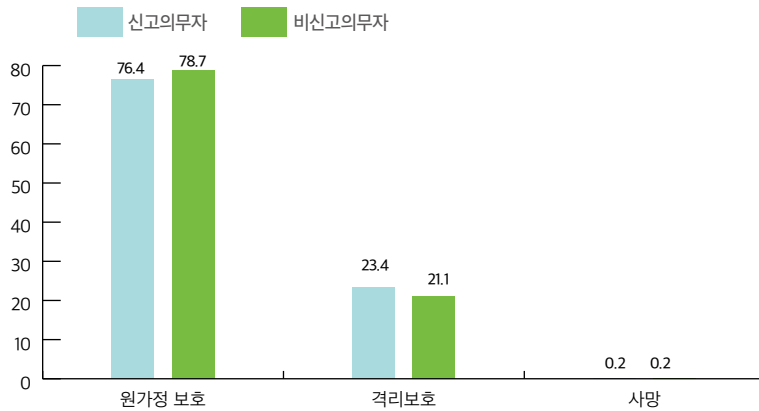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피해아동 조치결과를 <표 5-11>과 같이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간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가정보호율은 비신고의무자가 약 2.3%포인트 높았고, 분리보호율은 신고의무자가 약 2.3%포인트 높았다.

<표 5-11>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조치결과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신고의무자		4,934	(76.4)	1,511	(23.4)	15	(0.2)	6,460	(100.0)
비신고의무자		9,629	(78.7)	2,584	(21.1)	27	(0.2)	12,240	(100.0)
계		14,563	(77.9)	4,095	(21.9)	42	(0.2)	18,700	(100.0)

(단위 : %)



<그림 5-6>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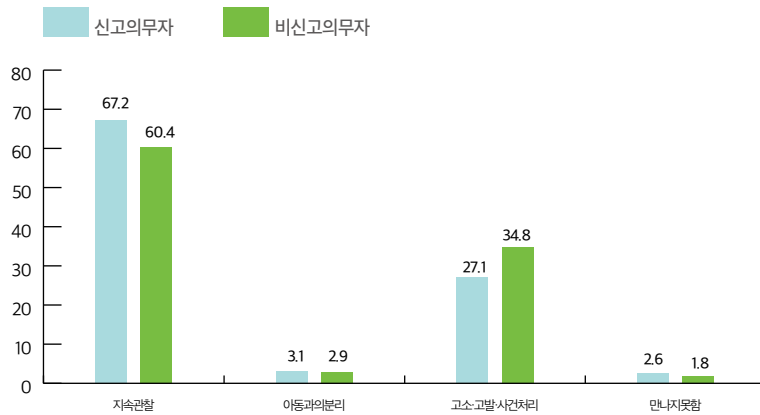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5-12>과 같이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지속관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고의무자 신고사례는 67.2%,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는 60.4%로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지속관찰 비율이 더 높았다. 고소·고발·사건처리 비율은 신고의무자 27.1%, 비신고의무자 34.8%로 비신고의무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조치결과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신고의무자	4,339	(67.2)	202	(3.1)	1,753	(27.1)	166	(2.6)	6,460	(100.0)
비신고의무자	7,394	(60.4)	358	(2.9)	4,265	(34.8)	223	(1.8)	12,240	(100.0)
계	11,733	(62.7)	560	(3.0)	6,018	(32.2)	389	(2.1)	18,700	(100.0)

(단위 : %)



<그림 5-7> 신고의무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 재학대 사례

본 장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2016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16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인 재학대 사례는 총 1,591건이며 재학대 아동 명수는 1,397명이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18,700건 대비하여 재학대 사례 비율은 8.5%이다.

<표 5-13>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단위 : 건, 명, %)

재학대 사례 건수	재학대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1,591	1,397	8.5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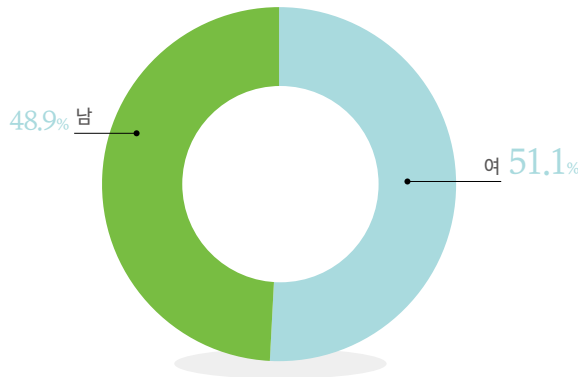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표 5-14>과 같이 살펴보면 여아 813건(51.1%), 남아 778건(48.9%)으로 성별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성별	건수(비율)	
남아	778	(48.9)
여아	813	(51.1)
계	1,591	(100.0)



<그림 5-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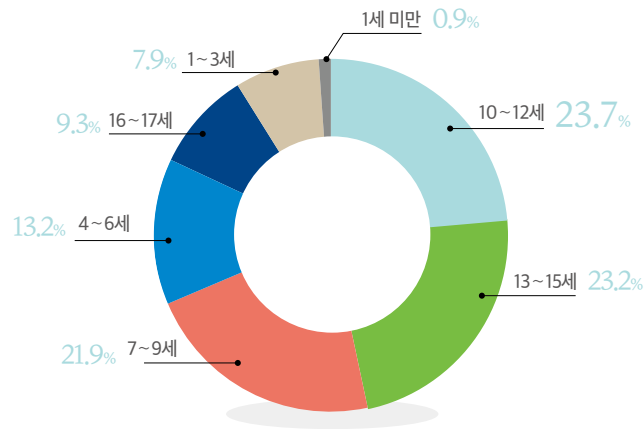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표 5-15>와 같이 살펴보면, 만 10세~12세가 377건(23.7%), 만 13세~15세가 369건(23.2%), 만 7~9세가 348건(21.9%)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의 68.8%이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1세 미만도 14건(0.9%)이나 되었다.

<표 5-1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건수(비율)	
1세 미만	14	(0.9)
1~3세	125	(7.9)
4~6세	210	(13.2)

연령(만)	건수(비율)	
7~9세	348	(21.9)
10~12세	377	(23.7)
13~15세	369	(23.2)
16~17세	148	(9.3)
계	1,591	(100.0)



<그림 5-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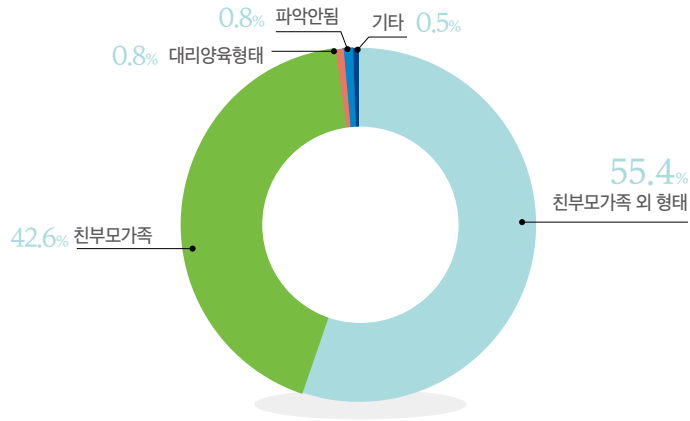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 분포를 <표 5-16>와 같이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881건으로 전체의 55.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에서도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이 각각 364건(22.9%), 219건(13.8%) 그리고 미혼부·모가정이 42건(2.6%)으로 한부모가족이 39.3%로 재학대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친부모가족은 677건(42.6%), 대리양육형태는 13건(0.8%)이었다.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안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계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	소계			
677	364	219	42	145	28	83	881	1	8	4	13	8	12	1,591
(42.6)	(22.9)	(13.8)	(2.6)	(9.1)	(1.8)	(5.2)	(55.4)	(0.1)	(0.5)	(0.3)	(0.8)	(0.5)	(0.8)	(100.0)



<그림 5-1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을 <표 5-17>와 같이 살펴보면, 적응 및 행동 특성이 1,248건(36.0%)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적응 및 행동 특성 중에서도 반항·충동·공격성이 211건(6.1%), 거짓말 166건(4.8%), 도벽 122(3.5%), 학교부적응 108건(3.1%), 약물·흡연·음주 103건(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 및 정신건강이 1,039건(30.0%)으로 나타났는데, 불안과 주의산만, 우울이 각각 273건(7.9%), 181건(5.2%), 98건(2.8%)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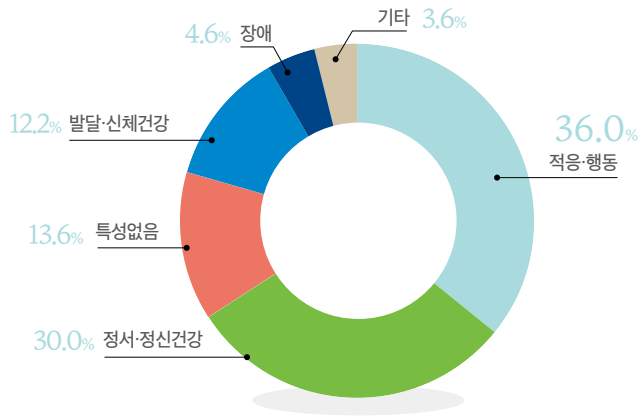
선행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과 비교할 때 공격성과 반항, 충동 등의 적응·행동 특성과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정신건강 특성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적응·행동 특성이나 정서·정신건강 특성을 가진 재학대 사례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수의 약 66%로 나타났다.

* Jaffee, S. R. & Maikovich-Fong, A. K. (2011).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and maltreatment timing on children's behavior and cognitive abilit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2), 184-194.

<표 5-17>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특성		건수 (비율)	
장 애	신체적 장애	23	(0.7)
	정신적 장애	64	(1.8)
	장애의심	71	(2.0)
	소 계	158	(4.6)
정서·정신건강	주의산만	181	(5.2)
	과잉행동	94	(2.7)
	인터넷(게임)중독	51	(1.5)
	불안	273	(7.9)
	애착문제	87	(2.5)
	무력감	65	(1.9)
	우울	98	(2.8)
	낮은 자아존중감	76	(2.2)
	성격 및 기질문제	83	(2.4)
	탐식 및 결식	31	(0.9)
	소 계	1,039	(30.0)
	적응·행동	반항·충동·공격성	211
거짓말		166	(4.8)
도벽		122	(3.5)
가출		100	(2.9)
약물·흡연·음주		103	(3.0)
성문제		36	(1.0)
학교 부적응		108	(3.1)
잡은 결석, 무단 결과		84	(2.4)
늦은 귀가		97	(2.8)
학습문제		70	(2.0)
폭력행동		71	(2.0)
비행집단활동		28	(0.8)
불건전한 또래관계		31	(0.9)
대인관계 기피		21	(0.6)
소 계		1,248	(36.0)
발달·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32	(0.9)
	언어문제	106	(3.1)
	영양결핍	23	(0.7)
	대소변문제	27	(0.8)
	위생문제	150	(4.3)
	틱(음성, 신체, 뚜렛)	11	(0.3)
	잡은 병치레, 허약	21	(0.6)
	주요병력	53	(1.5)
	소 계	423	(12.2)
특성없음	470	(13.6)	
기타	126	(3.6)	
계	3,464	(100.0)	



<그림 5-1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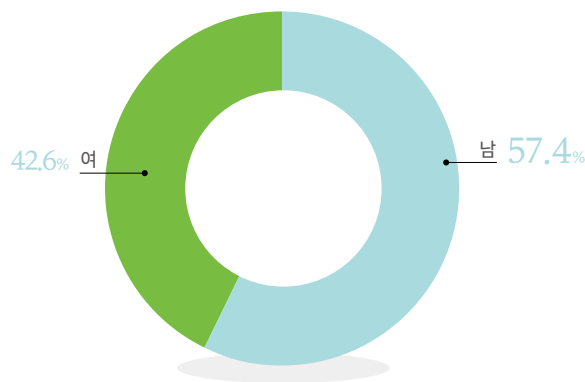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표 5-18>과 같이 살펴보면 여성이 678건(42.6%)으로 남성이 913건(57.4%)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4.8%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5-1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성별	건수(비율)	
남성	913	(57.4)
여성	678	(42.6)
계	1,591	(100.0)



<그림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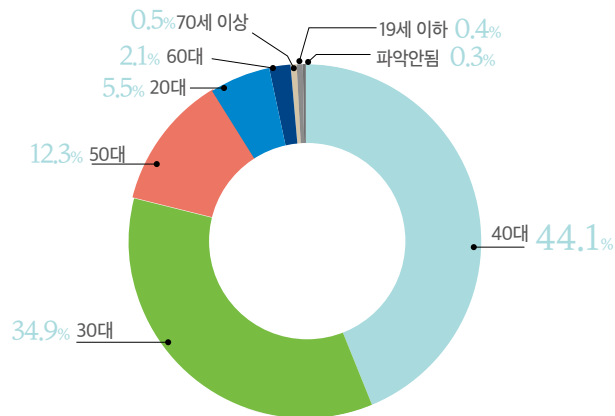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를 <표 5-19>과 같이 살펴보면 40대가 701건(44.1%)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30대는 556건(34.9%), 50대가 195건(12.3%), 20대가 87건(5.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재학대의 대부분의 학대행위자는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9 >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연령(만)	건수(비율)	
19세 이하	6	(0.4)
20~29세	87	(5.5)
30~39세	556	(34.9)
40~49세	701	(44.1)
50~59세	195	(12.3)
60~69세	34	(2.1)
70세 이상	8	(0.5)
파악안됨	4	(0.3)
계	1,591	(100.0)



<그림 5-1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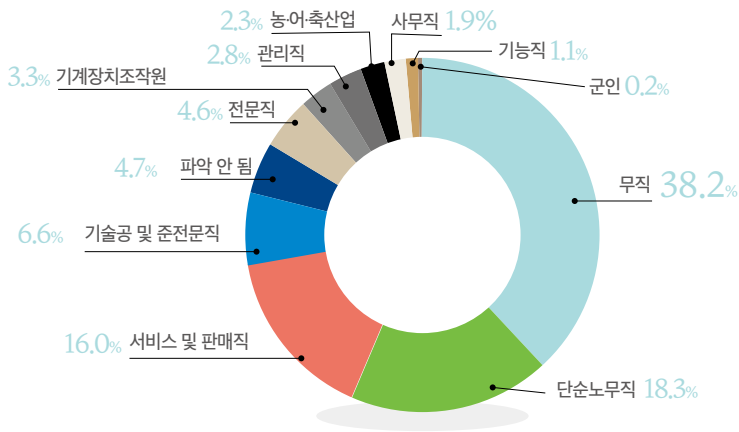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분포를 <표 5-20>와 같이 살펴보면, 무직이 607건으로 전체 38.2%의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291건(18.3%), 서비스 및 판매직 255건(1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 중 무직과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42.4%로 조사되었는데,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는 이보다 더 높은 56.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5-2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단위 : 건, %)

직업	건수(비율)	
관리직	45	(2.8)
전문직	73	(4.6)
기술공 및 준전문직	105	(6.6)
사무직	31	(1.9)
서비스 및 판매직	255	(16.0)
농·어·축산업	36	(2.3)
기능직	18	(1.1)
기계장치조작원	52	(3.3)
단순노무직	291	(18.3)
군인	3	(0.2)
무직	607	(38.2)
파악 안 됨	75	(4.7)
계	1,591	(100.0)



<그림 5-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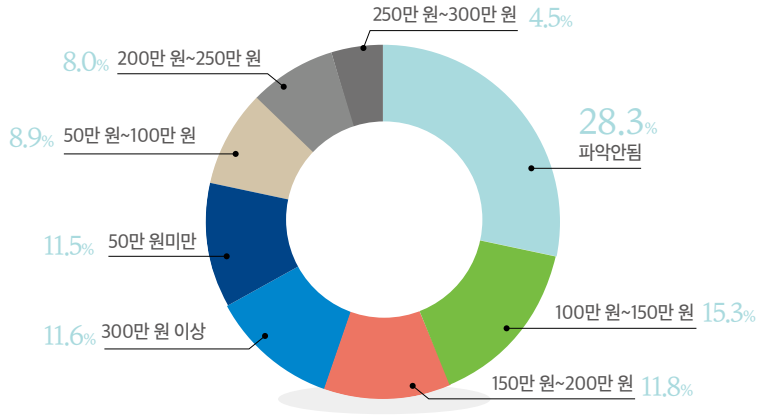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소득을 <표 5-21>과 같이 살펴보면, 파악이 안 되는 건을 제외하고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인 244건(15.3%)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184건(11.6%), 50만원 미만이 183건(11.5%)으로 유사한 발생 비율을 보였다. 소득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사례는 451건(28.3%)이었다.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단위 : 건, %)

소득	건수(비율)	
50만 원 미만	183	(11.5)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42	(8.9)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244	(15.3)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87	(11.8)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128	(8.0)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72	(4.5)
300만 원 이상	184	(11.6)
파악 안 됨	451	(28.3)
계	1,591	(100.0)



<그림 5-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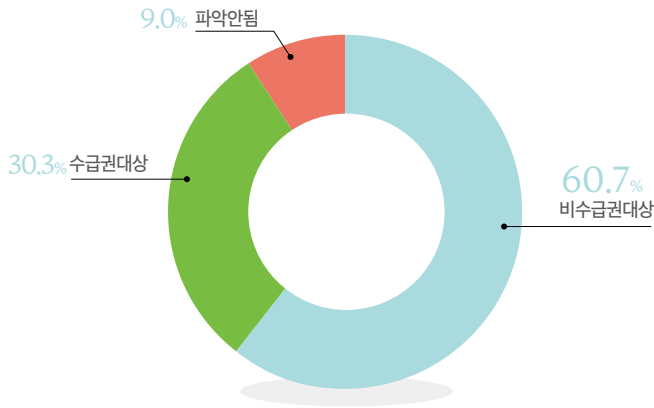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표 5-22>와 같이 살펴보면, 비수급권 대상이 966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 중 60.7%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수급권 대상은 482건(30.3%) 이었고, 파악이 안된 사례는 143건(9.0%)으로 나타났다.

<표 5-2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단위 : 건, %)

수급권 대상	건수(비율)	
수급권 대상	482	(30.3)
비수급권 대상	966	(60.7)
파악 안 됨	143	(9.0)
계	1,591	(100.0)



<그림 5-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바.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을 <표 5-23>와 같이 살펴본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874건 (3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재학대 사례의 3명 중 1명 이상은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 및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974건(18.8%), 부부 및 가족갈등이 501건(9.7%), 알콜 및 약물·게임 등의 중독문제가 452건(8.7%)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5-2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성	건수(비율)	
신체적 장애	74	(1.4)
정신적 장애	35	(0.7)
장애 의심	64	(1.2)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874	(36.2)
중독문제	452	(8.7)
질환문제	80	(1.5)
성격 및 기질문제	360	(7.0)
위생문제	99	(1.9)
나태 및 무기력	69	(1.3)
난독해, 난작문	8	(0.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974	(18.8)
어릴 적 학대 경험	74	(1.4)
폭력성	248	(4.8)
전과력	41	(0.8)
성문제	30	(0.6)
원치 않은 아동	18	(0.3)
부부 및 가족 갈등	501	(9.7)
종교문제	13	(0.3)
특성없음	132	(2.5)
파악안됨	31	(0.6)
계	5,1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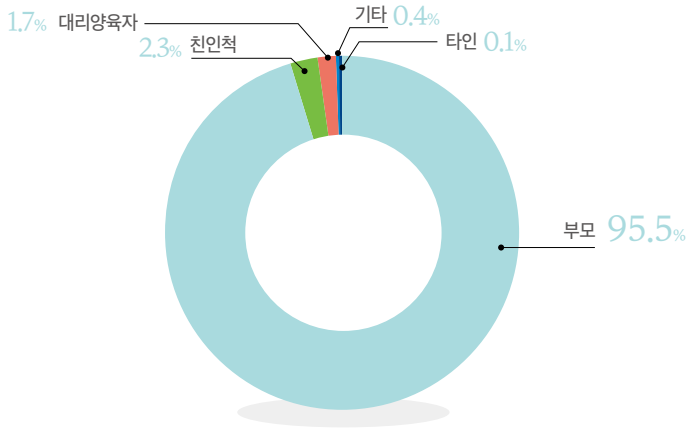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5-24>과 같이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1,520건(95.5%)으로 가장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친인척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36건(2.3%),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 27건(1.7%)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 중에서 부모의 동거인이 25건(1.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5-2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건수(비율)	
부모	친부	821	(51.6)
	친모	606	(38.1)
	계부	39	(2.5)
	계모	46	(2.9)
	양부	5	(0.3)
	양모	3	(0.2)
	소 계	1,520	(95.5)
친인척	친조부	7	(0.4)
	친조모	13	(0.8)
	외조부	1	(0.1)
	외조모	4	(0.3)
	친인척	9	(0.6)
	형제·자매	2	(0.1)
	소 계	36	(2.3)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25	(1.6)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0	(0.0)
	보육교직원	1	(0.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	(0.1)
	소 계	27	(1.7)
타인	이웃	0	(0.0)
	낯선 사람	1	(0.1)
	소 계	1	(0.1)
기타	7	(0.4)	
계	1,591	(100.0)	



<그림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5) 재학대 사례의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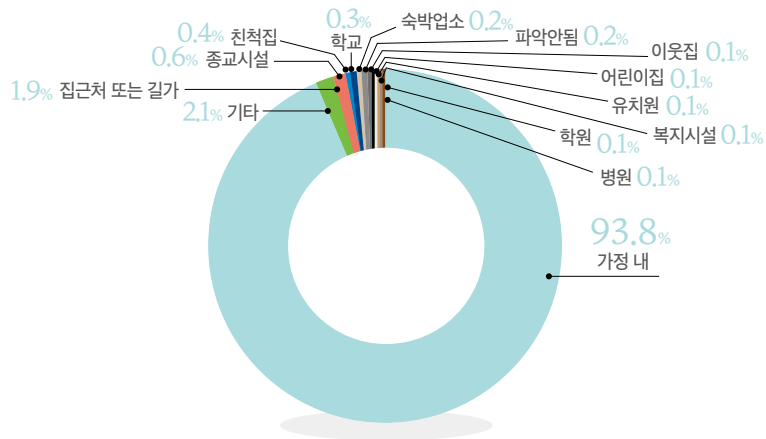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재학대 사례의 발생장소를 <표 5-25>와 같이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가 1,493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 중 93.8%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82.2%였던 것에 비교하면 재학대 사례는 11.6% 더 높았다. 다음으로 기타 33건(2.1%), 집 근처 또는 길가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가 31건(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25 >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1,463	(92.0)
	학대행위자 가정 내	30	(1.9)
	소 계	1,493	(93.8)
집근처 또는 길가		31	(1.9)
친척집		7	(0.4)
이웃집		1	(0.1)
어린이집		1	(0.1)
유치원		2	(0.1)
학교		5	(0.3)
학원		1	(0.1)
병원		1	(0.1)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1	(0.1)
	기타복지시설	0	(0.0)
	소 계	1	(0.1)
종교시설		9	(0.6)
숙박업소		3	(0.2)
기타		33	(2.1)
파악안됨		3	(0.2)
계		1,591	(100.0)



<그림 5-18>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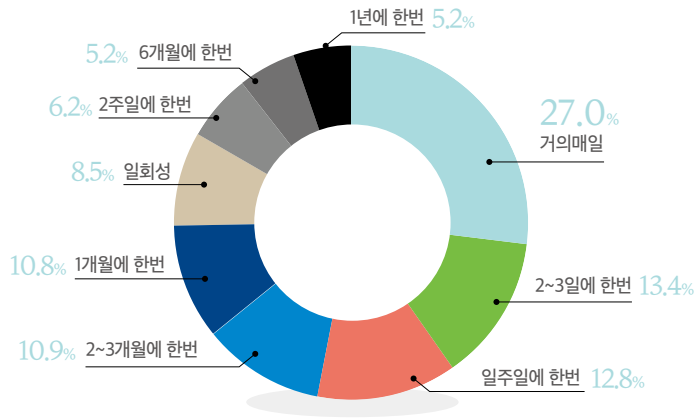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재학대 사례의 발생빈도를 <표 5-26>와 같이 살펴보면, 거의 매일 발생한 재학대 사례가 430건 (27.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3일에 한 번이 213건(13.4%), 일주일에 한 번이 204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매우 빈번하게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비율은 53.2%로 절반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와 반대로 일회성의 학대는 136건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표 5-26>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수(비율)	
거의 매일	430	(27.0)
2~3일에 한 번	213	(13.4)
일주일에 한 번	204	(12.8)
2주일에 한 번	98	(6.2)
1개월에 한 번	172	(10.8)
2~3개월에 한 번	174	(10.9)
6개월에 한 번	82	(5.2)
1년에 한 번	82	(5.2)
일회성	136	(8.5)
계	1,591	(100.0)



<그림 5-19>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를 <표 5-27>과 같이 살펴보면 사례판단 후 1년~2년 사이가 391건(24.6%)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사이가 274건(17.2%), 2년~3년 사이가 252건(15.8%), 3개월~6개월 사이가 243건(15.3%)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최초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이후 1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전체 재학대의 51.3%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례판단 후 1개월 미만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한 재학대 사례비율이 전체 재학대의 48.8%로 작년에 비해 약 6.4%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학대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학대가 반복될수록 아동은 더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재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학대를 예방하는 것만큼이나 만성적 학대로 확대되기 전인 학대 발생 초반에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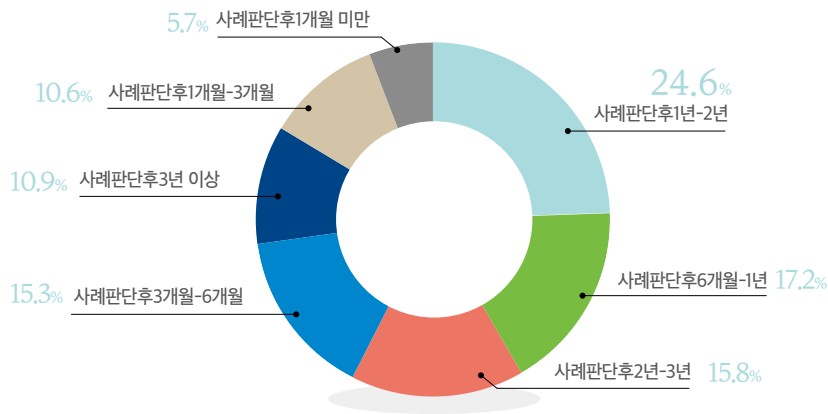
현재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례종결 이후에도 3개월 이상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례판단 1년 이후부터 재학대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재학대 방지를 위해 피해아동 상태 및 가정여건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을 조정하며 사례종결 후에도 위험도를 평가하여 아동안전 및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의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장희선, 김기현, 김경희(2016),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 연구: 생존분석의 적용

<표 5-27>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단위 : 건, %)

발생시기	건수(비율)	
사례판단 후 1개월 미만	90	(5.7)
사례판단 후 1개월~3개월	168	(10.6)
사례판단 후 3개월~6개월	243	(15.3)
사례판단 후 6개월~1년	274	(17.2)
사례판단 후 1년~2년	391	(24.6)
사례판단 후 2년~3년	252	(15.8)
사례판단 후 3년 이상	173	(10.9)
계	1,591	(100.0)



<그림 5-20>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라.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표 5-28>과 같이 살펴보면 발생 시기 별 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1개월 미만과 2년~3년 사이를 제외하고 모든 재학대 발생시기에서 적응·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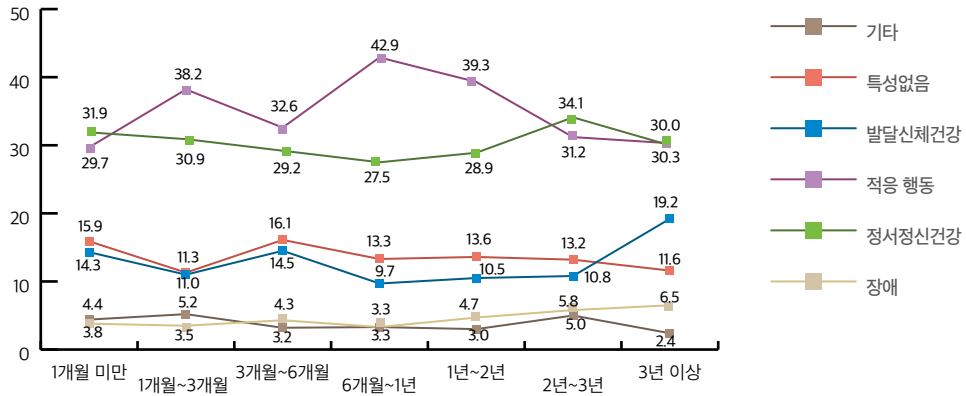
<표 5-28>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단위 : 건, %)

피해아동 특성	시기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장애	신체적 장애	0	(0.0)	2	(0.6)	7	(1.3)	0	(0.0)	10	(1.2)	4	(0.7)	0	(0.0)
	정신적 장애	2	(1.1)	6	(1.7)	8	(1.4)	8	(1.3)	17	(2.0)	12	(2.2)	11	(3.0)
	장애 의심	5	(2.7)	4	(1.2)	9	(1.6)	13	(2.0)	12	(1.4)	15	(2.8)	13	(3.5)
	소 계	7	(3.8)	12	(3.5)	24	(4.3)	21	(3.3)	39	(4.7)	31	(5.8)	24	(6.5)

피해아동 특성	시기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정서 정신 건강	주의산만	14	(7.7)	19	(5.5)	24	(4.3)	30	(4.7)	41	(4.9)	37	(6.9)	16	(4.3)
	과잉행동	1	(0.5)	9	(2.6)	13	(2.3)	22	(3.4)	24	(2.9)	14	(2.6)	11	(3.0)
	인터넷(게임)중독	4	(2.2)	6	(1.7)	10	(1.8)	9	(1.4)	8	(1.0)	9	(1.7)	5	(1.4)
	불안	13	(7.1)	31	(9.0)	44	(7.9)	36	(5.6)	57	(6.9)	60	(11.1)	32	(8.6)
	애착문제	5	(2.7)	8	(2.3)	17	(3.0)	18	(2.8)	19	(2.3)	10	(1.9)	10	(2.7)
	무력감	2	(1.1)	8	(2.3)	13	(2.3)	6	(0.9)	21	(2.5)	11	(2.0)	4	(1.1)
	우울	8	(4.4)	10	(2.9)	19	(3.4)	14	(2.2)	28	(3.4)	12	(2.2)	7	(1.9)
	낮은 자아존중감	1	(0.5)	7	(2.0)	10	(1.8)	20	(3.1)	17	(2.0)	11	(2.0)	10	(2.7)
	성격 및 기질문제	2	(1.1)	9	(2.6)	10	(1.8)	17	(2.7)	21	(2.5)	8	(1.5)	16	(4.3)
	탐식 및 결식	8	(4.4)	0	(0.0)	3	(0.5)	4	(0.6)	4	(0.5)	12	(2.2)	0	(0.0)
소 계	58	(31.9)	107	(30.9)	163	(29.2)	176	(27.5)	240	(28.9)	184	(34.1)	111	(30.0)	
적응 행동	반항충동공격성	6	(3.3)	20	(5.8)	28	(5.0)	47	(7.4)	62	(7.5)	27	(5.0)	21	(5.7)
	거짓말	5	(2.7)	17	(4.9)	26	(4.7)	41	(6.4)	39	(4.7)	24	(4.5)	14	(3.8)
	도벽	7	(3.8)	15	(4.3)	16	(2.9)	19	(3.0)	26	(3.1)	30	(5.6)	9	(2.4)
	가출	5	(2.7)	13	(3.8)	13	(2.3)	23	(3.6)	24	(2.9)	14	(2.6)	8	(2.2)
	약물흡연음주	3	(1.6)	6	(1.7)	22	(3.9)	26	(4.1)	29	(3.5)	11	(2.0)	6	(1.6)
	성문제	2	(1.1)	6	(1.7)	2	(0.4)	7	(1.1)	9	(1.1)	9	(1.7)	1	(0.3)
	학교부적응	7	(3.8)	12	(3.5)	13	(2.3)	23	(3.6)	33	(4.0)	9	(1.7)	11	(3.0)
	잦은결석,무단결과	5	(2.7)	7	(2.0)	18	(3.2)	21	(3.3)	20	(2.4)	7	(1.3)	6	(1.6)
	늦은귀가	4	(2.2)	11	(3.2)	16	(2.9)	23	(3.6)	22	(2.7)	12	(2.2)	9	(2.4)
	학습문제	3	(1.6)	3	(0.9)	5	(0.9)	15	(2.3)	21	(2.5)	9	(1.7)	14	(3.8)
	폭력행동	2	(1.1)	8	(2.3)	8	(1.4)	12	(1.9)	21	(2.5)	10	(1.9)	10	(2.7)
	비행집단활동	2	(1.1)	5	(1.4)	5	(0.9)	7	(1.1)	8	(1.0)	1	(0.2)	0	(0.0)
	불건전한 또래관계	1	(0.5)	6	(1.7)	6	(1.1)	8	(1.3)	5	(0.6)	2	(0.4)	3	(0.8)
대인관계기피	2	(1.1)	3	(0.9)	4	(0.7)	2	(0.3)	7	(0.8)	3	(0.6)	0	(0.0)	
소 계	54	(29.7)	132	(38.2)	182	(32.6)	274	(42.9)	326	(39.3)	168	(31.2)	112	(30.3)	
발달 신체건강	신체발달지연	0	(0.0)	6	(1.7)	9	(1.6)	1	(0.2)	8	(1.0)	3	(0.6)	5	(1.4)
	언어문제	6	(3.3)	9	(2.6)	25	(4.5)	14	(2.2)	22	(2.7)	16	(3.0)	14	(3.8)
	영양결핍	3	(1.6)	3	(0.9)	2	(0.4)	6	(0.9)	1	(0.1)	3	(0.6)	5	(1.4)
	대소변문제	3	(1.6)	0	(0.0)	4	(0.7)	7	(1.1)	5	(0.6)	3	(0.6)	5	(1.4)
	위생문제	8	(4.4)	8	(2.3)	22	(3.9)	22	(3.4)	40	(4.8)	22	(4.1)	28	(7.6)
	틱	0	(0.0)	3	(0.9)	1	(0.2)	3	(0.5)	2	(0.2)	1	(0.2)	1	(0.3)
	잦은병치레·허약	1	(0.5)	3	(0.9)	4	(0.7)	5	(0.8)	2	(0.2)	5	(0.9)	1	(0.3)
	주요병력	5	(2.7)	6	(1.7)	14	(2.5)	4	(0.6)	7	(0.8)	5	(0.9)	12	(3.2)
소 계	26	(14.3)	38	(11.0)	81	(14.5)	62	(9.7)	87	(10.5)	58	(10.8)	71	(19.2)	
특성없음	29	(15.9)	39	(11.3)	90	(16.1)	85	(13.3)	113	(13.6)	71	(13.2)	43	(11.6)	
기타	8	(4.4)	18	(5.2)	18	(3.2)	21	(3.3)	25	(3.0)	27	(5.0)	9	(2.4)	
계	182	(100.0)	346	(100.0)	558	(100.0)	639	(100.0)	830	(100.0)	539	(100.0)	370	(100.0)	

(단위 : %)



〈그림 5-21〉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마.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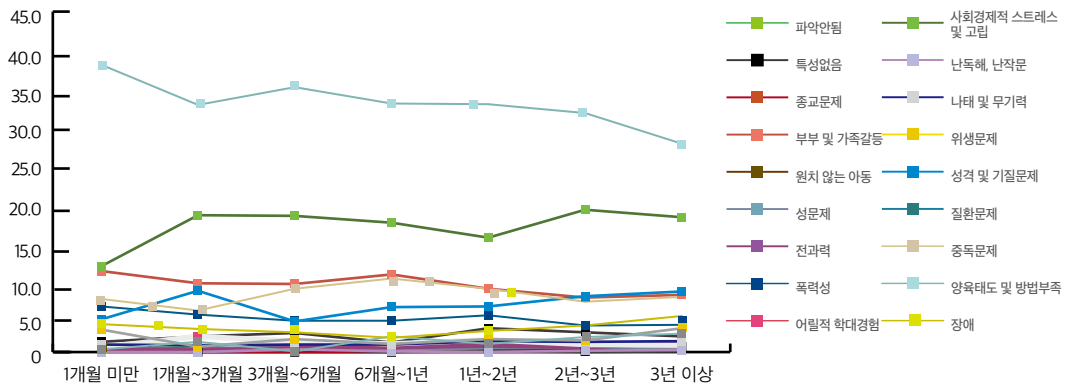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표 5-29>과 같이 살펴보면, 발생시기 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 모든 재학대 발생 시기에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0%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높게 나타났다.

〈표 5-29〉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단위 : 건, %)

학대행위자 특성	시기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신체적 장애	8	(3.0)	8	(1.7)	11	(1.3)	8	(0.9)	19	(1.5)	9	(1.1)	11	(1.8)		
정신적 장애	2	(0.7)	1	(0.2)	1	(0.1)	4	(0.4)	7	(0.6)	10	(1.2)	10	(1.6)		
장애의심	1	(0.4)	7	(1.5)	12	(1.4)	7	(0.8)	12	(1.0)	13	(1.6)	12	(1.9)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114	(42.2)	173	(36.3)	323	(38.9)	335	(36.5)	449	(36.4)	290	(35.1)	190	(30.6)		
중독문제	21	(7.8)	29	(6.1)	77	(9.3)	99	(10.8)	115	(9.3)	61	(7.4)	50	(8.1)		
질환문제	1	(0.4)	7	(1.5)	1	(0.1)	21	(2.3)	15	(1.2)	18	(2.2)	17	(2.7)		
성격 및 기질문제	13	(4.8)	43	(9.0)	37	(4.5)	61	(6.6)	83	(6.7)	68	(8.2)	55	(8.9)		
위생문제	9	(3.3)	4	(0.8)	16	(1.9)	11	(1.2)	23	(1.9)	14	(1.7)	22	(3.5)		
나태 및 무기력	3	(1.1)	5	(1.0)	9	(1.1)	10	(1.1)	20	(1.6)	12	(1.5)	10	(1.6)		
난독해, 난작문	0	(0.0)	0	(0.0)	3	(0.4)	1	(0.1)	0	(0.0)	2	(0.2)	2	(0.3)		
사회경제적스트레스 및 고립	34	(12.6)	96	(20.1)	166	(20.0)	175	(19.0)	207	(16.8)	173	(20.9)	123	(19.8)		
어릴적 학대경험	2	(0.7)	11	(2.3)	13	(1.6)	11	(1.2)	22	(1.8)	9	(1.1)	6	(1.0)		
폭력성	18	(6.7)	26	(5.5)	38	(4.6)	42	(4.6)	67	(5.4)	32	(3.9)	25	(4.0)		
전과력	1	(0.4)	1	(0.2)	4	(0.5)	7	(0.8)	12	(1.0)	7	(0.8)	9	(1.4)		
성문제	2	(0.7)	2	(0.4)	7	(0.8)	2	(0.2)	7	(0.6)	6	(0.7)	4	(0.6)		
원치 않는 아동	2	(0.7)	1	(0.2)	5	(0.6)	2	(0.2)	4	(0.3)	2	(0.2)	2	(0.3)		
부부 및 가족갈등	32	(11.9)	48	(10.1)	83	(10.0)	105	(11.4)	115	(9.3)	66	(8.0)	52	(8.4)		
종교문제	2	(0.7)	0	(0.0)	0	(0.0)	0	(0.0)	5	(0.4)	1	(0.1)	5	(0.8)		
특성없음	4	(1.5)	11	(2.3)	23	(2.8)	13	(1.4)	43	(3.5)	24	(2.9)	14	(2.3)		
파악안됨	1	(0.4)	4	(0.8)	1	(0.1)	5	(0.5)	8	(0.6)	10	(1.2)	2	(0.3)		
계	270	(100.0)	477	(100.0)	830	(100.0)	919	(100.0)	1,233	(100.0)	827	(100.0)	621	(100.0)		

(단위 : 건, %)



<그림 5-22>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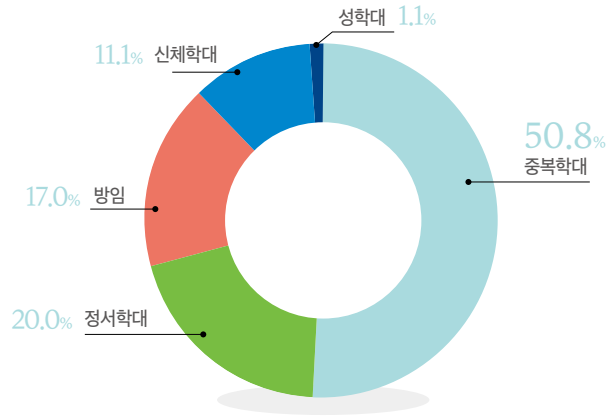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재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사례유형을 <표 5-30>와 같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809건(50.8%), 정서학대 318건(20.0%), 방임 271건(17.0%), 신체학대 176건(11.1%), 성학대 17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 분포와 마찬가지로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경우도 중복학대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5-30>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176	(11.1)
정서학대	318	(20.0)
성 학 대	17	(1.1)
방 임	271	(17.0)
중복학대	809	(50.8)
계	1,591	(100.0)



<그림 5-23>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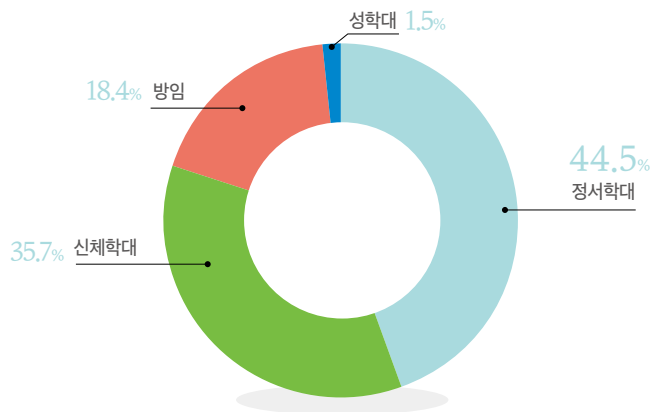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 총 1,591건 중에서 중복학대를 미분류하여 학대유형으로 집계한 결과 총 2,474건이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학대는 정서학대로 1,102건(44.5%), 다음으로 신체학대 882건(35.7%), 방임 454건(18.4%), 성학대 36건(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1> 재학대 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882	(35.7)
정서학대	1,102	(44.5)
성학대	36	(1.5)
방임	454	(18.4)
계	2,474	(100.0)

※중복포함



<그림 5-24> 재학대 사례 유형 II (중복학대 미분류)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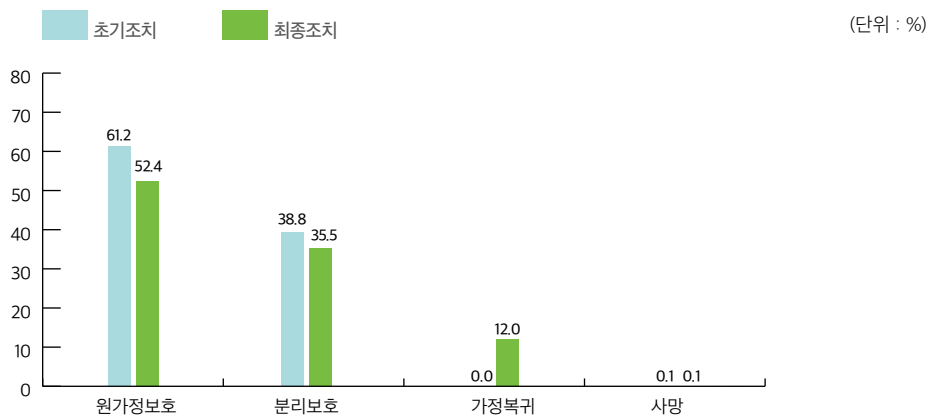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재학대 사례에 대한 피해아동 조치결과를 <표 5-32>과 같이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를 함께 제시하였다.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원가정 보호가 973건(61.2%), 분리보호 617건(38.8%)으로 나타났고, 사망은 1건(0.1%)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재학대 사례의 원가정보호율은 약 16.7% 포인트 낮았으나 분리보호율은 약 16.9%포인트 높았다.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원가정보호가 834건(52.4%), 분리보호 565건(35.5%)이었으며, 초기개입 시 분리되었던 피해아동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191건(12.0%)이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재학대사례의 최종조치결과와 원가정보호는 약 20.2%포인트 낮았고, 분리보호는 약 15.6%포인트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재학대 사례는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로 이후에도 학대가 지속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원가정보호가 아닌 분리보호 및 아동학대처벌법 조치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초기조치의 경우 원가정보호율이 약 60% 이상으로 나타나, 피해아동의 신속한 안전 보호를 위해 초기에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3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단위 : 건, %)

구분	조치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가정 복귀	사망	계	
			친족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소계
초기조치	원가정 보호	973 (61.2)	107 (6.7)	12 (0.8)	2 (0.1)	445 (28.0)	45 (2.8)	6 (0.4)	617 (38.8)	0 (0.0)	1 (0.1)	1,591 (100.0)
	최종조치	834 (52.4)	125 (7.9)	11 (0.7)	8 (0.5)	219 (13.8)	195 (12.3)	7 (0.4)	565 (35.5)	191 (12.0)	1 (0.1)	1,591 (100.0)



<그림 5-2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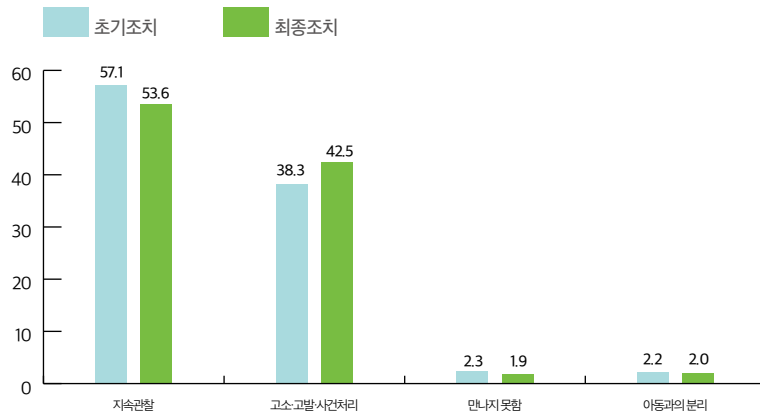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에 대한 학대행위자 조치결과를 <표 5-33>과 같이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를 함께 제시하였다.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지속관찰이 909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사건처리가 610건(38.3%),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37건(2.3%), 아동과의 분리가 35건(2.2%)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853건(5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기조치결과보다 약 3.5%포인트 감소한 수치였다. 다음으로 고소·고발·사건처리가 676건(42.5%)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조치결과보다 약 4.2%포인트 증가한 수치였다. 아동과의 분리는 32건(2.0%),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는 30건(1.9%)이었다.

<표 5-3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단위 : 건, %)

구분 \ 조치	지속관찰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아동과의 분리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초기조치	909	(57.1)	610	(38.3)	37	(2.3)	35	(2.2)	1,591	(100.0)
최종조치	853	(53.6)	676	(42.5)	30	(1.9)	32	(2.0)	1,591	(100.0)

(단위 : %)



<그림 5-2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8) 2015/2016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비교

가. 피해아동 조치결과 비교

2015년과 2016년도에 판단된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여부에 따라 피해아동 조치결과를 <표 5-34>와 같이 살펴보면, 초기조치결과와 최종조치결과 모두에서 재학대 사례의 분리보호율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보다 약 16%포인트 이상 높았으며, 원가정보호율은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보다 약 20%포인트 이상 낮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사망의 경우 재학대 사례보다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더 사망률이 높았다. 이는 재학대 사례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집중적으로 개입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는 최악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 5-34> 2015/2016년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조치결과 비교

(단위 :건, %)

조치결과	재학대 여부		재학대 미발생 사례		재학대 사례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초기조치결과	원가정보호		22,450	(76.9)	701	(56.7)
	분리보호	친족보호	1,900	(6.5)	86	(7.0)
		연고자에 의한 보호	313	(1.1)	6	(0.5)
		가정위탁	15	(0.1)	3	(0.2)
		일시보호	3,725	(12.8)	390	(31.5)
		장기보호	515	(1.8)	41	(3.3)
		병원입원	201	(0.7)	10	(0.8)
		소 계	6,669	(22.9)	536	(43.3)
	사망		59	(0.2)	0	(0.0)
	소 계		29,178	(100.0)	1,237	(100.0)
최종조치결과	원가정보호		20,737	(71.1)	596	(48.2)
	분리보호	친족(친인척)보호	2,276	(7.8)	90	(7.3)
		연고자에 의한 보호	208	(0.7)	8	(0.6)
		가정위탁	56	(0.2)	7	(0.6)
		일시보호	1,568	(5.4)	181	(14.6)
		장기보호	1,822	(6.2)	162	(13.1)
		병원입원	118	(0.4)	6	(0.5)
		소 계	6,048	(20.7)	454	(36.7)
	가정복귀		2,324	(8.0)	187	(15.1)
	사망		69	(0.2)	0	(0.0)
소 계		29,178	(100.0)	1,237	(100.0)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5-35>과 같이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는 재학대 미발생 사례보다 재학대 사례에서 14.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친인척에 의한 학대와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모두 재학대 미발생 사례가 재학대 사례보다 각각 2.4%포인트, 9.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 2015/2016년 재학대미발생/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단위 : 건, %)

관계	재학대 여부	재학대 미발생 사례		재학대 사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부모	친부	13,035	(44.7)	628	(50.8)
	친모	8,922	(30.6)	476	(38.5)
	계부	602	(2.1)	28	(2.3)
	계모	568	(1.9)	31	(2.5)
	양부	50	(0.2)	4	(0.3)
	양모	51	(0.2)	1	(0.1)
	소 계	23,228	(79.6)	1,168	(94.4)
친인척	친조부	200	(0.7)	7	(0.6)
	친조모	280	(1.0)	9	(0.7)
	외조부	67	(0.2)	0	(0.0)
	외조모	145	(0.5)	2	(0.2)
	친인척	462	(1.6)	5	(0.4)
	형제, 자매	176	(0.6)	4	(0.3)
	소 계	1,330	(4.6)	27	(2.2)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443	(1.5)	26	(2.1)
	유치원교직원	443	(1.5)	0	(0.0)
	초·중·고교 직원	810	(2.8)	0	(0.0)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30	(0.8)	1	(0.1)
	보육교직원	1,013	(3.5)	1	(0.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548	(1.9)	1	(0.1)
	기타시설 종사자	50	(0.2)	0	(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9	(0.0)	0	(0.0)
	위탁부	8	(0.0)	0	(0.0)
	위탁모	10	(0.0)	0	(0.0)
	베이비시터	11	(0.0)	0	(0.0)
	소 계	3,575	(12.3)	29	(2.3)
타인	이웃	174	(0.6)	2	(0.2)
	낯선 사람	209	(0.7)	3	(0.2)
	소 계	383	(1.3)	5	(0.4)
기타	612	(2.1)	8	(0.6)	
파악안됨	50	(0.2)	0	(0.0)	
계	29,178	(100.0)	1,237	(100.0)	

다. 가족유형 비교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간 가족유형을 <표 5-36>과 같이 비교해보면, 친부모가정에서 재학대 미발생 사례보다 재학대 사례가 약 7.9%포인트 더 낮은 수치를 보였고, 이와 반대로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재학대 미발생 사례보다 재학대 사례가 약 11.6%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5-36> 2015/2016년 재학대 미발생/재학대 사례 가족유형 비교

(단위 : 건, %)

가족유형	재학대 여부	재학대 미발생 사례		재학대 사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친부모가정		15,165	(52.0)	545	(44.1)
친부모가족외형태	부자가정	4,213	(14.4)	265	(21.4)
	모자가정	3,502	(12.0)	184	(14.9)
	미혼부모가정	548	(1.9)	39	(3.2)
	재혼가정	2,138	(7.3)	97	(7.8)
	친인척보호	748	(2.6)	16	(1.3)
	동거(사실혼포함)	1,031	(3.5)	60	(4.9)
	소년소녀가정	17	(0.1)	0	(0.0)
	소계	12,197	(41.8)	661	(53.4)
대리양육 형태	가정위탁	58	(0.2)	1	(0.1)
	입양가정	108	(0.4)	5	(0.4)
	시설보호	373	(1.3)	9	(0.7)
	소계	539	(1.8)	15	(1.2)
기타		138	(0.5)	6	(0.5)
파악안됨		1,139	(3.9)	10	(0.8)
계		29,178	(100.0)	1,237	(100.0)

3. 사망아동 사례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2016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총 50건이었으며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약 0.3%를 차지하였다*. 50건 중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 후에 신고접수가 된 사례는 42건이며,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수는 8건이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사망아동 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 및 진행된 사건은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표 5-37>에 제시된 수치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2016년 사망아동 사례 건수는 총50건이며, 실제 사망아동 수는 총 36명임. 이는 2명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 2건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사례 건수와 실제 아동 수는 다를 수 있음.

<표 5-37>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단위 : 건, 명, %)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아동학대사례 중 사망아동사례 비율	사망아동 명수	피해아동보호명수 중 사망아동명수 비율
50	0.3	36	0.3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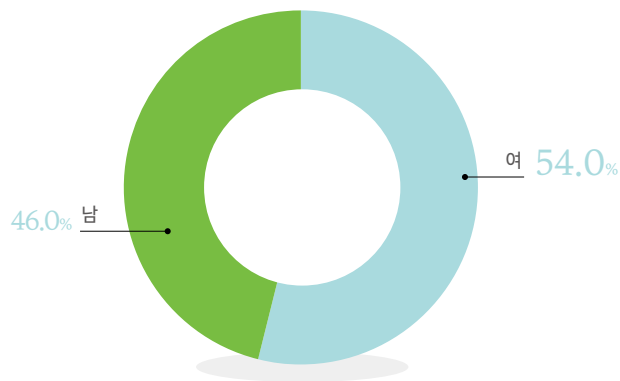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성별을 <표 5-38>와 같이 살펴본 결과, 남아가 23건(46.0%), 여아가 27건(54.0%)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8%포인트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8>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명)

성별	건수	명수
남아	23	19
여아	27	17
계	50	36



<그림 5-27>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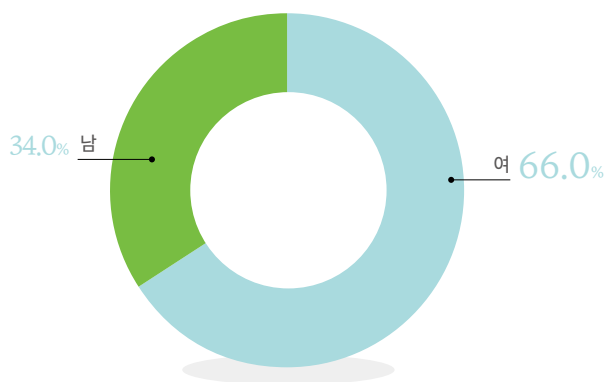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표 5-39>과 같이 살펴본 결과, 총 50건의 사례 중 남성은 17건(34.0%), 여성은 33건(66.0%)으로 여성 학대행위자가 남성에 비해 약 2배 높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9>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성별	건수(비율)	
남성	17	(34.0)
여성	33	(66.0)
계	50	(100.0)



<그림 5-28>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의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5-40>과 같이 교차시켜 분석하였다.

먼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와 친모가 각각 11건과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 계모, 양부, 양모, 친인척, 기타가 각각 2건이었다. 전체 사망아동 사례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가 43건으로 전체의 86.0%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20대가 17건(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6건(32.0%), 40대 14건(28.0%)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1세미만이 14건(28.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만 2세 7건(14.0%), 만6세와 만4세 각각 4건(8.0), 만 3세와 만 13세 각각 3건(6.0%)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14세 미만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세 미만의 영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학대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학대로 인한 사망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가운데 0-3세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4.8%로 나타나 영유아의 아동학대에 대한 취약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만 3세 이하의 사례는 총 26건으로 전체 사망아동 수와 비교했을 때 5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영아 사망 비율보다는 저조하지만, 영아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영아에게 발생하는 학대가 경미하더라도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Pritchard, C. and Sharples, A. (2008). "Violent deaths of children in England and Wales compared to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1974-2002: Possible evidence for improving child protection?" Child Abuse Review 17: 297-312.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7). Child maltreatment 2015.

<표 5-40>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구분 (만)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친인척	보육 교직원	부모의 동거인	이웃	기타			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소 계	20 대	30 대	40 대	미 상	소 계	30 대	30 대	40 대	소 계	40 대	50 대	소 계	30 대	40 대	소 계	20 대	40 대	30 대	30 대	20 대	30 대	소 계			
1세	1	2	1	0	4	8	1	0	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14	
미만	7.1	14.3	7.1	0.0	28.6	57.1	7.1	0.0	0.0	64.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1	0.0	7.1	100.0		
1세	0	0	0	0	0	1	0	1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0	0.0	0.0	0.0	0.0	50.0	0.0	5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세	0	0	0	1	1	1	1	0	0	2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0	0	7		
	0.0	0.0	0.0	14.3	14.3	14.3	14.3	0.0	0.0	28.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3	14.3	14.3	14.3	0.0	0.0	100.0		
3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1	1	1	0	0	0	0	0	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3	33.3	0.0	33.3	33.3	33.3	0.0	0.0	0.0	0.0	0.0	100.0		
4세	0	0	0	0	0	2	1	1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0	0.0	0.0	0.0	0.0	50.0	25.0	25.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5세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6세	0	1	0	0	1	0	0	0	0	0	0	1	0	1	1	0	1	1	0	1	0	0	0	0	0	0	0	4		
	0.0	25.0	0.0	0.0	25.0	0.0	0.0	0.0	0.0	0.0	0.0	25.0	0.0	25.0	25.0	0.0	25.0	25.0	0.0	25.0	0.0	0.0	0.0	0.0	0.0	0.0	100.0			
7세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8세	0	0	0	0	0	0	1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0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9세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세	0	1	0	0	1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0	50.0	0.0	0.0	50.0	0.0	5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1세	0	0	0	0	0	0	1	1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0	0.0	0.0	0.0	0.0	0.0	50.0	5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2세	0	0	1	0	1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0	0.0	50.0	0.0	50.0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3세	0	0	1	0	1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1	1	3			
	0.0	0.0	33.3	0.0	33.3	0.0	0.0	0.0	0.0	0.0	0.0	0.0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3	33.3	100.0			
15세	0	0	1	0	1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0	0.0	50.0	0.0	50.0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계	1	4	5	1	11	13	6	5	1	25	1	1	1	2	1	1	2	1	1	2	2	2	1	1	1	1	2	50		
	2.0	8.0	10.0	2.0	22.0	26.0	12.0	10.0	2.0	50.0	2.0	2.0	2.0	4.0	2.0	2.0	4.0	2.0	2.0	4.0	4.0	4.0	2.0	2.0	2.0	2.0	4.0	100.0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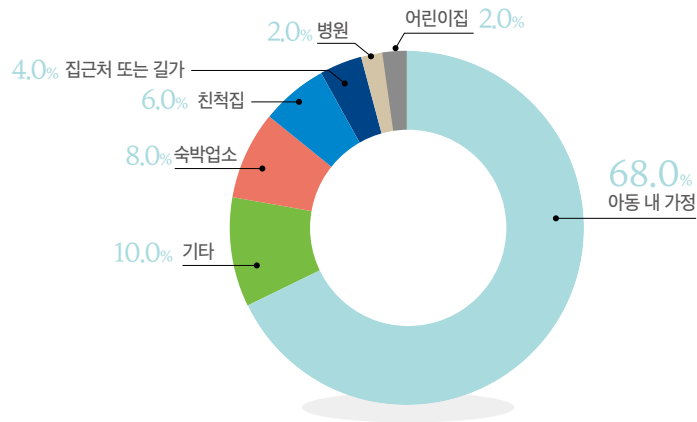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례의 발생장소를 <표 5-41>와 같이 살펴보면,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34건(68.0%)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기타 발생 사례가 5건(10.0%), 숙박업소 4건(8.0%), 친척집 3건(6.0%), 집근처 또는 길가 2건(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과 병원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각각 1건(2.0%)으로 나타났다.

<표 5-41>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명수(비율)	
	건수	비율	명수	비율
아동 가정 내	34	(68.0)	22	(61.1)
친척집	3	(6.0)	3	(8.3)
어린이집	1	(2.0)	1	(2.8)
병원	1	(2.0)	1	(2.8)
집근처 또는 길가	2	(4.0)	2	(5.6)
숙박업소	4	(8.0)	3	(8.3)
기타	5	(10.0)	4	(11.1)
계	50	(100.0)	36	(100.0)



<그림 5-29>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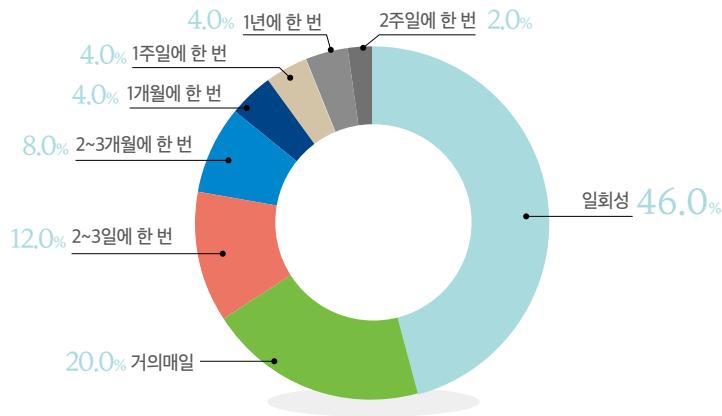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례의 학대 발생빈도를 <표 5-42>과 같이 살펴본 결과, 일회성이 23건으로 46.0%의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2~3일에 한 번 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6건(12.0%)이었으며 2~3개월에 한 번은 4건(8.0%), 1주일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1년에 한번 학대를 받는 사망아동 사례는 각각 2건(4.0%)으로 나타났다.

<표 5-42>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단위: 건, %)

발생빈도	건수(비율)		명수(비율)	
	건수	비율	명수	비율
거의매일	10	(20.0)	8	(22.2)
2~3일에 한 번	6	(12.0)	3	(8.3)
1주일에 한 번	2	(4.0)	1	(2.8)
2주일에 한 번	1	(2.0)	0	(0.0)
1개월에 한 번	2	(4.0)	2	(5.6)
2~3개월에 한 번	4	(8.0)	2	(5.6)
1년에 한 번	2	(4.0)	2	(5.6)
일회성	23	(46.0)	18	(50.0)
계	50	(100.0)	36	(100.0)



<그림 5-30>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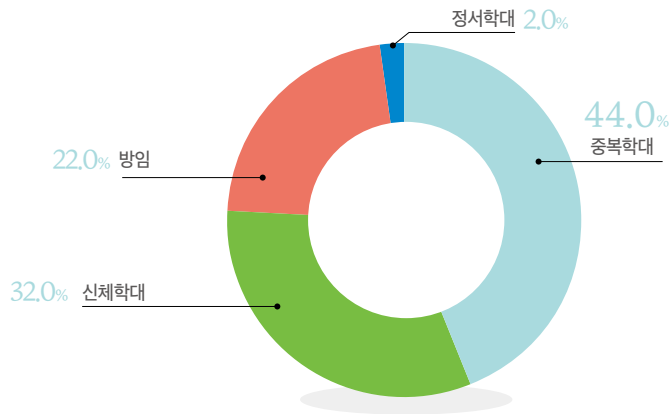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례의 학대유형을 <표 5-43>와 같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22건(4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복학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같이 발생한 사례였으며 10건(20.0%)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16건(32.0%), 방임이 11건(22.0%) 정서학대

1건(2.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아동 사례 50건 중 신체학대가 단독 또는 중복학대에 포함된 사례 건수는 36건으로, 다른 학대 유형보다도 신체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신체학대 다음으로 방임은 단독 또는 중복학대에 포함된 사례 수가 23건으로 전체 사망아동 발생 건수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표 5-43>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비율)		명수(비율)	
신체학대		16	(32.0)	12	(33.3)
정서		1	(2.0)	1	(2.8)
방임		11	(22.0)	5	(13.9)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10	(20.0)	6	(16.7)
	신체학대·방임	9	(18.0)	9	(25.0)
	정서학대·방임	1	(2.0)	0	(0.0)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2	(4.0)	3	(8.3)
	소계	22	(44.0)	18	(50.0)
계		50	(100.0)	36	(100.0)



<그림 5-31>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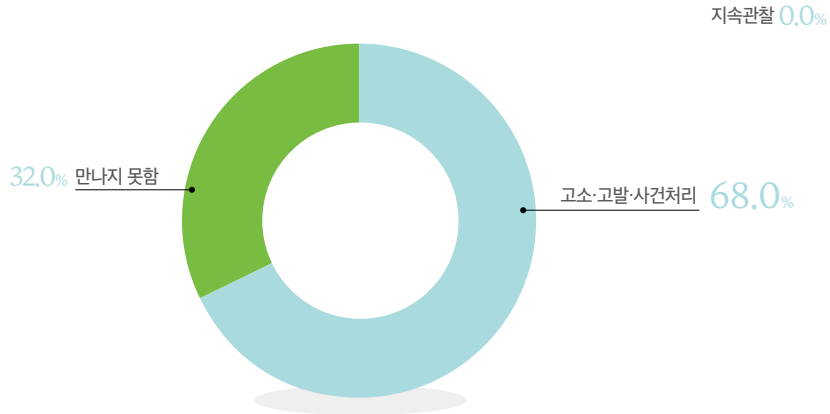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표 5-44>와 같이 살펴보면 고소·고발·사건처리가 34건(68.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16건(32.0%), 지속관찰 0건(0.0%)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이 사망한 이후에 신고접수 되어 이미 학대행위자가 구속 수감 중이거나 사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44>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지속관찰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0	(0.0)	34	(68.0)	16	(32.0)	50	(100.0)



<그림 5-32>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본 절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동 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총 1,686건이었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약 9.0%에 해당한다.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587건(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중·고교 직원이 576건(34.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53건(15.0%), 유치원교직원 240건(14.2%), 기타시설 종사자 28건(1.7%),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5>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발생 건수

(단위 : 건, %)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건수	아동학대사례 중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비율
1,686	9.0

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통계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표 5-46>과 같이 살펴보았다. 경기도 지역에서 337건(2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187건(11.1%), 서울 158건(9.4%) 순이었다. 종사자 유형으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발생 사례는 경기도가 133건(22.7%)으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교직원에 의한 발생 사례는 충청북도가 91건(37.9%)으로 가장 높았다. 초·중·고교 직원은 전라남도가 142건(24.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89건(35.2%)으로 경기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경기도가 13건(46.4%),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는 서울, 경기도가 각각 1건(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46>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서울	서울특별시	21	(3.6)	1	(0.4)	1	(0.2)	8	(3.2)	4	(14.3)	0	(0.0)	35	(2.1)
	서울특별시동부	13	(2.2)	0	(0.0)	35	(6.1)	0	(0.0)	0	(0.0)	0	(0.0)	48	(2.8)
	서울강서	10	(1.7)	0	(0.0)	0	(0.0)	0	(0.0)	0	(0.0)	0	(0.0)	10	(0.6)
	서울은평	6	(1.0)	0	(0.0)	1	(0.2)	14	(5.5)	2	(7.1)	0	(0.0)	23	(1.4)
	서울영등포	19	(3.2)	0	(0.0)	1	(0.2)	0	(0.0)	2	(7.1)	0	(0.0)	22	(1.3)
	서울성북	7	(1.2)	1	(0.4)	0	(0.0)	0	(0.0)	0	(0.0)	1	(50.0)	9	(0.5)
	서울마포	7	(1.2)	0	(0.0)	4	(0.7)	0	(0.0)	0	(0.0)	0	(0.0)	11	(0.7)
	소 계	83	(14.1)	2	(0.8)	42	(7.3)	22	(8.7)	8	(28.6)	1	(50.0)	158	(9.4)
부산	부산광역시	6	(1.0)	0	(0.0)	7	(1.2)	7	(2.8)	0	(0.0)	0	(0.0)	20	(1.2)
	부산동부	5	(0.9)	1	(0.4)	12	(2.1)	1	(0.4)	0	(0.0)	0	(0.0)	19	(1.1)
	부산서부	28	(4.8)	32	(13.3)	8	(1.4)	0	(0.0)	0	(0.0)	0	(0.0)	68	(4.0)
	소 계	39	(6.6)	33	(13.8)	27	(4.7)	8	(3.2)	0	(0.0)	0	(0.0)	107	(6.3)
대구	대구광역시	3	(0.5)	1	(0.4)	1	(0.2)	0	(0.0)	0	(0.0)	0	(0.0)	5	(0.3)
	대구남부	15	(2.6)	1	(0.4)	0	(0.0)	0	(0.0)	0	(0.0)	0	(0.0)	16	(0.9)
	대구북부	6	(1.0)	0	(0.0)	2	(0.3)	8	(3.2)	0	(0.0)	0	(0.0)	16	(0.9)
	소 계	24	(4.1)	2	(0.8)	3	(0.5)	8	(3.2)	0	(0.0)	0	(0.0)	37	(2.2)
인천	인천광역시	24	(4.1)	0	(0.0)	0	(0.0)	12	(4.7)	0	(0.0)	0	(0.0)	36	(2.1)
	인천북부	56	(9.5)	0	(0.0)	1	(0.2)	0	(0.0)	0	(0.0)	0	(0.0)	57	(3.4)
	인천남부	1	(0.2)	2	(0.8)	0	(0.0)	1	(0.4)	0	(0.0)	0	(0.0)	4	(0.2)
	소 계	81	(13.8)	2	(0.8)	1	(0.2)	13	(5.1)	0	(0.0)	0	(0.0)	97	(5.8)
광주	광주광역시	5	(0.9)	3	(1.3)	2	(0.3)	3	(1.2)	1	(3.6)	0	(0.0)	14	(0.8)
	빛고을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소 계	6	(1.0)	3	(1.3)	2	(0.3)	3	(1.2)	1	(3.6)	0	(0.0)	15	(0.9)
대전	대전광역시	2	(0.3)	0	(0.0)	0	(0.0)	0	(0.0)	2	(7.1)	0	(0.0)	4	(0.2)
울산	울산광역시	42	(7.2)	3	(1.3)	19	(3.3)	10	(4.0)	0	(0.0)	0	(0.0)	74	(4.4)

지역 및 기관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경기	경기도	22	(3.7)	0	(0.0)	2	(0.3)	3	(1.2)	0	(0.0)	1	(50.0)	28	(1.7)
	경기북부	22	(3.7)	0	(0.0)	9	(1.6)	7	(2.8)	0	(0.0)	0	(0.0)	38	(2.3)
	경기성남	6	(1.0)	22	(9.2)	3	(0.5)	2	(0.8)	2	(7.1)	0	(0.0)	35	(2.1)
	경기고양	16	(2.7)	0	(0.0)	14	(2.4)	0	(0.0)	1	(3.6)	0	(0.0)	31	(1.8)
	경기부천	16	(2.7)	4	(1.7)	4	(0.7)	2	(0.8)	3	(10.7)	0	(0.0)	29	(1.7)
	경기화성	7	(1.2)	1	(0.4)	0	(0.0)	0	(0.0)	0	(0.0)	0	(0.0)	8	(0.5)
	경기남양주	8	(1.4)	9	(3.8)	1	(0.2)	15	(5.9)	0	(0.0)	0	(0.0)	33	(2.0)
	안산시	8	(1.4)	0	(0.0)	28	(4.9)	12	(4.7)	3	(10.7)	0	(0.0)	51	(3.0)
	경기용인	6	(1.0)	0	(0.0)	0	(0.0)	42	(16.6)	4	(14.3)	0	(0.0)	52	(3.1)
	경기시흥	19	(3.2)	1	(0.4)	1	(0.2)	6	(2.4)	0	(0.0)	0	(0.0)	27	(1.6)
	경기평택	1	(0.2)	0	(0.0)	2	(0.3)	0	(0.0)	0	(0.0)	0	(0.0)	3	(0.2)
	수원	2	(0.3)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소 계	133	(22.7)	37	(15.4)	64	(11.1)	89	(35.2)	13	(46.4)	1	(50.0)	337	(20.0)
강원	강원도	11	(1.9)	0	(0.0)	9	(1.6)	21	(8.3)	0	(0.0)	0	(0.0)	41	(2.4)
	강원동부	2	(0.3)	0	(0.0)	0	(0.0)	3	(1.2)	0	(0.0)	0	(0.0)	5	(0.3)
	강원서부	6	(1.0)	1	(0.4)	1	(0.2)	0	(0.0)	1	(3.6)	0	(0.0)	9	(0.5)
	강원남부	8	(1.4)	0	(0.0)	29	(5.0)	4	(1.6)	1	(3.6)	0	(0.0)	42	(2.5)
	소 계	27	(4.6)	1	(0.4)	39	(6.8)	28	(11.1)	2	(7.1)	0	(0.0)	97	(5.8)
충북	충청북도	5	(0.9)	91	(37.9)	40	(6.9)	9	(3.6)	0	(0.0)	0	(0.0)	145	(8.6)
	충북북부	1	(0.2)	0	(0.0)	5	(0.9)	0	(0.0)	0	(0.0)	0	(0.0)	6	(0.4)
	충북남부	4	(0.7)	0	(0.0)	1	(0.2)	0	(0.0)	0	(0.0)	0	(0.0)	5	(0.3)
	소 계	10	(1.7)	91	(37.9)	46	(8.0)	9	(3.6)	0	(0.0)	0	(0.0)	156	(9.3)
충남	충청남도	6	(1.0)	6	(2.5)	10	(1.7)	2	(0.8)	1	(3.6)	0	(0.0)	25	(1.5)
	충청남도남부	3	(0.5)	0	(0.0)	15	(2.6)	0	(0.0)	0	(0.0)	0	(0.0)	18	(1.1)
	충청남도서부	4	(0.7)	19	(7.9)	1	(0.2)	4	(1.6)	0	(0.0)	0	(0.0)	28	(1.7)
	소 계	13	(2.2)	25	(10.4)	26	(4.5)	6	(2.4)	1	(3.6)	0	(0.0)	71	(4.2)
전북	전라북도	10	(1.7)	2	(0.8)	3	(0.5)	6	(2.4)	0	(0.0)	0	(0.0)	21	(1.2)
	전라북도서부	9	(1.5)	13	(5.4)	0	(0.0)	17	(6.7)	0	(0.0)	0	(0.0)	39	(2.3)
	전라북도동부	0	(0.0)	0	(0.0)	5	(0.9)	0	(0.0)	0	(0.0)	0	(0.0)	5	(0.3)
	소 계	19	(3.2)	15	(6.3)	8	(1.4)	23	(9.1)	0	(0.0)	0	(0.0)	65	(3.9)
전남	전라남도	1	(0.2)	6	(2.5)	33	(5.7)	0	(0.0)	0	(0.0)	0	(0.0)	40	(2.4)
	전남서부권	20	(3.4)	2	(0.8)	42	(7.3)	0	(0.0)	0	(0.0)	0	(0.0)	64	(3.8)
	전남중부권	1	(0.2)	0	(0.0)	67	(11.6)	15	(5.9)	0	(0.0)	0	(0.0)	83	(4.9)
	소 계	22	(3.7)	8	(3.3)	142	(24.7)	15	(5.9)	0	(0.0)	0	(0.0)	187	(11.1)
경북	경북남부	2	(0.3)	1	(0.4)	1	(0.2)	0	(0.0)	0	(0.0)	0	(0.0)	4	(0.2)
	경북북부	18	(3.1)	0	(0.0)	59	(10.2)	2	(0.8)	0	(0.0)	0	(0.0)	79	(4.7)
	경북동부	5	(0.9)	0	(0.0)	12	(2.1)	2	(0.8)	0	(0.0)	0	(0.0)	19	(1.1)
	경북서부	1	(0.2)	0	(0.0)	6	(1.0)	4	(1.6)	1	(3.6)	0	(0.0)	12	(0.7)
	소 계	26	(4.4)	1	(0.4)	78	(13.5)	8	(3.2)	1	(3.6)	0	(0.0)	114	(6.8)
경남	경상남도	40	(6.8)	4	(1.7)	5	(0.9)	2	(0.8)	0	(0.0)	0	(0.0)	51	(3.0)
	경남서부	6	(1.0)	0	(0.0)	70	(12.2)	0	(0.0)	0	(0.0)	0	(0.0)	76	(4.5)
	김해시	7	(1.2)	13	(5.4)	0	(0.0)	8	(3.2)	0	(0.0)	0	(0.0)	28	(1.7)
	소 계	53	(9.0)	17	(7.1)	75	(13.0)	10	(4.0)	0	(0.0)	0	(0.0)	155	(9.2)

지역 및 기관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6	(1.0)	0	(0.0)	2	(0.3)	1	(0.4)	0	(0.0)	0	(0.0)	9	(0.5)
	서귀포시	1	(0.2)	0	(0.0)	2	(0.3)	0	(0.0)	0	(0.0)	0	(0.0)	3	(0.2)
	소 계	7	(1.2)	0	(0.0)	4	(0.7)	1	(0.4)	0	(0.0)	0	(0.0)	12	(0.7)
계		587	(100.0)	240	(100.0)	576	(100.0)	253	(100.0)	28	(100.0)	2	(100.0)	1,686	(100.0)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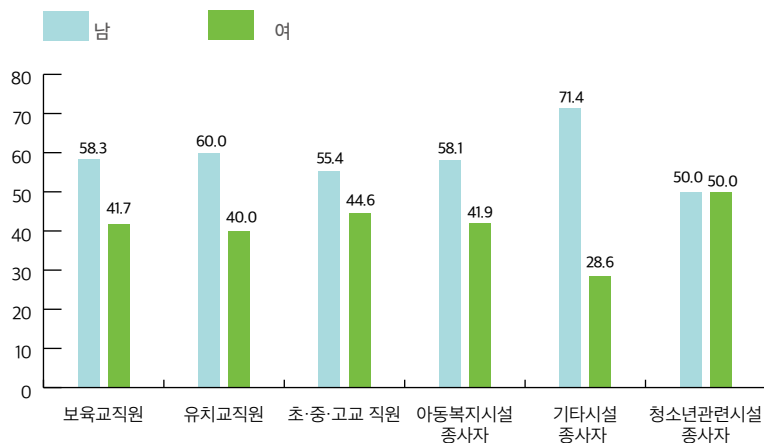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 중 피해아동 성별을 <표 5-47>과 같이 살펴보면 남아가 973건(57.7%), 여아가 713건(42.3%)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았다. 종사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성별의 비율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종사자 유형은 기타시설 종사자로 남아가 여아보다 약 2.5배 많다.

<표 5-4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성별	남아		여아		계	
		건수	(%)	건수	(%)	건수	(%)
보육교직원		342	(58.3)	245	(41.7)	587	(100.0)
유치원교직원		144	(60.0)	96	(40.0)	240	(100.0)
초·중·고교 직원		319	(55.4)	257	(44.6)	576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47	(58.1)	106	(41.9)	253	(100.0)
기타시설 종사자		20	(71.4)	8	(28.6)	28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1	(50.0)	1	(50.0)	2	(100.0)
계		973	(57.7)	713	(42.3)	1,686	(100.0)

(단위 : %)



<그림 5-3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 중 피해아동 연령을 <표 5-48>과 같이 살펴보면, 만 1~3세가 441건(26.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만 4~6세가 413건(24.5%), 만 13~15세가 262건(15.5%), 만 10~12세 237건(14.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만 1~3세가 428건(72.9%), 만 4~6세 151건(25.7%) 순으로 높았고,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만 4~6세가 232건(96.7%)으로 가장 압도적인 수치였다.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만 13~15세 177건(30.7%), 만 10~12세가 173건(30.0%), 만 7~9세 171건(2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만 13~15세 74건(29.2%), 만 16세~17세 65건(25.7%), 만 10~12세 55건(21.7%) 순으로 높았고,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만 13~15세 11건(39.3%), 만 7~9세 7건(25.0%)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만 10~12세가 2건(100%)으로 나타났다.

<표 5-4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연령(만)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1세 미만	7	(1.2)	0	(0.0)	0	(0.0)	0	(0.0)	0	(0.0)	0	(0.0)	7	(0.4)
1~3세	428	(72.9)	8	(3.3)	0	(0.0)	4	(1.6)	1	(3.6)	0	(0.0)	441	(26.2)
4~6세	151	(25.7)	232	(96.7)	19	(3.3)	9	(3.6)	2	(7.1)	0	(0.0)	413	(24.5)
7~9세	0	(0.0)	0	(0.0)	171	(29.7)	46	(18.2)	7	(25.0)	0	(0.0)	224	(13.3)
10~12세	1	(0.2)	0	(0.0)	173	(30.0)	55	(21.7)	6	(21.4)	2	(100.0)	237	(14.1)
13~15세	0	(0.0)	0	(0.0)	177	(30.7)	74	(29.2)	11	(39.3)	0	(0.0)	262	(15.5)
16~17세	0	(0.0)	0	(0.0)	36	(6.3)	65	(25.7)	1	(3.6)	0	(0.0)	102	(6.0)
계	587	(100.0)	240	(100.0)	576	(100.0)	253	(100.0)	28	(100.0)	2	(100.0)	1,686	(100.0)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표 5-49>와 같이 살펴보면 특성없음이 1,146건(52.8%)으로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교직원과 초·중·고교 직원, 유치원교직원이 정서·정신건강 특성에서 각각 204건(27.9%), 217건(31.8%), 62건(21.6%)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시설 종사자는 적응·행동의 특성에서 121건(29.2%), 12건(24.5%)으로 특성없음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5-4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단위 : 건, %)

특성	종사자 유형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장애	신체적장애	1	(0.1)	0	(0.0)	6	(0.9)	5	(1.2)	2	(4.1)	0	(0.0)	14	(0.6)
	정신적장애	2	(0.3)	1	(1.3)	8	(0.7)	14	(3.4)	3	(6.1)	0	(0.0)	28	(1.3)
	장애의심	5	(0.7)	0	(0.0)	3	(0.4)	6	(1.4)	0	(0.0)	0	(0.0)	14	(0.6)
	소 계	8	(1.1)	1	(1.3)	17	(2.1)	25	(6.0)	5	(10.2)	0	(0.0)	56	(2.6)
정서 정신 건강	주의산만	47	(6.5)	18	(5.9)	15	(2.1)	24	(5.8)	2	(4.1)	0	(0.0)	106	(4.9)
	과잉행동	29	(3.9)	11	(3.6)	6	(0.9)	14	(3.4)	2	(4.1)	0	(0.0)	62	(2.9)
	인터넷(게임)중독	0	(0.0)	0	(0.0)	1	(0.1)	2	(0.5)	0	(0.0)	0	(0.0)	3	(0.1)
	불안	64	(8.7)	19	(6.5)	121	(18.0)	20	(4.8)	4	(8.2)	0	(0.0)	228	(10.5)
	애착문제	5	(0.7)	5	(1.6)	1	(0.1)	2	(0.5)	0	(0.0)	0	(0.0)	13	(0.6)
	무력감	0	(0.0)	5	(1.6)	2	(0.3)	3	(0.7)	0	(0.0)	0	(0.0)	10	(0.5)
	우울	33	(4.5)	1	(0.3)	59	(8.8)	11	(2.7)	2	(4.1)	0	(0.0)	106	(4.9)
	낮은 자아존중감	1	(0.1)	0	(0.0)	6	(0.9)	6	(1.4)	0	(0.0)	0	(0.0)	13	(0.6)
	성격 및 기질문제	23	(3.1)	3	(2.0)	6	(0.4)	6	(1.4)	1	(2.0)	0	(0.0)	39	(1.8)
	탐식 및 결식	2	(0.3)	0	(0.0)	0	(0.0)	2	(0.5)	0	(0.0)	0	(0.0)	4	(0.2)
	소 계	204	(27.9)	62	(21.6)	217	(31.8)	90	(21.7)	11	(22.4)	0	(0.0)	584	(26.9)
	적응 행동	반항·충동·공격성	19	(2.6)	4	(1.3)	16	(2.4)	23	(5.5)	3	(6.1)	0	(0.0)	65
거짓말		0	(0.0)	0	(0.3)	5	(0.6)	11	(2.7)	1	(2.0)	0	(0.0)	17	(0.8)
도벽		0	(0.0)	0	(0.3)	4	(0.4)	16	(3.9)	0	(0.0)	0	(0.0)	20	(0.9)
가출		0	(0.0)	0	(0.0)	1	(0.1)	9	(2.2)	0	(0.0)	0	(0.0)	10	(0.5)
약물·흡연·음주		0	(0.0)	0	(0.0)	13	(1.9)	8	(1.9)	0	(0.0)	0	(0.0)	21	(1.0)
성문제		1	(0.1)	0	(0.0)	1	(0.1)	6	(1.4)	3	(6.1)	0	(0.0)	11	(0.5)
학교 부적응		1	(0.1)	0	(0.0)	12	(1.8)	10	(2.4)	2	(4.1)	0	(0.0)	25	(1.1)
찾은결석, 무단결과		0	(0.0)	0	(0.0)	5	(0.7)	8	(1.9)	0	(0.0)	0	(0.0)	13	(0.6)
늦은 귀가		0	(0.0)	0	(0.0)	2	(0.3)	9	(2.2)	0	(0.0)	0	(0.0)	11	(0.5)
학습문제		3	(0.4)	1	(0.3)	9	(1.3)	5	(1.2)	0	(0.0)	0	(0.0)	18	(0.8)
폭력행동		17	(2.3)	0	(0.7)	4	(0.3)	10	(2.4)	3	(6.1)	0	(0.0)	34	(1.6)
비행집단활동		0	(0.0)	0	(0.0)	0	(0.0)	3	(0.7)	0	(0.0)	0	(0.0)	3	(0.1)
불건전한또래관계		0	(0.0)	0	(0.0)	2	(0.3)	3	(0.7)	0	(0.0)	0	(0.0)	5	(0.2)
대인관계기피		4	(0.5)	0	(0.0)	2	(0.3)	0	(0.0)	0	(0.0)	0	(0.0)	6	(0.3)
소 계		45	(6.1)	5	(2.9)	76	(10.8)	121	(29.2)	12	(24.5)	0	(0.0)	259	(11.9)
발달 신체 건강	신체발달지연	4	(0.5)	0	(0.3)	1	(0.0)	1	(0.2)	0	(0.0)	0	(0.0)	6	(0.3)
	언어문제	19	(2.6)	2	(1.0)	2	(0.1)	3	(0.7)	2	(4.1)	0	(0.0)	28	(1.3)
	영양결핍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대소변문제	3	(0.4)	0	(0.0)	1	(0.1)	4	(1.0)	1	(2.0)	0	(0.0)	9	(0.4)
	위생문제	2	(0.3)	0	(0.0)	0	(0.0)	1	(0.2)	0	(0.0)	0	(0.0)	3	(0.1)
	틱(음성, 신체, 뚜렛)	0	(0.0)	0	(0.0)	2	(0.3)	0	(0.0)	0	(0.0)	0	(0.0)	2	(0.1)
	찾은병치레	0	(0.0)	0	(0.0)	1	(0.1)	0	(0.0)	0	(0.0)	0	(0.0)	1	(0.0)
	주요병력	8	(1.1)	0	(0.0)	1	(0.1)	3	(0.7)	1	(2.0)	0	(0.0)	13	(0.6)
소 계	36	(4.9)	2	(1.3)	8	(0.9)	12	(2.9)	4	(8.2)	0	(0.0)	62	(2.9)	
특성없음	422	(57.4)	182	(71.2)	372	(50.5)	153	(36.9)	15	(30.6)	2	(100.0)	1,146	(52.8)	
기타	19	(2.6)	4	(1.6)	27	(3.9)	14	(3.4)	2	(4.1)	0	(0.0)	66	(3.0)	
계	734	(100.0)	256	(100.0)	717	(100.0)	415	(100.0)	49	(100.0)	2	(100.0)	2,173	(100.0)	

※중복포함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을 <표 5-50>과 같이 살펴보면 여성이 1,198건(71.1%), 남성이 488건(28.9%)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 2.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여성이 각각 584건(99.5%), 224건(93.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도 134건(53.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초·중·고교 직원,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남성이 각각 333건(57.8%), 15건(53.6%)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는 남성이 2건으로, 100.0%의 비율을 보였다.

<표 5-5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성별	남성		여성		계	
		건수	(%)	건수	(%)	건수	(%)
보육교직원		3	(0.5)	584	(99.5)	587	(100.0)
유치원교직원		16	(6.7)	224	(93.3)	240	(100.0)
초·중·고교 직원		333	(57.8)	243	(42.2)	576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19	(47.0)	134	(53.0)	253	(100.0)
기타시설 종사자		15	(53.6)	13	(46.4)	28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2	(100.0)	0	(0.0)	2	(100.0)
계		488	(28.9)	1,198	(71.1)	1,686	(100.0)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의 연령을 <표 5-51>과 같이 살펴보면 30대가 484건(28.7%)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40대와 20대가 각각 361건(21.4%), 343건(20.3%), 50대가 267건(15.8%)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경우 30대(32.4%), 20대(31.9%), 40대(24.5%) 순으로 나타나 20~40대에 주로 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30대(48.3%), 20대(28.3%)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30대~60대의 비율이 각각 19%~25% 범위 안에 속해 고른 분포를 보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40대(26.1%)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복지시설 종사자는 30대(39.3%)에 집중되어있다. 반면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20대가 100.0%로 나타났다.

<표 5-5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연령(만)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 시설종사자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20~29세	187	(31.9)	68	(28.3)	57	(9.9)	29	(11.5)	0	(0.0)	2	(100.0)	343	(20.3)
30~39세	190	(32.4)	116	(48.3)	115	(20.0)	52	(20.6)	11	(39.3)	0	(0.0)	484	(28.7)
40~49세	144	(24.5)	32	(13.3)	112	(19.4)	66	(26.1)	7	(25.0)	0	(0.0)	361	(21.4)
50~59세	44	(7.5)	23	(9.6)	143	(24.8)	51	(20.2)	6	(21.4)	0	(0.0)	267	(15.8)
60~69세	11	(1.9)	0	(0.0)	128	(22.2)	22	(8.7)	1	(3.6)	0	(0.0)	162	(9.6)
70세 이상	2	(0.3)	0	(0.0)	0	(0.0)	1	(0.4)	0	(0.0)	0	(0.0)	3	(0.2)
파악안됨	9	(1.5)	1	(0.4)	21	(3.6)	32	(12.6)	3	(10.7)	0	(0.0)	66	(3.9)
계	587	(100.0)	240	(100.0)	576	(100.0)	253	(100.0)	28	(100.0)	2	(100.0)	1,686	(100.0)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표 5-52>와 같이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496건(52.8%)으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특성없음이 2건(100.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각각 166건(49.1%), 315건(40.1%), 221건(52.6%), 18건(4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5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건, %)

특성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기타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신체적 장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정신적 장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애의심	1	(0.1)	0	(0.0)	4	(0.5)	5	(1.2)	0	(0.0)	0	(0.0)	0	(0.0)	10	(0.4)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496	(52.8)	166	(49.1)	315	(40.1)	221	(52.6)	18	(48.6)	0	(0.0)	0	(0.0)	1,216	(48.2)
중독문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질한문제	1	(0.1)	0	(0.0)	30	(3.8)	0	(0.0)	0	(0.0)	0	(0.0)	0	(0.0)	31	(1.2)
성격 및 기질문제	87	(9.3)	4	(1.2)	45	(5.7)	23	(5.5)	0	(0.0)	0	(0.0)	0	(0.0)	159	(6.3)
위생문제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나태 및 무기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난독해, 난작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99	(10.5)	6	(1.8)	91	(11.6)	27	(6.4)	0	(0.0)	0	(0.0)	0	(0.0)	223	(8.8)
어릴 적 학대 경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폭력성	0	(0.0)	0	(0.0)	0	(0.0)	6	(1.4)	0	(0.0)	0	(0.0)	0	(0.0)	6	(0.2)
전과력	0	(0.0)	13	(3.8)	0	(0.0)	0	(0.0)	0	(0.0)	0	(0.0)	0	(0.0)	13	(0.5)
성문제	0	(0.0)	13	(3.8)	35	(4.5)	23	(5.5)	4	(10.8)	0	(0.0)	0	(0.0)	75	(3.0)
원치 않은 아동	0	(0.0)	0	(0.0)	0	(0.0)	1	(0.2)	0	(0.0)	0	(0.0)	0	(0.0)	1	(0.0)
부부 및 가족갈등	0	(0.0)	0	(0.0)	1	(0.1)	9	(2.1)	0	(0.0)	0	(0.0)	0	(0.0)	10	(0.4)
종교문제	0	(0.0)	0	(0.0)	0	(0.0)	5	(1.2)	0	(0.0)	0	(0.0)	0	(0.0)	5	(0.2)
특성없음	229	(24.4)	129	(38.2)	234	(29.8)	79	(18.8)	10	(27.0)	2	(100.0)	0	(0.0)	683	(27.1)
파악안됨	25	(2.7)	7	(2.1)	31	(3.9)	21	(5.0)	5	(13.5)	0	(0.0)	0	(0.0)	89	(3.5)
계	939	(100.0)	338	(100.0)	786	(100.0)	420	(100.0)	37	(100.0)	2	(100.0)	2,522	(100.0)		

※중복포함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중복학대 별도로 분류하여 <표 5-53>과 같이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중복학대가 각각 234건(39.9%), 238건(41.3%), 127건(5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일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133건(22.7%)으로 보육교직원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학대, 성학대는 각각 209건(36.3%), 39건(6.8%)으로 초·중·고교 직원이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96건(40.0%)으로 유치원교직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체학대가 64.3%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체학대, 중복학대가 각각 1건(50.0%)으로 나타났다.

<표 5-53>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기타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신체학대		133	(22.7)	28	(11.7)	90	(15.6)	69	(27.3)	18	(64.3)	1	(50.0)	339	(20.1)
정서학대		144	(24.5)	46	(19.2)	209	(36.3)	40	(15.8)	2	(7.1)	0	(0.0)	441	(26.2)
성학대		0	(0.0)	13	(5.4)	39	(6.8)	7	(2.8)	4	(14.3)	0	(0.0)	63	(3.7)
방임		76	(12.9)	96	(40.0)	0	(0.0)	10	(4.0)	0	(0.0)	0	(0.0)	182	(10.8)
중복학대	신학대·정서학대	166	(28.3)	57	(23.8)	207	(35.9)	121	(47.8)	3	(10.7)	1	(50.0)	555	(32.9)
	신체학대·성학대	0	(0.0)	0	(0.0)	1	(0.2)	0	(0.0)	0	(0.0)	0	(0.0)	1	(0.1)
	신체학대·방임	9	(1.5)	0	(0.0)	0	(0.0)	0	(0.0)	0	(0.0)	0	(0.0)	9	(0.5)
	정서학대·성학대	0	(0.0)	0	(0.0)	27	(4.7)	0	(0.0)	0	(0.0)	0	(0.0)	27	(1.6)
	정서학대·방임	33	(5.6)	0	(0.0)	2	(0.3)	0	(0.0)	0	(0.0)	0	(0.0)	35	(2.1)
	성학대·방임	0	(0.0)	0	(0.0)	0	(0.0)	1	(0.4)	0	(0.0)	0	(0.0)	1	(0.1)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0	(0.0)	0	(0.0)	1	(0.2)	5	(2.0)	1	(3.6)	0	(0.0)	7	(0.4)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26	(4.4)	0	(0.0)	0	(0.0)	0	(0.0)	0	(0.0)	0	(0.0)	26	(1.5)
	신체학대·성학대·방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정서학대·성학대·방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계		234	(39.9)	57	(23.8)	238	(41.3)	127	(50.2)	4	(14.3)	1	(50.0)	661
계		587	(100.0)	240	(100.0)	576	(100.0)	253	(100.0)	28	(100.0)	2	(100.0)	1,686	(100.0)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II(중복학대 미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표 5-54>와 같이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1,091건(4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 937건(39.4%), 방임 253건(10.6%), 성학대 99건(4.2%)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은 학대유형 중 정서학대에서 각각 43.6%, 34.7%, 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체학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종사자 유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신체학대에서 50.6%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시설 종사자와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는 각각 66.7%로 나타나 과반수가 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54>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II(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 건, %)

학대유형 \ 종사자유형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신체학대	334	(39.4)	85	(28.6)	299	(36.7)	195	(50.6)	22	(66.7)	2	(66.7)	937	(39.4)
정서학대	369	(43.6)	103	(34.7)	446	(54.7)	166	(43.1)	6	(18.2)	1	(33.3)	1,091	(45.8)
성학대	0	(0.0)	13	(4.4)	68	(8.3)	13	(3.4)	5	(15.2)	0	(0.0)	99	(4.2)
방임	144	(17.0)	96	(32.3)	2	(0.2)	11	(2.9)	0	(0.0)	0	(0.0)	253	(10.6)
계	847	(100.0)	297	(100.0)	815	(100.0)	385	(100.0)	33	(100.0)	3	(100.0)	2,380	(100.0)

※중복포함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표 5-55>과 같이 살펴보면 모든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 원가정보호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원가정보호율은 시설 종사자에 따라 84.2%에서 100.0%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 그리고 초·중·고교 직원은 모두 99%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분리보호가 15.8%로 다른 시설종사자 유형에 비해 높은 분리보호율을 보였으며 분리보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시보호조치는 16건, 장기보호조치는 21건이었다.

<표 5-5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조치결과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친족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소계				
보육교직원	586 (99.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587 (100.0)
유치원교직원	238 (99.2)	0	(0.0)	0	(0.0)	0	(0.0)	0	(0.0)	0	(0.0)	2	(0.8)	2	(0.8)	0	(0.0)	0	(0.0)	240 (100.0)
초·중·고교 직원	571 (99.1)	5	(0.9)	0	(0.0)	0	(0.0)	0	(0.0)	0	(0.0)	0	(0.0)	5	(0.9)	0	(0.0)	0	(0.0)	576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13 (84.2)	3	(1.2)	0	(0.0)	0	(0.0)	16	(6.3)	21	(8.3)	0	(0.0)	40	(15.8)	0	(0.0)	0	(0.0)	253 (100.0)
기타시설 종사자	27 (96.4)	0	(0.0)	0	(0.0)	0	(0.0)	0	(0.0)	1	(3.6)	0	(0.0)	1	(3.6)	0	(0.0)	0	(0.0)	28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2(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계	1,637 (97.1)	8	(0.5)	0	(0.0)	0	(0.0)	16	(0.9)	22	(1.3)	2	(0.1)	48	(2.8)	1	(0.1)	1,686 (100.0)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5-56>와 같이 살펴보면 모든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 고소·고발·사건처리가 1,212건(71.9%)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속관찰 354건(21.0%), 아동과의 분리 113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관찰은 초·중·고교 직원 38.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8.2%, 보육교직원 12.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과의 분리는 기타시설 종사자가 1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초·중·고교 직원이 13.9%로 두 번째로 높았다. 고소·고발·사건처리의 경우 초·중·고교 직원이 46.5%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고,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가 100%로 압도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5-5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조치결과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보육교직원	74	(12.6)	10	(1.7)	501	(85.3)	2	(0.3)	587
유치원교직원	8	(3.3)	15	(6.3)	217	(90.4)	0	(0.0)	240	(100.0)	
초·중·고교 직원	223	(38.7)	80	(13.9)	268	(46.5)	5	(0.9)	576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6	(18.2)	4	(1.6)	203	(80.2)	0	(0.0)	253	(100.0)	
기타시설 종사자	3	(10.7)	4	(14.3)	21	(75.0)	0	(0.0)	28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0	(0.0)	0	(0.0)	2	(100.0)	0	(0.0)	2	(100.0)	
계	354	(21.0)	113	(6.7)	1,212	(71.9)	7	(0.4)	1,686	(100.0)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6.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016년에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량을 산출하였으며, 2017년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을 분석하고 적정 인력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심층연구를** 진행하여 기존 업무량 분석 보고서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필요한 인원 배치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2017년 심층연구의 경우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들의 업무량 분석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기존 정웅(2016)연구보고서에 기초하여 업무량을 산출하였다.

2017년에 진행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업무량 분석」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연구와 마찬가지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질적인 업무량 측정과 분석을 위해 현장에서 전개되는 업무흐름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신고 이후의 조사 및 서비스 등 관련 세부 업무들을 조사하여 단계별로 업무량(시간)을 추정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상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필요업무에 따른 소요시간을 응답하였고,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후 각 업무별 2016년 사례 및 업무건수를 집계한 후, 업무별소요시간을 곱해 총업무소요시간을 구하여 업무량을 산출하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연구에서는 일반 행정관리업무, 사후관리 업무, 24시간 근무 환경에 따른 당직 대기 및 업무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을 분석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연구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경찰대학교 정웅 연구관이 수행한 연구결과임.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업무량 분석(20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결과를 일부 발췌함.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응답에 기초하여 업무량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방법에 따라 업무량(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표 6-1〉에 따라 업무량 분석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8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수원 제외)의 2016년 신고접수사례 수에 따라 상위 25%, 중위, 하위 25% 등 3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3개 집단에서 총 19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유의표집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상담원을 대상으로 업무량을 조사하였다.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51명을 표본추출하여 업무량을 조사하였다.

〈표 6-1〉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연구」 연구대상

항목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조사방법		신고접수 사례 수에 따라 상위·중위·하위 기관 유의표집	표본 추출
연구대상		19개 기관 상담원 172명	51명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업무량 분석(2017)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2016)

1.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량 분석」 연구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량(시간)을 세부업무별 평균 업무시간을 기초로,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 총량을 추정하였다. 즉 각 업무별 평균 소요시간 값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연간 수행한 각 업무들의 크기(회, 건)를 적용하여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총 업무량을 산출하였다.

〈표 6-2〉는 2016년도에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총량과 직원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이에 따른 적정인원 수를 추정한 것이다.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수행한 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 총 업무량(T)은 약 2,315,310.2시간(상담원 1인당 약 3,635시간), 1인당 업무손실(L)은 약 123시간(15.4일)으로 추정되었다.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들의 경우 심층 연구를 진행하지 않아 기존 정웅(2016)연구보고서에 기초하여 업무량을 산출하였다. 수행한 치료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 총 업무량(T)은 약 325,927시간(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약 5,173시간, 647일), 1인당 업무손실(L)은 약 148시간(18.5일)으로 추정되었다. 상담원 1인당 업무가용시간*에서 상담원 1인당 연 평균 업무손실 등을 차감한 실질적인 연간 가용 근무시간을 재산정한 것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우 약 245일(1,960시간)으로 나타났다.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약 231일(1,852시간)이었다.

이러한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연간 업무처리 소요시간 및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현실 타당한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 인력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6년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원 적정인원은 1,181명**으로 나타났다.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 경우 2016년 기준 총 174.2명***이 치료업무 수행에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1인당 연간 가용한 기본근무시간은 상담원 1인당 업무가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음. 평균월일수 30.41 일($= \frac{365}{12}$)이고, 평균월주수는 4.34 주($= \frac{30.41}{7}$)다. 따라서 평균월 업무가용시간은 173.6 시간($= 40 \times 4.34$)이된다. 이를 연간 업무가용시간으로 환산하면, $2,083.2$ ($= 173.6 \times 12$)시간이되며, 연간 업무가용일수로는 260.4 일이 됨.

** 2016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 상담원 수는 637명임.

*** 2016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 상근임상심리치료인력 수는 63명임.

<표 6-2>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업무량

(단위: 명, 시간)

지역 및 기관	항목	상담원 (기관장 제외)*	상담원 총 업무량 (시간)	상담원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상담원 표준모형 적정 인원수	상근임상 심리치료 전문인력수	임상심리 치료전문 인력 총 업무량 (시간)	임상심리 치료전문 인력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임상심리 치료전문 인력 표준 모형적정 인원수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7	13,877	1,961	7.1	0	921	1,852	0.5	
	서울특별시동부	13	95,694	1,961	48.8	1	3,978	1,852	2.1	
	서울강서	10	36,805	1,961	18.8	1	4,443	1,852	2.4	
	서울은평	10	41,386	1,961	21.1	1	5,269	1,852	2.8	
	서울영등포	11	35,942	1,961	18.3	1	3,805	1,852	2.1	
	서울성북	10	45,998	1,961	23.5	1	5,743	1,852	3.1	
	서울마포	12	29,547	1,961	15.1	1	6,672	1,852	3.6	
	서울동남권	8	52,362	1,961	26.7	2	4,965	1,852	2.7	
소 계	81	351,610		179.3	8	35,797		19.3		
부산	부산광역시	8	22,914	1,961	11.7	1	2,929	1,852	1.6	
	부산동부	12	22,892	1,961	11.7	1	2,977	1,852	1.6	
	부산서부	10	27,298	1,961	13.9	1	1,682	1,852	0.9	
	부산남부	11	3,320	327	1.7	1	1,207	309	0.7	2016. 10. 21설치
	소 계	41	76,424		39.0	4	8,794		4.7	
대구	대구광역시	11	30,924	1,961	15.8	1	3,815	1,852	2.1	
	대구남부	11	40,371	1,961	20.6	1	3,705	1,852	2.0	
	대구북부	11	22,193	1,471	11.3	1	2,476	1,389	1.3	2016. 4. 4 설치
	소 계	33	93,488		47.7	3	9,996		5.4	
인천	인천광역시	12	72,969	1,961	37.2	1	4,438	1,852	2.4	
	인천북부	11	46,946	1,961	23.9	1	5,907	1,852	3.2	
	인천남부	11	66,739	1,961	34.0	1	3,090	1,852	1.7	
	소 계	34	186,655		95.2	3	13,435		7.3	
광주	광주광역시	9	33,466	1,961	17.1	1	4,316	1,852	2.3	
	빛고을	12	2,083	327	1.1	1	1,163	309	0.6	2016. 10. 26설치
	소 계	21	35,549		18.1	2	5,479		3.0	
대전	대전광역시	9	21,525	1,961	11.0	1	5,775	1,852	3.1	
경기	울산광역시	15	51,541	1,961	26.3	1	6,839	1,852	3.7	
	경기도	12	66,973	1,961	34.2	1	7,997	1,852	4.3	
	경기북부	16	58,903	1,961	30.0	1	7,553	1,852	4.1	
	경기성남	12	43,948	1,961	22.4	1	7,431	1,852	4.0	
	경기고양	11	41,344	1,961	21.1	1	6,615	1,852	3.6	
	경기부천	12	57,264	1,961	29.2	1	8,555	1,852	4.6	
	경기화성	11	58,228	1,961	29.7	1	5,627	1,852	3.0	
	경기남양주	9	27,827	1,961	14.2	1	3,155	1,852	1.7	
	안산시	15	117,869	1,961	60.1	1	10,020	1,852	5.4	
	경기용인	13	47,811	1,961	24.4	2	6,729	1,852	3.6	
	경기사흥	10	38,587	1,961	19.7	1	6,559	1,852	3.5	
	경기평택	9	26,870	1,961	13.7	1	2,893	1,852	1.6	
	수원	-	-	-	-	-	-	-	-	2016. 12. 5. 설치로 업무량 산출 제외
	소 계	130	585,623		298.7	12	74,058		40.0	

지역 및 기관	항목	상담원 (기관장 제외)*	상담원 총 업무량 (시간)	상담원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상담원 표준모형 적정 인원수	상근임상 심리치료 전문인력수	임상심리 치료전문 인력 총 업무량 (시간)	임상심리 치료전문 인력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임상심리 치료전문 인력 표준 모형적정 인원수	비고
강원	강원도	12	26,170	1,961	13.3	1	2,527	1,852	1.4	
	강원동부	12	29,286	1,961	14.9	1	2,498	1,852	1.3	
	강원서부	10	48,414	1,961	24.7	1	5,960	1,852	3.2	
	강원남부	7	38,324	1,961	19.5	1	3,974	1,852	0.4	
	소 계	41	142,195		72.5	4	14,959		6.3	
충북	충청북도	15	70,724	1,961	36.1	1	16,387	1,852	8.8	
	충북북부	11	26,952	1,961	13.7	1	2,931	1,852	1.6	
	충북남부	7	31,670	1,961	16.2	1	4,267	1,852	2.3	
	소 계	33	129,346		66.0	3	23,584		12.7	
충남	충청남도	13	38,972	1,961	19.9	1	9,244	1,852	5.0	
	충청남도남부	9	21,552	1,961	11.0	1	6,843	1,852	3.7	
	충청남도서부	8	22,358	1,961	11.4	1	5,492	1,852	3.0	
	소 계	30	82,883		42.3	3	21,580		11.7	
전북	전라북도	12	35,491	1,961	18.1	1	11,663	1,852	6.3	
	전라북도서부	11	47,106	1,961	24.0	1	11,675	1,852	6.3	
	전라북도동부	8	65,553	1,961	33.4	1	8,422	1,852	4.5	
	소 계	31	148,150		75.6	3	31,759		17.1	
전남	전라남도	11	44,172	1,961	22.5	2	6,847	1,852	3.7	
	전남서부권	12	70,133	1,961	35.8	2	8,882	1,852	4.8	
	전남중부권	15	70,306	1,961	35.9	2	8,850	1,852	4.8	
	소 계	38	184,611		94.1	6	24,579		13.3	
경북	경북남부	12	15,320	1,961	7.8	1	1,414	1,852	0.8	
	경북북부	11	22,684	1,961	11.6	2	5,997	1,852	3.2	
	경북동부	12	55,688	1,961	28.4	1	5,631	1,852	3.0	
	경북서부	12	20,342	1,961	10.4	1	2,187	1,852	1.2	
	소 계	47	114,035		58.2	5	15,229		8.2	
경남	경상남도	18	62,334	1,961	31.8	1	3,520	1,852	1.9	
	경남서부	11	43,722	1,961	22.3	1	1,954	1,852	1.1	
	김해시	7	18,772	1,961	9.6	1	2,119	1,852	1.1	
	소 계	36	124,828		63.7	3	7,593		4.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9	16,720	1,961	8.5	1	2,415	1,852	1.3	
	서귀포시	8	25,148	1,961	12.8	1	2,476	1,852	1.3	
	소 계	17	41,868		21.4	2	4,891		2.6	
계		637	2,370,331	1,961	766,725	63	325,927	1,852	174.2	

* 상담원, 상근임상심리치료사 수는 2016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됨.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현황

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신고자 유형
-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 연도별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 연도별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실태 현황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 현황 지표 중 중요 항목에 대한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그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8개소 증설되면서 전년 대비 40.4%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에는 36.0%로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2013년 10월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안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되면서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제도적 변화와 사회적 인식 확대를 통해 2015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8.0%로 상승하였다. 2016년에는 2015년 말부터 언론을 통해 부각된 일련의 아동학대사건을 통해서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이 국민들에게 노출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범정부적으로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점검 및 조치들을 실행함에 따라 신고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 80% 이상을 차지하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87.2%가 아동학대의심사례였다. 이는 기존에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되면서 신고·발견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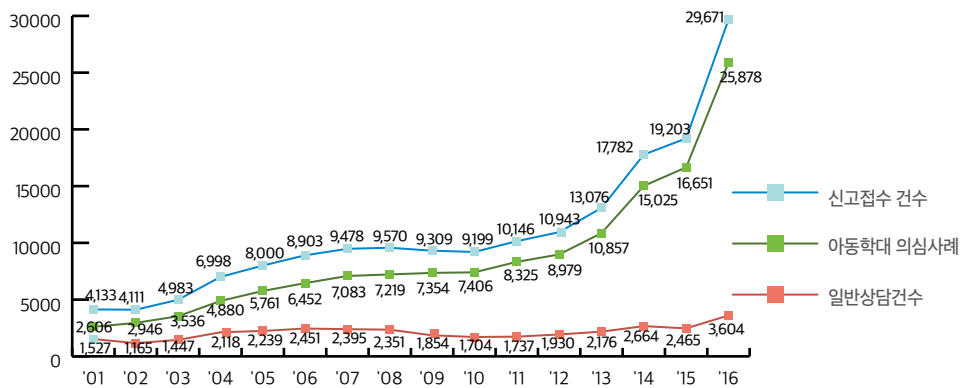
(단위 : 건, %)

연도	구분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계		전년 대비 증가율	비고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2001년		2,606	(63.1)	-	-	1,527	(36.9)	4,133	(100.0)	-	
2002년		2,946	(71.7)	-	-	1,165	(28.3)	4,111	(100.0)	-0.5	
2003년		3,536	(71.0)	-	-	1,447	(29.0)	4,983	(100.0)	21.2	
2004년		4,880	(69.7)	-	-	2,118	(30.3)	6,998	(100.0)	40.4	아동보호전문기관 18개소 확대
2005년		5,761	(72.0)	-	-	2,239	(28.0)	8,000	(100.0)	14.3	
2006년		6,452	(72.5)	-	-	2,451	(27.5)	8,903	(100.0)	11.3	
2007년		7,083	(74.7)	-	-	2,395	(25.3)	9,478	(100.0)	6.5	
2008년		7,219	(75.4)	77	(-)	2,351	(24.6)	9,570*	(100.0)	1.0	
2009년		7,354	(79.0)	101	(1.1)	1,854	(19.9)	9,309	(100.0)	-2.7	
2010년		7,406	(80.5)	89	(1.0)	1,704	(18.5)	9,199	(100.0)	-1.2	
2011년		8,325	(82.1)	84	(0.8)	1,737	(17.1)	10,146	(100.0)	10.3	
2012년		8,979	(82.1)	34	(0.3)	1,930	(17.6)	10,943	(100.0)	7.9	
2013년		10,857	(83.0)	43	(0.3)	2,176	(16.6)	13,076	(100.0)	19.5	
2014년		15,025	(84.5)	93	(0.5)	2,664	(15.0)	17,782	(100.0)	36.0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2015년		16,651	(86.7)	87	(0.5)	2,465	(12.8)	19,203	(100.0)	8.0	
2016년		25,878	(87.2)	189	(0.6)	3,604	(12.1)	29,671	(100.0)	54.5	

* 2008년도 전체 신고 건수 9,570건에는 중복신고 77건이 포함되지 않음.

**해외발생사례 건수는 제외함.

(단위 : 건)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연도별 재신고 발생 현황은 <표 7-2>와 같다.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개입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로, 최초로 신고접수가 된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사례개입이 종결된 이후 다시 신고된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 사례 개입 중 추가적으로 신고접수되었거나 혹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판단 이전에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어 접수된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접수된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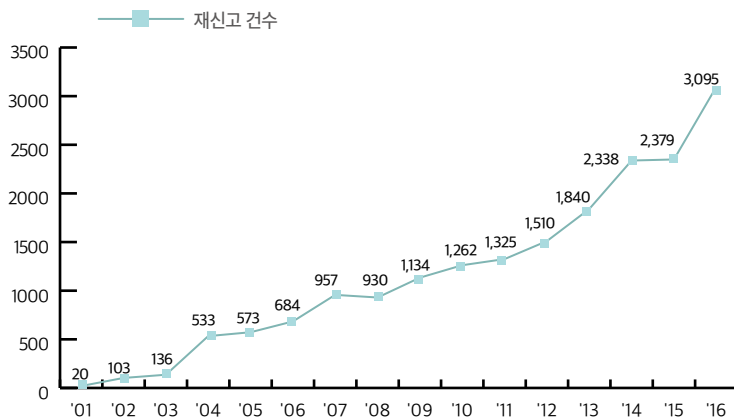
재신고 사례수는 2001년 20건에서 2016년 3,09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도 2001년 0.5%에서 2013년 1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포인트 감소하여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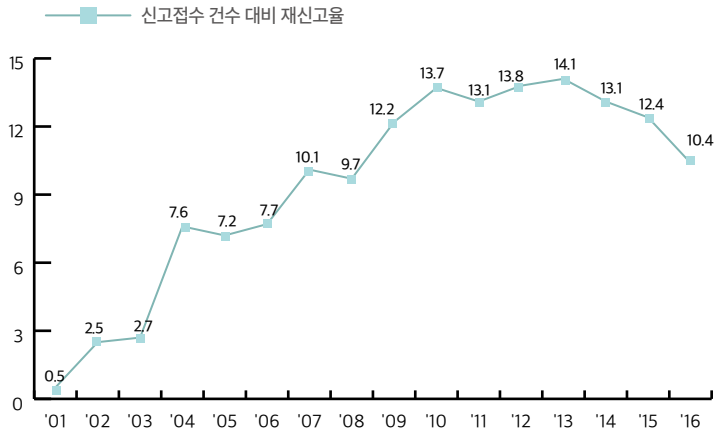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접수 건수	4,133	4,111	4,983	6,998	8,000	8,903	9,478	9,570	9,309	9,199	10,146	10,943	13,076	17,782	19,203	29,671
재신고 건수	20	103	136	533	573	684	957	930	1,134	1,262	1,325	1,510	1,840	2,338	2,379	3,095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0.5	2.5	2.7	7.6	7.2	7.7	10.1	9.7	12.2	13.7	13.1	13.8	14.1	13.1	12.4	10.4

(단위 : 건)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단위 : %)



<그림 7-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01년 686건에서 2016년 8,288건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약 1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비한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은 2012년 36.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5년에는 2014년과 대비하여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0.4%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16년은 2015년 대비 2.6%포인트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특성상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용이하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사례는 아동학대사례 판단률이 높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표 7-3〉과 같이 신고의무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01년을 제외하고 2013년까지 가장 높은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을 보였으나, 2014년부터 점차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2016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3.1%를 차지해 신고의무자 직군 중에서 초·중·고교 직원 다음으로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초·중·고교 직원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신고율을 나타내었고, 특히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약 177.7%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다. 2016년에는 15.4%를 차지하여 신고의무자 직군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비신고의무자 직군의 신고율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을 나타냈으나 2016년에 부모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한 건수가 4,619건으로 가장 높았다. 아동이 신고한 비율은 2014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과 2016년에 동일한 비율인 9.0%로 나타났다.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신고자 유형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초·중·고교 직원	134 (5.1)	149 (5.0)	190 (5.4)	280 (5.7)	431 (7.5)	611 (9.5)	771 (10.9)	887 (12.3)	547 (7.4)	535 (7.2)	594 (7.1)	732 (8.2)	716 (6.6)	1,988 (13.2)	2,172 (13.0)	3,978 (15.4)
의료인	51 (2.0)	59 (2.0)	83 (2.3)	102 (2.1)	126 (2.2)	114 (1.8)	157 (2.2)	105 (1.5)	98 (1.3)	83 (1.1)	88 (1.1)	85 (0.9)	93 (0.9)	123 (0.8)	137 (0.8)	216 (0.8)
시설종사자*	285 (10.9)	238 (8.1)	181 (5.1)	226 (4.7)	222 (3.8)	217 (3.3)	374 (5.3)	426 (5.9)	-	-	-	-	-	-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358 (4.9)	425 (5.7)	338 (4.1)	424 (4.7)	403 (3.7)	275 (1.8)	257 (1.5)	498 (1.9)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15 (0.2)	26 (0.4)	24 (0.3)	28 (0.3)	11 (0.1)	24 (0.2)	46 (0.3)	27 (0.1)
보육교직원	-	-	-	-	-	-	-	-	76 (1.0)	152 (2.1)	178 (2.1)	166 (1.8)	223 (2.1)	273 (1.8)	309 (1.9)	286 (1.1)
유치원교직원	-	-	-	-	-	-	-	-	43 (0.6)	66 (0.9)	40 (0.5)	84 (0.9)	20 (0.2)	43 (0.3)	68 (0.4)	114 (0.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1 (0.0)	15 (0.3)	23 (0.4)	32 (0.5)	26 (0.4)	24 (0.3)	18 (0.2)	16 (0.2)	6 (0.1)	13 (0.1)	7 (0.1)	26 (0.2)	31 (0.2)	24 (0.1)
소방구급대원	-	-	-	-	-	-	3 (0.0)	6 (0.1)	11 (0.2)	6 (0.1)	10 (0.1)	16 (0.2)	11 (0.1)	28 (0.2)	22 (0.1)	39 (0.2)
응급구조사	-	-	-	-	-	-	-	-	-	-	-	0 (0.0)	0 (0.0)	2 (0.0)	0 (0.0)	2 (0.0)
의료기사	-	-	-	-	-	-	-	-	-	-	-	4 (0.0)	6 (0.1)	0 (0.0)	0 (0.0)	2 (0.0)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	-	-	-	-	-	-	-	41 (0.6)	47 (0.6)	45 (0.5)	39 (0.4)	8 (0.1)	2 (0.0)	12 (0.1)	12 (0.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	-	-	-	-	-	-	-	51 (0.6)	75 (0.7)	20 (0.1)	72 (0.5)	122 (0.5)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	-	-	-	-	-	-	-	15 (0.2)	7 (0.1)	13 (0.2)	13 (0.1)	13 (0.1)	10 (0.1)	5 (0.0)	11 (0.0)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	-	-	-	-	-	142 (1.9)	141 (1.9)	199 (2.4)	233 (2.6)	191 (1.8)	174 (1.2)	285 (1.7)	301 (1.2)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16 (8.3)	392 (13.3)	575 (16.3)	738 (15.1)	805 (14.0)	1,038 (16.1)	953 (13.4)	941 (13.0)	975 (13.3)	786 (10.6)	1,169 (14.0)	904 (10.1)	1,055 (9.7)	700 (4.7)	602 (3.6)	815 (3.1)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	-	-	-	-	-	-	-	-	-	-	102 (1.1)	234 (2.2)	104 (0.7)	58 (0.3)	98 (0.4)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695 (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	-	-	157 (1.7)	336 (3.1)	151 (1.0)	210 (1.3)	312 (1.2)
가정위탁지원 센터 종사자	-	-	-	-	-	-	-	-	-	-	-	15 (0.2)	17 (0.2)	27 (0.2)	30 (0.2)	11 (0.0)
건강가정지원 센터 종사자	-	-	-	-	-	-	-	-	-	-	-	21 (0.2)	17 (0.2)	18 (0.1)	19 (0.1)	44 (0.2)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	-	-	-	-	-	-	-	-	-	-	27 (0.3)	27 (0.2)	20 (0.1)	41 (0.2)	35 (0.1)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	-	-	-	-	-	-	-	-	-	34 (0.4)	46 (0.4)	78 (0.5)	49 (0.3)	51 (0.2)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	-	-	-	-	-	-	-	-	-	123 (1.4)	160 (1.5)	185 (1.2)	140 (0.8)	223 (0.9)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	-	-	-	-	-	-	-	-	-	-	45 (0.5)	37 (0.3)	14 (0.1)	28 (0.2)	75 (0.3)
아이돌보미	-	-	-	-	-	-	-	-	-	-	-	-	-	0 (0.0)	9 (0.1)	1 (0.0)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	-	-	-	-	-	-	-	-	-	-	-	-	73 (0.5)	298 (1.8)	296 (1.1)

(단위 : 건, %)

신고자 유형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의무자	성폭력피해자종합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0 (0.0)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0 (0.0)
	입양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0 (0.0)
	소 계	686 (26.3)	838 (28.4)	1,030 (29.1)	1,361 (27.9)	1,607 (27.9)	2,012 (31.2)	2,284 (32.2)	2,389 (33.1)	2,339 (31.8)	2,290 (30.9)	2,704 (32.5)	3,316 (36.9)	3,706 (34.1)	4,358 (29.0)	4,900 (29.4)	8,288 (32.0)
비신고의무자	부 모	772 (29.6)	591 (20.1)	673 (19.0)	990 (20.3)	1,073 (18.6)	1,165 (18.1)	1,294 (18.3)	1,311 (18.2)	1,356 (18.4)	1,374 (18.6)	1,411 (16.9)	1,433 (16.0)	1,426 (13.1)	1,991 (13.3)	3,048 (18.3)	4,619 (17.8)
	이웃·친구	685 (26.3)	757 (25.7)	843 (23.8)	921 (18.9)	933 (16.2)	886 (13.7)	856 (12.1)	845 (11.7)	805 (10.9)	861 (11.6)	991 (11.9)	970 (10.8)	1,065 (9.8)	1,202 (8.0)	1,040 (6.2)	1,858 (7.2)
	친인척	241 (9.3)	242 (8.2)	367 (10.4)	373 (7.6)	481 (8.3)	500 (7.7)	471 (6.7)	502 (6.9)	468 (6.4)	488 (6.6)	461 (5.5)	452 (5.0)	397 (3.7)	536 (3.6)	452 (2.7)	657 (2.5)
	경찰	104 (4.0)	164 (5.6)	221 (6.3)	338 (6.9)	357 (6.2)	340 (5.3)	275 (3.9)	322 (4.5)	416 (5.7)	302 (4.1)	314 (3.8)	425 (4.7)	724 (6.7)	2,204 (14.7)	846 (5.1)	1,426 (5.5)
	종교인	-	36 (1.2)	49 (1.4)	47 (1.0)	74 (1.3)	99 (1.5)	77 (1.1)	54 (0.7)	54 (0.7)	54 (0.7)	53 (0.6)	45 (0.5)	28 (0.3)	20 (0.1)	27 (0.2)	40 (0.2)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90 (3.0)	114 (3.2)	506 (10.4)	823 (14.3)	980 (15.2)	1,165 (16.5)	1,176 (16.3)	1,356 (18.4)	1,562 (21.1)	1,856 (22.3)	1,689 (18.8)	2,632 (24.2)	3,486 (23.2)	3,590 (21.6)	4,088 (15.8)
	낯선 사람	-	-	4 (0.1)	114 (2.3)	80 (1.4)	148 (2.3)	88 (1.2)	70 (1.0)	71 (1.0)	69 (0.9)	55 (0.7)	92 (1.0)	103 (0.9)	193 (1.3)	305 (1.8)	649 (2.5)
	아동본인	40 (1.5)	56 (1.9)	52 (1.5)	65 (1.3)	80 (1.4)	71 (1.1)	50 (0.7)	73 (1.0)	88 (1.2)	115 (1.6)	135 (1.6)	158 (1.8)	171 (1.6)	628 (4.2)	1,500 (9.0)	2,322 (9.0)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	-	-	-	-	-	-	-	-	-	-	-	-	-	-	619 (2.4)
	익 명	-	11 (0.4)	13 (0.4)	13 (0.3)	41 (0.7)	26 (0.4)	11 (0.1)	61 (0.8)	8 (0.1)	6 (0.1)	40 (0.5)	12 (0.1)	14 (0.1)	98 (0.7)	134 (0.8)	244 (0.9)
	형제, 자매	-	-	-	-	-	-	-	-	34 (0.5)	44 (0.6)	47 (0.6)	63 (0.7)	45 (0.4)	110 (0.7)	231 (1.4)	341 (1.3)
	기 타	78 (3.0)	161 (5.5)	170 (4.8)	152 (3.1)	212 (3.7)	225 (3.5)	512 (7.2)	416 (5.8)	359 (4.9)	241 (3.2)	258 (3.1)	324 (3.6)	546 (5.0)	199 (1.3)	578 (3.5)	727 (2.8)
	소 계	1,920 (73.7)	2,108 (71.6)	2,506 (70.9)	3,519 (72.1)	4,154 (72.1)	4,440 (68.8)	4,799 (67.8)	4,830 (66.9)	5,015 (68.2)	5,116 (69.1)	5,621 (67.5)	5,663 (63.1)	7,151 (65.9)	10,667 (71.0)	11,751 (70.6)	17,590 (68.0)
계	2,606 (100.0)	2,946 (100.0)	3,536 (100.0)	4,880 (100.0)	5,761 (100.0)	6,452 (100.0)	7,083 (100.0)	7,219 (100.0)	7,354 (100.0)	7,406 (100.0)	8,325 (100.0)	8,979 (100.0)	10,857 (100.0)	15,025 (100.0)	16,651 (100.0)	25,878 (100.0)	

※ 2009년부터 유치원교직원 항목을 새롭게 추가되었고, 시설종사자 항목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로 구분하여 집계함.

※ 2012년 8월 5일, 전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가 추가됨(아동복지법 제 25조 의거)

※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이 추가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 2016년 11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성폭력피해자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입양기관 종사자가 추가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의거)

※ 2016년 9월 23일,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속하였으나, 이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6.11.30.시행)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제외됨.

※ 2017년 5월 30일, 전부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됨.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 신고접수 경로는 주로 전화라 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신고접수의 80% 이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 되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된 비율이 55.7%로 전년도 대비 24.5%포인트가 감소하고 112를 통해 신고접수된 비율은 40.5%로 전년 대비 27.1%포인트가 증가하였다. 2016년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줄어들었으며, 112를 통한 신고접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신고접수 경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한 1577-1391은 폐지되었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통합이 되면서 112를 통한 신고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아동학대신고 112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112의 비율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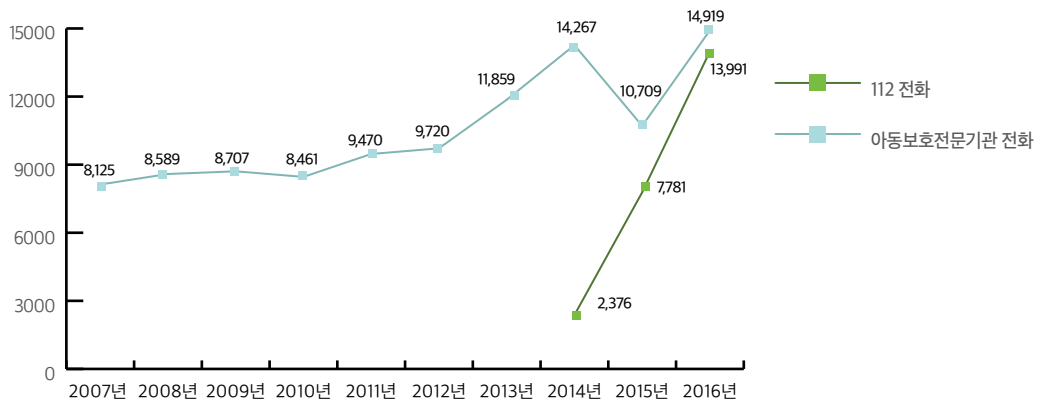
<표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단위 : 건, %)

연도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		112		129		119		1366		인터넷		내방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07년		8,125	(85.7)	-		709	(7.5)	-		-		40	(0.4)	604	(6.4)	9,478	(100.0)
2008년		8,589	(89.7)	-		538	(5.6)	-		-		83	(0.9)	360	(3.8)	9,570	(100.0)
2009년		8,707	(93.5)	-		438	(4.7)	-		-		28	(0.3)	136	(1.5)	9,309	(100.0)
2010년		8,461	(92.0)	-		367	(4.0)	-		-		111	(1.2)	260	(2.8)	9,199	(100.0)
2011년		9,470	(93.3)	-		382	(3.8)	-		-		100	(1.0)	194	(1.9)	10,146	(100.0)
2012년		9,720	(88.8)	-		426	(3.9)	13	(0.1)	-		93	(0.8)	691	(6.3)	10,943	(100.0)
2013년		11,859	(90.7)	-		549	(4.2)	18	(0.1)	-		53	(0.4)	597	(4.6)	13,076	(100.0)
2014년		14,267	(80.2)	2,376	(13.4)	448	(2.5)	20	(0.1)	34	(0.2)	603	(3.4)	43	(0.2)	17,791	(100.0)
2015년		10,709	(55.7)	7,781	(40.5)	11	(0.1)	29	(0.2)	185	(1.0)	55	(0.3)	444	(2.3)	19,214	(100.0)
2016년		14,919	(50.3)	13,991	(47.1)	51	(0.2)	37	(0.1)	141	(0.5)	39	(0.1)	496	(1.7)	29,674	(100.0)

* 2007년부터 2014년 9월 29일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 1577-1391로 신고접수 되었고, 2014년 9월 29일 이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로 신고접수 된 수치임.

(단위 : 건)



<그림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4.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피해아동 발견율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표 7-5>와 같이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1년에 2,105건에 불과하던 아동학대사례가 2016년에는 18,700건으로 약 8.9배 늘어났다. 또한 2016년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하여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이 59.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되고 신고의무가 강화되는 등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설됨에 따라 피해아동 발견율 및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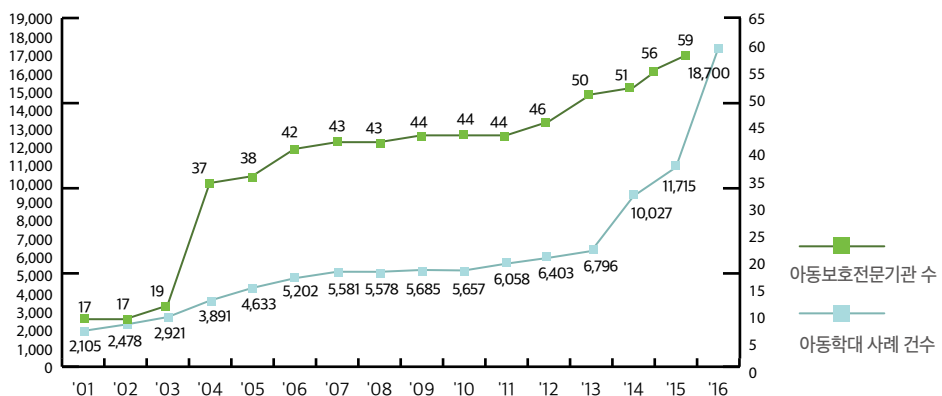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 건, %, 개소)

구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아동학대사례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증가율	-	17.7	17.9	33.2	19.1	12.3	7.3	-0.1	1.9	-0.5	7.1	5.7	6.1	47.5	16.8	59.6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수	17	17	19	37	38	42	43	43	44	44	44	46	50	51	56	59*
	증가기관수	-	-	2	18	1	4	1	-	1	-	-	2	4	1	5	4

* 인천광역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월 1일자로 폐소됨.

(단위 : 건, 개소)



<그림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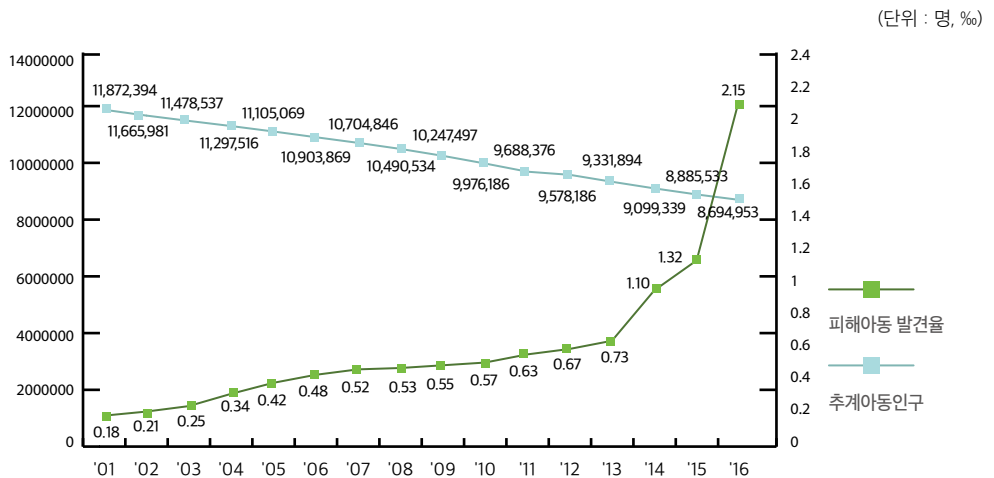
<표 7-6>과 같이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여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추계 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인구 대비 아동학대사례 비율을 산출한 결과 피해아동 발견율은 반대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6년에 약 0.83%포인트 증가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2014년에 전년 대비 약 0.37%포인트 증가하여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인력 증원으로 인해 피해아동 및 관련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명, 건, %)

연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추계아동 인구* (만 0~17세)	11,872,394	11,665,981	11,478,537	11,297,516	11,105,069	10,903,869	10,704,846	10,490,534	10,247,497	9,976,186	9,688,376	9,578,186	9,331,894	9,099,339	8,885,533	8,694,953
아동학대 사례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11,715	18,700
피해아동 발견율	0.18	0.21	0.25	0.34	0.42	0.48	0.52	0.53	0.55	0.57	0.63	0.67	0.73	1.10	1.32	2.15

* 통계청(www.kosis.kr), 2016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그림 7-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복학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표 7-7>과 같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중복학대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복학대의 경우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6년에는 48.0%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여러 유형의 아동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임은 2008년 40.1%의 높은 분포를 보인 이후, 2016년(15.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정서학대는 2001년 5.4%에 불과했었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6년에는 19.2%로 중복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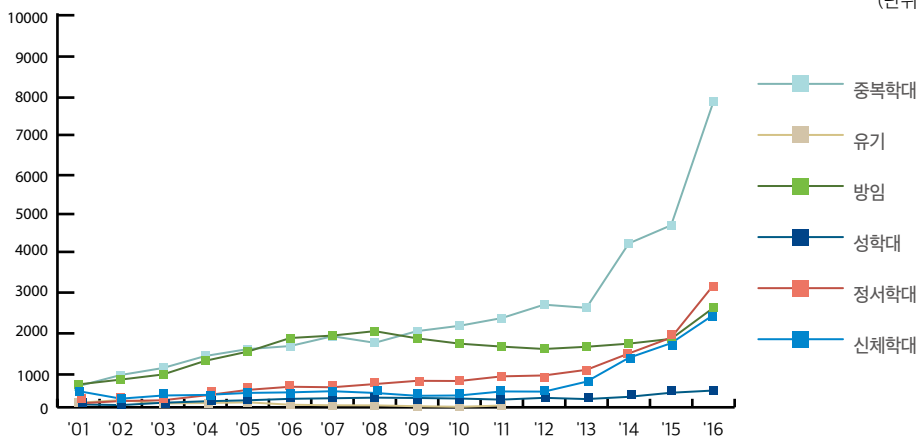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01년	476	(22.6)	114	(5.4)	86	(4.1)	672	(31.9)	134	(6.4)	623	(29.6)	2,105	(100.0)
2002년	254	(10.3)	184	(7.4)	65	(2.6)	814	(32.8)	212	(8.6)	949	(38.3)	2,478	(100.0)
2003년	347	(11.9)	207	(7.1)	134	(4.6)	965	(33.0)	113	(3.9)	1,155	(39.5)	2,921	(100.0)
2004년	364	(9.4)	350	(9.0)	177	(4.5)	1,367	(35.1)	125	(3.2)	1,508	(38.8)	3,891	(100.0)
2005년	423	(9.1)	512	(11.1)	206	(4.4)	1,635	(35.3)	147	(3.2)	1,710	(36.9)	4,633	(100.0)
2006년	439	(8.4)	604	(11.6)	249	(4.8)	2,035	(39.1)	76	(1.5)	1,799	(34.6)	5,202	(100.0)
2007년	473	(8.5)	589	(10.6)	266	(4.8)	2,107	(37.7)	59	(1.0)	2,087	(37.4)	5,581	(100.0)
2008년	422	(7.6)	683	(12.2)	284	(5.1)	2,237	(40.1)	57	(1.0)	1,895	(34.0)	5,578	(100.0)
2009년	338	(5.9)	778	(13.7)	274	(4.8)	2,025	(35.6)	32	(0.6)	2,238	(39.4)	5,685	(100.0)
2010년	348	(6.1)	773	(13.7)	258	(4.6)	1,870	(33.1)	14	(0.2)	2,394	(42.3)	5,657	(100.0)
2011년	466	(7.7)	909	(15.0)	226	(3.7)	1,783	(29.4)	53	(0.9)	2,621	(43.3)	6,058	(100.0)
2012년	461	(7.2)	936	(14.6)	278	(4.3)	1,713	(26.8)	-	-	3,015	(47.1)	6,403	(100.0)
2013년	753	(11.1)	1,101	(16.2)	242	(3.6)	1,778	(26.2)	-	-	2,922	(43.0)	6,796	(100.0)
2014년	1,453	(14.5)	1,582	(15.8)	308	(3.1)	1,870	(18.6)	-	-	4,814	(48.0)	10,027	(100.0)
2015년	1,884	(16.1)	2,046	(17.5)	428	(3.7)	2,010	(17.2)	-	-	5,347	(45.6)	11,715	(100.0)
2016년	2,715	(14.5)	3,588	(19.2)	493	(2.6)	2,924	(15.6)	-	-	8,980	(48.0)	18,700	(100.0)

* 2012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집계함.

(단위: 건)



<그림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 (중복학대 별도 분류)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 유형을 <표 7-8>과 같이 살펴보면, 2016년에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였을 때 보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23%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고, 정서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정서학대는 2001년 9.0%로 낮은 수치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6년에는 43.1%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되고 정서학대가 학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정서학대도 엄연한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과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법·제도적 변화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전사회적 인식이 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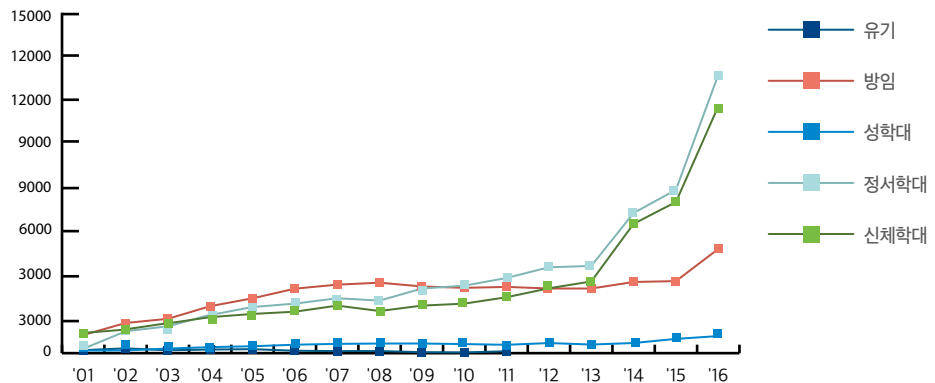
(단위 : 건, %)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01년	890	(41.8)	192	(9.0)	116	(5.4)	797	(37.5)	133	(6.3)	2,128	(100.0)
2002년	1,039	(28.4)	961	(26.3)	119	(3.2)	1,329	(36.3)	212	(5.8)	3,660	(100.0)
2003년	1,315	(30.3)	1,172	(27.1)	203	(4.7)	1,514	(35.0)	126	(2.9)	4,330	(100.0)
2004년	1,587	(27.5)	1,680	(29.2)	266	(4.6)	2,071	(35.9)	160	(2.8)	5,764	(100.0)
2005년	1,728	(25.9)	2,034	(30.5)	305	(4.6)	2,416	(36.4)	176	(2.6)	6,659	(100.0)
2006년	1,827	(24.9)	2,182	(29.8)	372	(5.1)	2,842	(38.8)	106	(1.4)	7,329	(100.0)
2007년	2,095	(26.1)	2,420	(30.1)	409	(5.1)	3,018	(37.6)	92	(1.1)	8,034	(100.0)
2008년	1,857	(23.8)	2,315	(30.0)	424	(5.0)	3,105	(40.0)	94	(1.2)	7,795	(100.0)
2009년	2,095	(25.1)	2,847	(34.1)	426	(5.1)	2,939	(35.2)	43	(0.5)	8,350	(100.0)
2010년	2,182	(25.8)	2,974	(35.1)	400	(4.7)	2,878	(34.0)	32	(0.4)	8,466	(100.0)
2011년	2,464	(26.9)	3,312	(36.3)	368	(4.0)	2,919	(31.9)	85	(0.9)	9,148	(100.0)
2012년	2,858	(28.8)	3,785	(38.1)	446	(4.5)	2,849	(28.7)	-	-	9,938	(100.0)
2013년	3,160	(30.9)	3,843	(37.6)	380	(3.7)	2,848	(27.8)	-	-	10,231	(100.0)
2014년	5,699	(36.9)	6,176	(40.0)	447	(2.9)	3,136	(20.3)	-	-	15,458	(100.0)
2015년	6,661	(37.7)	7,197	(40.7)	629	(3.6)	3,175	(18.0)	-	-	17,662	(100.0)
2016년	10,875	(38.2)	12,262	(43.1)	753	(2.6)	4,592	(16.1)	-	-	28,482	(100.0)

※중복포함

* 2012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집계함.

(단위 : 건)



※중복포함

<그림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II(중복학대 미분류)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표 7-9>와 같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2015년에 처음으로 80% 미만인 79.8%로 나타났으나 2016년에 다시 80%이상을 차지하였다.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 간주하던 과거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여 아동학대가 범죄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부되고 있으나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에는 12.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11.6%로 감소하였다. 2016년에는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중 보육교직원(3.1%), 초·중·고교직원(3.1%)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부 모	관계																
	친부	1,174 (55.8)	1,432 (57.8)	1,607 (55.0)	2,111 (54.3)	2,554 (55.1)	2,739 (52.7)	2,788 (50.0)	2,855 (51.2)	2,867 (50.4)	2,797 (49.4)	2,855 (47.1)	3,013 (47.1)	2,790 (41.1)	4,531 (45.2)	5,368 (45.8)	8,295 (44.4)
	친모	502 (23.8)	551 (22.3)	651 (22.3)	856 (22.0)	1,098 (23.8)	1,321 (25.4)	1,520 (27.2)	1,648 (29.5)	1,605 (28.3)	1,708 (30.2)	1,963 (32.4)	2,090 (32.6)	2,383 (35.1)	3,211 (32.0)	3,475 (29.7)	5,923 (31.7)
	계부	36 (1.7)	21 (0.8)	22 (0.8)	41 (1.1)	38 (0.8)	60 (1.2)	50 (0.9)	52 (0.9)	75 (1.3)	75 (1.3)	62 (1.0)	74 (1.2)	108 (1.6)	189 (1.9)	236 (2.0)	394 (2.1)
	계모	113 (5.4)	94 (3.8)	138 (4.7)	145 (3.7)	142 (3.1)	174 (3.3)	145 (2.6)	130 (2.3)	161 (2.8)	105 (1.9)	129 (2.1)	151 (2.4)	144 (2.1)	242 (2.4)	237 (2.0)	362 (1.9)
	양부	8 (0.4)	5 (0.2)	6 (0.2)	9 (0.2)	15 (0.3)	15 (0.3)	11 (0.2)	12 (0.2)	15 (0.3)	11 (0.2)	11 (0.2)	23 (0.4)	14 (0.2)	17 (0.2)	17 (0.1)	37 (0.2)
	양모	7 (0.3)	0 (0.0)	10 (0.3)	5 (0.1)	15 (0.3)	17 (0.3)	10 (0.2)	22 (0.4)	11 (0.2)	13 (0.2)	19 (0.3)	19 (0.3)	15 (0.2)	17 (0.2)	15 (0.1)	37 (0.2)
	소 계	1,840 (87.4)	2,103 (84.9)	2,434 (83.3)	3,167 (81.4)	3,862 (83.4)	4,326 (83.2)	4,524 (81.1)	4,719 (84.5)	4,734 (83.3)	4,709 (83.2)	5,039 (83.1)	5,370 (83.9)	5,454 (80.3)	8,207 (81.8)	9,348 (79.8)	15,048 (80.5)
친 인 척	친조부		24 (1.0)	26 (0.9)	34 (0.9)	36 (0.8)	72 (1.4)	50 (0.9)	60 (1.1)	54 (0.9)	46 (0.8)	58 (1.0)	74 (1.2)	58 (0.9)	69 (0.7)	96 (0.8)	111 (0.6)
	친조모		53 (2.1)	63 (2.2)	70 (1.8)	78 (1.7)	93 (1.8)	108 (1.9)	98 (1.8)	127 (2.2)	100 (1.8)	84 (1.4)	104 (1.6)	79 (1.2)	135 (1.3)	112 (1.0)	177 (0.9)
	외조부		0 (0.0)	7 (0.2)	7 (0.2)	7 (0.1)	2 (0.0)	12 (0.2)	8 (0.1)	10 (0.2)	15 (0.3)	15 (0.2)	14 (0.2)	8 (0.1)	17 (0.2)	28 (0.2)	39 (0.2)
	외조모		5 (0.2)	12 (0.4)	23 (0.6)	20 (0.4)	19 (0.4)	35 (0.6)	28 (0.5)	39 (0.7)	21 (0.4)	37 (0.6)	48 (0.7)	30 (0.4)	54 (0.5)	52 (0.4)	95 (0.5)
	친인척	51 (2.4)	54 (2.2)	93 (3.2)	100 (2.5)	114 (2.5)	142 (2.7)	123 (2.2)	145 (2.6)	141 (2.5)	144 (2.5)	131 (2.2)	175 (2.7)	150 (2.2)	229 (2.3)	201 (1.7)	266 (1.4)
	형제, 자매	6 (0.3)	6 (0.2)	10 (0.4)	5 (0.1)	16 (0.3)	15 (0.3)	26 (0.5)	22 (0.4)	16 (0.3)	11 (0.2)	24 (0.4)	20 (0.3)	26 (0.4)	55 (0.5)	73 (0.6)	107 (0.6)
	소 계	105 (5.0)	142 (5.7)	211 (7.3)	239 (6.1)	271 (5.8)	343 (6.6)	354 (6.3)	361 (6.5)	387 (6.8)	337 (6.0)	349 (5.8)	435 (6.8)	351 (5.2)	559 (5.6)	562 (4.8)	795 (4.3)

(단위 : 건, %)

관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14 (0.7)	37 (1.5)	34 (1.2)	76 (2.0)	79 (1.7)	67 (1.3)	88 (1.6)	78 (1.4)	88 (1.5)	82 (1.4)	89 (1.5)	75 (1.2)	86 (1.3)	146 (1.5)	158 (1.3)
	유치원 교직원	-	-	-	-	-	-	-	-	-	-	-	31 (0.5)	35 (0.5)	99 (1.0)	203 (1.7)	240 (1.3)
	초·중·고교 직원	50 (2.4)	12 (0.5)	25 (0.8)	33 (0.8)	44 (0.9)	89 (1.7)	53 (0.9)	43 (0.8)	24 (0.4)	83 (1.5)	85 (1.4)	16 (0.2)	31 (0.5)	145 (1.4)	234 (2.0)	576 (3.1)
	학원 및 교습소종사자	-	13 (0.5)	12 (0.4)	21 (0.5)	24 (0.5)	20 (0.4)	11 (0.2)	16 (0.3)	13 (0.2)	17 (0.3)	30 (0.5)	37 (0.6)	11 (0.2)	80 (0.8)	64 (0.5)	167 (0.9)
	보육교직원	-	-	-	-	-	-	-	-	-	-	-	110 (1.7)	217 (3.2)	295 (2.9)	427 (3.6)	587 (3.1)
	시설 종사자	-	5 (0.2)	42 (1.4)	104 (2.7)	78 (1.7)	99 (1.9)	234 (4.2)	88 (1.6)	197 (3.5)	229 (4.0)	265 (4.4)	-	-	-	-	-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	-	-	-	-	-	-	-	-	-	-	99 (1.5)	362 (5.3)	177 (1.8)	296 (2.5)	253 (1.4)
	기타시설 종사자	-	-	-	-	-	-	-	-	-	-	-	20 (0.3)	27 (0.4)	29 (0.3)	22 (0.2)	28 (0.1)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	-	-	-	-	-	-	-	-	-	-	-	-	-	-	6 (0.1)	2 (0.0)
	위탁부	-	-	-	-	-	-	-	-	2 (0.1)	3 (0.1)	5 (0.1)	0 (0.0)	2 (0.0)	5 (0.0)	8 (0.1)	0 (0.0)
	위탁모	-	-	-	-	-	-	-	-	7 (0.1)	5 (0.1)	8 (0.1)	3 (0.0)	11 (0.2)	7 (0.1)	5 (0.0)	5 (0.0)
	베이비시터	-	-	-	-	-	-	-	-	-	-	-	6 (0.1)	4 (0.1)	7 (0.1)	7 (0.1)	4 (0.0)
	소 계	64 (3.0)	67 (2.7)	113 (3.9)	234 (6.0)	225 (4.9)	275 (5.3)	386 (6.9)	225 (4.0)	331 (5.8)	419 (7.4)	482 (8.0)	397 (6.2)	786 (11.6)	990 (9.9)	1,431 (12.2)	2,173 (11.6)
타인	이웃	39 (1.8)	34 (1.4)	64 (2.2)	77 (2.0)	98 (2.1)	81 (1.5)	95 (1.7)	99 (1.8)	76 (1.4)	62 (1.1)	60 (1.0)	60 (0.9)	51 (0.8)	73 (0.7)	85 (0.7)	91 (0.5)
	낯선 사람	-	20 (0.8)	40 (1.4)	57 (1.5)	49 (1.1)	67 (1.3)	48 (0.9)	70 (1.3)	58 (1.0)	53 (0.9)	32 (0.5)	48 (0.7)	34 (0.5)	51 (0.5)	102 (0.9)	110 (0.6)
	소 계	39 (1.9)	54 (2.2)	104 (3.6)	134 (3.4)	147 (3.2)	148 (2.8)	143 (2.6)	169 (3.0)	134 (2.4)	115 (2.0)	92 (1.5)	108 (1.7)	85 (1.3)	124 (1.2)	187 (1.6)	201 (1.1)
	기타	57 (2.7)	32 (1.3)	27 (0.9)	52 (1.3)	81 (1.8)	59 (1.1)	90 (1.6)	67 (1.2)	94 (1.6)	70 (1.2)	95 (1.6)	70 (1.1)	85 (1.3)	129 (1.3)	166 (1.4)	454 (2.4)
	파악안됨	-	80 (3.2)	32 (1.1)	65 (1.7)	47 (1.0)	51 (1.0)	84 (1.5)	37 (0.6)	5 (0.1)	7 (0.2)	1 (0.0)	20 (0.3)	32 (0.5)	18 (0.2)	21 (0.2)	29 (0.2)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3 (0.0)	3 (0.0)	-	-	-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58 (100.0)	6,403 (100.0)	6,796 (100.0)	10,027 (100.0)	11,715 (100.0)	18,700 (100.0)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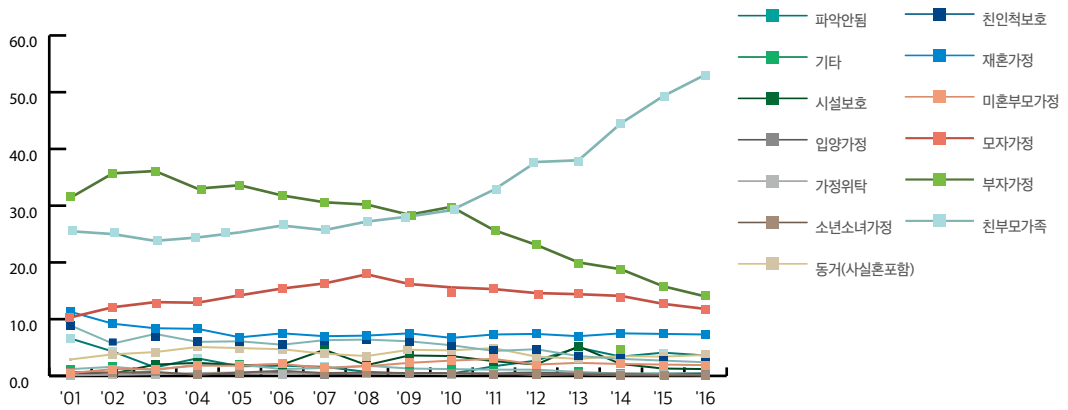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표 7-10>과 같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6년에는 거의 절반인 53.1%로 증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친부모 가족 외 형태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가정 중 부자가정의 경우 2008년까지는 평균 30%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14.0%로 나타났다.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연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가족유형																	
친부모가족		536 (25.5)	619 (25.0)	696 (23.8)	950 (24.4)	1,173 (25.3)	1,380 (26.5)	1,432 (25.7)	1,515 (27.2)	1,599 (28.1)	1,654 (29.2)	1,988 (32.8)	2,415 (37.7)	2,581 (38.0)	4,458 (44.5)	5,779 (49.3)	9,931 (53.1)
친부모 가족 외 형태	부자가정	662 (31.4)	885 (35.7)	1,054 (36.1)	1,285 (33.0)	1,559 (33.7)	1,656 (31.8)	1,710 (30.6)	1,687 (30.2)	1,615 (28.4)	1,684 (29.8)	1,559 (25.7)	1,480 (23.1)	1,360 (20.0)	1,887 (18.8)	1,855 (15.8)	2,623 (14.0)
	모자가정	217 (10.3)	299 (12.1)	380 (13.0)	502 (12.9)	659 (14.2)	799 (15.4)	907 (16.3)	999 (17.9)	919 (16.2)	881 (15.6)	927 (15.3)	935 (14.6)	981 (14.4)	1,414 (14.1)	1,483 (12.7)	2,203 (11.8)
	미혼부·모 가정	10 (0.5)	30 (1.2)	35 (1.2)	70 (1.8)	85 (1.8)	109 (2.1)	78 (1.4)	97 (1.7)	132 (2.3)	150 (2.6)	180 (3.0)	131 (2.0)	154 (2.3)	208 (2.1)	240 (2.0)	347 (1.9)
	재혼가정	238 (11.3)	228 (9.2)	246 (8.4)	322 (8.3)	317 (6.8)	389 (7.5)	390 (7.0)	395 (7.1)	429 (7.6)	380 (6.7)	441 (7.3)	475 (7.4)	473 (7.0)	750 (7.5)	869 (7.4)	1,366 (7.3)
	친인척보호	187 (8.9)	142 (5.7)	217 (7.4)	235 (6.0)	283 (6.1)	284 (5.5)	353 (6.3)	358 (6.4)	347 (6.1)	303 (5.3)	266 (4.4)	303 (4.7)	238 (3.5)	297 (3.0)	320 (2.7)	444 (2.4)
	동거 (사실혼포함)	60 (2.9)	94 (3.8)	122 (4.2)	200 (5.2)	227 (4.9)	242 (4.6)	215 (3.8)	198 (3.6)	263 (4.6)	252 (4.5)	294 (4.9)	220 (3.4)	201 (3.0)	353 (3.5)	403 (3.4)	688 (3.7)
	소년소녀 가정	15 (0.7)	14 (0.6)	21 (0.7)	9 (0.2)	26 (0.6)	49 (0.9)	28 (0.5)	35 (0.6)	31 (0.5)	28 (0.5)	21 (0.3)	22 (0.3)	20 (0.3)	10 (0.1)	7 (0.1)	10 (0.1)
	소계	1,389 (66.0)	1,692 (68.3)	2,075 (71.0)	2,623 (67.4)	3,156 (68.1)	3,528 (67.8)	3,681 (65.9)	3,769 (67.5)	3,736 (65.7)	3,678 (65.0)	3,688 (60.9)	3,566 (55.7)	3,427 (50.4)	4,919 (49.1)	5,177 (44.2)	7,681 (41.1)
대리 양육 형태	가정위탁	3 (0.1)	5 (0.2)	8 (0.3)	20 (0.5)	29 (0.6)	14 (0.3)	26 (0.5)	26 (0.5)	20 (0.4)	15 (0.3)	28 (0.4)	13 (0.2)	21 (0.3)	24 (0.2)	31 (0.3)	28 (0.1)
	입양가정	13 (0.6)	5 (0.2)	13 (0.4)	13 (0.3)	17 (0.4)	26 (0.5)	19 (0.3)	25 (0.4)	26 (0.5)	25 (0.4)	30 (0.5)	37 (0.6)	27 (0.4)	39 (0.4)	34 (0.3)	79 (0.4)
	시설보호	-	10 (0.4)	57 (2.0)	90 (2.3)	88 (1.9)	102 (2.0)	254 (4.6)	104 (1.9)	204 (3.6)	196 (3.5)	155 (2.6)	127 (2.0)	356 (5.2)	208 (2.1)	155 (1.3)	227 (1.2)
	소계	16 (0.7)	20 (0.8)	78 (2.7)	123 (3.1)	134 (2.9)	142 (2.8)	299 (5.4)	155 (2.8)	250 (4.5)	236 (4.2)	213 (3.5)	177 (2.8)	404 (5.9)	271 (2.7)	220 (1.9)	334 (1.8)
기 타	25 (1.2)	40 (1.6)	29 (1.0)	76 (2.0)	92 (2.0)	60 (1.1)	77 (1.4)	102 (1.8)	75 (1.3)	68 (1.2)	67 (1.1)	70 (1.1)	46 (0.7)	43 (0.4)	58 (0.5)	86 (0.5)	
파악안됨	139 (6.6)	107 (4.3)	43 (1.5)	119 (3.1)	78 (1.7)	92 (1.8)	92 (1.6)	37 (0.7)	25 (0.4)	21 (0.4)	102 (1.7)	175 (2.7)	338 (5.0)	336 (3.4)	481 (4.1)	668 (3.6)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58 (100.0)	6,403 (100.0)	6,796 (100.0)	10,027 (100.0)	11,715 (100.0)	18,700 (100.0)	

(단위 : %)



<그림 7-9>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본 절에서는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학대 사례에 대한 추계를 제시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학대 사례는 2001년부터 해당 년도까지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해당 년도에 다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례인 반면, 2014년부터 2016년의 재학대 사례는 최근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해당 년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뜻한다.

1)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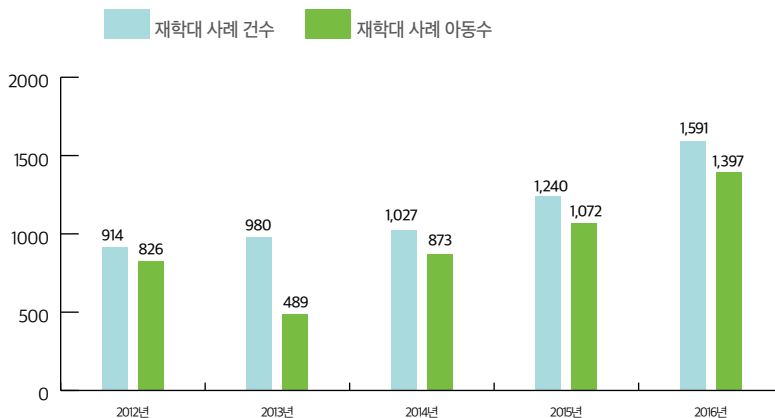
연도별 재학대 사례는 <표 7-11>과 같이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59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재학대 사례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14.3%에 해당하였으나 2014년 이후로 10% 내외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8.5%로 떨어져 재학대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단위 : 건, 명)

구분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재학대 사례 건수	914	980	1,027	1,240	1,591
(재학대 아동수)	(826)	(489)	(873)	(1,072)	(1,397)
재학대 사례 비율	14.3	14.4	10.2	10.6	8.5

(단위 : 건, 명)



<그림 7-10>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 연도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유형을 <표 7-12>와 같이 살펴보면 2012년에는 정서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은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학대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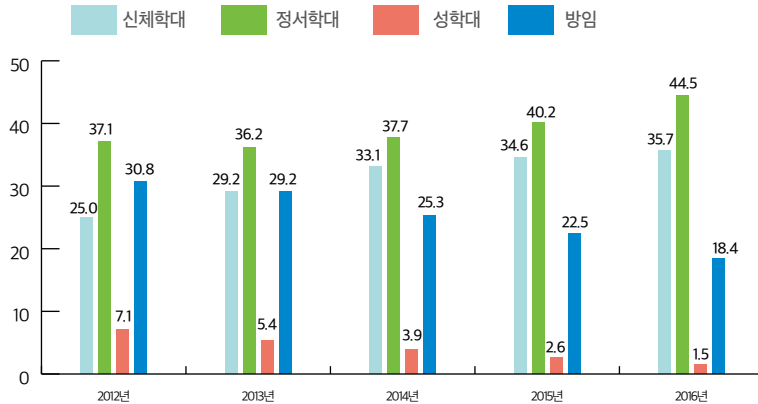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사례유형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	%	건	%	건	%	건	%	건	%
신체학대	361	(25.0)	440	(29.2)	515	(33.1)	676	(34.6)	882	(35.7)
정서학대	536	(37.1)	545	(36.2)	587	(37.7)	785	(40.2)	1,102	(44.5)
성학대	102	(7.1)	81	(5.4)	61	(3.9)	51	(2.6)	36	(1.5)
방임	445	(30.8)	440	(29.2)	393	(25.3)	439	(22.5)	454	(18.4)
계	1,444	(100.0)	1,506	(100.0)	1,556	(100.0)	1,951	(100.0)	2,474	(100.0)

*중복포함

(단위 : %)



*중복포함

<그림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 연도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를 <표 7-13>과 같이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초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신고접수 되는 비율이 약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부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부터 최초 아동학대사례 판단 이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시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비율이 약 23%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례판단 1년 이후부터 재학대 발생 비율의 추세는 63.4%, 57.7%, 51.3%로 과반수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재학대 시기가 점차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 재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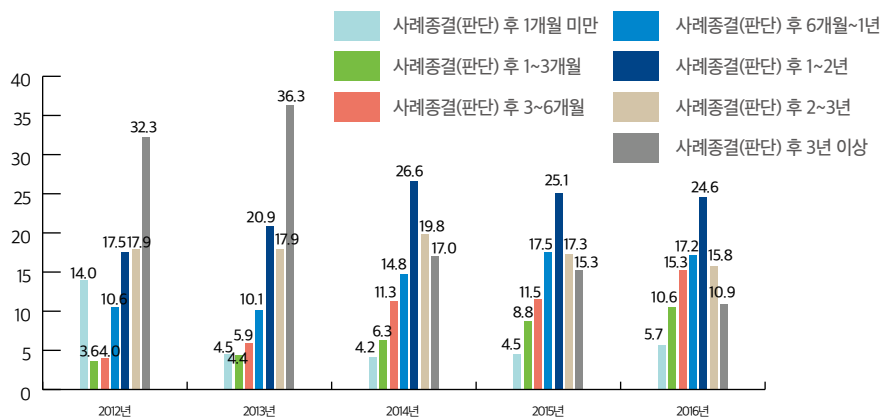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단위 : 건, %)

발생시기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사례종결(판단) 후 1개월 미만	128	(14.0)	44	(4.5)	43	(4.2)	56	(4.5)	90	(5.7)		
사례종결(판단) 후 1개월~3개월	33	(3.6)	43	(4.4)	65	(6.3)	109	(8.8)	168	(10.6)		
사례종결(판단) 후 3개월~6개월	37	(4.0)	58	(5.9)	116	(11.3)	142	(11.5)	243	(15.3)		
사례종결(판단) 후 6개월~1년	97	(10.6)	99	(10.1)	152	(14.8)	217	(17.5)	274	(17.2)		
사례종결(판단) 후 1년~2년	160	(17.5)	205	(20.9)	273	(26.6)	311	(25.1)	391	(24.6)		
사례종결(판단) 후 2년~3년	164	(17.9)	175	(17.9)	203	(19.8)	215	(17.3)	252	(15.8)		
사례종결(판단) 후 3년 이상	295	(32.3)	356	(36.3)	175	(17.0)	190	(15.3)	173	(10.9)		
계	914	(100.0)	980	(100.0)	1,027	(100.0)	1,240	(100.0)	1,591	(100.0)		

※ 2013년부터 재학대 사례의 통계추출 기준을 사례종결이 아닌 사례판단으로 변경한 바 그 기준에 따른 수치를 기재하였음.

(단위 : %)



<그림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4) 연도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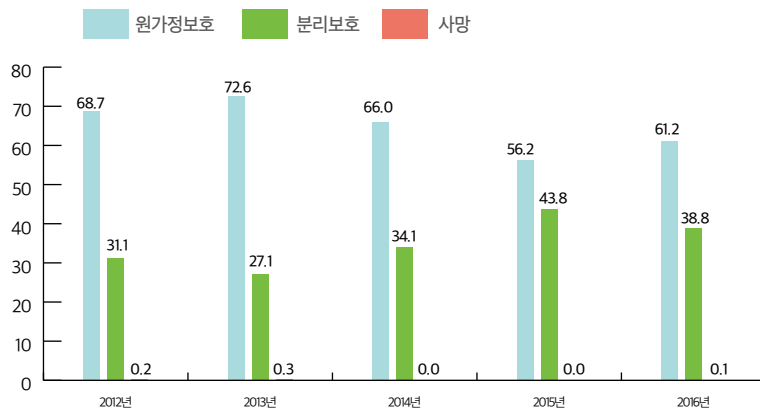
연도별로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표 7-14>와 같이 살펴보면 원가정보보호율이 약 70% 내외 수준이었고, 분리보호율은 3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원가정보보호율은 2013년에 72.6%로 가장 높았다가 2016년에 61.2%로 감소했다. 분리보호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5년 분리보호율은 2014년과 비교하여 9.7%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분리보호조치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아동이 사망에 이른 건수는 2014년부터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16년에 1건 발생하였다.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단위 : 건, %)

구분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원가정보보호	628	(68.7)	711	(72.6)	678	(66.0)	697	(56.2)	973	(61.2)		
분리보호	284	(31.1)	266	(27.1)	349	(34.1)	543	(43.8)	617	(38.8)		
사망	2	(0.2)	3	(0.3)	0	(0.0)	0	(0.0)	1	(0.1)		
계	914	(100.0)	980	(100.0)	1,027	(100.0)	1,240	(100.0)	1,591	(100.0)		

(단위 : %)



<그림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5) 연도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7-15>와 같이 살펴보면, 지속관찰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5년에는 2014년과 비교하여 지속관찰 비율이 17.3%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이와 반대로 고소·고발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고소·고발 비율이 약 19%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인 사건처리가 포함되면서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학대 사례는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로 이후에도 학대가 지속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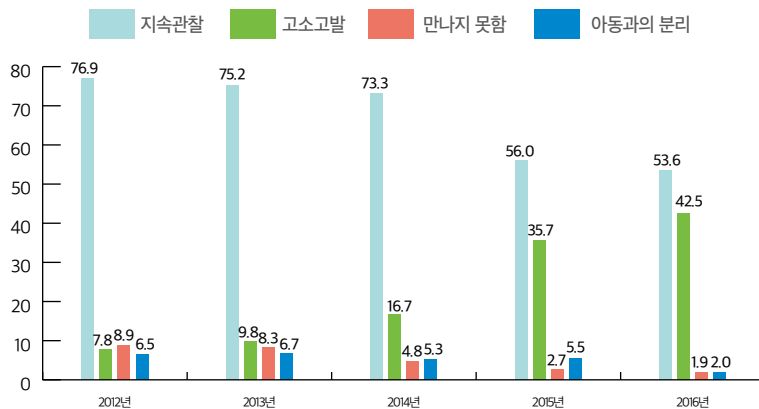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구분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지속관찰	703	(76.9)	737	(75.2)	753	(73.3)	695	(56.0)	853	(53.6)		
고소·고발*	71	(7.8)	96	(9.8)	171	(16.7)	443	(35.7)	676	(42.5)		
만나지 못함	81	(8.9)	81	(8.3)	49	(4.8)	34	(2.7)	30	(1.9)		
아동과의 분리	59	(6.5)	66	(6.7)	54	(5.3)	68	(5.5)	32	(2.0)		
계	914	(100.0)	980	(100.0)	1,027	(100.0)	1,240	(100.0)	1,591	(100.0)		

*2014년과 2015년, 2016년의 고소·고발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에 따라 고소 및 고발 외의 사건처리에 대한 수치까지 합쳐진 값임.

(단위 : %)



<그림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아동사망은 아동학대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이다. 특히 올해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205건의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사망아동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사례만을 집계 하였으므로 실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아래의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수사 기관으로 직접 접수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관련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달하지 않아 관련 통계가 누락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 기관에 보고되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정보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및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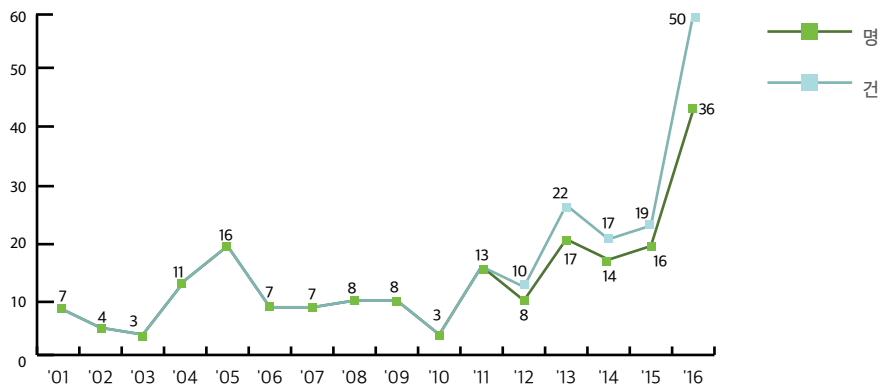
그리고 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자 혹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학대사례에 비해 더 위험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아동사망사건의 원인 및 실태 등을 규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즉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를 포함한 모든 아동사망사건에 대해 아동 사망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는 아동사망사례조사팀*이 상설 조직화되어 아동사망의 예측요인을 밝히고 아동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 및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단위: 건)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건수	7	4	3	11	16	7	7	8	8	3	13	10	22	17	19	50	205
(명수)	(7)	(4)	(3)	(11)	(16)	(7)	(7)	(8)	(8)	(3)	(13)	(8)	(17)	(14)	(16)	(36)	(178)

(단위: 건, 명)



<그림 7-15>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 미국에는 CDR(Child Death Review)가 조직되어 있어 법 집행관, CPS 담당자, 검사/변호사, 검사관, 공중보건사, 소아과 의사/가정의학과 의사, 응급의료서비스 담당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아동의 사망을 조사하고 다른 아동의 사망을 예방,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활동을 함.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을 <표 7-17>과 같이 살펴보면, 2011년과 2013년도에는 방임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과 2014년, 2016년에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에는 신체학대가 52.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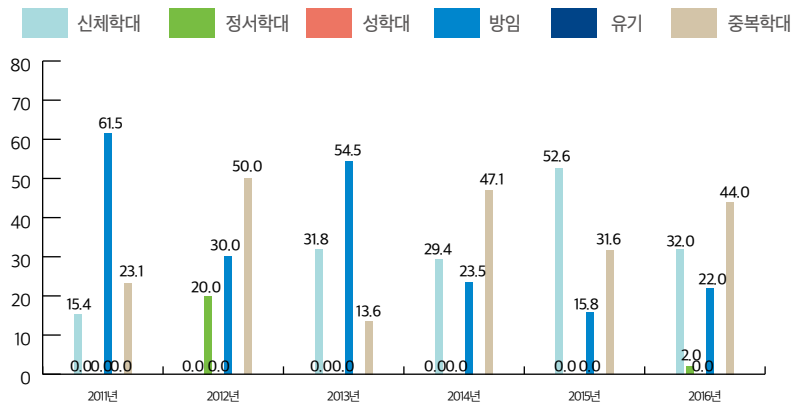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단위 : 건, %)

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신체학대		2	(15.4)	0	(0.0)	7	(31.8)	5	(29.4)	10	(52.6)	16	(32.0)
정서학대		0	(0.0)	2	(20.0)	0	(0.0)	0	(0.0)	0	(0.0)	1	(2.0)
성학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방임		8	(61.5)	3	(30.0)	12	(54.5)	4	(23.5)	3	(15.8)	11	(22.0)
유기*		0	(0.0)	-	-	-	-	-	-	-	-	-	-
중복학대		3	(23.1)	5	(50.0)	3	(13.6)	8	(47.1)	6	(31.6)	22	(44.0)
계		13	(100.0)	10	(100.0)	22	(100.0)	17	(100.0)	19	(100.0)	50	(100.0)

* 2012년부터 아동학대 유형 중 유기는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단위 : %)



<그림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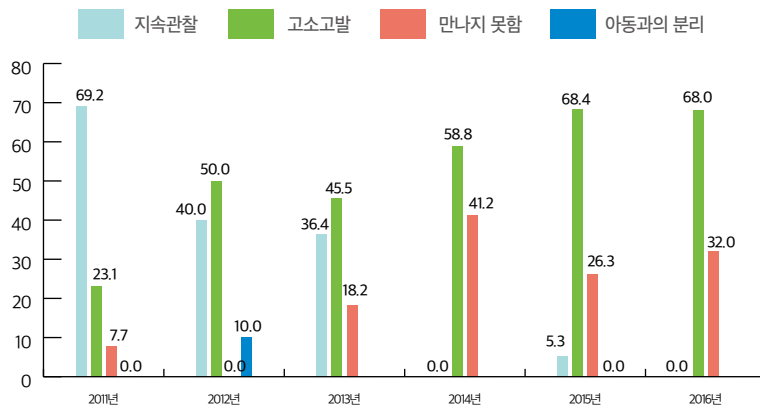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표 7-18>과 같이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소·고발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68.4%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0.4%포인트가 감소한 68.0%로 나타났다.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지속관찰	9	(69.2)	4	(40.0)	8	(36.4)	0	(0.0)	1	(5.3)	0	(0.0)	0	(0.0)
고소·고발	3	(23.1)	5	(50.0)	10	(45.5)	10	(58.8)	13	(68.4)	34	(68.0)	34	(68.0)
만나지 못 함	1	(7.7)	0	(0.0)	4	(18.2)	7	(41.2)	5	(26.3)	16	(32.0)	16	(32.0)
아동과의 분리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13	(100.0)	10	(100.0)	22	(100.0)	17	(100.0)	19	(100.0)	50	(100.0)	50	(100.0)

(단위 : %)



<그림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0.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2016년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대상 교육 결과는 <표 7-19>와 같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에서는 해당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시도/시군구에 보고된 2016년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기관은 총 41,767곳이었으며 실제로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41,764곳에 해당하여 99.9%의 기관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시도별로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한 기관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3,093곳(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5,257곳(12.6%), 경남 3,437곳(8.2%), 인천 2,440곳(5.8%), 경북 2,351곳(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9> 연도별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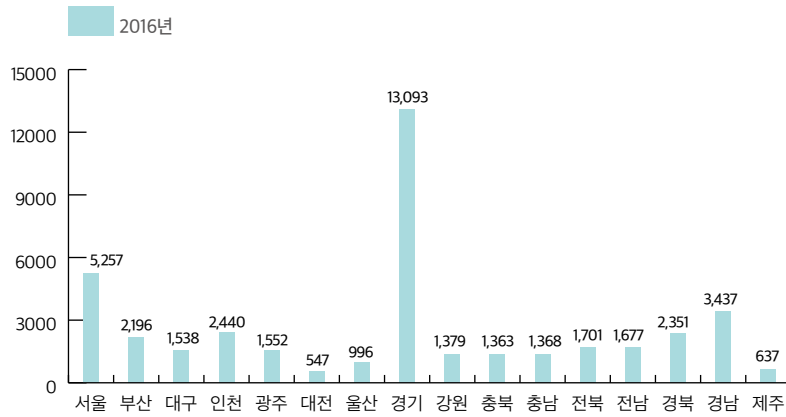
(단위 : 곳, %)

지역	연도	2016년				
		총기관수		교육기관수		총 기관수 대비 교육이수 기관 비율
서울		5,260	(12.6)	5,257	(12.6)	(99.9)
부산		2,196	(5.3)	2,196	(5.3)	(100.0)
대구		1,538	(3.7)	1,538	(3.7)	(100.0)
인천		2,440	(5.8)	2,440	(5.8)	(100.0)
광주		1,552	(3.7)	1,552	(3.7)	(100.0)
대전		547	(1.3)	547	(1.3)	(100.0)
울산		966	(2.3)	966	(2.3)	(100.0)
경기		13,093	(31.3)	13,093	(31.3)	(100.0)
강원		1,379	(3.3)	1,379	(3.3)	(100.0)
충북		1,363	(3.3)	1,363	(3.3)	(100.0)
충남		1,368	(3.3)	1,368	(3.3)	(100.0)
전북		1,701	(4.1)	1,701	(4.1)	(100.0)
전남		1,677	(4.0)	1,677	(4.0)	(100.0)
경북		2,351	(5.6)	2,351	(5.6)	(100.0)
경남		3,437	(8.2)	3,437	(8.2)	(100.0)
제주		637	(1.5)	637	(1.5)	(100.0)
계		41,767	(100.0)	41,764	(100.0)	(100.0)

*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결과는 2016년에 처음 취합함.

** 아동복지법 2015.3.27. 개정으로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 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해야함(2015.9.28. 시행)

(단위: 곳)



<그림 7-18> 연도별 시도/시군구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2)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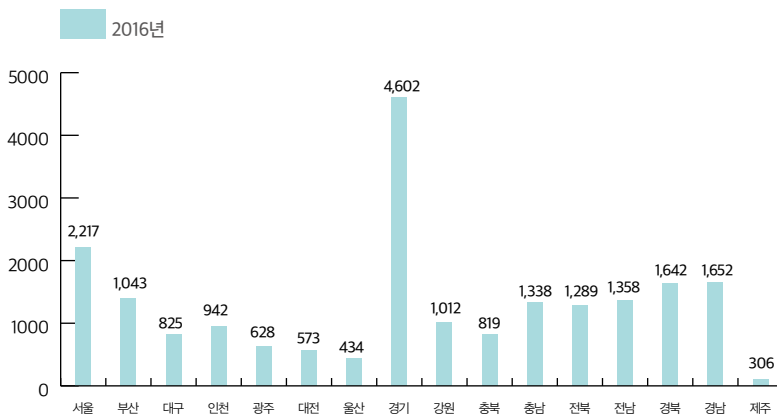
연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보고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표 7-20>과 같다. 2016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수는 20,680곳이며, 실제로 2016년에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한 기관은 20,680곳으로 의무기관 교육 이수 100%를 달성하였다. 교육결과를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대상 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로 4,602곳(22.3%)을 차지하였으며 서울 2,217곳(10.7%), 경남 1,652곳(8.0%), 경북 1,642곳(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7-20> 연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단위 : 곳, %)

지역	연도	2016년				
		총 기관수		교육 이수 기관수		총 기관수 대비 교육이수기관 비율
서울		2,217	(10.7)	2,217	(10.7)	(100.0)
부산		1,043	(5.0)	1,043	(5.0)	(100.0)
대구		825	(4.0)	825	(4.0)	(100.0)
인천		942	(4.6)	942	(4.6)	(100.0)
광주		628	(3.0)	628	(3.0)	(100.0)
대전		573	(2.8)	573	(2.8)	(100.0)
울산		434	(2.1)	434	(2.1)	(100.0)
경기		4,602	(22.3)	4,602	(22.3)	(100.0)
강원		1,012	(4.9)	1,012	(4.9)	(100.0)
충북		819	(4.0)	819	(4.0)	(100.0)
충남		1,338	(6.5)	1,338	(6.5)	(100.0)
전북		1,289	(6.2)	1,289	(6.2)	(100.0)
전남		1,358	(6.6)	1,358	(6.6)	(100.0)
경북		1,642	(7.9)	1,642	(7.9)	(100.0)
경남		1,652	(8.0)	1,652	(8.0)	(100.0)
제주		306	(1.5)	306	(1.5)	(100.0)
계		20,680	(100.0)	20,680	(100.0)	(100.0)

(단위 : 곳)



<그림 7-19> 연도별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교육 의무대상 교육 결과

11. 연도별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 실태 현황*

1)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 실태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표 7-20>와 같다. 아동관련기관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이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확인하였다. 점검 결과를 보면 아동관련기관 310,831개소를 점검하였고, 그 중 31개 기관에서 34명이 취업제한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표 7-21>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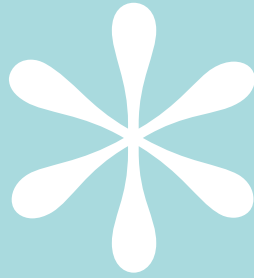
(단위 : 개, 명)

구분	점검 기관	취업제한 위반 현황	
		기관	인원
계	310,831	31	34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어린이집 등)	102,206	2	2
여성가족부 소관 기관(청소년시설 등)	2,814	-	-
교육부 소관 기관(학교, 유치원 등)	154,170	24	25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6,802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체육시설 등)	34,839	5	7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이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확인함(2016.9~2017.7)

부록

- 용어집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현황
- 2015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부록

부록 1. 용어집

[신고접수]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신고접수(사례)** :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아동복지법 제46조).
- **112**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신고번호이며,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신고번호가 112로 통합 운영됨. 신고 접수 받은 뒤 현장 경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실 통보 및 동행요청을 함.
- **1577-1391**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전화로 24시간 동안 운영되었으나 2014년 9월 29일 이후부터 112로 아동학대신고전화가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음.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통해 아동학대사례가 신고될 경우 신고접수함.
- **129** :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이며, 보건복지콜센터에 아동학대사례가 신고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관할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함
- **내방신고** :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 **인터넷신고** :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 **아동** :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 **학대행위자** :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행하는 보호자 및 성인과 유기 및 방임을 행하는 자
-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 **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 **동일신고(사례)** :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

되는 사례

- **일반상담(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성인이 아닌 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
- **재신고(사례)** :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동일 피해아동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재학대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 **사례종결 후 재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로 어느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인지에 관계없이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어 개입 후 종결한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모든 사례를 말함.
- **사례진행 중 재신고(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접수하여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하여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 또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접수하였으나 사례판단 이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 **일반상담 후 재신고(사례)** : 신고접수 당시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지 않아 일반상담으로 종결하였으나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자로 신고의무자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이돌보미 등 27개 직군이 포함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 **사례판단** :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과정.
- **아동학대위험도평가척도** : 현장조사 시 또는 현장조사 이후 상담원 및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적용하는 척도이며, 이를 통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
- **(자체)사례회의** : 사례판단과 사례개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된 회의.
- **사례전문위원회** : 아동학대 사례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해 사례판단 및 개입방향을 논의하고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
- **아동학대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 **조기지원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
- **일반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 **피해아동 발견율** : 당해 연도 추계아동인구(만 0~17세) 천 명 당 피해아동 수(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수).
- **친부모가족** : 적법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모·부자가정** :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미혼부·모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재혼가정** :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 **친인척보호가정**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별거 및 이혼한 일방의 부 또는 모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 **동거(사실혼포함)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 **소년소녀가정** : 보호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족 형태.
- **가정위탁**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 **입양가정** :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 **시설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 **계부·계모** : 재혼을 통하여 맺어진 부 또는 모.
- **양부·양모** : 입양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 **위탁부·위탁모**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삽입,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유기***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012년부터는 유기를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 **중복학대**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의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조치결과관리]

- **조치결과** : 사례판단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하는 것.
- **초기조치결과** : 아동학대로 사례판단된 이후 처음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
- **최종조치결과** :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통해 마지막 종결단계에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
- **응급조치** :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
- **임시조치** :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
- **제14조 임시조치**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청구신청 또는 피해아동 본인·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아동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요청 및 청구신

청요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

- **제15조 임시조치**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필요적으로 청구함.
- **긴급임시조치** : 응급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본인·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피해아동의 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긴급하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
- **피해아동보호명령**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법정대리인·변호사·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
- **임시보호명령**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결정으로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원가정보호** : 생물학적·법적 친권자 및 양육권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주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 **격리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일시보호** :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친족, 연고자 또는 위탁양육자가 없어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
- **장기보호** :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보호가 필요하여 아동양육시설로 입소하는 것.
- **기타보호** : 피해아동을 분리한 이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을 제외한 병원 입원 등의 보호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
- **가정복귀** : 아동학대로 분리보호된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배치하는 것.
- **사망사례** :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 **타기관의뢰** : 사례를 담당하기에 더욱 적절한 관련 기관으로 사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함.
- **지속관찰** : 아동 안전 확보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
- **고소** : 범죄 피해자 및 그의 법정 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 :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사건처리** :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보호처분** : 사회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을 부과하는 것.
- **형사처분**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 즉 구류, 금고, 징역 등을 부과하는 것.

[서비스제공]

- **개별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과의 개별적인 상담서비스.
- **집단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집단을 이루어 상담을 하는 서비스.
- **기관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다른 기관과 실시한 상담서비스.
- **주변인 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을 위해 주변인과 실시한 상담을 의미하며, 주변인이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기관을 제외한 사람.
- **입원치료** : 피해아동이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이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를 말함.
- **통원치료** : 피해아동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를 말함.

- **심리검사** : 심리학적 평가 및 진단을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 **놀이치료** : 놀이를 통해 피해아동 또는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미술치료** : 미술활동을 통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가족치료** :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소 중 특히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하여 피해아동 가정에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기타치료** :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를 제외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한 구조화된 심리치료를 의미함.
- **가정지원서비스** : 피해아동 가정 또는 학대행위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지역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등)을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의미함.
- **공적지원연결** :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해 공적지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
- **일시보호서비스** :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서비스.
- **고소·고발·사건처리지원서비스** : 학대행위자가 고소·고발 또는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으로 사건처리가 진행 되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 **행위자수탁프로그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사례종결** :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
- **사후관리** : 사례종결 이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재학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

부록 2.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017년 8월 기준, 61개소)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6길 19(역삼동) (06228)	www.korea1391.org	02-558-1391
서울 (8개소)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수서동) (06362)	www.child.seoul.go.kr	02-2040-4242
	서울특별시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노원구, 중랑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장안동) (02520)	dbnawoori.seoul.kr	02-2247-1391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양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가길 12 시정현빌딩 2층 (가양동) (07523)	www.goodneighbors.kr/gangseo	02-3665-5183~5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4층(응암동)(03472)	www.goodneighbors.kr/eunpyeong	02-3157-1391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7 에이스테크노타워 4층 407호 (07299)	www.goodneighbors.kr/yongdungpo	02-842-0094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도봉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타운힐빌딩) (02833)	www.goodneighbors.kr/seongbuk	02-923-5440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04088)	www.mapo.sc.or.kr	02-422-1391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5층(문정동) (05796)	www.goodneighbors.kr/gangdong	02-474-1391
부산 (4개소)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교개로 183(아미동27가) (49240)	adong.busan.go.kr	051-240-6300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영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호 (48101)	dbchild.saem.or.kr	051-715-1391
	부산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북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405, 406호 (46536)	sbchild.saem.or.kr	051-711-1391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503호(범일동) (48742)	http://bnc1391.or.kr/	051-791-1360
대구 (3개소)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수성구, 남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 (동인동3가) 2층 (41906)	www.dg1391.or.kr	053-422-1391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송현동) 2층 (42742)	www.goodneighbors.kr/ndaegu	053-623-1391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구 (3개소)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서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25길 12-1(산격동) (41539)	www.sosdb1391.or.kr	053-710-1391
인천 (3개소)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22134)	www.icchild.sc.or.kr	032-434-1391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계양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5층 504, 505호 (계산동, 삼환1빌딩) (21050)	www.goodneighbors.kr/ ninchon	032-515-1391
	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간석동) (21545)	https://www.holt.or.kr/ic_ nambu	032-424-1391
광주 (2개소)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 (쌍촌동) (61966)	cyber1391.or.kr	062-385-1391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북구, 남구,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97-2(운암동) (61261)	http://bitabo.co.kr/	062-675-1391
대전 (1개소)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56(중촌동) (34803)	www.goodneighbors.kr/ edaejeon	042-254-6790
울산 (2개소)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북구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 (성안동) (44421)	www.ulsan.sc.or.kr	052-245-9382
	울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 울주군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355번길 23(삼산동) (44709)	http://usnb.sc.or.kr/	052-256-1391
경기 (12개소)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25번길 20(영화동) (16272)	www.goodneighbors.kr/ suwon	031-245-2448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4 층(도림빌딩) (11652)	www.goodneighbors.kr/ uijeongbu	031-874-9100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13306)	www.goodneighbors.kr/ local/sungnam	031-756-1391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양시,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7번길 11, 7층 (행신동, 삼정프라자) (10518)	www.goodneighbors.kr/ local/goyang	031-966-1391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천시,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79 서호빌딩4층 405호 (중3동 1058-4) (14539)	www.bucheon.sc.or.kr	032-662-2580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 오산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4층 (봉담읍, 송현빌딩) (18303)	www.goodneighbors.kr/ hwaseong	031-227-1310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 248번길 39, 204호 (금곡동, 다남빌딩) (12239)	www.nyj1391.or.kr	031-592-9818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기 (12개소)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203호(고잔동, 슈마프라자) (15458)	www.ansan.sc.or.kr	031-402-0442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9 505호(구갈동) (16977)	www.goodneighbors.kr/yongin	031-275-6177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시,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대야동, 2층) (14911)	www.goodneighbors.kr/siheung	031-316-1391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소사동) (17877)	-	031-652-1391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392번길 17 (연무동) (16266)	http://goodsuwon.goodneighbors.kr/	031-8009-0080
강원 (4개소)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35(후평1동) (24257)	www.1391.org	033-244-1391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도 강릉시 솔울로5번길 33 2층(교동, 반트빌딩 2층) (25515)	www.kd1391.or.kr	033-644-1391
	강원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7(명륜동) (26482)	www.goodneighbors.kr/wonju	033-766-1391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2,3층(25735)	http://donghae.goodneighbors.kr/	033-535-5391
충북 (3개소)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202번길 66-1 (울량동) (28332)	www.goodneighbors.kr/cheongju	043-216-1391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4층(청전동, 제천시보건복지센터) (27152)	www.1391sos.kr	043-645-9078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옥천읍) (29039)	www.cbnb1391.org	043-731-3685
충남 (3개소)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성정동) (31140)	www.goodneighbors.kr/chonan	041-578-2655
	충청남도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84번길 55(취암동) (32974)	www.goodneighbors.kr/boryeong	041-734-6640~1
	충청남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0 충남보호회관 1층(신경리 903) (32263)	hongseong.goodneighbors.kr	041-635-1106
전북 (3개소)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서서학동) (55099)	www.goodneighbors.kr/local/jeonju	063-283-1391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전북 (3개소)	전라북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갈산동 185-3) (54595)	http://iksan.goodneighbors.kr/	063-852-1391
	전라북도동부아동 보호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 (향교동) (55751)	http://namwon.goodneighbors.kr/	063-635-1391~3
전남 (3개소)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용당동) (57935)	www.e1391.or.kr	061-753-5125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석현동) (58615)	www.goodneighbors.kr/mokpo	061-285-1391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3층(송월동) (58263)	www.goodneighbors.kr/jnjb	061-332-1391
경북 (4개소)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95번 길 24(건건동) (38133)	www.i1391.or.kr	054-745-1391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경상북도 안동시 밤적골길 20(울세동) (36692)	www.ad1391.org	054-853-1391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청송군, 울릉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일로25번길 12, 3층(대잠동) (37685)	www.goodneighbors.kr/pohang	054-284-1391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 5 3층(송정동 80-1 하나빌딩) (39276)	gumi1391.or.kr	054-455-1391
경남 (3개소)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함안군, 함천군, 의령군, 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회원동) (51292)	www.kn1391.or.kr	055-244-1391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상대동) (52773)	www.gnw1391.or.kr	055-757-1391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부원동) (50924)	www.gh1391.or.kr	055-322-1391
제주 (2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63084)	www.jj1391.or.kr	064-712-1391~2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서귀동) (63593)	www.sgp1391.org	064-732-1391

부록 3.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현황 (2017년 8월 기준, 55개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쉼터수	0	4	2	2	2	2	2	10	4	6	3	3	6	4	3	2	55

부록 4. 2015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표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신고자유형	비신고의무자											소계	계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부산	부산광역시	27	47	0	8	9	8	1	11	9	15	20	155	246 (1.5)
	부산동부	42	77	3	7	12	1	0	71	5	2	21	241	374 (2.2)
	부산서부	5	21	1	2	15	5	0	15	1	2	7	74	144 (0.9)
	소 계	74	145	4	17	36	14	1	97	15	19	48	470	764 (4.6)

〈표 3-2〉 현장조사 동행 현황**

(단위 : 건, %)

상담원	경찰	상담원-경찰	상담원-공무원	경찰-공무원	상담원-경찰-공무원	계
22,713 (64.2)	2,975 (8.4)	7,884 (22.3)	573 (1.6)	51 (0.1)	1,183 (3.3)	35,37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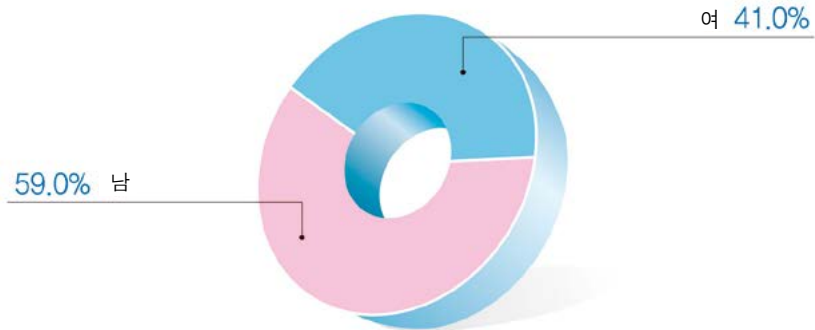
*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69

**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96

〈표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

성별	건수(비율)
남	732 (59.0)
여	508 (41.0)
계	1,240 (100.0)



〈그림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83

****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83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인 쇠 일 2017년 11월
발 행 일 2017년 11월
발 행 인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편 집 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편집위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박나령, 최정애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편집위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Tel: 02-558-1391)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